

#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2004. 12

손원익 · 정재호  
김형준 · 김상현

 한국조세연구원

## 서 언

세계 및 학계의 일부에서는 기업의 과도한 준조세 부담을 줄여주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그동안 불필요한 준조세를 없애는 등 준조세와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준조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준조세의 범위나 그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총 634개의 준조세가 있으며 이들 준조세들은 기업 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정부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부담금 등을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준조세의 범위에 대해서는 커다란 시각의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준조세의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준조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통해 이러한 시각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먼저 본보고서에서는 준조세를 보다 정교하게 정의하고 있다.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따라 준조세의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또한 1997년 기준 준조세와 2003년 기준의 준조세를 비교함으로써 지난 6년간 우리나라에서 준조세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을 제외한 준조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GDP 대비 준조세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발성의 정도에 따라 각종 기부금을 구분하여 그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준조세를 주요국의 준조세와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준조세의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 불필요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의 규모를 축소해나가는 데 있어 본 보고서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손원익 박사가 총괄을 맡았으며 정재호 박사, 김형준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상현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제언을 해준 익명의 논평자들,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 강미정, 김용대, 송은주 주임연구원, 윤정규 연구원, 그리고 원고 정리에 수고한 변경숙, 이현영, 장정순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4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준조세의 정의를 규정하고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 규모를 추산하여 1997년 규모와 비교한다. 또한 준조세 축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른 영향과 준조세 규모의 변화 추세 등을 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범위를 정립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를 산정하고 불필요한 준조세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광의의 준조세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광의의 준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축소하여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하였다. 협의의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장성 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이나 성금이 포함된다.

이론적 분석을 위하여 광의의 준조세를 조세성 부담금, 비조세성 부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기부금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조세성과 비조세성 부담금을 제외한 준조세는 주로 수요와 생산함수 등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세성 부담금은 감소하는 한편 비조세성 부담금은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율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률은 ① 조세에 대한 저항 ②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의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 ③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과세대상 자원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부과 자원의 비율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일반회계지출을 위한 과세대상 자원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부과 자원의 비율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세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이 좌우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효율화, 조세나 재정정책의 형평성 제고, 지출의 합리성 제고 등을 통하여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면 준조세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준조세 중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조세성 부담금의 증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부담금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조사 대상국 대부분이 우리나라처럼 부담금에 대한 활용도가 크거나 많은 종류의 부담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전반적인 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조사 대상 국가들에서는 부담금 관리에 관한 사후관리제도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가 부담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는 재원에 대해 조사 대상국들은 대부분 조세를 통해 이런 재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나 싱가포르, 일본, 미국과 달리 부담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발성의 정도에 따라 각종 기부금을 구분하여 그 규모를 추산하였다. 2003년 말을 기준으로 분야별 준조세 규모와 기부금 중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이라고 답한 금액을 합하여 준조세의 규모를 추계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약 23조 1,516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6조 9,212억원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이 납부한 준조세를 손금산입함으로써 납부세액이 감면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준조세 규모이다.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준조세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허용되므로 손금산입으로 인해 세액이 감면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일 것이다. 따라서 손금산입으로 인한 세액감면 부분을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총 16조 9,047억원이고 협의의 준조세 규모는 12조 3,565억원 정도이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4,781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조 9,299억원 정도이다. 또한, 준조세성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이라고 답한 것까지 합할 경우의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17조 216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2조 4,734억원이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5,95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2조 468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기부금을 제외한 준조세의 연도별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광의의 준조세는 2000년까지 매우 완만한 증가나 감소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협의의 준조세 또한 2001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의 변화추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재정 지출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뚜렷한 증가나 감소 추이를 보이지 않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부처별 예산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노동부이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부로 나타났다. 부처별 예산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노동부이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예산 대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목 차

I. 서 론 .....	27
II. 준조세의 정의 및 이론적 고찰 .....	30
1. 준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	30
2. 준조세의 정의 및 범위 .....	34
3. 준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8
가. 기존의 연구 .....	38
나. 준조세의 존재이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3
III.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	65
1. 준조세의 분류 .....	65
2. 부담금 .....	74
가. 산림·농림·해양수산 분야 .....	74
나. 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	105
다. 교통분야 .....	123
라. 환경분야 .....	128
마. 개발분야 .....	178
바. 문화분야 .....	208
사. 보건·노동분야 .....	221
아. 기타분야 .....	228
3. 사회보장성 보험료 .....	249
가. 국민연금기금 .....	249
나. 고용보험기금 .....	252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255
라. 국민건강보험 .....	258
4. 기부금 .....	260
가. 기부금 관련 세제 .....	260
나. 기업의 기부금 지출 실태 .....	266
IV. 주요국의 준조세 실태 .....	278
1. 환경 관련 부담금 .....	278
가. 미 국 .....	278
나. 일 본 .....	297
다. 싱가포르 .....	307
라. 환경 관련 재정의 국제 비교 .....	310
2. 개발·교통관련 부담금 .....	321
가. 미 국 .....	323
나. 일 본 .....	333
다. 싱가포르 .....	357
라. 캐나다 .....	366
마. 유럽의 교통관련 부담금 .....	378
바. 유사 부담금의 규모 비교 .....	382
3. 산업(에너지)관련 부담금 .....	394
가. 에너지관련 부담금 .....	394
나. 외국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397
4. 주요국의 기부금 .....	401
가. 미 국 .....	401
나. 일 본 .....	403
다. 싱가포르 .....	409
라. 캐나다 .....	415
마. 기부금 세제의 국제비교 .....	419

V. 준조세의 규모 및 비교 .....	422
1. 준조세 규모(2003년말 기준) .....	422
2. 준조세의 변화추이 .....	430
VI. 결 론 .....	440
참고문헌 .....	449
부록 I. 기업의 준조세 실태조사 설문지 .....	456
부록 II. 정치자금 모집 등에 관한 제도 .....	468
부록 III. 수입 부과금과 유사한 외국제도 .....	473
부록 IV. 분야별 부담금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	478

## 표 목 차

<표 II- 1> 광의의 준조세의 종류 .....	6
<표 II- 2> 이론적 모형설정을 위한 준조세 구분 .....	4
<표 II- 3> 2003년 부담금의 귀속주체 .....	4
<표 II- 4> 준조세의 유형별 영향요인 .....	7
<표 II- 5> 조세성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	9
<표 II- 6> 수익자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	6
<표 II- 7> 손피자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	6
<표 II- 8> 원인자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	8
<표 III- 1> 소관부처별 준조세 분류 .....	6
<표 III- 2> 분야별 준조세 분류 .....	8
<표 III- 3> 성격별 준조세 분류 .....	7
<표 III- 4> 귀속처별 준조세 분류 .....	7
<표 III- 5> 산림, 농림, 해양수산 분야 부담금 .....	5
<표 III- 6>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징수실적 .....	6
<표 III- 7> 지자체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실적 .....	7
<표 III- 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 .....	8
<표 III- 9> 임산물수입이익금 부과 및 징수실적 .....	9
<표 III-10>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부과 및 징수실적 .....	8
<표 III-11> 지자체별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징수실적 .....	8
<표 III-12>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부과 및 징수실적 .....	8
<표 III-13> 지자체별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징수실적 .....	8
<표 III-14> 농지조성비 부과 및 징수실적 .....	8
<표 III-15> 지자체별 농지조성비 징수실적 .....	8

<표 III-16> 농지관리기금: 국가 .....	8
<표 III-17> 농산물수입이익금 부과 및 징수실적 .....	8
<표 III-18>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국가 .....	9
<표 III-19> 농산물수익이익금 부과 및 징수실적 .....	9
<표 III-2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부과 및 징수실적 .....	9
<표 III-21> 쓰레기유발부담금 부과대상품목 및 부과금액 .....	9
<표 III-22> 쓰레기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9
<표 III-23> 지자체별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실적 .....	9
<표 III-24> 쓰레기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	9
<표 III-25>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지자체 .....	9
<표 III-26> 쓰레기유발부담금 일반회계: 지자체 .....	9
<표 III-27> 서울시농산물공사, 구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주)강릉농산: 기타 기관 .....	95
<표 III-28> 대체초지조성비 부과 및 징수실적 .....	9
<표 III-29> 축산발전기금: 국가 .....	9
<표 III-30> 축산물수입이익금 부과 및 징수실적 .....	9
<표 III-31> 수산자원조성금의 부담요율 .....	9
<표 III-32>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및 징수실적 .....	9
<표 III-33> 지자체별 수산자원조성금 징수실적 .....	10
<표 III-34>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1
<표 III-35> 지자체별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의 징수실적 .....	11
<표 III-3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3
<표 III-37> 수산발전기금: 국가 .....	103
<표 III-38> 분담금(해양오염방지법) 부과 및 징수실적 .....	104
<표 III-39>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기타 .....	105
<표 III-40> 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	16
<표 III-41> 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7
<표 III-4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 .....	107

<표 III-43> 공동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8
<표 III-44> 지자체별 공동부담금의 징수실적 .....	18
<표 III-45> 전기수용자·전기사업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0
<표 III-46> 농어촌전화사업: 기타 .....	110
<표 III-47>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1
<표 III-48> 특정물질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익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12
<표 III-49>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국가 .....	113
<표 III-50>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14
<표 III-51> 전력산업기반기금: 국가 .....	114
<표 III-52>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16
<표 III-53> 집단에너지사업자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	116
<표 III-54> 공사비 부담금 부과기준 .....	117
<표 III-55>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18
<표 III-56> 정보화촉진기금(연구개발계정): 국가 .....	119
<표 III-57>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20
<표 III-58>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1
<표 III-59>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국가 .....	121
<표 III-60> 원자력관계사업자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22
<표 III-61> 원자력안전기술원 사업예산: 기타 .....	123
<표 III-62> 교통분야 .....	124
<표 III-6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담요율 .....	124
<표 III-6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25
<표 III-65> 혼잡통행료 부과 및 징수실적 .....	126
<표 III-6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27

<표 III-67>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6개 광역지자체 총괄	127
<표 III-68> 환경분야	128
<표 III-69>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	130
<표 III-70> 지자체별 배출부담금 징수실적	130
<표 III-71>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	131
<표 III-72> 연도별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132
<표 III-73> 지자체별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실적	133
<표 III-74> 원인자부담금(수도법) 부과 및 징수실적	134
<표 III-75>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실적	134
<표 III-76> 상수도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	135
<표 III-77> 상수도특별회계: 기초자치단체	136
<표 III-78> 손괴자부담금(수도법) 부과 및 징수실적	137
<표 III-79> 손괴자부담금(수도법) 부과 및 징수실적	138
<표 III-80>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부과 및 징수실적	139
<표 III-81> 지자체별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징수실적	140
<표 III-82> 배출부과금(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부과 및 징수실적	141
<표 III-83> 지자체별 배출부담금의 징수실적	142
<표 III-84> 원상회복예치금 부과 및 징수실적	143
<표 III-85> 지자체별 원상회복예치금 징수실적	143
<표 III-86> 원상회복예치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	144
<표 III-87>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실적	145
<표 III-88> 지자체별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실적	145
<표 III-89>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147
<표 III-90>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148
<표 III-91> 지사별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실적	148
<표 III-92> 재활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150
<표 III-93> 지방청별 재활용부담금 징수실적	150

<표 III- 94>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부과 및 징수실적 .....	152
<표 III- 95>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징수실적 .....	152
<표 III- 9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 .....	153
<표 III- 9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초자치단체 .....	154
<표 III- 98>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5
<표 III- 99>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	16
<표 III-100>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57
<표 III-101>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	158
<표 III-102> 물이용부담금(한강)의 납부 및 징수실적 .....	159
<표 III-103> 물이용부담금(한강)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	160
<표 III-104>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가 .....	161
<표 III-105> 물이용부담금(금강)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62
<표 III-106> 물이용부담금(금강)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	162
<표 III-107> 금강수계관리기금: 국가 .....	163
<표 III-108> 물이용부담금(낙동강)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64
<표 III-109> 물이용부담금(낙동강)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	165
<표 III-11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가 .....	166
<표 III-111>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67
<표 III-112>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	168
<표 III-11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가 .....	168
<표 III-114>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69
<표 III-115>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	170
<표 III-116>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71
<표 III-117> 산업단지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납부실적 .....	172
<표 III-118>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173
<표 III-119> 지방환경관리청별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징수실적 .....	173
<표 III-120> 과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75
<표 III-121>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 국가 .....	176
<표 III-122> 도시개발 특별회계: 서울시 .....	176
<표 III-123> 소음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77
<표 III-124> 지방청별 소음부담금의 징수실적 .....	177
<표 III-125>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국가 .....	178
<표 III-126> 개발분야의 준조세 .....	179
<표 III-12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80
<표 III-128> 지자체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징수실적 .....	181
<표 III-129>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국가 .....	182
<표 III-130>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83
<표 III-131> 지자체별 개발부담금의 징수실적 .....	184
<표 III-132> 원인자부담금(도로법)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86
<표 III-133> 지방국토관리청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실적 .....	186
<표 III-134> 교통시설 특별회계(도로계정): 국가 .....	187
<표 III-135> 시설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88
<표 III-136> 지자체별 시설부담금의 징수실적 .....	188
<표 III-137> 이용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89
<표 III-138>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90
<표 III-139> 손보사별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징수실적 .....	191
<표 III-140>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사용명세 .....	193
<표 III-141>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94
<표 III-142> 지자체별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의 징수실적 .....	194
<표 III-143> 소하천원상복구예치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195
<표 III-144> 지자체별 소하천원상복구예치금의 징수실적 .....	195

<표 III-145> 소하천수익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201
<표 III-146> 지자체별 소하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실적 .....	201
<표 III-147>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206
<표 III-148> 지자체별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실적 .....	207
<표 III-149>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명세 .....	207
<표 III-150> 문화분야의 준조세 .....	208
<표 III-151> 국외여행자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209
<표 III-152> 부과·징수기관별 국외여행자납부금의 징수실적 .....	210
<표 III-153> 관광진흥개발기금: 국가 .....	210
<표 III-154>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211
<표 III-155> 카지노 소재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	212
<표 III-156>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213
<표 III-157> 중문관광단지 및 보문관광단지 유지·관리: 기타 .....	214
<표 III-158>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부과 및 징수실적 .....	216
<표 III-159> 자자체별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실적 .....	217
<표 III-160>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용명세 .....	218
<표 III-161>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부과 및 징수실적 .....	219
<표 III-162> 지자체별 모금 징수실적 .....	220
<표 III-163>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가 .....	220
<표 III-164> 보건, 노동 분야의 준조세 .....	221
<표 III-165>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222
<표 III-166>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 .....	222
<표 III-167>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224
<표 III-168> 공단지사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징수실적 .....	224

<표 III-169> 임금채권보장기금: 국가	26
<표 III-170>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27
<표 III-171> 관할 공단지사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실적	27
<표 III-17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국가	28
<표 III-173> 기타(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분야	29
<표 III-17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30
<표 III-17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가	21
<표 III-176>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22
<표 III-177>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23
<표 III-178> 부실채권정리기금: 국가	24
<표 III-17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235
<표 III-18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국가	26
<표 III-181>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237
<표 III-182> 연초생산안정화재단: 기타	27
<표 III-183>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28
<표 III-184> 기술신용보증기금: 국가	29
<표 III-185>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20
<표 III-186> 신용보증기금: 국가	21
<표 III-187>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22
<표 III-188> 한국화재보험협회: 기타	23
<표 III-18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부과 및 징수실적	244
<표 III-19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의 금융권별 징수실적	245
<표 III-19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가	25
<표 III-192> 국제교류기여금의 부과대상별 부과액	26

<표 III-193> 국제교류기여금 부과 및 징수실적 .....	27
<표 III-194> 지자체별 국제교류기여금의 징수실적 .....	28
<표 III-195> 국제교류기금: 국가 .....	29
<표 III-196> 국민연금기금 조성액 .....	30
<표 III-197> 국민연금 기금운용 총괄표 .....	31
<표 III-198> 고용보험기금 조성액 .....	33
<표 III-199> 고용보험 기금운용 총괄표 .....	34
<표 III-200> 고용보험기금의 고용보험료 실적 .....	35
<표 III-20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조성액 .....	36
<표 III-20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운용 총괄표 .....	37
<표 III-203>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	39
<표 III-204> 총 보험료 현황 .....	40
<표 III-205> 기부금 한도액의 법인 및 개인 비교 .....	42
<표 III-206> 조사대상기업 현황 .....	49
<표 III-207>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전체) .....	273
<표 III-208>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대기업) .....	274
<표 III-209>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중소기업) .....	275
<표 IV- 1> 메인 주의 대기배출 허가요금의 배출량별 요율 .....	35
<표 IV- 2> 미시간 주의 대기배출 허가요금에서 사업장별 요율 .....	36
<표 IV- 3> SCAQMD의 대기배출 허가요금 .....	38
<표 IV- 4> 미시간 주의 하수도 폐기 허가요금의 요율 체계 .....	38
<표 IV- 5> 쓰레기 배출 부과금의 요율 체계 .....	40
<표 IV- 6> 미시간 주의 폐기물 매립 부담금 요율체계 .....	41
<표 IV- 7> 캘리포니아 주의 유해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의 경우 .....	293

<표 IV- 8> 캘리포니아 주의 유해폐기물 부담금 체계: 매립자의 경우 .....	298
<표 IV- 9> 예치금 제도의 요율 체계와 회수율 .....	30
<표 IV-10> 한국과 일본의 부담금 비교 .....	27
<표 IV-11> 싱가포르의 세수와 부담금의 규모 .....	30
<표 IV-12> 싱가포르의 수도 관련 요금, 세금, 및 부담금 요율체계 .....	310
<표 IV-13> GDP 대비 환경 관련 세수비중 .....	33
<표 IV-14>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세의 추이 .....	37
<표 IV-15> 환경 관련 세수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	38
<표 IV-16> 환경 보호 관련 재정 지출의 비중 .....	31
<표 IV-17> Road Impact Fees 부과요율 .....	32
<표 IV-18> 치수특별회계 예산(2004년) .....	36
<표 IV-19> 겸용공작물관리비등 부담금 .....	37
<표 IV-20> 도로정비 특별회계 예산(2004년) .....	34
<표 IV-21> 국가 이외의 자 부담금 .....	38
<표 IV-22> 항만관리자공사비부담금 .....	34
<표 IV-23> 항만정비특별회계 예산(2004년) .....	35
<표 IV-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부과금 .....	36
<표 IV-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특별회계 예산(2004년) .....	36
<표 IV-26> 한·일간 치수관련 부담금 비교 .....	34
<표 IV-27> 한·일간 도로관련 부담금 비교 .....	35
<표 IV-28> 한·일간 기타 건설관련 부담금 비교 .....	37
<표 IV-29> Development Charge 부과요율(2004년 9월 기준) .....	30
<표 IV-30> ERP Rates: Passenger Cars(Expresswasy) .....	34
<표 IV-31> ERP Rates: Passenger Cars(Arterial Roads) .....	35
<표 IV-32> 도로개발비용부과금 부과요율 .....	30
<표 IV-33> 거주단위의 밀도에 따른 개발비용부담금의 범주 .....	30

<표 IV-34> 토지용도별로 용수배출정도 .....	31
<표 IV-35> 홍수배출시설개발비용부담금 부과요율 .....	32
<표 IV-36> 위생시설개발비용부담금 부과요율 .....	34
<표 IV-37> 상수도시설개발비용부담금 부과요율 .....	35
<표 IV-38> 공원시설개발비용부담금 부과요율 .....	38
<표 IV-39> 도시별 혼잡통행료 방식의 비교 .....	38
<표 IV-40> 유럽 주요 국가의 에너지 관련 공적부과금 성격의 조세제도 .....	399
<표 IV-41> 한국과 일본의 석유 등에 대한 수입·판매부과금 비교 .....	400
<표 IV-42> 공익성 기부금 관련 세제 개요 .....	41
<표 IV-43> 정치기부금 공제요율 .....	47
<표 IV-44> 기부금세제의 국제비교 .....	41
<표 V- 1> 산림, 농림, 해양수산 분야의 준조세 규모 .....	43
<표 V- 2> 산업,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 준조세의 규모 .....	44
<표 V- 3> 교통 분야 준조세의 규모 .....	44
<표 V- 4> 문화 분야 준조세의 규모 .....	45
<표 V- 5> 보건, 노동 분야 준조세의 규모 .....	45
<표 V- 6> 개발 분야의 준조세 여부 .....	45
<표 V- 7> 환경 분야의 준조세 규모 .....	47
<표 V- 8> 기타 분야의 준조세 규모 .....	48
<표 V- 9> 사회보장성 보험료의 준조세 규모 .....	48
<표 V-10> 분야별 준조세 규모(2003년말 기준) .....	49
<표 V-11> 준조세의 연도별 추이(1997~2003) .....	41
<표 V-12> 세수대비 준조세 비중의 연도별 추이(1997~2003) ...	45
<부표 1> 일본의 정치자금 기부액의 금액제한 개요 .....	42
<부표 2> 핀란드의 예비저장비(Precautionary Storage Fee) .....	43

<부표 3> 핀란드의 석유공해세 .....	44
<부표 4> 오스트리아의 Emergency stock fee .....	45
<부표 5> 독일의 Contribution to emergency storage fund .....	46
<부표 6> 스위스의 Emergency Fund .....	47
<부표 7> 산림, 농림, 해양수산 분야 부담금의 협정의 준조세 포함여부 .....	478
<부표 8> 교통 분야 부담금의 협정의 준조세 포함여부 .....	49
<부표 9> 산업,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 부담금의 협정의 준조세 포함여부 .....	480
<부표 10> 문화 분야 부담금의 협정의 준조세 포함여부 .....	481
<부표 11> 보건, 노동 분야 부담금의 협정의 준조세 포함여부 .....	481
<부표 12> 개발 분야 부담금의 협정의 준조세 포함여부 .....	482
<부표 13> 환경 분야 부담금의 협정의 준조세 포함여부 .....	483
<부표 14> 기타 분야 부담금의 협정의 준조세 포함여부 .....	484
<부표 15> 사회보장성 보험료의 협정의 준조세 포함여부 .....	484

## 그림목차

[그림 II- 1]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범위 .....	38
[그림 II- 2]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결정 .....	53
[그림 II- 3]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	58
[그림 II- 4] 조세성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	59
[그림 II- 5] 수익자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	60
[그림 II- 6] 손피자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	61
[그림 II- 7] 원인자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	63
[그림 III- 1] 소관부처별 부담금 수 .....	66
[그림 IV- 1] 환경 관련 세수의 GDP 비중 .....	314
[그림 IV- 2] OECD 국가의 환경 관련 세수 GDP 비중 추이 .....	315
[그림 IV- 3] OECD 국가의 휘발유 가격 및 휘발유 소비 추이 .....	316
[그림 IV- 4]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세수 중 휘발유세의 비중 .....	317
[그림 IV- 5] 환경 관련 세수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	319
[그림 IV- 6] 1인당 환경관련 세수 규모 .....	319
[그림 IV- 7] 미국 주(州)별 건설관련 부담금 추이 .....	383
[그림 IV- 8] 캘리포니아 주의 건설관련 부담금 추이 .....	383
[그림 IV- 9] 위스콘신 주의 건설관련 부담금 추이 .....	384
[그림 IV-10] 개발부담금 비중 추이 .....	385
[그림 IV-11]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비중 추이 .....	385
[그림 IV-12] 싱가포르 개발부담금 관련 수입 비중 추이 .....	386
[그림 IV-13] 싱가포르 ERP 수입 비중 추이 .....	387

[그림 IV-14] 우리나라 혼잡통행료 비중 추이 .....	388
[그림 IV-15] 싱가포르 교통관련 Fees and Charges 비중 추이 ...	389
[그림 IV-16] 싱가포르의 환경·건설·교통이 차지하는 비중 .....	390
[그림 IV-17] 우리나라 전체 부담금 수입중 교통·건설이 차지하는 비중 .....	391
[그림 IV-18] 우리나라 교통관련 부담금 비중 추이 .....	391
[그림 IV-19] 일본의 분담금 및 부담금 비중 추이 .....	393
[그림 IV-20] 우리나라 부담금 비중 추이 .....	394
[그림 V- 1] 준조세의 연도별 추이(1997~2003) .....	432
[그림 V- 2]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의 연도별 추이(1997~2003) .....	433
[그림 V- 3] GDP 대비 준조세 비중의 추이(1997~2003) .....	434
[그림 V- 4] 통합재정지출 대비 준조세 비중의 추이(1997~2003) .....	434
[그림 V- 5] 세수대비 준조세 비중의 추이(1997~2003) .....	435
[그림 V- 6] 부처별 예산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의 추이(1997~2003) .....	436
[그림 V- 7] 부처별 예산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의 추이(1997~2003) .....	437
[그림 V- 8] 보건·노동분야 부담금 연도별 추이 .....	437
[그림 V- 9] 보건·노동분야의 (협의)준조세 비중 추이 .....	438
[그림 V-10] 건강증진부담금 징수 추세 .....	439
[그림 VI- 1] 최근 3년간 연속 징수실적이 없는 소관별 부담금 수 .....	445

## I. 서 론

1997년 말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는 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인한 취약한 재무구조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인식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요구되었고,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기업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환경에 대한 개선의 요구도 학계 및 재계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제기된 사항 중에는 기업의 과도한 준조세 부담의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기업의 과도한 준조세 부담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준조세 축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준조세의 범위에 대한 업계와 정부와의 시각차가 매우 커서 아직도 업계의 불만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장에 의하면 특별부담금,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을 포함하여 총 634개의 준조세가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의견은 각종 부담금 중 수익자부담 원칙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부담금과 중복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서 준조세에 대한 시각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 차이를 인식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준조세의 범위를 정립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원익 외(1998)가 수행되었다.

손원익 외(1998)에서는 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도 준조세에 포함하여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총규모를 1997년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개선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비중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부금 항목별 자발성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비자발적 기부금의 비중을 기업의 총 기부금 규모에 적용하여 준조세성 기부금의 규모를 산출하였다. 연구가 수행된 이후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 등 관련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최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획기적인 축소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다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준조세의 정의를 보다 정교히 하여 2003년 말 기준 우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의 규모를 추산하고 손원익 외(1998)에서의 연구결과와 비교한다. 둘째, 준조세 축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정치자금법 개정 등)에 따른 영향과 준조세 규모의 변화 추세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7년 기준 준조세와 2003년 기준 준조세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주요국의 준조세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주요국과 비교 평가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국의 준조세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은 각국의 제도와 배경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범위를 재정립하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담의 규모를 측정하고 불필요한 준조세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준조세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하여 논하고, 준조세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이론적 모형을 통한 설명을 시도한다. 준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준조세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특성에 따라 분류된 각각의 준조세에 대하여 “준조세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제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 II 장에서 논의한 협의의 준조세를 기준으로 소관부처별 분류, 분야별 분류, 성격별 분류 및 귀속형태별 분류에 따른 준조세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기부금의 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이 기부한 기부금 총액 중에서 비자발성 정도가 커서 준조세로 분류될 수 있는 기부금의 비중을 산출한다. 제 IV 장에서는 주요국의 준조세 실태에 대하여 논의한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연구대상 국가의 준조세성 부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자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간의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제 V 장에서는 협의의 준조세 분류에 따라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고, 1997년을 기준으로 한 손원익 외(1998)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고 변화추세 등을 분석한다. 제 VI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준조세의 정의 및 이론적 고찰

준조세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준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며,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준조세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 대해 살펴본 후 준조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준조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개념의 비교를 바탕으로 준조세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의에 포함되는 준조세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 1. 준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준조세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준조세와 비슷하거나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준조세와 관련된 개념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는 부담금, 분담금, 공과금, 부과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기부금, 성금 등이 있다. 이들 중 부담금, 분담금, 공과금, 부과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은 의무가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기부금과 성금에 대한 의무는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부금과 성금의 경우에도 권유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라고 정의된다(이상우·임혁진, 1995). 한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부담금의 특징은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부과하므로 강제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된다. 둘째,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정부사업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개별 경제주체가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의 규모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비하여, 조세는 담세능력을 바탕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부담금 평가단, 2003).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업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담금과는 구분된다. 넷째,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금전적 부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금전적 부담은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담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부담금에 포함되는 용어로는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이 있다. 분담금은 부담금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의무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분담금은 부담금과 같은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취

급될 수 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손원익 등(1998)은 부담금 중 관련된 이해집단이 그 부담을 서로 분담하는 경우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분담금을 이와 같이 정의할 경우 분담금은 부담금에 포함되는 개념이 된다. 대표적 분담금으로는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분담금,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분담금 등이 있다.

부과금은 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정액의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이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은 거래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과금의 예로는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축산폐수등 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을 들 수 있다.

부가금은 부과금과 거의 흡사한 성격을 가진 금전적 부담이다. 다만, 부담의 기준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과금과 다르다. 부가금의 대표적 예로는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들 수 있다.

부담금에 포함되는 또 다른 금전적 부담으로는 예치금이 있다.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원상회복예치금, 복구에 치금 등이 대표적 예치금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치금은 정부가 특정 행동을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한 다음 정부가 의도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금전적 부담을 해지시켜 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기금출연금도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담금의 한 종류로 취급할 수 있다. 대표적 기금출연금으로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등이 있다. 한편, 기여금도 기금출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이 이에 해당된다.

공과금이란 용어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부과금, 수산업법에 의한 부담금,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회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과 같은 것들이 공과금의 범주에 포함된다(손원익 외, 1998).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사회보험료도 공과금에 속한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이 있다. 또한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도 공과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도 공과금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1997년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공과금이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한 공과금 정의는 개괄적 개념만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정의된 공과금 개념을 받아들일 경우, 공과금의 특징은 첫째, 법령에 규정된 납부 의무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채권에 제한된다. 둘째,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공과금은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조세와는 엄격히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공과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반드시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공과금은 부담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인

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된다(법제연구원, 2002). 이와 같이, 수수료는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지 않는 부담금과는 구별된다. 한편,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된다(법제연구원, 2002). 따라서 사용료도 수수료와 같이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며, 부담금과는 차별성을 띠게 된다.

기부금은 기업 등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타인에게 금전이나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증여한 경우에 그 금전이나 기타 자산의 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손원익 외, 1998). 이와 같은 기부금은 현금, 성금, 찬조금, 후원금 등으로도 표현되며, 이러한 명칭이 시사하듯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부금의 납부에 있어서 공권력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의뢰·권유 등의 방법에 의해 강제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 2. 준조세의 정의 및 범위

준조세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용어들과는 달리 실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주로 기업의 부담이라는 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절감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조세나 조세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부담을 지게 된다. 만약 조세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부담이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면 기업으로서는 생산비용과 같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준조세를 정의하면 기업이 강제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기업의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준조세의 정의에 있어서 핵심 요건이 되는 『강제성』에도 정도의 차가 존재한다. 법령에서 명백히 정해

지는 금전적 부담은 강제성의 정도가 매우 크나, 기부금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법령에서 명백히 정해지지 않는 금전적 부담의 경우에는 기업이 느끼는 강제성의 정도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강제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지닌 부담을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준조세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준조세는 그 범위를 매우 넓게 보는 것이며, 광의의 준조세로 명명될 수 있다. 이 범주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각종 공과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회보장성 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성금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의의 준조세는 강제적 부담이라는 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강제성이 반드시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부 기부금이나 성금처럼 법령에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비자발적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광의의 준조세 요건인 『강제성』을 충족시킨다. 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와 같은 정의를 따르더라도, 기부금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어야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lt;표 II-1&gt; 광의의 준조세의 종류

준조세의 종류	세 부 내 용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 한 부담금	각종 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여 금, 기금출연금
사용료·수수료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에 따른 각종 수수료 면허료, 세무서식 인쇄비, 입장료, 창고료
사회보장성 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과태료 등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 제금
강제적 기부금·성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강제성을 띤 정치자금 등

광의의 준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조금 축소하면 협의의 준조세를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준조세 중 사업자의 부담이 1) 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2)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을 협의의 준조세로 볼 수 있다(손원익 외, 1998)<sup>2)</sup>. 이와 같이 준조세를 정의할 경우 여기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sup>3)</sup>, 사회보장성 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이나 성금이 포함된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회보장성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도 보험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험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이므로

2) 전자는 수익자 부담금, 후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불린다.

3)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되는 부담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부표 7>~<부표 15>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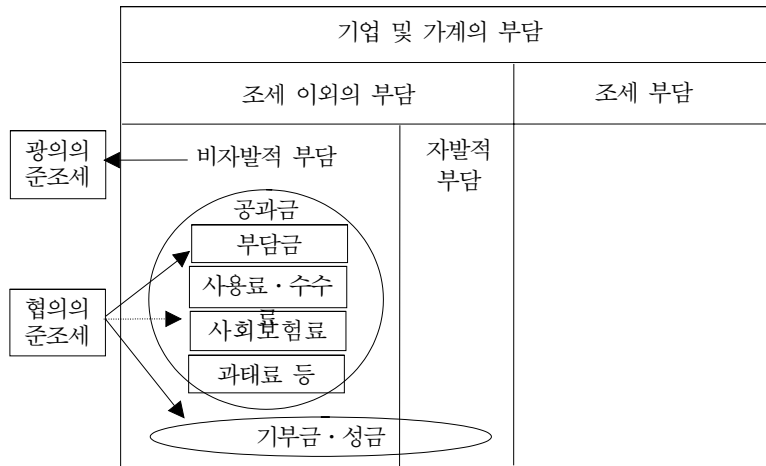
협회의 준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보장성 보험료 중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기업이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협회의 준조세에 해당된다<sup>4)</sup>. 또한, 각종 공과금 중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협회의 준조세로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정의된 준조세를 요약하면 [그림 II-1]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준조세의 정의는 절대적일 수 없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범위의 준조세 개념이 사용되어야 한다. 연구의 초점이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에 있다면,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협회의 준조세라 하겠다. 국제경쟁이라는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강제성을 띠게 되는 금전적 부담 중 이득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준조세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관련 정책의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4)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담주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장성 보험료도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II-1]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범위



- 주: 1. 부담금은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을 포함하며,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  
 2. 사회보장성 보험료는 기업의 부담 부분만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  
 3. 기부금, 성금 등은 강제성을 띠는 경우에만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됨.

### 3. 준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가. 기존의 연구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준조세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실태파악과 준조세와 경제지표의 관계 발견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다. 임양택·최명근(1983), 최동규(1986), 이춘근(1988, 1991) 등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이들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각종 준조세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업의 부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기업이 지게되

는 각종 의무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에서 준조세는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과 기부금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준조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준조세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손원익 외(1998)는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구분한 다음 협의의 준조세 실태를 파악하고 각 준조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광의의 준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 중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에 비해, 협의의 준조세란 「광의의 준조세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명백한 법적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각종 부담으로서, 부과 및 징수에 강제성을 띠며 사업자의 부담이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준조세를 좁게 정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나 수수료와 같이 회피 가능하거나 시장기능에 의해 부과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 같이 납부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는 공과금이나, 항만시설을 손상하게 되는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항만관련 부담금처럼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준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의 연구는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각종 부담금, 회비 등을 고용, 통상·산업, 개발, 환경, 교통, 기타 등의 여섯 개 분야로 분류한 다음 각 분야에 해당되는 준조세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담금이나 회비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자발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한편, 한경동 외(1999)는 우리나라 기업의 준조세 부담현황과 조세 외의 부담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자는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추정하였고, 후자는 재정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준조세 부담현황과 함께 준조세와 기업의 이익 및 연구개발비의 관계에 대해서

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기업의 준조세 현황 파악에 있어서 준조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채 기업들의 기부금, 공과금, 접대비의 50% 등을 준조세로 보고 있다. 또한, 준조세와 기업의 이익의 관계에 있어서도 준조세가 없었다면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준조세와 연구개발비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준조세/연구개발비 비율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의 49%를 준조세로 지출하였으며, 준조세가 경감되고 이를 연구개발비로 지출한다면,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준조세와 연구개발비의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보다는 준조세가 연구개발비로 사용된다면 연구개발비가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매우 당연한 서술에 그치는 것이다. 한편, 재정통계 자료를 이용한 조세의 공공부담의 추정에서도 통합재정에서 목적세, 사회보장 기여금, 세외수입 등의 항목을 여과 없이 포함시키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4년, 1997년, 2002년 세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준조세의 규모 파악에서 준조세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다. 즉, 준조세를 부담금과 기부금으로 나누고, 전자의 범위에 ① 회비·협회비 ②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성 부담금 ③ 예치금·부과금·기금 납부금 등을 포함한 법적 부담금 ④ 회계감사비용, 행정요금 등을 포함한 기타 부담금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2002년의 연구에서는 준조세의 개념 부분에서는 준조세를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모 측정에서는 과거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준조세를 매우 넓게 파악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준조세 규모 파악과는 약간 다른 부류의 연구가 법제 연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오준근(1998)은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초점을 두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2002)도 준조

세보다는 부담금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법적 성격,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준조세와 관련된 연구가 숫적으로는 적지 않다. 그러나, 손원익 외(1998)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의 부담에 치중한 나머지 객관적인 준조세의 개념정의를 소홀히 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임양택·최명근(1983)을 제외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론적 고찰은 등한시하고 있다. 한편, 유일한 이론적 연구라 할 수 있는 임양택·최명근(1983)의 연구는 공과금의 경우에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만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한편, 외국에서는 준조세 중 기부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기업의 기부행위의 동기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즉, 기업의 기부행위가 기업의 이윤 최대화 동기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경영자의 효용 최대화에서 출발하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윤 최대화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기업의 기부행위가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기부행위가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광고를 대체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부행위는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절감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 기부로 인한 생활환경의 개선이 가져오는 임금의 저하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부행위에 대한 이윤최대화 접근은 기부행위로 인한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면 기부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연구로는 Schwartz(1968), Navarro(1988b), Jones and Laudadio(1991), Leclair and Gordon(2000) 등이 있다.

경영자의 효용 최대화 모형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에서 경영자가 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Williamson(1964)의 연구와 그와 비슷한 연구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 경영자

는 목표이익(profit target)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적인 지출을 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경영자의 효용 최대화 모형에서 기업의 기부행위는 경영자가 기부에서 개인적인 편익, 즉 사회에서의 명예의 획득, 이타적 욕구 충족 등과 같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실질이익과 목표이익의 차이가 경영자의 예산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기부행위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기부행위에 대한 이익 최대화 모형은 경영자 효용 최대화 모형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은 이익 최대화 모형과 경영자 효용 최대화 모형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들은 대부분 기부행위의 조세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세전(pretax) 또는 세후(after-tax) 순이익이 설명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McElroy and Siegfired(1985)와 Navarro(1988a)는 세전 순이익을 유일한 설명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누락변수 편익(omitted variable bias)를 초래하였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이와 같은 누락변수 편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계 또는 평균 법인세율, 광고지출, 기업집중도(Jones and Laudadio, 1991) 등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들은 통제하기 위하여 시간상의 경향(time trend)이 설명변수로 포함되기도 한다(Clotfelter, 1985; Arulampalam and Stoneman, 1995).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기업의 기부행위가 세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익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ay and Devlin(2004)은 정부의 지출이 기업의 기부행위를 구축하는지를 캐나다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정부의 지출과 기업의 기부행위는 대체적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몇몇 실증적 연구들은 기업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이론적 모형인 이

익 최대화 모형과 경영자 효용 최대화 모형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Levy and Shatto(1978)는 순이익보다 기부액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을 근거로 효용 최대화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Thompson, Smith and Hood(1993)는 미국의 181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소유자 또는 경영자의 선호가 기부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와 기부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한편, Navarro(1988b)는 1976년부터 1982년까지 254개의 개별 기업으로 구성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이익최대화 모형이 경영자 효용 최대화 모형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Boatsman and Gupta(1996)는 경영자 효용 최대화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기부행위가 이익 최대화 모형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경영자 효용최대화 모형과 부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김진수(1997)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는 세율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행위는 경영자의 효용 최대화 모형과 부합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 나. 준조세의 존재이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이론적 모형을 위한 준조세 구분

‘준조세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임양택·최명근(1983)의 연구는 기업의 기부금 수준의 결정을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나, 기부금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준조세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마찬가지이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광의의 준조세에는 기부금뿐

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사용료·수수료, 사회보장성 보험료, 각종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준조세의 존재에 대한 실증론적 분석을 위해서는 기부금을 포함한 기타 준조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의 도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준조세와 관련된 이론적 모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조세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준조세의 모형 개발을 위하여 전체 준조세를 <표 II-2>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5)</sup>. 표에서 보듯이, 사회보험료와 행정제재금을 제외한 준조세는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되는 조세성 부담금, 수익자·원인자·손피자 부담금 등의 비조세성 부담금, 행정서비스나 재화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그리고 기부금 및 성금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준조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에 맞는 모형을 설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5) 사회보험료 및 행정제재금(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등은 외부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 매우 커서 모형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이론적 논의에서 제외함.

<표 II-2> 이론적 모형설정을 위한 준조세 구분

준조세 구분	특 성
조세성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과</li> <li>-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에 사용</li> <li>- 조세와 구분이 모호하므로 납부에 대한 저항 정도는 조세와 비슷</li> <li>- 기금, 특별회계, 지자체 일반회계로 귀속됨</li> </ul>
비조세성 부담금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인 또는 사업자에 부과</li> <li>- 특정 또는 소수인을 위한 사업에 사용</li> <li>-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귀속됨</li> <li>- 조세성 부담금에 비하여 부담에 대한 저항이 약함</li> </ul>
사용료·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서비스나 재화와 관련된 사람이나 사업자에 부과</li> <li>- 특정 사업에 사용</li> <li>- 주로 특별회계로 전입됨</li> <li>- 납부에 대한 저항이 매우 약함</li> </ul>
기부금 및 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사업을 위한 부담</li> <li>-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지만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있음</li> <li>- 납부에 대한 저항은 매우 유동적임</li> </ul>

2) 조세성 부담금 및 비조세성 부담금

준조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200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부담금의 귀속주체는 <표 II-3>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부담금의 매우 큰 부분은 중앙정부의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즉, 2003년 한 해 동안 징수된 전체 부담금의 55.1%가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그리고 20.0%는 특별회계로 귀속되었다.

&lt;표 11-3&gt; 2003년 부담금의 귀속주체

(단위: 억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징수금액	48,564	17,673	6,419	4,255	11,282	88,193
비율	55.1	20.0	7.3	4.8	12.8	100

자료: 『200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예산처, 2004. 8.

이상과 같이, 준조세의 큰 부분에 해당되는 부담금이 중앙정부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귀속된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은 부담금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준조세 중 사용료나 기부금 등과 같이 조세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들을 제외한 준조세의 경우에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귀속된다는 점과 부과와 수혜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 이외에는 조세와 별다른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중앙정부가 필요에 따라 조세와 준조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의 첫번째 차이는 부과와 수혜의 범위에 있다. 조세성 부담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과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데 비하여, 비조세성 부담금은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자에 부과되며 특정 또는 소수인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그러나,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의 가장 큰 차이는 부담에 대한 저항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세성 부담금은 조세와 매우 흡사하므로 납부에 대한 저항 정도는 조세와 비슷하다. 그러나, 비조세성 부담금은 수혜나 피해에 대한 소수인의 부담이므로 납부에 대한 저항

이 현저하게 감소된다. 한편, 양자는 대부분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귀속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중앙정부의 목적은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지지를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치적 지지의 정도를 함수  $V$ 로 표현하고<sup>6)</sup> 국민의 정치적 지지는 크게 정부의 지출수준과 세율에 의해 좌우된다고 가정한다. 정부의 지출은 일반회계에 의한 지출수준( $G$ )과 기금 및 특별회계의 지출수준( $E$ )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일반회계 지출수준을 좌우하는 세율은  $t$ 로 표현하고, 기금 및 특별회계의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부담률은  $m$ 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일반회계에 의한 지출과 기금 및 특별회계에 의한 지출은 각각 다른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다. 정부의 사업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면, 일반회계 사업이나 기금 및 특별회계 사업이 다른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유발한다고 보기 힘들다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결정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 사업이나 기금 및 특별회계 사업이 각기 다른 정치적 지지를 수반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사업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우선시된다면 이와 같은 정치적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정부지출 의사결정이 국민의 지지를 더 얻게 된다는 것이다.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비하여 국회의 통제가 작용할 수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기금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에 비하여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적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있다.

6) 정부의 목적이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는 변화하지 않는다.

$$\max_{t, n} V[G(t), E(n), t, n] \quad (1)$$

$$tB + nN \leq \bar{G} \quad (2)$$

식 (2)에서  $B$ 는 일반회계의 자원,  $N$ 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원을 나타내고,  $\bar{G}$ 는 미리 정해진 정부의 최대 지출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frac{\partial V}{\partial G} > 0$ ,  $\frac{\partial V}{\partial E} > 0$ ,  $\frac{\partial V}{\partial t} < 0$ ,  $\frac{\partial V}{\partial n} < 0$  등이 성립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식 (1)과 (2)의 해를 구하기 위한 1차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V}{\partial G} \frac{\partial G}{\partial t} + \frac{\partial V}{\partial t} = \lambda B \quad (3)$$

$$\frac{\partial V}{\partial E} \frac{\partial E}{\partial n} + \frac{\partial V}{\partial n} = \lambda N \quad (4)$$

$$\lambda(tB + nN - \bar{G}) = 0 \quad (5)$$

식 (3)과 (4)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 식 (6)의 왼쪽 항은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율( $t$ )의 한계 정치적 지지와 기금 및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률( $n$ )의 한계 정치적 지지의 비율을 나타내고, 오른쪽 항은 양자의 자원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frac{\frac{\partial V}{\partial G} \frac{\partial G}{\partial t} + \frac{\partial V}{\partial t}}{\frac{\partial V}{\partial E} \frac{\partial E}{\partial n} + \frac{\partial V}{\partial n}} = \frac{B}{N} \quad (6)$$

식 (6)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변화할 때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율( $t$ )과 기금 및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률( $n$ )이 어

땡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곧 식 (6)에서  $\frac{\partial V}{\partial t}$ 의 절대값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수식 (6)의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frac{\partial V}{\partial G} \frac{\partial G}{\partial t} \text{의 증가} \quad (7)$$

$$\left| \frac{\partial V}{\partial E} \frac{\partial E}{\partial n} + \frac{\partial V}{\partial n} \right| \text{의 감소} \quad (8)$$

$\frac{\partial V}{\partial G} > 0$ 이고  $\frac{\partial^2 G}{\partial t^2} < 0$ 이므로, 식 (7)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율  $t$ 가 감소하여야 한다. 한편, 식 (8)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frac{\partial V}{\partial E} > 0$ ,  $\frac{\partial E}{\partial n} > 0$ ,  $\frac{\partial^2 E}{\partial n^2} < 0$ ,  $\frac{\partial^2 V}{\partial n^2} > 0$ 에 의하여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률  $n$ 이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경우,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율은 감소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률은 증가하게 된다.

둘째, 기금의 지출로 인한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가 작아지는 경우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예를 들어, 정부사업의 결정에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매우 적거나, 기금에 의한 정부지출이 잘못 이루어져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식 (6)에서  $\frac{\partial V}{\partial E}$ 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식 (6)의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는,  $\left| \frac{\partial V}{\partial G} \frac{\partial G}{\partial t} + \frac{\partial V}{\partial t} \right|$  나  $\left| \frac{\partial V}{\partial n} \right|$ 가 감소하거나 양자가 동시에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율  $t$ 는 증가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률  $n$ 은 감소하게 된다.

셋째, 식 (6)에 따르면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과세대상 자원( $B$ )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의 대상이 되는 자원( $N$ )의 상대적 비율이 변화할 경우,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율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률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과세대상 자원( $B$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부과 자원( $N$ )보다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면, 식 (6)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left| \frac{\partial V}{\partial G} \frac{\partial G}{\partial t} + \frac{\partial V}{\partial t} \right|$ 가 증가하거나  $\left| \frac{\partial V}{\partial G} \frac{\partial G}{\partial n} + \frac{\partial V}{\partial n} \right|$ 가 감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율  $t$ 는 감소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률  $n$ 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반대로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과세대상 자원( $B$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부과 자원( $N$ )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면, 세율  $t$ 는 증가하고 부담률  $n$ 은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형을 약간 변형하면 저항이 큰 조세성 부담금과 저항이 작은 비조세성 부담금의 부담률 결정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조세성 부담금의 부담률을  $n_1$ , 비조세성 부담금의 부담률을  $n_2$ 로 나타내고, 각각의 재원을  $N_1$ ,  $N_2$ 로 표현하자. 이때 정부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ax_{t, n} V[G(t), E_1(n_1), E_2(n_2), t, n_1, n_2] \quad (9)$$

$$tB + n_1N_1 + n_2N_2 \leq \bar{G} \quad (10)$$

식 (9)와 (10)의 해를 구하기 위한 1차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V}{\partial G} \frac{\partial G}{\partial t} + \frac{\partial V}{\partial t} = \lambda B \quad (11)$$

$$\frac{\partial V}{\partial E_1} \frac{\partial E_1}{\partial n_1} + \frac{\partial V}{\partial n_1} = \lambda N_1 \quad (12)$$

$$\frac{\partial V}{\partial E_2} \frac{\partial E_2}{\partial n_2} + \frac{\partial V}{\partial n_2} = \lambda N_2 \quad (13)$$

$$\lambda(tB + n_1 N_1 + n_2 N_2 - \bar{G}) = 0 \quad (14)$$

식 (12)와 (1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 식 (15)를 고찰함으로써 저항이 큰 조세성 부담금과 저항이 약한 부담금의 상대적 부담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frac{\frac{\partial V}{\partial E_1} \frac{\partial E_1}{\partial n_1} + \frac{\partial V}{\partial n_1}}{\frac{\partial V}{\partial E_2} \frac{\partial E_2}{\partial n_2} + \frac{\partial V}{\partial n_2}} = \frac{N_1}{N_2} \quad (15)$$

조세성 부담금의 저항이 비조세성 부담금의 저항에 비해 크다는 것은 식 (15)에서  $\left| \frac{\partial V}{\partial n_1} \right| > \left| \frac{\partial V}{\partial n_2} \right|$ 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식 (15)의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left| \frac{\partial V}{\partial E_1} \frac{\partial E_1}{\partial n_1} \right| > \left| \frac{\partial V}{\partial E_2} \frac{\partial E_2}{\partial n_2} \right| \quad (16)$$

$$N_1 > N_2 \quad (17)$$

식 (16)과 (17)에서  $\frac{\partial V}{\partial E_1}$  과  $\frac{\partial V}{\partial E_2}$  가 비슷하고  $N_1$ 과  $N_2$ 가 비슷하다고 보면,  $\frac{\partial E_1}{\partial n_1} > \frac{\partial E_2}{\partial n_2}$  가 성립해야 하므로  $n_1$ 이  $n_2$ 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항이 큰 조세성 부담금의 부담률은 저항이 작은 비조세성 부담금의 부담률보다 작아지게 된다.

### 3) 사용료 · 수수료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인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되며,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 · 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된다(법제연구원, 2002). 그러므로 사용료와 수수료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며, 주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이와 같이, 사용료와 수수료는 반대급부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납부에 대한 저항이 매우 약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가격 결정모형을 위해 먼저, 정부는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소비자 잉여(CS)와 생산자 잉여(PS)의 합을 사회적 후생이라 정의하면 정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식에서  $D(\cdot)$ 는 역수요 함수(inverse demand function)를 나타내고  $MC(\cdot)$ 는 한계비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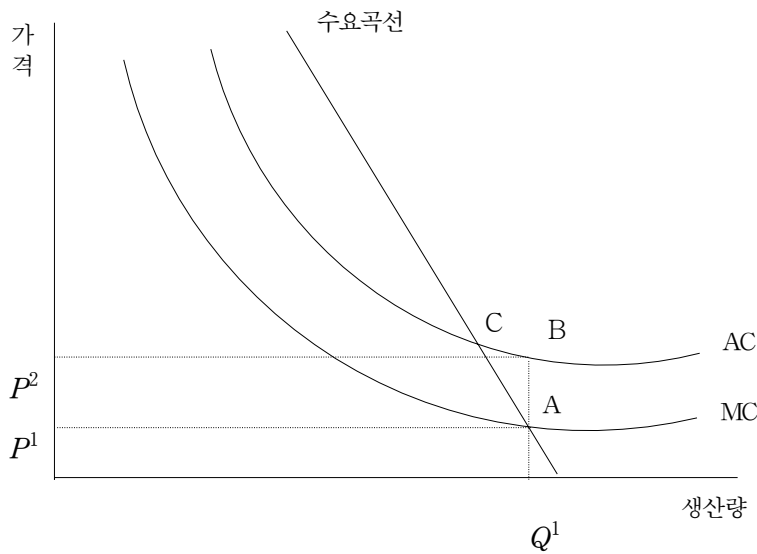
$$\max_Q [CS(Q) + PS(Q)]$$

$$CS + PS = \int_0^Q [D(x) - MC(x)] dx$$

(18)

위 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1차 필요조건은  $D(Q) = MC(Q)$ 가 된다. 즉,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요함수와 한계비용 함수가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아래 그림에서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곳은 A점이므로 사용료 및 수수료는  $P^1$ 에서 결정된다. 한편, 생산량은  $Q^1$ 이다.

[그림 II-2]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결정



그런데, 만약 한계비용함수와 수요함수가 만나는 점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입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sup>7)</sup>. 즉,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으므로,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에 생산량을 곱한 액수만큼 적자가 생긴다. 즉 앞의 그림에서, 사용료(수수료)를 한계비

7)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산업이다.

용과 같게 하면  $P^1 P^2$ BA 만큼의 손해가 생긴다. 이러한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평균비용 가격책정 이고(average cost pricing), 다른 하나는 이중가격제(two-part tariff)이다. 전자는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아지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정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ax_Q [CS(Q) + PS(Q)]$$

$$CS + PS = \int_0^Q [D(x) - MC(x)] dx \quad (19)$$

$$P(Q) \times Q = TC(Q)$$

식 (10)과 (11)을 비교해 보면, 제약조건이 추가되는 식 (11)의 경우의 사회적 후생은 식 (10)에 비하여 작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총수입이 총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가격책정은 한계비용 가격책정에 비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

한계비용과 사용료(수수료)를 같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중가격제(two-part tariff)이다. 앞의 그림에서, 수수료의 단위당 가격은  $P^1$ 으로 하고 적자에 해당되는  $P^1 P^2$ BA는 고정료로 받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이중가격제를 실시하면, 단위당 가격이  $P^1$ 으로 고정되어 있고,  $P^1 P^2$ BA는 수요량과는 관계없이 결정되는 고정료이므로 소비자의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가격제에 의한 소비자의 수요량은 사회적 최적 상태와 다르지 않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수수료(사용료) 결정모형에 따르면, 수수료(사용료)의 결정은 수요함수와 생산비용함수에 의해 좌우된다. 즉, 한계비

용 가격제에 의한 수수료 결정은 수요함수와 한계비용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가격제는 수요함수, 한계비용함수, 그리고 평균비용함수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진다. 한편, 평균비용 가격제는 수요함수와 평균비용함수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 4) 기부금·성금

앞에서 살펴본 기부금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업의 기부행위는 이윤최대화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견해와 경영자의 효용최대화에 기초한다는 이론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증적 연구도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진수(1997)는 우리나라의 기업자료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행위가 외국의 경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잘 고려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기부행위와 관련된 강제성이 외국과 구분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행위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나 강제에 직면하고 있다(손원익 외, 1998). 이와 같은 권유나 강제를 쉽게 뿌리칠 수 없는 환경이 현실이라면 기업의 기부행위는 분명히 강제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강제성이 존재할 때 기부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윤최대화 동기에서 기업의 기부행위가 결정된다는 이론(Navarro, 1988)을 기초로 하여 강제성의 존재가 기부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자. 기업의 어떤 상품의 생산량을  $Q$ , 이 상품의 가격을  $P$ , 기부금을  $G$ , 생산비용 함수를  $C$ 로 나타내면, 기

업의 이윤최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ax_{Q,G} P(Q)Q(P,G) - C(Q(P,G),G) - G \quad (20)$$

위 식에서 보듯이, 기업의 기부는 생산량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기부행위가 기업의 생산량이나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기부로 인하여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기부기업에 대한 친기업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Navarro, 1988). 또한, 기업의 기부행위로 지역사회가 더 나은 교육이나 문화, 건강, 레저시설을 제공하게 된다면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을 주어도 되므로 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 식 (20)의 해를 위한 1차 필요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P + Q \frac{\partial P}{\partial Q} = \frac{\partial C}{\partial Q} \quad (21)$$

$$P \frac{\partial Q}{\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Q} \frac{\partial Q}{\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G} + 1 \quad (22)$$

기업의 기부에 강제가 가해진다면 위의 식 (22)에서  $\frac{\partial C}{\partial G}$ 가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공권력이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업이 기부 권유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혜택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기부행위에 대한 권유나 강제는 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장치가 없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 (22)에서 강제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frac{\partial C}{\partial G}$ 의 절대값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강제력의 정도에 따라 기부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한편, 경영자의 효용 최대화 모형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5) 실증분석을 위한 논의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모형들은 준조세의 결정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벌과금을 제외한 준조세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각 유형별로 각기 다른 요인들이 준조세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준조세 유형별 요인들을 요약하면 <표 II-4>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사용료와 수수료의 경우에는 주로 수요 및 생산함수에 의존하게 된다. 기부금 또한 이러한 요인들과 정부의 강제력의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즉, 조세성과 비조세성 부담금을 제외한 준조세는 주로 수요와 생산함수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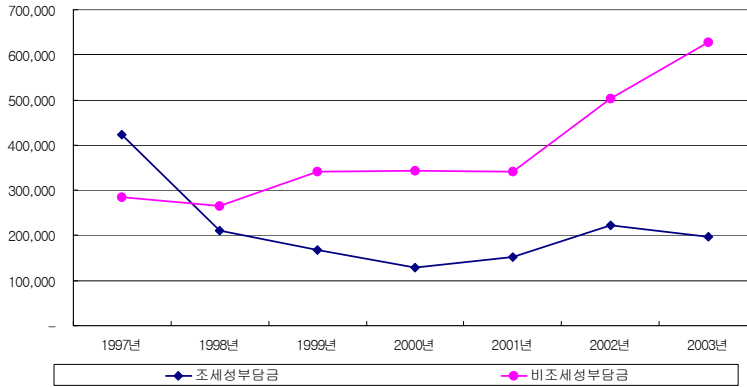
<표 II-4> 준조세의 유형별 영향요인

준조세 구분	영향요인
조세성 부담금 및 비조세성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의 세율 및 조세저항</li> <li>- 각 부담금의 재원</li> <li>- 조세를 통한 지출과 부담금을 통한 지출의 정치적 효과</li> <li>- 조세성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비조세성 부담금은 증가함</li> </ul>
사용료·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함수</li> <li>- 생산비용 함수</li> </ul>
기부금 및 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함수</li> <li>- 생산비용 함수</li> <li>- 강제력의 정도</li> </ul>

[그림 II-3]은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세성 부담금은 대체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조세성 부담금은 연도별로 뚜렷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3]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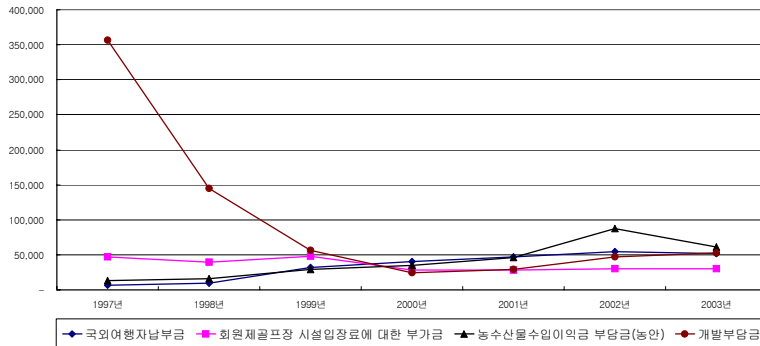
한편 조세성 부담금과 준조세성 부담금을 세분하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들과 같다. 이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성 부담금은 연도별로 감소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손피자 부담금을 제외한 비조세성 부담금은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증가하거나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의 전체적 변화추이와 비슷한 결과이다.

<표 II-5> 조세성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문화 관광부	국외여행자납부금	6,842	9,745	32,202	40,912	47,218	54,365	51,599	242,883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7,395	39,483	47,881	28,432	28,238	30,469	30,116	400,761
농림부	농수산물수입이익 금 부담금(농안)	13,443	15,806	29,412	34,576	46,467	87,914	60,787	296,127
	농수산물수입이익 금 부담금(양곡)	-	-	-	692	433	858	474	2,457
	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납입금	16	49	38	69	120	376	205	873
건설 교통부	개발부담금	356,291	145,167	56,722	24,376	29,126	47,223	53,012	1,552,002
산림청	임산물수입이익금	94	37	507	507	370	451	555	3,132
합계		424,081	210,287	166,762	129,564	151,972	221,656	196,748	2,498,235

[그림 II-4] 조세성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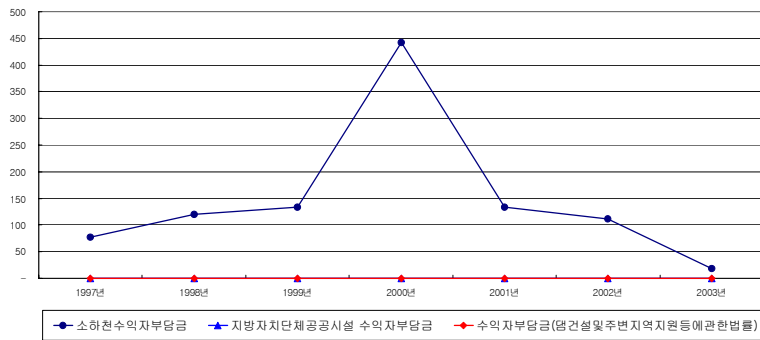


<표 II-6> 수익자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행정 자치 부	소하천수익자부담금	77	120	133	442	134	112	18	1,073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 수익자부담금	-	-	-	-	-	-	-	-
건설 교통 부	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	-	-
합계		77	120	133	442	134	112	18	1,073

[그림 II-5] 수익자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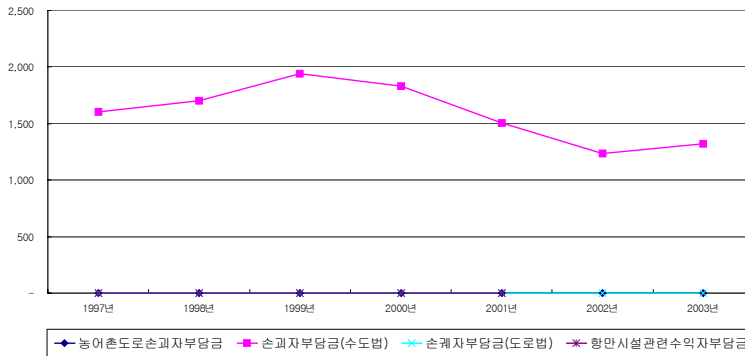
II. 준조세의 정의 및 이론적 고찰 61

<표 II-7> 손괴자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기타
행정 자치부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	-	-	-	-	-	-	-	
환경부	손괴자부담금 (수도법)	1,601	1,704	1,944	1,831	1,503	1,235	1,319	12,799	
	손괴자부담금 (하수도법)	-	-	-	-	-	-	-	-	
건설 교통부	손괴자부담금 (도로법)	-	-	-	-	-	-	-	-	
해양 수산부	항만시설관련 수익자부담금	-	-	-	-	-	-	-	-	2001년 5월24일 폐지
합계		1,601	1,704	1,944	1,831	1,503	1,235	1,319	12,799	

[그림 II-6] 손괴자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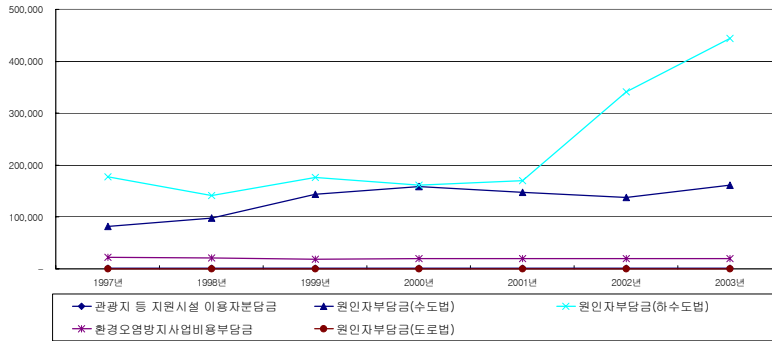


&lt;표 11-8&gt; 원인자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기타
문화 관광부	관광지등지원시설 이용자부담금	1,029	933	861	1,016	1,042	1,124	1,170	12,159	
	관광지등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	-	-	-	-	-	-	-	
환경부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82,199	98,079	143,894	158,221	147,608	137,890	160,759	1,079,761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177,352	141,942	175,812	161,256	170,568	341,646	444,589	2,060,383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	21,898	21,651	18,949	19,487	19,565	19,982	20,358	243,447	
건설 교통부	원인자부담금(도로법)	226	197	129	124	153	147	95	1,071	
	원인자부담금 (도시공원법)	-	-	-	-	-	-	-	-	
	원인자부담금(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	-	-	-	-	-	-	-	-	
	이용자부담금(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	-	-	-	-	21	-	-	21	
	유통단지 원인자부담금	-	-	-	-	-	-	-	-	
	유통단지 이용자부담금	-	-	-	-	-	-	-	-	
	원인자부담금 (한국수자원공사법)	-	-	-	-	-	-	-	-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도로법)	-	-	-	-	-	-	-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	-	-	-	-	-	-	-	
	도시개발구역밖의도시 개발시설및추가 설치비용부담금	-	-	-	-	-	-	-	-	
	시설부담금(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 법률)	682	-	-	-	-	-	-	-	682
	시설부담금(유통단지 개발촉진법)	-	-	-	-	-	-	-	-	-
	합계		283,386	262,802	339,645	340,104	338,987	500,789	626,971	3,397,524

[그림 11-7] 원인자 부담금의 연도별 변화추이



### 6) 정책적 함의

이상에서 도출된 유형별 준조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자료는 준조세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준조세를 폐지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준조세의 가장 부분을 차지하는 부담금을 통합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부담금운용평가단이 구성되어 부담금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모형에 따르면,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율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률은 ① 조세에 대한 저항 ②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의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 ③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과세대상 자원( $B$ )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부과 자원( $N$ )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과세대상 자원( $B$ )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부과 자원( $N$ )의 비율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힘들다 하겠다. 또한, 조세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이 좌우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효율화,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형평성 제고, 지출의 합리성 제고 등을 통하여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면 준조세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의한 지출의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도 정부의 준조세에 대한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사업이 정치적 요인보다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된다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의한 지출의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가 감소될 것이고, 이것은 곧 정부지출의 준조세 의존도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든 정부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지출이 좌우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희생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면, 정부수입은 준조세보다는 조세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의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논의에 따르면, 조세성 부담금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비조세성 부담금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준조세 중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제하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조세성 부담금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비조세성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 없이는 부담금의 규모를 감소시키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본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협의)준조세의 기준에 준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사회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기부금 등에 대해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준조세의 분류

앞에서 정의된 준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준조세의 이해와 규모의 파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먼저, 준조세는 그 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준조세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본 연구의 초점은 협의의 준조세에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이 범주에 포함되는 준조세에 한하여 분류하고자 한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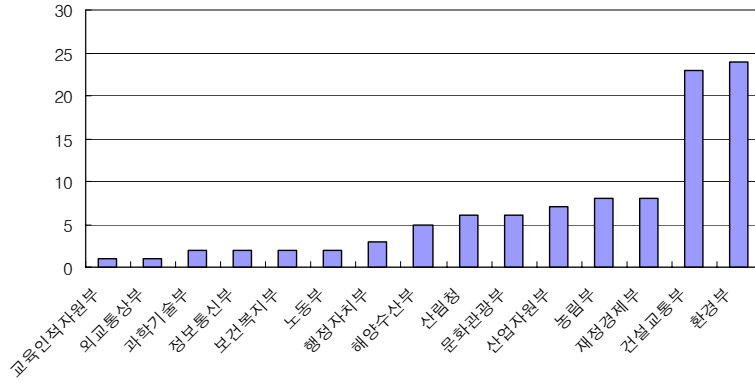
준조세를 분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를 관장하는 부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부담금, 사회보장성 부담,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이나 성금을 소관 부처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표 III-1>과 같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보유한 부처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로 각각 24개의 부담금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한 개의 부담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부담금은 광의의 준조세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특정 부담금이 협의의 준조세에만 해당되는지는 <부표 7>~<부표 15>를 참조하기 바람.

[그림 III-1] 소관부처별 부담금 수

(단위: 개)



<표 III-0> 소관부처별 준조세 분류

	소관부처	준조세
부담금 (102)	재정경제부(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교육인적자원부(1)	학교용지부담금
	외교통상부(1)	국제교류기금
	행정자치부(5)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 소하천원상회복 예치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과학기술부(2)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문화관광부(6)	국외여행자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가분담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모금(문화예술진흥원)
	농림부(8)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농지조성비, 농수산물수입이익금(농안법), 쓰레기유발부담금, 농수산물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인삼산업법), 대체초지조성비, 축산물수입이익금

<표 III-1>의 계속

	소관부처	준조세	
부담금 (102)	산업자원부(8)	안전관리부담금, 공동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담금, 전기수용자·전기사업자부담금, 석유의 수입·판매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정보통신부(2)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보건복지부(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부담금	
	환경부(24)	배출부담금(대기환경보전법), 수질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손괴자부담금(수도법),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원상회복예치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물이용부담금(한강), 물이용부담금(금강), 물이용부담금(낙동강),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총량초과부과금(금강),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 총량초과부과금(영산강, 섬진강)	
	노동부(2)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건설교통부(23)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복구예치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익자부담금(택전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원인자부담금(도로법),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손괴자부담금(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과밀부담금,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손해배상보장사업부담금, 소음부담금,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해양수산부(4)	수산자원조성금,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분담금(해양오염방지법)	
	산림청(5)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임산물수입이익금, 보안림수익자부담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부담금	
	사회보장장 부담 중 기업의 부담분(4)	보건복지부(2)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노동부(2)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 성금	법정기부금(국가, 지자체, 정당 등)	국가 또는 지자체기부금, 국방헌금과 출병금, 이재민 구호성금,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타 조세감면법상 인정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학술단체기부금, 문화단체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사회단체기부금, 기타 공익성 기부금	

주: 1. 기부금이나 성금에서 구체적 준조세로 열거된 모든 것들을 준조세로 보기는 힘들며,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를 준조세로 보느냐는 뒤에서 논의 될 것임.

2. 괄호 안은 준조세의 숫자임.

3. 부담금은 광의의 준조세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준조세에 해당되는 것들을 유사분야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즉 개발, 문화, 산림·농림·해양수산, 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 보건·노동, 환경, 교통, 기타 등 8개의 분야로 준조세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분류가 업무의 분야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분야에 따라 준조세를 분류할 경우 소관부처별 분류와 비슷해지게 된다. 분야별 준조세를 요약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분야별 준조세 분류

	준조세
개발(24)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부담금과 건설교통부 소관의 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소음부담금 등을 제외한 부담금
문화(6)	문화관광부 소관의 부담금
산림·농림·해양수산(17)	산림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소관의 부담금
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12)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소관의 부담금
보건·노동(4)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소관의 부담금 및 사회보장성 부담
환경(26)	환경부 소관의 24개 부담금과 건설부 소관의 과밀부담금과 소음부담금
교통(3)	건설교통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기타(10)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소관의 부담금

주: 사회보장성 부담, 기부금 및 성금은 분류에서 제외되었음.

한편, 성격에 따라 준조세를 분류할 수도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부담금의 성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공공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그 수선·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손괴자 부담금)이고, 둘째는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비용을 사

용자에게서 징수하는 경우(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이다. 셋째는 공공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수익자 부담금)이고, 넷째는 해당사업의 복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예치하고 복구완료 후 반환하는 경우이다(예치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지만 부과대상과 사용 내역간의 관계가 느슨한 경우이다(조세성 부담금).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분류하면 <표 Ⅲ-3>과 같다.

&lt;표 III-3&gt; 성격별 준조세 분류

	소관부처	부담금명
손괴자 부담금	행정자치부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환 경 부	손괴자부담금(수도법),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건설교통부	손괴자부담금(도로법)
이용자· 원인자 부담금	문화관광부	관광지 등 지원 시설이용자부담금, 관광지 등 지원 시설원인자부담금
	환 경 부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금
	건설교통부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부대공사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의도시 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 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수익자 부담금	행정자치부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건설교통부	수익자부담금
예치금	행정자치부	소하천소요공사비에치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환 경 부	원상회복예치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
	건설교통부	복구예치금
	산 립 청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조세성 부담금	문화관광부	국외여행자납부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농 립 부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산물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건설교통부	개발부담금
	산 립 청	임산물수입이익금

한편, 준조세의 사용용도 즉, 납부된 준조세가 어디로 귀속되느냐에 따라서도 준조세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금에 귀속되는 부담금은 재정경제부 소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29개(11개 소관)이다. 이 중 대다수의 기금은 1개의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고 있으나, 정보화촉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축산발전기금은 2개의 부담금을 수입으로 하고 있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3개의 부담금(2개의 농산물수입이익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있다.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특별회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6개이다. 이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2개의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고 있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3개의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고 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는 12개의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계상되는 준조세 수입은 주로 관련되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로 계상되고, 일부가 일반회계로 계상된다. 또한, 부담금의 일부는 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에 귀속된다. 2003년에 징수된 부담금 중 공단 등 기타 기관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전체의 12.8%인 1조 1,282억원이다. 이 중 대부분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납부자에게 반환해주는 예치금이다. 또한, 손해배상보장사업자(국가로부터의 수탁사업자: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을 사용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시설관리공사 등도 부담금을 사용하고 있다.

<표 III-4> 귀속처별 준조세 분류

	소 관	관련부담금
중앙정부 기금	재 경 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외교통상부	국제교류기여금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문화관광부	국외여행자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모금(문화예술진흥법)
	농 립 부	농지조성비,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산물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대체초지조성비, 축산물수입이익금
	산업자원부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정보통신부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별정통신사업자등록시조건에따른연구개발출연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 경 부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노 동 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607), 장애인고용부담금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개선부담금(148)
중앙정부 특별회계	산업자원부	안전관리부담금,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환 경 부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협의기준초과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소음부담금
	산 립 청	대체조림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임산물수입이익금

<표 III-4>의 계속

	소관부처	관련부담금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학교용지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손괴자부담금(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기초자치단체	쓰레기유발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손괴자부담금(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개발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공단 및 기타 기관	재정경제부	연초경작지원등의사업을 위한 출연금(연초생산안정화재단),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한국화재보험협회)
	과학기술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원자력안전기술원)
	문화관광부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해당 관광단지, 보문·중문), 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개별회원제골프장운영자)
	농림부	농지복구비용예치금(예치후 환급), 쓰레기유발부담금(해당 도매시장: 서울, 구리, 강릉)
	산업자원부	공동부담금(개별 공단), 전기수용자·전기사업자부담금(사업시행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개별 집단에너지 사업자)
	환경부	원상회복예치금(예치후 환급),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환경시설관리공사)
	건설교통부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대한손해보험협회)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지법에의한분담금(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산림청	산림복구비용예치금(예치후 환급)

## 2. 부담금<sup>9)</sup>

### 가. 산림·농림·해양수산 분야

산림·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포함되는 부담금은 총 17개이다. 이 중 농림부 소관의 부담금은 8개, 산림청 소관의 부담금은 5개, 해양수산부 소관의 부담금은 4개이다. 협의의 준조세는 농림부가 주무부처인 부담금중 4개를 제외하고 모두 광의의 준조세에 해당된다.

---

9) 부담금은 2003년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부담금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즉, 부담금은 광의의 준조세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특정 부담금이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되는지는 부록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본문에 기술된 부담금 현황은 기획예산처의 「200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표 III-5> 산림, 농림, 해양수산 분야 부담금

분야	부처	범위	부담금명
산림, 농림, 해양수산	산림청	광의의 준조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임산물수입이익금
			보안림수익자부담금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부담금
	농림부	광의의 준조세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쓰레기유발부담금
		협의의 준조세	농수산물수입이익금(농안법)
			농수산물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인삼산업법)
			축산물수입이익금
	해양수산부	광의의 준조세	수산자원조성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분담금(해양오염방지법)			
어장정화·정비실시 부담금			

주: 보안림수익자부담금,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부담금은 산림법 개정으로 인해 2003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음.

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거 1990년부터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

유택관리소에서 징수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목적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징수하여 조림, 육림, 산림소득 등 영세산주(山主)의 용자재원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부과대상은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등으로 산지전용 면적에 대하여 조림비(잣나무)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 함양, 대기 정화, 토사유출 방지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현재 부담률은 m<sup>2</sup>당/1,527원이다.

<표 III-6>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97,258	380,538	95,277	340,000
2003	14,074	69,992	13,433	67,470
2002	13,346	62,920	12,974	51,404
2001	10,285	30,000	10,051	22,149
2000	10,223	32,851	10,080	26,821
1999	8,002	22,394	8,210	22,055
1998	6,049	19,520	6,061	18,486
1997이전	35,279	142,861	34,468	131,615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77

<표 III-7> 지자체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자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86	1,319	
부산시	1,112	10,746	
대구시	255	1,009	
인천시	1,076	4,667	
광주시	899	2,777	
대전시	405	2,675	
울산시	1,118	4,003	
경기도	32,204	142,620	
강원도	5,388	34,699	
충청북도	3,319	25,067	
충청남도	5,196	34,312	
전라북도	1,516	7,950	
전라남도	1,916	10,184	
경상북도	6,085	21,907	
경상남도	2,265	13,660	
제주도	4,470	13,176	
북부지방청	37	2,241	
동부지방청	34	3,894	
남부지방청	1	1,535	
중부지방청	87	800	
서부지방청	1	759	
합 계	67,470	340,000	

징수된 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lt;표 III-8&gt;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4,180	5,375	합 계	3,293	4,593
○ 부담금			○ 산림소득증대	996	997
- 대체조립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514	675	○ 임산물유통가공	-	-
- 임산물수입이익금	5	5	○ 산촌종합개발	180	208
○ 융자회수금	740	1,274	○ 자원조성지원	1,029	1,763
○ 일반회계 전입금	1,501	2,387	○ 사유림경영지원	494	615
○ 전년도 이월금	1,087	886	○ 사방·임도재해복구	593	1,010
○ 기 타	333	148	○ 기타 사업	1	-

## 2) 임산물수입이익금

임산물수입이익금은 산림법 제37조<sup>10)</sup>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WTO 협정상 시장접근물량 이행의무에 따른 임산물 수입 추천을 받은 자로부터 국내 가격과 수입가격 차액의 범위내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과도한 수입을 억제하고 징수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임업진흥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부과대상은 밤, 잣, 대추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산물 품목의 수입으로 수입권공매 수입이익금과 국영무역수입이익금(산림조합대행)의 100%(위탁수수료 제외)를 부과하고 있다.

10) 산림청장은 시장접근품목의 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자에게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표 III-9> 임산물수입이익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9	3,132	9	3,132
2003	1	555	1	555
2002	1	451	1	451
2001	1	370	1	370
2000	1	507	1	507
1999	1	507	1	507
1998	1	37	1	37
1997이전	3	705	3	705

징수된 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귀속된다(<표 III-8> 참조).

3) 보안림수익자부담금(2003년 12월 31일부로 폐지)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은 산림법 제64조, 국가는 보안림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국가가 보상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1961년부터 산림청에서 부과하고 있다. 보안림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목적은 보안림소유자가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입·목죽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보통 받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안림지정으로 수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수익자에게 보상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보안림<sup>11)</sup>지

11) 낙석의 방지, 명소고적 풍치의 보존, 수원의 함양, 토사의 유출방지.

정(사유림은 시도지사, 국유림은 지방산림관리청)으로 수익을 받는 지자체, 혹은 기타 수익자로 법에서 규정한 행위허가 불허로 인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보상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한다.

모든 징수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가)에 귀속되지만, 2002년까지 부과·징수된 실적은 없다.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은 2003년에 폐지할 부담금으로 결정되어 근거 법률인 산림법 개정시 폐지되어 2004년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담금이다.

#### 4)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5항<sup>12)</sup>에 의해 1980년부터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사무소에서 부과하고 있다. 예치금의 부과목적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산지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 채취하기 위하여 산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복구비용을 예치토록 함으로써 형질변경에 따른 재해방지 및 경관 저해를 위한 산지복구를 담보하고, 복구의무자가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예치금으로 행정기관에서 복구를 대행하기 위함이다.

부과대상은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채석 및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부담요율은 산지전용 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으로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예치기준에

12)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산지전용허기에 관한 규정이 의제·배제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32조에 의한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81

의해 정률이 아닌 정액기준으로 산정한다.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표 Ⅲ-10>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13,442	2,451,698	113,184	2,443,585
2003	12,937	746,116	12,679	738,003
2002	12,630	435,041	12,630	435,041
2001	15,475	194,013	15,475	194,013
2000	14,131	195,520	14,131	195,520
1999	14,237	175,138	14,237	175,138
1998	10,473	131,617	10,473	131,617
1997이전	33,559	574,253	33,559	574,253

주: 징수금액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이 포함된 금액임.

&lt;표 III-11&gt; 지자체별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잔액)실적	
서울시	-	-	
부산시	-	-	
대구시	16	292	
인천시	3,799	13,692	
광주시	204	766	
대전시	51	19,312	
울산시	19,705	34,920	
경기도	256,142	426,918	
강원도	50,159	259,959	
충청북도	91,592	225,955	
충청남도	34,260	229,981	
전라북도	22,059	66,984	
전라남도	38,694	157,510	
경상북도	117,939	245,207	
경상남도	21,627	199,442	
제주도	4,434	25,528	
북부지방청	11,105	16,811	
동부지방청	61,054	124,452	
남부지방청	3,249	9,404	
중부지방청	1,074	19,294	
서부지방청	840	3,376	
합 계	738,003	2,079,803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은 전액 예치자에게 반환하거나 대집행복구비용으로 사용한다. 즉, 산림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예치금을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고, 산림복구의무자가 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금으로 복구를 대행하고 그 잔액은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담보금이기 때문에 별도 회계는 없다.

#### 5)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분담금(2003년 12월 31일부로 폐지)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분담금은 산림법 제103조 제5항 및 제6항, 산림병해충 구제예방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분담한다는 근거에 의해 1990년부터 산림청에서 부과하고 있다.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분담금의 부과 목적은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해를 국가가 방제 및 예방하고 그에 대한 방제비용을 산주에게 분담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 및 산림피해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산림병해충 피해지역 산림소유자이다. 부과요율은 산림소유자의 산림면적 또는 임목가격의 비율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분담하며, 징수금액은 일반회계(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산림병해충방제에 투자된다. 2002년까지 부과·징수 실적은 없다.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분담금은 2003년에 폐지할 부담금으로 결정되어 근거 법률인 산림법 개정시 폐지되어 2004년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담금이다.

#### 6)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은 1996년부터 농지법 제38조의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과근거에 의해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별 시·군·구, 읍·면에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농지를 일정기간 동안 타용도로 사용한 후 농지로의 복구를 위함이다. 부담금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복구계획과 복구비용 명세서에 의해 농지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산출한다.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85

<표 III-12>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6,853	309,568	26,853	309,568
2003	2,352	24,282	2,352	24,282
2002	3,120	40,975	3,120	40,975
2001	3,011	28,272	3,011	28,272
2000	4,254	56,752	4,254	56,752
1999	3,990	48,272	3,990	48,272
1998	3,281	40,565	3,281	40,565
1997이전	6,845	70,450	6,845	70,450

<표 III-13> 지자체별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	4,518	
부산시	-	175	
대구시	-	1,490	
인천시	22	1,784	
광주시	270	8,206	
대전시	7	934	
울산시	135	1,186	
경기도	1,956	22,078	
강원도	3,514	72,779	
충청북도	1,241	34,473	
충청남도	2,803	27,463	
전라북도	2,001	31,836	
전라남도	6,627	30,821	
경상북도	3,724	46,472	
경상남도	1,970	21,330	
제주도	12	4,023	
합 계	24,282	309,568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농지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정기관에 예치토록 한 후 복구 완료시 100% 반환하므로 별도의 사용명세는 없다.

## 7) 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는 농지법 제40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조성비)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1981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부과대상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이며, 시·군·구, 읍·면에 의해 부과되어 농업기반공사가 징수하고 있다.

농지조성비의 부과목적은 식량공급기반 유지와 국토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용에 따라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개간·간척)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부담금은 농지조성비용(전용하는 농지에 상당한 농지를 새로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즉, 농지조성비 농지별단위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과대상농지의 면적(m<sup>2</sup>)×지목별 농지조성비 고시단가(원/m<sup>2</sup>)×감면율(해당되는 경우))으로 결정되며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농지조성비 고시단가를 결정하여 고시한다.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87

<표 III-14> 농지조성비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49,729	3,395,407	340,954	3,087,578
2003	33,633	548,210	30,417	422,657
2002	36,492	498,320	32,681	374,191
2001	26,271	247,620	25,096	213,409
2000	27,490	187,782	27,294	181,852
1999	22,055	184,920	21,952	174,948
1998	16,763	113,005	16,648	108,725
1997이전	187,025	1,615,550	186,866	1,611,796

<표 III-15> 지자체별 농지조성비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4,570	40,703	
부산시	9,720	43,889	
대구시	6,725	82,235	
인천시	7,438	86,160	
광주시	10,792	101,722	
대전시	7,096	58,501	
울산시	9,448	49,047	
경기도	177,538	1,067,820	
강원도	28,459	162,685	
충청북도	16,783	195,182	
충청남도	37,661	265,800	
전라북도	19,609	171,507	
전라남도	17,512	200,920	
경상북도	29,101	211,031	
경상남도	29,120	307,115	
제주도	11,085	43,261	
합 계	422,657	3,087,578	

징수된 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에 편입되어 농지조성사업에 투자된다.

<표 III-16> 농지관리기금: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4,646	4,646	합 계	4,646	4,565
○ 농지조성비	3,742	4,226	○ 농지조성사업비	3,884	3,689
○ 조성토지매각대 원리금	297	570	○ 기본조사사업 등	18	16
○ 농지재개발원리금	37	18	○ 농지정보화사업	23	24
○ 일시위탁경작료	20	13	○ 농지제도교육 홍보 등	14	14
○ 공자기금예탁금 회수	1,000		○ 기금관리비	8	9
○ 공자기금예탁이자	53		○ 차기이월	699	813
○ 수입이자	22	39			
○ 관리계정대여	△1,000	△1,000			
○ 전기이월액	475	699			

#### 8)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산물수입이익금(농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16조<sup>13)</sup>에 의해 1995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입권을 경쟁입찰 실시후 고액납입금 제시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부과요율은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입찰시 제시한 금액이다. 농산물수입이익금(농안)의 부과목적은 WTO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13)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수입이익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한다.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89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수입 이익금을 부과·징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표 III-17> 농산물수입이익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23	288,147	324	296,127
2003	100	60,787	100	60,787
2002	65	62,051	87	87,914
2001	53	57,120	34	46,467
2000	34	41,806	32	34,576
1999	22	29,412	22	29,412
1998	25	15,806	25	15,806
1997이전	24	21,165	24	21,165

징수된 금액은 모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귀속된다.

&lt;표 III-18&gt;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국가

(단위: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23,235	23,232	합 계	23,235	23,232
○ 재산수입	775	651	○ 가격안정사업	12,850	12,336
○ 경상이전수입	467	1,032	○ 종자수급관리	385	443
○ 부담금	891	614	○ 농수산물유통시설	146	138
- 농산물수입이익금	879	608	○ 산지및소비자유통	6,933	7,825
- 양곡농산물수입 이익금	8	4	○ 자본지출	56	32
-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납입금	4	2	○ 재특용자상환	27	506
○ 관유물매각대	4,653	4,032	○ 여유자금운용	2,491	1,581
○ 융자회수금	14,057	14,362	○ 기금관리비	347	371
○ 전년도이월금	2,362	2,491			
○ 전입금 및 기타	30	50			

## 9) 농산물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농산물수입이익금(양곡)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sup>14)</sup>에 의해 1995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해 부과 징수되고 있다. 농산물수입이익금(양곡)의 부과목적은 WTO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범위 내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수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입권을 경쟁입찰 실시후 고액납입금 제시자로 한다. 따라서 부과요율은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입찰시 제시한 금액이 된다.

14)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수입이익금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한다.

<표 Ⅲ-19> 농산물수익이익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9	2,457	69	2,457
2003	12	474	12	474
2002	27	858	27	858
2001	9	433	9	433
2000	21	692	21	692
1999	-	-	-	-

징수된 금액은 모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귀속된다(<표 Ⅲ-18> 참조).

1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인삼산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인삼)은 1994년부터 인삼산업법 제20조 제3항<sup>15)</sup>에 의해 농협중앙회에서 부과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인삼)의 부과목적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인삼 시장접근물량(MMA)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로서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입찰시 제시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15) 인삼류 수입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범위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한다.

&lt;표 III-20&gt;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3	873	23	873
2003	4	205	4	205
2002	3	229	9	376
2001	6	147	4	120
2000	4	120	3	69
1999	3	69	1	38
1998	1	38	1	49
1997이전	2	65	1	16

징수된 금액은 모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귀속된다(<표 III-18> 참조).

#### 11) 쓰레기유발부담금

쓰레기유발부담금은 1994년부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sup>16)</sup>에 의해 비규격 출하물량에 대하여 출하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에 대해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품목(무, 배추, 마늘, 양배추, 파, 양파)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요율은 각 도매시장 조례 또는 업무규정에 의해 품목별 부담요율 × 물량(톤수)로 정하고 있다.

16)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93

<표 III-21> 쓰레기유발부담금 부과대상품목 및 부과금액

(단위 : 톤/원)

구분	부과대상품목 및 부과금액						관련 법령
	배추	무	마늘	양배추	양파	(대)파	
가락	5,000	700	6,500	700	400	500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제63조
수원	3,000	700	5,000	700	400	500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6조의2
안양	10,000	2,000	10,000	2,000	2,000	2,000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조례 제55조
안산	10,000	2,000	10,000	2,000	2,000	2,000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 제104조
구리	5,000	700	6,500	700	400	50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제61조1항
강릉	20,000	5,000	20,000	5,000	5,000	5,000	강릉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제76조
청주	3,000	700	5,000/ 400	700	5,000/ 400	500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 례제51조 앞을 자른 경우 400원, 자르지 않은 경우 5,000원

쓰레기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기관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를 비롯해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강릉농산, 청주시 등이 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의 부과목적은 도매시장 쓰레기 발생 억제, 관행적인 산물출하품 반입억제 및 도매시장 환경개선,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보호, 농산물표준규격출하 촉진으로 농산물 브랜드화, 거래투명성 확보 등이 있다.

&lt;표 III-22&gt; 쓰레기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25,568	11,539	425,562	11,536
2003	54,085	1,552	54,085	1,552
2002	50,609	1,379	50,609	1,379
2001	57,292	1,568	57,286	1,565
2000	52,085	1,663	52,085	1,663
1999	51,655	1,487	51,655	1,487
1998	46,226	1,512	46,226	1,512
1997이전	113,616	2,378	113,616	2,378

&lt;표 III-23&gt; 지자체별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자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1,260	9,780	
수원시	47	282	
안양시	56	200	
안산시	46	149	
구리시	112	882	
강릉시	13	34	
청주시	18	209	
합 계	1,552	11,536	

<표 III-24> 쓰레기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분 배 항 목		분배비율 (%)	2003년 징수금액 (백만원)	관 련 조 항	
합 계		100	1,552		
기 초 지 자 체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수원시	3.0	47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6조의2
		안산시	3.0	46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 제104조
		청주시	1.2	18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51조
	일반회계	안양시	3.6	56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조례 제75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81.2	1,260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63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7.2	112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 제61조1항	
(주)강릉농산		0.8	13	강릉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 제107조	

<표 III-25>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지자체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397	458	합 계	397	458
(수원시장)	233	278		233	278
○ 부 담 금	41	47	○ 쓰레기처리시설구입 등	2	71
○ 전기이월	192	231	○ 차기이월	231	207
(안산시장)	67	93		67	93
○ 부 담 금	47	46	○ 포장재비 지원	20	30
○ 전기이월	20	47	○ 차기이월	47	60
(청주시장)	97	87		97	87
○ 부 담 금	21	18	○ 장비구입 등	28	20
○ 전기이월	76	69	○ 차기이월	69	67

&lt;표 III-26&gt; 쓰레기유발부담금 일반회계 : 지자체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44	200	합 계	144	200
(안양시장)	144	200		144	200
○ 부담금	32	56			
○ 전기이월	112	144	○ 차기이월	144	200

<표 III-27> 서울시농산물공사, 구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주)강릉농산 : 기타 기관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4,471	4,684	합 계	4,471	4,684
(서울가락)	3,997	1,260		3,997	4,134
○ 부담금	1,123	1,123	○ 농산물포장재지원	1,123	831
○ 전기이월	2,874	2,874	○ 교육연구지원	-	13
			○ 징수대행 수수료	-	211
			○ 차기이월	2,874	3,079
(구리시장)	461	524		461	524
○ 부담금	106	112	○ 포장재지원	44	98
○ 전기이월	355	412	○ 기타사업	5	15
			○ 차기이월	412	411
(강릉시장)	13	26		13	26
○ 부담금	9	13	○ 차기이월	13	26
○ 전기이월	4	13			

12)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는 초지법 제23조,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 조성비를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1992년부터 농협중앙회에 의해 부과되고 있다. 대체초지조성비는 축산업의 발전과 초지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한 축산발전기금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를 허가처의 허가·협의를 득하여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비와 매년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ha당 납입단가를 납부해야 한다((초지조성단비+초지조성후 3년간 관리비)×ha).

<표 III-28> 대체초지조성비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840	16,846	821	15,390
2003	105	1,449	101	1,203
2002	124	1,286	117	1,285
2001	116	1,656	114	1,653
2000	96	3,324	92	2,161
1999	88	436	88	436
1998	71	728	70	721
1997이전	240	7,967	239	7,931

징수된 부담금은 모두 축산발전기금에 귀속된다(<표 III-29> 참조).

&lt;표 III-29&gt; 축산발전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1,183	10,696	합 계	11,183	10,696
○ 부담금	18	28	○ 사업비	6,282	5,612
- 축산물수입이익금	5	16	- 축산물수급안정	1,949	1,060
- 대체조지조성비	13	12	- 가축개량·경영개선	1,217	594
			- 축산물유통개선	1,810	2,196
○ 정부내부수입	-	-	- 사육기반확충	1,306	1,762
○ 기타	11,165	10,668	○ 기금운용관리비	31	27
- 미사화납입금	1,215	1,834	- 기금관리비	10	8
- 기금운용수익금	1,454	818	- 사업운영비	21	19
- 회수자금	3,483	3,886	○ 기 타	4,870	5,057
- 전년이월액 등	5,013	4,130			

## 13) 축산물수입이익금

축산물수입이익금은 축산법 제37조<sup>17)</sup>에 의해 1976년부터 농협중앙회에 의해 부과·징수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양허관세율로 수입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로 분유·버터·벌꿀에 대한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하여 수입권 구매를 통한 축산물수입이익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발전기금 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과요율은 농림부고시인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제 10조에 고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급조절용은 판매수익금과 판매비용의 차이를

17)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수입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한다.

III.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99

(판매수익금-판매비용), 업체간자율 거래제도(SBS)는 (CIF+관세)× 농림부고시 납입율을, 수입권 공매는 공매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원/kg)을 마지막으로 외화획득용은 수입금액(CIF+관세) × 2%를 납 부해야 한다.

<표 III-30> 축산물수입이익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315	2,530,401	6,315	2,530,401
2003	99	1,554	99	1,554
2002	65	507	65	507
2001	119	916	119	916
2000	304	4,960	304	4,960
1999	960	22,024	960	22,024
1998	380	14,294	380	14,294
1997이전	4,388	2,486,146	4,388	2,486,146

징수한 모든 부담금은 축산발전기금에 편입된다(<표 III-29> 참조).

14) 수산자원조성금

수산자원조성금은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에 의해 1995년부터 연 안 시·군·구에 의해 부과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과대상은 어업 면허·허가·신고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부과요 율은 면허면적, 허가톤수, 신고면적 등을 기준으로 면허면적, 허가톤수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표 III-31> 수산자원조성금의 부담요율

구 분	단 가	비 고
어업면허를 받은 자	- 어·패류 양식어업: 10만원/ha당 - 정치망어업, 해조류, 복합양식어업 : 3만원/ha당	부속선 중 가공 및 운반선은 제외
어업허가를 받은 자	- 근해어업 어선: 5천원/톤당 - 해상종묘생산어업: 10만원/ha당	
육상양식어업(축제식 제외) 및 상종묘생산어업 신고를 한 자	- 양식 수면적: 500원/m <sup>2</sup> 당	
육상양식어업 중 축제식 양식어업 신고를 한 자	- 5만원/ha당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	- 21만6천원/ha당	
수산자원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 250만원/건당	

<표 III-32>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0,281	5,971	9,536	5,579
2003	2,402	923	2,192	824
2002	1,169	813	1,065	729
2001	1,281	907	1,200	854
2000	1,308	859	1,262	832
1999	1,171	666	1,091	619
1998	1,356	949	1,255	905
1997	1,594	854	1,471	816

<표 III-33> 지자체별 수산자원조성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자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부 산 시	80	777	
인 천 시	36	248	
울 산 시	18	69	
경 기도	2	51	
강 원 도	27	267	
충 청 남 도	41	151	
전 라 북 도	25	236	
전 라 남 도	176	1,250	
경 상 북 도	56	361	
경 상 남 도	156	1,368	
제 주 도	207	801	
합 계	824	5,579	

징수된 부담금은 일반회계(지자체의 세외 수입으로 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에 편입되어 인공어초·바다목장·해조장의 설치사업,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15)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은 어장관리법 제14조 제2항<sup>18)</sup>에 의해 2001년부터 연안 시·군·구에 의해 징수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를 방지하고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18)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로 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정화·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어업권자에게 기본적으로 어장관리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보조사업으로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경우, 어장관리의무가 면제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어장정화·정비 실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부과대상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에 따라 관할어장에 대해 보조사업으로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 어장정화·정비로 인한 이익을 받은 자로서 소요경비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표 III-34>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96	1,279	52	334
2003	5	380	4	10
2002	4	83	4	78
2001	87	816	44	246

<표 III-35> 지자체별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자체	징수실적		비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부산시	3	44	
울산시	7	19	
강원도	-	23	
충남도	-	69	
전남도	-	98	
경북도	-	28	
경남도	-	53	
합계	10	334	

징수된 부담금은 기초지자체의 일반회계(양식 어장정화·정비사업 추진에 사용)에 편입되어 사용된다.

#### 1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sup>19)</sup>에 의해 2001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육상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기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해양배출 행위 등으로 이에 대해 폐기물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비용부담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배출량×기준부과금(900원/㎥)×부과계수, ㎥당 800~1,872원)<sup>20)</sup>.

징수된 부담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 2002년까지 징수실적은 없으며, 2002년에 부과된 금액은 2003년에 징수되었다.

---

19)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등).

20) 단위당 기준부과금액은 800원/㎥이며, 2004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100원씩 인상된다.

&lt;표 III-36&gt;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141	14,887	137	14,775
2003	101	9,589	137	14,775
2002	40	5,298	-	-

&lt;표 III-37&gt; 수산발전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	147.8	합 계	-	19.0
○부담금	-	147.8	○폐기물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	8.6
○정부내부수금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	4.0
○기 타	-		○어업용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	6.4

## 17) 분담금(해양오염방지법)

분담금(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에 의해 1997년부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징수하고 있다. 분담금의 부과목적은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 방제조합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효율적 방제와 방제능력 향상 등 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성하여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소유자는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방제장비 및 자재·약제 등을 배치할 의무가 있으나 개별적으로 갯출 경우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므로 방제조합이 방제장비 등을 공동 배치하여 의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분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용량 1만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방제선 등을 배치하여야 할 해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 등이다. 부담요율은 용량 1만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은 100리터당 4.2원,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혹은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유조선이외의 선박은 선령과 총톤수별 차등으로 정해진 요율의 40%이다.

<표 III-38> 분담금(해양오염방지법)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985	89,143	6,985	89,143
2003	1,076	5,851	1,076	5,851
2002	1,167	6,416	1,167	6,416
2001	1,278	19,894	1,278	19,894
2000	1,141	19,209	1,141	19,209
1999	974	18,234	974	18,234
1998	1,255	18,859	1,255	18,859
1997	94	680	94	680

징수된 분담금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 귀속된다.

## &lt;표 III-39&gt;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 기타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54	149	합 계	182	118
○ 부담금	64	58	○ 사업비	17	20
○ 수수료	41	44	- 방제선 운영,교육등	10	14
○ 방제수입	2	5	- 장비 유지보수 등	1	1
○ 정부지원	33	25	- 정보화사업 등	6	5
- 방제선 건조	33	25			
○ 기타	14	17	○ 일반관리비	44	49
			- 인건비	28	32
			- 경상운영비	16	17
			○ 자산취득비	121	49
			- 방제선건조등	121	49

주: 1. 2002년은 지부 방제창고 건설 등 건물확보 계획 이월로 자산취득비 93억 원이 2003년도로 이월됨.

2. 2003년도 건물 확보계획재이월 등으로 자산취득비 124억원이 2004년도로 이월됨.

## 나. 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에 포함되는 부담금은 총 12개이며, 이 중에서 산업자원부 소관의 부담금이 8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소관의 부담금이 각각 2개이며, 산업자원부 소관의 부담금 3개와 정보통신부 소관의 부담금 2개가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된다.

<표 III-40> 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분야	부처	범위	부담금명
산업· 정보 통신· 과학 기술	산업 자원부	광의의 준조세	공동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안전관리부담금
	협회의 준조세	광물수입·판매부담금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전기수용자·전기사업자부담금	
	정보 통신부	협회의 준조세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조건에 따른연구·개발출연금
	과학 기술부	광의의 준조세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1) 안전관리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의해 1997년부터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징수되고 있다. 부담금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이에 대한 부담률은 각각 LPG 45원/kg, LNG 3.9원/m<sup>3</sup>이다.

&lt;표 III-41&gt; 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101	474,863	1,101	474,863
2003	180	89,608	180	89,608
2002	179	83,953	179	83,953
2001	178	83,351	178	83,351
2000	167	71,836	167	71,836
1999	151	55,936	151	55,936
1998	125	44,734	125	44,734
1997	121	45,445	121	45,445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된다.

<표 III-4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3,387	14,058	합 계	10,721	12,067
○ 석유수입부과금	7,344	3,700	○ 석유공급및가스개발	3,435	3,782
○ 석유판매부과금	2,121	1,997	○ 기타동력개발	1,027	1,289
○ LNG수입부과금	1,024	1,314	○ 전력개발및기타	57	37
○ LPG판매부과금	883	1,094	○ 광업자원개발	5,202	5,640
○ 안전관리부담금	840	896	○ 타계정전출	1,000	1,319
○ 재특예탁금회수	-	3,452			
○ 전년도 이월금	961	1,426			
○ 기 타 (보조금반환 등)	214	179			

2) 공동부담금(산업집적활성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동부담금은 산업집적활성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요율은 협의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lt;표 III-43&gt; 공동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3,749	29,766	22,957	29,027
2003	4,318	4,819	3,993	4,312
2002	4,392	4,232	4,236	4,176
2001	3,859	3,636	3,778	3,610
2000	3,340	3,200	3,267	3,171
1999	3,202	3,146	3,133	3,102
1998	3,175	3,552	3,108	3,525
1997이전	1,463	7,181	1,442	7,131

&lt;표 III-44&gt; 지자체별 공동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자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160	1,222	
대구시	315	1,758	
광주시	95	846	
울산시	136	398	
충 북	2,721	16,087	
경 남	885	8,716	
합 계	4,312	29,027	

3) 광물수입·판매부과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은 광업법 제102조의2에 의해 광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광업육성지원을 위하여 1994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법정광물을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며, 부과요율은 아직 근거규정이 없다.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은 없다.

4) 전기수용자·전기사업자부담금

전기수용자·전기사업자부담금은 1991년부터 전기가 공급되고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를 공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자 및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전기공급을 희망하는 전기수용자를 대상으로 농어촌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수용자의 부담금은 사용대가이고 전기사업자의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받는 관계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기관이 없다. 전기수용자는 재정용자금의 20% 내에서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사비인 일시부담금 13만 7,000원을 부담하고 있고, 전기사업자는 총공사비 중 전기수용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lt;표 III-45&gt; 전기수용자·전기사업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3	154,826	63	154,826
2003	12	6,896	12	6,896
2002	14	5,526	14	5,526
2001	8	2,767	8	2,767
2000	20	9,424	20	9,424
1999	2	118	2	118
1998	1	1,276	1	1,276
1997이전	6	128,819	6	128,819

징수된 부담금은 농어촌전화사업에 귀속된다. 다만 전기공급을 희망하는 전기수용자에 한하여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적합할 경우 농어촌전화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부담금을 강제로 부과·징수하여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lt;표 III-46&gt; 농어촌전화사업: 기타

(단위: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002실적	2003실적	항목	2002실적	2003실적
합계	107.8	159.5	합계	107.8	159.5
○ 전기수용자부담금	0.3	0.2	○ 전기시설공사비	107.8	159.5
○ 전기사업자부담금	54.9	68.7			
○ 정부보조	25	33.3			
○ 지자체지원	25	55.3			
○ 재정융자금	2.6	1.9			

5)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은 1995년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 LNG 수입에 대한 수입부과금과 등유·고급휘발유·부탄 및 부생연료유 판매에 대한 판매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부과 목적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이다. 수입부과금의 경우 원유 및 석유제품은 14원/리터, 천연가스는 9,750원/톤이 부과되고, 판매부과금의 경우에는 등유는 23원/리터, 고급휘발유는 36원/리터, 부탄은 25,950원/톤, 부생연료유는 17원/리터가 부과되고 있다.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사업법 제18조에 의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으며, 전액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된다.

<표 III-47>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222	9,043,786	3,169	8,908,065
2003	575	815,838	560	810,562
2002	600	1,264,783	582	1,137,134
2001	521	1,127,943	514	1,126,432
2000	381	1,001,105	379	1,000,781
1999	219	1,044,108	217	1,043,825
1998	307	1,205,047	304	1,204,734
1997이전	619	2,584,962	613	2,584,597

6) 특정물질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특정물질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은 오존층보호

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1991년부터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에 의해 징수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프레온, 할론 등 특정물질을 제조 혹은 수입업자에 대해 CFC-11 1kg 공장도가격에 해당물질의 오존파괴지수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3%~15.7%)로 부과하고 있다<sup>21)</sup>.

특정물질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의 부과목적은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인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물질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대체물질의 개발,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과하고 있다.

<표 III-48> 특정물질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739	36,584	1,739	36,584
2003	113	1,236	113	1,236
2002	121	1,394	121	1,394
2001	114	1,465	114	1,465
2000	116	1,681	116	1,681
1999	107	2,075	107	2,075
1998	94	2,536	94	2,536
1997이전	1,074	26,197	1,074	26,197

징수된 부담금은 모두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에 귀속된다.

21)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1kg당 부담금액을 정함에 있어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동향 및 수급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음(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2항).

<표 III-49>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235	254	합 계	235	254
○ 부담금	14	13	○ 경상사업비	19	19
○ 운용수익금	15	13	- 출 연	17	17
○ 융자원금회수	58	37	- 기술자료개발사업	2	2
○ 여유자금회수	148	191	○ 융자사업	19	25
			○ 기금운영비	6	5
			- 기금운용관리비	5	4
			- 국제협력사업 및 교육홍보사업	1	1
			○ 여유자금운용	191	205

7)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2001년부터 전기사업법 제51조<sup>22)</sup>에 의해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45.91/1,000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목적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2)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의 65/1000범위 안에서 부과·징수한다.

&lt;표 III-50&gt;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1	2,306,446	31	2,294,339
2003	12	1,033,761	12	997,084
2002	12	910,033	12	921,802
2001	7	362,652	7	375,453

징수된 부담금은 모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된다.

&lt;표 III-51&gt; 전력산업기반기금 : 국가

(단위 :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0,316	13,648	합 계	10,316	13,648
○ 부담금	9,218	9,971	○ 사 업 비	6,815	8,521
- 법정부담금	9,204	9,955	- 전력수요관리	736	749
- 가산금	14	16	- 전력연구개발	725	984
○ 정부내부수입	-	-	- 인프라구축지원	229	246
○ 기타	1,098	3,677	- 전력공급지원	546	804
- 이자수입 등	200	502	- 전기안전관리	526	682
- 융자금 회수	1	9	- 발전소주변지역	1,233	1,719
- 정부예금회수	897	3,166	- 타에너지지원	2,254	2,551
			- 기반조성융자	566	786
			○ 기금관리비	29	46
			○ 기 타	3,472	5,081
			- 사업대기자금	3,472	5,081

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은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해 1987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의해 부과·징수되고 있다. 징수액은 모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에 사용된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신규 공동주택 및 건물인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기존 공동주택 및 건물인 경우에는 소유주가 되며, 부과요율은 신규 공동주택 및 건물은 14,040원/m<sup>2</sup>, 기존 공동주택 및 건물은 7,050원/m<sup>2</sup>이다. 업무용 및 공공용(공공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은 연결열부하(Mcal/h)에 의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중앙난방 방식이나 개별난방 방식의 경우 입주자가 난방설비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중앙난방방식이나 개별난방방식 대신 지역난방설비를 하는 것이므로 타 난방방식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lt;표 III-52&gt;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3,324	1,350,300	23,276	1,347,087
2003	2,202	123,700	2,172	121,753
2002	1,934	149,474	1,923	148,721
2001	1,797	146,148	1,792	146,194
2000	1,743	110,453	1,741	109,894
1999	1,507	93,858	1,507	93,858
1998	1,511	78,906	1,511	78,906
1997이전	12,630	647,761	12,630	647,761

&lt;표 III-53&gt; 집단에너지사업자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4,598	135,888	
부산시	2,981	39,698	
한국지역난방공사	83,582	1,033,443	
LG파워(주)	22,172	75,951	
안산도시개발(주)	6,398	38,630	
한국CES(주)	261	2,330	
인천공향에너지(주)	1,761	20,353	
(주)오산에너지	-	794	
합계	121,753	1,347,087	

징수된 부담금은 개별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귀속된다.

<표 III-54> 공사비 부담금 부과기준

계 약 종 별		단 위	단 가		
주 택 용	신 축	계약면적 ㎡당	-		14,040원
	기 존		-		7,050원
업 무 용	신 축	연결열부하 Mcal/h당	0부터 300Mcal/h까지	167,630원	
			다음 1,000Mcal/h까지	131,360원	
	다음 3,500Mcal/h까지		126,180원		
	3,500Mcal/h초과		110,630원		
기 존	0부터 300Mcal/h까지	96,740원			
	다음 1,000Mcal/h까지	82,290원			
	다음 3,500Mcal/h까지	79,050원			
	3,500Mcal/h초과	69,300원			
공 공 용	공공시설	연결열부하 Mcal/h당	0부터 300Mcal/h까지	150,860원	
			다음 1,000Mcal/h까지	118,220원	
	다음 3,500Mcal/h까지		113,560원		
	3,500Mcal/h초과		99,570원		
	기 존	0부터 300Mcal/h까지	87,060원		
		다음 1,000Mcal/h까지	74,050원		
	다음 3,500Mcal/h까지	71,140원			
	3,500Mcal/h초과	62,370원			
학교·사회 복지시설	신 축	연결열부하 Mcal/h당	-		88,500원
	기 존		-		52,300원

- 주: 1.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면적 합계로 함(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산입함)
2. 추정연결열부하 : 건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부하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추정치이며, 주차장에 혼재되어 있는 기타 용도의 면적 중 용도에 따른 면적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열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주차장면적에 포함함.
- 추정연결열부하 = (건축면적 - 주차장면적) × 추정단위연결열부하 × 0.8

## 9)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허가조건 등으로 연구개발출연금을 규정한다는 근거에 의해 1992년부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징수하고 있다. 이는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IT분야 연구개발 투자재원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액의 0.5%(지배적 사업자는 0.75%)를 징수하고 있다.

<표 III-55>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47	3,860,188	231	3,517,015
2003	11	224,392	10	223,957
2002	13	450,062	9	442,892
2001	34	1,595,359	30	1,373,095
2000	30	149,442	29	142,089
1999	43	96,295	42	86,361
1998	34	96,876	30	75,647
1997이전	82	1,247,762	81	1,172,974

징수된 모든 부담금은 정보화촉진기금 연구개발계정에 귀속된다.

<표 III-56> 정보화촉진기금(연구개발계정)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35,872	31,150	합 계	35,872	31,150
○ 부담금	4,429	2,277	○ 사업비	16,272	15,577
○ 정부출자수입	-	10	○ 기금관리비	10	8
○ 정부내부수입	14,509	11,961	○ 기타	10,768	9,580
- 정부전입금	5,705	4,961	- 정부내부지출		
- 공자기금예탁	9,758	7,000	- 기타여유	8,822	5,985
원금회수 등			자금운용		
○ 기타	16,934	16,902			
- 전년도이월금	10,329	8,821			
- 융자회수금	3,876	4,709			
- 기타재산수입	1,175	3,331			
- 기타유가증권매각대	-	41			

10) 별정보통신신사업자 등록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별정보통신신사업자 등록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의 별정보통신신사업자 등록시 역무제공 및 전기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1997년부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징수하고 있다. 이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사업인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첨단기술, 공통기술 등 정보통신기술개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문기술인력양성, 표준화 등 정보통신 R&D에 대한 중점투자이다. 부과대상은 별정보통신신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자에 한해 전년도 매출액의 0.5%를 징수하고 있다.

<표 III-57>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6	3,715	6	3,715
2003	4	2,188	6	3,715
2002	2	1,528	-	-

징수된 모든 부담금은 정보화촉진기금 연구개발계정에 귀속된다(<표 III-56> 참조).

#### 11)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은 원자력법 제9조의3<sup>23)</sup>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과학기술부에 의해 부과되기 시작했다.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의해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전년도 전력량에 1.2원/kWh씩을 부과하고 있다.

23)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당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III-58>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6	803,499	26	803,499
2003	4	139,843	4	139,843
2002	4	134,463	4	134,463
2001	4	130,756	4	130,756
2000	4	113,037	4	113,037
1999	4	104,859	4	104,859
1998	4	91,832	4	91,832
1997	2	88,709	2	88,709

징수된 부담금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귀속되어,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기자재 및 장치지원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등에 사용된다.

<표 III-59>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714	1,682	합 계	1,714	1,682
○ 부담금	1,345	1,398	○ 사 업	1,505	1,637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기 타	369	284	○ 여유자금 운용	209	45
- 이자 수입	8	6			
- 전년이월액	268	208			
- 기타	93	70			
경상이전수입					

## 12)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은 원자력법 제111조 제3항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5조에 의해 1990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방사선의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사업을 필요하게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로 하여금 비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함이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원자력 관계사업자로 발전용 원자로시설 안전 심·검사, 연구용 원자로시설 안전 심·검사, 핵연료 주기시설 안전 심·검사, 폐기시설 안전 심·검사,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 심·검사 등으로 부담금 산정은 단위사업별 투입인력(인/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월전 호기수로 나눈 금액이다.

&lt;표 III-60&gt; 원자력관계사업자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실 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90	179,058	90	179,867
2003	6	22,625	6	22,625
2002	5	18,497	5	18,497
2001	5	16,735	5	16,735
2000	7	16,955	7	16,828
1999	8	18,120	8	18,698
1998	8	16,133	8	16,765
1997이전	51	69,993	51	69,719

징수된 부담금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안전규제비용으로 사용된다.

<표 III-61> 원자력안전기술원 사업예산 : 기타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454	476	합 계	454	476
○ 정부출연금	71	82	○ 인건비	186	210
- 기관고유사업	66	75	○ 직접비	168	174
- 일반사업비	4	5	- 기관고유사업비	36	44
- 시설비	1	2	- 원자력안전규제 사업비	44	56
○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수입	185	226	- 원자력연구개발 사업비	59	68
○ 자체수입	147	138	- 특정연구개발사업비	16	-
-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99	111	- 수탁연구사업비	13	6
- 특정연구개발 사업	16	-	○ 경상운영비	35	48
- 수탁연구사업	27	14	○ 일반사업비	4	5
- 잡수입	5	13	○ 시설비	28	2
○ 부지매입이자 환수금	24	-	-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1	2
○ 전기이월액	27	30	- 지원시설건설사업비	10	-
			- 원자력안전교육훈련 시설건설	17	-
			○ 기타사업비	3	16
			○ 차기이월액	30	21

다. 교통분야

교통분야의 부담금은 총 3개이며 건설교통부 소관의 부담금이다. 또한, 총 3개의 부담금 모두 광의의 준조세에 해당된다.

<표 III-62> 교통분야

분야	부처	범위	부담금명
교통	건설교통부	광의의 준조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sup>24)</sup>에 의해 2001년부터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가능)가 부과·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을 완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통한 난개발 완화, 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 등을 위함이다. 부과대상은 택지조성의 경우 택지개발·도시개발·아파트지구개발·대지조성사업 시행자, 주택건설의 경우 주택재개발·주택건설(재건축포함)·주상복합건축사업시행자 등이다. 부과요율은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별로 수도권과 기타 대도시권별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표 III-6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담요율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1.택지조성사업	수도권 30% 기타대도시권 15%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 ×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2.주택건설사업	수도권 4% 기타대도시권 2%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 ×건축연면적}-공제액	

24)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표 III-6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552	439,751	1,948	327,281
2003	1,521	210,793	1,252	165,470
2002	854	166,270	618	143,122
2001	177	62,688	78	18,689

징수된 부담금 중 40%는 교통시설특별회계(국가)로 귀속되며, 나머지 60%는 서울·인천·경기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된다.

2) 혼잡통행료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시장은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교통 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1996년 11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교통체증현상이 상습화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우회·분산하도록 유도하여 도심의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부과대상은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구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부과한다. 현재 서울시 남산 1, 3호 터널을 월~토요일 사이에 통과하는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2,000원씩을 부과함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8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50% 감면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지자체)에 편입된다.

<표 III-65> 혼잡통행료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3,203,835	107,995	53,032,662	106,600
2003	7,644,511	15,966	7,597,169	15,493
2002	7,856,209	16,010	7,819,398	15,642
2001	7,564,448	15,340	7,543,830	15,133
2000	7,108,757	14,394	7,092,015	14,227
1999	7,016,386	14,139	7,006,226	14,038
1998 이전	16,013,524	32,146	15,974,024	32,067

### 3)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1990년부터 상주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교통유발의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 유도 및 대중교통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부과대상은 상주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안의 바닥면적합계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로 부담요율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1㎡당 350원)×교통유발계수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지자체)에 귀속된다.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129

<표 III-6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730,810	784,065	511,095	724,490
2003	176,412	121,264	127,773	99,075
2002	102,621	94,162	84,939	87,461
2001	123,276	87,705	71,444	85,683
2000	121,803	79,298	70,071	79,277
1999	70,800	70,366	56,774	63,917
1998	67,949	68,690	50,047	62,406
1997이전	67,949	262,580	50,047	246,671

<표 III-67>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16개 광역지자체 총괄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0,498	11,717	합 계	9,540	10,770		
주차장 관련	소계	3,518	3,706	주차장 관련	소계	3,855	4,071
	주차요금	864	800		건설비	1,802	2,947
	부담금	84	64		관리비	830	486
	전입금	996	1,867		예비비	1,223	629
	잡수입	78	59				
	기타	1,496	916				
기타 교통 관련	소계	6,980	8,011	기타 교통 관련	소계	5,685	6,699
	혼잡통행료	156	155		도시교통 관리	2,217	2,741
	교통유발 부담금	874	991		교통안전 시설	1,183	1,302
	과징금· 과태료	856	751		교통체계 관리	1,288	1,453
	잡수입	75	145		기타	997	1,203
	전입금	3,031	3,025				
	기타	1,988	2,944				

주: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주차장특별회계와 통합·운영되고 있으나, 주차요금 수입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음(주차장법 제22조).

라. 환경분야

환경분야에 포함되는 부담금은 총 26개이다. 이 중 환경부 소관의 부담금이 24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과밀부담금, 소음부담금 등 건설교통부 소관의 부담금이 2개이다. 환경분야에 포함되는 부담금 모두 광의의 준조세에 해당된다.

<표 III-68> 환경분야

분야	부처	범위	부담금명
환경	환경부	광의의 준조세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수질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손괴자부담금(수도법)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원상회복예치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총량초과부과금(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건설 교통부	광의의 준조세	과밀부담금
소음부담금			

1)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 부과금제도는 1981년 12월에 도입되어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 기본부과금제를 도입하여 1995년말까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액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기준초과 배출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5년 12월 29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처리부과금의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도 (방류수기준 이상)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기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황산화물, 먼지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sup>25)</sup>을 부과하고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악취 10종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초과부과금<sup>26)</sup>을 부과하고 있다.

25) 기본부과금= 오염물질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26)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lt;표 III-69&gt;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3,377	160,489	31,362	103,286
2003	6,784	7,127	6,537	6,850
2002	6,889	10,593	5,987	7,036
2001	7,717	14,381	7,419	7,704
2000	5,512	14,483	5,251	7,624
1999	3,155	25,397	3,017	18,466
1998	3,320	35,538	3,151	29,303
1997이전	-	52,970	-	26,303

&lt;표 III-70&gt; 지자체별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14	491	
부산시	120	1,645	
대구시	76	373	
인천시	256	2,731	
광주시	3	243	
대전시	9	452	
울산시	1,289	1,461	
경기도	862	12,271	
강원도	650	4,878	
충청북도	417	5,235	
충청남도	767	20,068	
전라북도	323	2,836	
전라남도	846	2,746	
경상북도	736	2,885	
경상남도	429	9,551	
제주도	53	871	
지방 환경청	-	34,549	
합 계	6,850	103,286	

III.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133

그리고 징수된 대기배출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된다.

<표 III-71>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가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2,268	13,921	합 계	12,044	12,680
○ 부담금			○ 중소도시지방 상수도개발	766	486
- 대기환경 배출부과금	70	69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수질개선부담금	137	133	○ 하수처리시설지원	358	503
- 수질환경 배출부과금	59	74	○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8	266
- 오수·분뇨 및 축산 배출부과금	3	1	○ 팔당특별대책지원	1,592	1,067
- 생태계보전협력금	15	120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300	300
- 폐기물부담금	499	468	○ 21c프론티어연구개발	700	750
- 재활용부과금	138	35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0	20
-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4	1	○ 국립공원사업	91	95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9	○ 국립공원관리공단출연	687	670
- 환경개선부담금	4,526	4,829	○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135	95
- 협의기준초과 부담금	2	5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58	53
-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	2	2	○ 공단폐수종말처리장	545	479
○ 관유물매각대	13	198	○ 4대강수질개선대책	227	499
○ 융지회수금	725	1,144	○ 쓰레기매립시설설치	73	119
○ 일반회계전입금	4,282	5,421	○ 폐기물소각시설	216	284
○ 전년도 이월금	681	263	○ 비위생매립지 정비	417	623
○ 기타	1,112	1,149	○ 재활용산업 육성	351	357
			○ 기타	650	600
				4,810	5,414

2)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지하수자원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부담토

록 하고 수질을 적정하게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일에 도입되었다. 이 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그리고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시·도가 부과징수하고 있다.

1995년의 최초 부과시점의 요율은 20%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1999년 9월)의 의결에 의하여 2000년에 7.5%로 하향조정하였다. 현재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제조·수입 샘물 평균판매가격의 7.5%,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7.5%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표 III-72> 연도별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177	215,326	2,713	128,716
2003	317	27,717	309	13,325
2002	364	27,058	341	13,661
2001	414	21,341	358	7,398
2000	436	28,799	377	15,917
1999	468	31,514	420	18,654
1998	470	23,202	317	11,012
1997이전	708	55,695	591	48,749

주: 2000년에 요율이 하향조정되어 이후 세수가 줄어들음.

<표 III-73> 지자체별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38	801	
부산시	2	9	
대구시	-	-	
인천시	-	27	
대전시	1	1	
울산시	148	602	
경기도	3,310	29,940	
강원도	1,466	11,990	
충청북도	3,317	49,775	
충청남도	817	6,776	
전라북도	304	3,491	
전라남도	376	2,744	
경상북도	-	2,329	
경상남도	1,260	9,402	
제주도	2,286	15,421	
환 경 부	-	△4,592	
합 계	13,325	128,716	

그리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 환경개선특별회계(<표 III-71> 참조)로 귀속된다.

### 3)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수도공사를 함으로써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시·군 자치단체가 1991년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부과요율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급수조례)로 정하고 있다.

&lt;표 III-74&gt; 원인자부담금(수도법)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37,263	1,110,328	236,640	1,079,761
2003	27,502	161,043	27,498	160,759
2002	29,186	136,768	28,872	137,890
2001	23,756	146,342	23,584	147,608
2000	21,374	168,579	21,327	158,221
1999	21,336	156,022	21,307	143,894
1998	13,544	103,797	13,524	98,079
1997이전	100,565	237,777	100,528	233,310

&lt;표 III-75&gt;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789	7,021	
부산시	27,093	223,992	
대구시	902	24,368	
인천시	374	3,405	
광주시	-	7,984	
대전시	2,910	14,343	
울산시	3,812	3,879	
경기도	85,931	578,685	
강원도	1,773	20,325	
충청북도	3,159	43,334	
충청남도	14,160	19,537	
전라북도	174	588	
전라남도	3,340	12,615	
경상북도	7,991	60,080	
경상남도	7,351	57,916	
제주도	1,000	1,689	
합 계	160,759	1,079,761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13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상수도특별회계로 귀속된다.

<표 III-76> 상수도특별회계 : 광역자치단체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2,870	5,536	합 계	2,397	2,104
(서울시)	17	16	○ 수도사업	17	16
○ 원인자부담금	10	8			
○ 손괴자부담금	7	7			
(부산시)	244	273	○ 수도사업	172	150
○ 원인자부담금	242	271		172	150
○ 손괴자부담금	2	2		-	
(대구시)	36	41	○ 수도사업	36	41
○ 원인자부담금	36	9		36	9
○ 손괴자부담금	-	38		-	38
(인천시)	2,575	2,300	○ 수도사업	2,172	1,890
○ 원인자부담금	2	4		2,172	1,890
○ 손괴자부담금				-	-
○ 기타	2,571	2,296		-	-
(광주시)	-	-	○ 수도사업	-	-
○ 원인자부담금	-	-		-	-
○ 손괴자부담금	-	-		-	-
(대전시)	-	2,916	○ 수도사업	-	6
○ 원인자부담금	-	2,910		-	6
○ 손괴자부담금	-	6		-	-
(울산시)	-	1	○ 수도사업	1	1
○ 원인자부담금	-	1		-	1
○ 손괴자부담금	-	-		1	-

&lt;표 III-77&gt; 상수도특별회계 : 기초자치단체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1,178	1,598	합 계	11,258	1,517
(경기도)	10,861	862	○ 수도사업	10,861	862
○ 원인가부담금	782	859		-	-
○ 손괴자부담금	1	3		-	-
○ 기타	10,090	-		-	-
(강원도)	22	18	○ 수도사업	22	18
○ 원인가부담금	22	18		22	18
○ 손괴자부담금	-	-		-	-
(충청북도)	51	21	○ 수도사업	51	-
○ 원인가부담금	51	21		51	-
○ 손괴자부담금	-	-		-	-
(충청남도)	13	144	○ 수도사업	13	144
○ 원인가부담금	13	142		13	142
○ 손괴자부담금	-	2		-	2
(전라북도)	1	1	○ 수도사업	1	1
○ 원인가부담금	1	1		1	1
○ 손괴자부담금	-	-		-	-
(전라남도)	39	72	○ 수도사업	119	72
○ 원인가부담금	28	72		108	72
○ 손괴자부담금	11	-		11	-
(경상북도)	100	97	○ 수도사업	100	97
○ 원인가부담금	100	80		100	80
○ 손괴자부담금	-	17		-	17
(경상남도)	91	373	○ 수도사업	91	313
○ 원인가부담금	91	373		91	313
○ 손괴자부담금	-	-		-	-
(제주도)	0	10	○ 수도사업	0	10
○ 원인가부담금	-	10		-	10
○ 손괴자부담금	-	-		-	-

4) 손괴자부담금(수도법)

수도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수도시설 보수·유지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991년부터 시·군 자치단체가 수도시설 보수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다.

<표 III-78> 손괴자부담금(수도법)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9,260	13,851	27,434	12,799
2003	3,131	1,578	2,905	1,319
2002	4,035	1,376	3,670	1,235
2001	4,440	1,588	4,282	1,503
2000	4,041	1,957	3,867	1,831
1999	1,874	2,027	1,822	1,944
1998	2,801	1,874	2,611	1,704
1997 이전	8,938	3,451	8,277	3,263

&lt;표 III-79&gt; 손괴자부담금(수도법)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694	6,955	
부산시	154	1,662	
대구시	38	328	
인천시	41	185	
광주시	17	108	
대전시	6	78	
울산시	46	166	
경기도	249	2,381	
강원도	8	107	
충청북도	21	309	
충청남도	2	57	
전라북도	17	126	
전라남도	6	86	
경상북도	17	136	
경상남도	-	-	
제주도	3	115	
합 계	1,319	12,799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상수도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손괴자부담금만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표 III-76>, <표 III-77> 참조).

#### 5)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1983년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 시·도, 지방환경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강, 경인지방, 원주지방, 대구지방, 전주지방)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 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1981년 환경보전법을 개정할 시, 법적 규제사항인 개선·이전명령의 이행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으로서 신설되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에서 초과되는 오염물질량 및 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sup>27)</sup>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자료에 의하면 수질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III-80>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수,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2,775	195,764	10,314	36,080
2003	2,407	46,231	2,016	7,391
2002	2,530	36,276	1,758	5,875
2001	2,944	38,264	2,490	8,307
2000	2,647	39,132	2,175	7,880
1999	2,247	35,861	1,875	6,627

주: 1999년 세입프로그램(살리미) 운영 이전자료는 관리되지 않고 있음.

27) - 기본부과금(2종) :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 ×  
 사업장별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  
 과계수  
 - 초과부과금(19종) :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질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1-2) ×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 × 위  
 반횡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규모(1종-5종)에 따라 400만원에서 50  
 만원

&lt;표 III-81&gt; 지자체별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91	845	
부산시	325	1,138	
대구시	249	790	
인천시	596	2,282	
광주시	70	114	
대전시	33	176	
울산시	808	954	
경기도	2,004	10,192	
강원도	285	954	
충청북도	172	975	
충청남도	329	1,426	
전라북도	401	1,201	
전라남도	1,033	1,437	
경상북도	527	1,783	
경상남도	230	1,367	
제주도	27	443	
한강청	125	125	
금강청	28	230	
낙동강청	3	2,590	
영산강청	-	253	
경인청	-	2,853	
대구청	2	1,788	
원주청	53	110	
전주청	-	2,054	
합계	7,391	36,080	

이 징수실적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로 100% 들어가며 이 중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액의 10% 교부된다.

그리고 수질배출부과금의 사용내역은 <표 III-71>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나타나 있다.

6) 배출부과금(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19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축산폐수 등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즉,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유기물질(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한 허가대상 축산업자에 대해 축산폐수 등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이 배출부과금의 부과목적은 오염물질을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차등부과<sup>28)</sup>하고 있다. 그리고 배출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율로 부과한다.

$$\text{초과부과금} = \text{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250원/kg)} \times \text{초과배출량} \times \text{방류수 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3.0-7.0)} \times \text{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times \text{위반횟수별 부과계수}$$

<표 III-82> 배출부과금(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170	3,108	672	1,315
2003	50	74	50	74
2002	157	672	140	287
2001	161	282	134	310
2000	151	238	104	149
1999	146	248	127	210
1998	130	228	117	117
1997이전	375	1,366	-	168

주: 1996년 이전 징수 건수 및 금액 자료 없음.

28) 배출량과 배출기간을 고려하여 30만~50만원 차등 부과.

&lt;표 III-83&gt; 지자체별 배출부과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1998~2003년까지 실적(누계)	
대구시	-	5	
인천시	-	25	
경기도	9	252	
강원도	4	72	
충청북도	5	68	
충청남도	40	393	
전라북도	0.5	30	
전라남도	2	28	
경상북도	9	109	
경상남도	0.5	113	
제주도	4	52	
합계	74	1,147	

징수된 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수질배출부과금의 사용내역은 <표 III-71>과 같다.

#### 7) 원상회복예치금

자연공원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 도립공원(해당 지자체), 군립공원(해당 시·군)이 1995년부터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145

<표 III-84> 원상회복예치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964	2,224	1,964	2,224
2003	371	581	371	581
2002	371	490	371	490
2001	392	455	392	455
2000	539	413	539	413
1999	102	126	102	126
1998	53	73	53	73
1997이전	136	86	136	86

<표 III-85> 지자체별 원상회복예치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광주	282	282	
경기도	-	12	
강원도	90	404	
충청남도	-	5	
전라북도	-	26	
경상북도	13	124	
경상남도	9	59	
국립공원관리공단	187	1,312	
합 계	587	2,224	

징수된 예치금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형태로 예치되며 이 예치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lt;표 III-86&gt; 원상회복예치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징 수			사 용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490	581	합 계	490	926
○ 원상회복예치금	490	581	○ 반환	144	607
			○ 보관중	345	316
			○ 원상회복	1	3

- 주: 1. 원상회복예치금의 예치형태 : 현금,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 반환 : 원상복구 완료 또는 원상복구 원인사유가 해소되어 예치금을 반환  
 ○ 보관 : 사업시행중으로 원상회복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  
 ○ 원상회복 : 사업자가 원상회복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예치금으로 원상회복 대행
2. 국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  
 (성격상 이행보증을 위한 예치금이며 보증사유가 해소된 경우 반환)
3.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인근 은행에 당해 공원관리청 명의로 예탁

## 8)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999년에 신설되었다가 보완작업을 거쳐,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광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광업 중 10만㎡ 이상의 노천탄광, 채굴사업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생태계훼손면적과 단위면적당 부과금액(250원/㎡)에 지역계수(상한액 5억원)를 곱한 부과요율로 부과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147

<표 III-87>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41	24,312	115	13,636
2003	110	20,493	93	11,946
2002	25	3,341	17	1,491
2001	6	478	5	199

주: 2001년 부과·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부과·징수된 금액임.

<표 III-88> 지자체별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원)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부 산 시	921	921	
대 구 시	211	211	
인 천 시	46	147	
광 주 시	69	69	
대 전 시	87	87	
울 산 시	703	945	
경 기 도	2,276	2,469	
강 원 도	955	995	
충청북도	1,473	1,473	
충청남도	-	545	
전라북도	1,670	1,670	
전라남도	644	644	
경상북도	1,371	1,490	
경상남도	911	986	
제 주 도	609	984	
합계	11,946	13,63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하여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된다.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결산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사용내역은 <표 III-71>과 같다.

#### 9) 폐기물부담금

1992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질의 개선 등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제품부담금(보통 폐기물부담금이라고 부름)제도를 도입하여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각 지방환경관리청(경인지방, 낙동강, 영산강, 금강, 전주지방, 대구지방, 원주지방)이 부과 징수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대기, 수질에 유해한 유해물질 또는 특정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용기의 처리비용을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리병·금속캔 또는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화장품유리병, 부동액, 검,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 7종이며, 다음과 같은 요율에 의해 부과하고 있다.

<표 III-89>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 유독물 제품	가. 살충제용기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개당 7원 개당 16원
	나. 유독물용기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개당 6원 개당 11원
2. 화장품	유리병 (1) 30ml 이하 (2) 30ml 초과 100ml 이하 (3) 100ml 초과	개당 1원 개당 3원 개당 4.5원
3. 부동액	부동액	ℓ당 30원
4. 껌	껌	판매가의 0.27%(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27%)
5.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1.2원
6. 담배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20개비당 4원
7. 플라스틱 제품	가. 제1차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관 제품을 제외한다)·포장용플라스틱제품·기타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7.6원(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나. 건축용플라스틱제품·기계장비 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관 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3.8원(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인형·장난감·오락용품, 끈·로프, 사무·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	합성수지 투입 kg당 7.6원(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 주: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격제품에 대한 당해연도 업체별 평균 판매단가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제7호의 경우 제1차플라스틱제품을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 제품에 사용된 제1차플라스틱제품에 투입된 합성수지량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4. 제7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한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lt;표 III-90&gt;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2,897	348,879	41,942	346,207
2003	2,174	47,421	1,797	46,786
2002	5,988	50,253	5,823	49,882
2001	6,139	51,752	5,811	51,423
2000	6,915	24,901	6,901	24,681
1999	6,633	44,807	6,619	44,654
1998	5,947	36,734	5,936	36,367
1997	9,101	93,011	9,055	92,414

&lt;표 III-91&gt; 지사별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사 별	징수실적(백만원)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누계	
수도권지사	25,918	25,918	2003년부터 한국자원재생공 사에서 부과 및 징수
강원지사	27	27	
충북지사	78	78	
대전충남지사	18,243	18,243	
전북지사	830	830	
광주전남지사	445	445	
대구경북지사	128	128	
부산경남지사	1,117	1,117	
제주출장소	-	-	
지방환경청		299,421	
합 계	198,187	193,231	

주: 시행령 개정(2002. 12. 18)에 따라 2003년부터 부과·징수기관 변경.

동법 제12조 5항에 의거하여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되며 부담금 사용내역은 <표 Ⅲ-71>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결산과정을 통하여 나타나 있다.

#### 10) 재활용부과금

자연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19조에 근거한 재활용부과금은 1993~2002년에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sup>29)</sup>로 운영하다가, 2003년 1월부터 폐기물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R)<sup>30)</sup>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해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재활용책임을 지워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부과·징수하고 있다.

재활용의무대상품목으로, 전자제품, 타이어, 윤활유, 전지 등의 제품과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 종이팩 등 4대 포장재가 해당되며, 제품, 포장재의 실재활용비용의 130% 이하, 부과한 재활용의무 미이행률에 따라 115%에서 130%까지를 부과하고 있다.

---

29) 재활용대상 폐기물에 대해 제품과 용기의 출고량에 기준하여 생산자에게 예치금을 부과하고 대상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

30)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동 의무 미이행시 그 미이행량에 대해 실제 재활용비용의 115~130%에 해당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lt;표 III-92&gt; 재활용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	372,884	-	340,037
2003	-	7,541	-	3,499
2002	-	18,610	-	13,792
2001	-	39,502	-	35,327
2000	-	39,830	-	35,026
1999	-	26,915	-	20,696
1998	-	42,299	-	38,466
1997이전		198,187		193,231

주: 건수가 너무 많아 파악이 불가능함.

&lt;표 III-93&gt; 지방청별 재활용부과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사 별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한국자원재생공사 본사	47	47	2003년부터 한국자원재 생공사에서 부과 및 징수
한국자원재생공사 수도권지사	2,859	2,859	
한국자원재생공사 강원지사	42	42	
한국자원재생공사 충북지사	34	34	
한국자원재생공사 대전·충남지사	100	100	
한국자원재생공사 전북지사	26	26	
한국자원재생공사 광주·전남지사	82	82	
한국자원재생공사 대구·경북지사	83	83	
한국자원재생공사 부산·경남지사	220	220	
한국자원재생공사 제주출장소	6	6	
지방환경청		336,538	
합 계	3,499	340,037	

주: 시행령 개정(2002. 12. 18)에 따라 2003년부터 부과·징수기관 변경.

징수된 재활용부담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되며 사용내역은 <표 Ⅲ-71>에 나타나 있다.

11)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하수도 손괴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66년에 설치되었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하수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법 제32조에 근거한 부과요율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 부과·징수실적이 없다. 이는 일선에서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 공사에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아 원상회복조치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12)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하수도법 제 3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가 필요하게 된 비용을 부담시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6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하고 있다.

부과금은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제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및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부담률로 부과되고 있다.

&lt;표 III-94&gt; 원인지부담금(하수도법)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10,711	2,282,271	101,193	2,060,383
2003	44,571	475,498	40,528	444,589
2002	36,041	398,329	32,379	341,646
2001	10,947	216,842	10,116	170,568
2000	7,542	218,872	6,770	161,256
1999	3,290	188,540	3,177	175,812
1998	2,264	147,497	2,226	141,942
1997이전	6,056	636,693	5,997	624,570

&lt;표 III-95&gt; 지자체별 원인지부담금(하수도법)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31,408	41,307	
부산시	63,816	143,209	
대구시	19,261	63,815	
인천시	14,336	149,578	
광주시	15,128	148,884	
대전시	14,233	113,592	
울산시	14,982	77,044	
경기도	123,774	626,488	
강원도	8,778	65,966	
충청북도	9,314	74,366	
충청남도	34,254	82,176	
전라북도	13,695	72,456	
전라남도	12,975	57,279	
경상북도	19,631	111,535	
경상남도	40,591	182,477	
제주도	8,463	50,211	
합 계	444,589	2,060,383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155

징수된 부과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되며 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III-9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광역자치단체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4,825	5,281	합 계	4,178	1,358
(서울시)	3,678	3,865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3,091	(결산 시기 미도래)
○ 원인자부담금	69	314			
○기 타	3,609	3,551			
(부산시)	303	638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303	638
○ 원인자부담금	303	638			
○기 타					
(대구시)	150	193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150	135
○ 원인자부담금	150	193			
○기 타					
(인천시)	394	143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394	143
○ 원인자부담금	394	143			
○기 타					
(광주시)	110	151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50	151
○ 원인자부담금	110	151			
○기 타					
(대전시)	73	142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73	142
○ 원인자부담금	73	142			
○기 타					
(울산시)	117	149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117	149
○ 원인자부담금	117	149			
○기 타					

&lt;표 III-97&gt;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기초자치단체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7,160	7,275	합 계	6,557	5,183
(경기도)	4,168	3,413		3,748	2,485
○ 원인가부담금	1,799	875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기 타	2,369	2,538			
(강원도)	1,039	236		1,038	236
○ 원인가부담금	868	88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기 타	171	148			
(충청북도)	129	93		129	93
○ 원인가부담금	102	93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기 타	27				
(충청남도)	89	343		58	176
○ 원인가부담금	89	313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기 타	-	30			
(전라북도)	107	244		94	221
○ 원인가부담금	81	136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기 타	26	108			
(전라남도)	629	1,175		593	533
○ 원인가부담금	112	119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기 타	517	1,056			
(경상북도)	271	253		265	253
○ 원인가부담금	160	170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기 타	111	83			
(경상남도)	677	1,435		581	1,103
○ 원인가부담금	280	393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기 타	397	1,042			
(제주도)	51	83		51	83
○ 원인가부담금	51	83	○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기 타					

주: 광역지자체 금액은 관할 기초지자체 금액의 단순합계임.

13)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은 1999년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에 근거규정을 두고 지방환경관리청(경인지방, 낙동강, 금강, 영산강, 원주지방, 대구지방, 전주지방)과 시·군·구가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도 등으로 수탁 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허용보관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의 1.5배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중 예치금으로 이행보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표 III-98>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9	1,135	29	1,100
2003	3	156	3	105
2002	6	419	6	419
2001	7	428	7	428
2000	15	148	15	148
1999	-	-	-	-

&lt;표 III-99&gt;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	16	
부산시	-	94	
대전시	-	17	
인천시	-	103	
충청북도	-	2	
충청남도	-	289	
전라북도	105	143	
전라남도	-	54	
경상북도	-	26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	127	
경인지방환경관리청	-	20	
전주지방환경관리청	-	31	
대구지방환경관리청	-	48	
금강유역환경관리청	-	130	
합 계	105	1,100	

징수된 보증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사용내역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다(<표 III-71> 참조).

#### 1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부과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근거한 것으로 1991년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제도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지방환경관리청

과 시·도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후 침출수의 유출 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때 부과율<sup>31)</sup>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사후관리비용의 100%(20년간)로 부과하고 있다.

<표 III-100>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8	2,687	7	1,857
2003	5	1,726	4	896
2002	-	-	-	-
2001	1	342	1	342
2000	2	619	2	619

31) 산출식 =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비용+배출가스의 처리비용+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비용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비용+제방등의 유실방지비용+주변환경오염조사비용.

<표 III-101>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	-	
부산시	-	-	
대전시	-	-	
인천시	-	-	
경기도	784	784	
충청북도	-	-	
충청남도	10	352	
전라북도	-	-	
전라남도	44	44	
경상북도	-	315	
영산강유역환경청	-	-	
금강유역환경청	-	-	
경인지방환경청	-	-	
전주지방환경청	-	-	
대구지방환경청	58	362	
합 계	896	1,857	

징수된 보증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표 III-71> 참조).

#### 15) 물이용부담금(한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부과근거를 두고, 1999년부터 시·군 수도사업자가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와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때의 부과요율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년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합의·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표 III-102> 물이용부담금(한강)의 납부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7,344,397	949,106	7,344,397	949,106
2003	1,638,978	268,644	1,638,978	268,644
2002	1,568,437	246,741	1,568,437	246,741
2001	1,791,953	230,688	1,791,953	230,688
2000	2,025,543	175,358	2,025,543	175,358
1999	319,486	27,675	319,486	27,675

주: 징수건수는 매년 1개월간의 건수를 기재함(매월 동일 부과대상자에 수도요금과 통합고지 함에 따라 1개월간의 고지 건수를 기재).

&lt;표 III-103&gt; 물이용부담금(한강)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126,641	457,470	
인천시	33,333	118,788	
경기도	104,697	360,864	
고양시	9,572	31,943	
과천시	809	2,900	
광명시	3,592	12,696	
구리시	2,220	7,373	
군포시	2,713	10,344	
김포시	1,746	5,273	
남양주시	2,904	9,728	
부천시	9,977	34,442	
성남시	11,792	41,342	
수원시	11,536	40,143	
시흥시	5,608	20,667	
안산시	14,463	53,364	
안성시	492	1,437	
안양시	7,474	24,270	
양주시	742	1,676	
오산시	1,513	5,074	
용인시	6,336	20,987	
의왕시	1,456	4,834	
의정부시	3,370	12,330	
평택시	2,962	9,541	
하남시	1,302	4,470	
화성군	2,118	6,030	
수자원공사	3,877	11,606	
전용수도	96	378	
합 계	268,644	949,106	

징수된 부담금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귀속되며 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III-104> 한강수계관리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2,595	3,011	합 계	2,595	3,011
○ 부담금	2,467	2,686	○ 주민지원사업	698	700
○ 정부내부수입	28	40	○ 주요사업	1,335	1,627
○ 기 타	100	285	- 토지등의 매수	125	259
			- 환경기초시설 설치	845	944
			- 환경기초시설 운영	365	424
			○ 기타사업	276	310
			○ 기금관리비	35	40
			○ 다음연도이월액	251	334

주: 2002년 부담금 보고서 작성시는 기타사업비가 279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추후 결산시 기타사업비 중 이월액(3억원)이 증가하여 이월액 변동(248억 원→251억원)

16) 물이용부담금(금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를 근거로 금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시·군 수도사업자<sup>32)</sup>가 2002년부터 1톤당 130원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32) 대전광역시, 청주시, 논산시,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청원군, 부여군, 연기군, 완주군,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한국수자원공사.

&lt;표 III-105&gt; 물이용부담금(금강)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7,184,986	51,669	7,184,986	51,669
2003	6,201,314	44,658	6,201,314	44,658
2002	983,672	7,011	983,672	7,011

&lt;표 III-106&gt; 물이용부담금(금강)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대전광역시	17,812	20,487	
청주시	7,824	9,059	
공주시	573	703	
논산시	507	648	
천안시	4,030	4,591	
아산시	882	1,013	
전주시	4,456	5,048	
익산시	1,054	1,205	
군산시	4,575	5,264	
청원군	439	535	
연기군	293	353	
부여군	311	356	
완주군	118	147	
계룡시	285	326	
한국수자원공사	171	211	
금강수계관리위원회	1,328	1,723	
합 계	44,658	51,669	

징수된 부담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귀속되며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III-107> 금강수계관리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70	521	합 계	70	521
○ 물이용부담금	70	446	○ 기금관리비	0.5	7
○ 이자수입	0.1	8	○ 사업운영비	2	0.7
○ 법인세환급금	-	0.2	○ 주민지원사업	0.5	40
○ 전년도이월금	-	66	○ 수질개선기반조성	-	191
			○ 수질개선지원사업	-	27
			○ 전산프로그램보완비	1	-
			○ 여유자금운용	66	255

17) 물이용부담금(낙동강)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수도사업자<sup>33)</sup>가 1톤당 100원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33) 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예천군,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천군, 한국수자원공사.

&lt;표 III-108&gt; 물이용부담금(낙동강)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1,479,569	147,565	11,479,569	147,565
2003	9,529,489	120,738	9,529,489	120,738
2002	1,950,080	26,827	1,950,080	26,827

<표 III-109> 물이용부담금(낙동강)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누적(누계)	
부산광역시	32,346	39,956	
대구광역시	29,180	33,900	
울산광역시	2,960	3,548	
경산시	2,279	2,843	
경주시	52	58	
고령군	50	64	
구미시	9,717	12,208	
김천시	226	287	
상주시	236	280	
영천시	334	393	
예천군	24	30	
청도군	103	118	
칠곡군	1,029	1,272	
포항시	2,066	2,393	
거제시	225	249	
고성군	203	252	
김해시	2,696	3,117	
마산시	3,278	3,844	
밀양시	412	515	
사천시	924	1,183	
양산시	1,553	1,941	
진주시	677	1,048	
진해시	639	749	
창녕군	294	372	
창원시	3,311	3,879	
통영시	844	954	
하동군	22	27	
함안군	168	206	
합천군	119	149	
한국수자원공사	23,288	29,666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1,483	2,064	전용수도
합 계	120,738	147,565	

징수된 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부담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III-11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국가

(단위: 백만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26,852	149,149	합 계	26,852	149,149
○ 물이용부담금	26,827	120,738	○ 기금관리비	594	1,962
○ 운영수입	25	2,337	- 물이용부담금징수비	216	1,673
○ 기타경상이	-	7	- 전산프로그램보완비	311	-
전수입	-	-	- 관서운영비	67	289
○ 전년도이월금	-	26,067	○ 사업운영비	191	178
			- 수질개선교육홍보	191	127
			- 환경기초조사연구	-	51
			○ 주민지원사업비	-	678
			-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	-	0
			- 주민지원사업비정산	-	615
			- 사업평가및DB구축	-	63
			○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	-	73,979
			- 토지등의매수	-	59
			- 환경기초시설설치	-	42,029
			- 환경기초시설운영	-	31,891
			○ 수질개선지원사업	-	10,350
			- 환경친화적청정산업	-	165
			- 오염총량관리지원	-	2,132
			- 민간단체지원산업	-	434
			- 녹조방지사업	-	3,695
			- 물급취수장하류지원	-	3,924
			○ 여유자금	26,067	62,002

#### 18)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수

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수도사업자<sup>34)</sup>가 최종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2년 단위로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안에서 협의·조정하고 있고 2003년 12월 말일까지는 톤당 120원을 부과하고 있다.

<표 III-111>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310,306	46,312	3,310,306	7,820
2003	2,780,702	38,492	2,780,702	38,492
2002	529,604	7,820	529,604	7,820

주: 2002년 보고서의 2002년 부과금액은 수입계획액을, 징수건수는 부과 결정액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나, 2003년 현금주의를 근거로 재작성.

34) 광주광역시(광주상수도사업본부), 목포시, 여수시, 여천산단 관할 수자원공사,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고흥군, 화순군.

&lt;표 III-112&gt;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광주광역시	12,527	14,498	
목포시	2,527	2,861	
여주시	2,410	3,019	
순천시	1,121	1,406	
나주시	422	519	
광양시	1,088	1,345	
고흥군	125	142	
회순군	415	517	
보성군	1	1	
한국수자원공사	17,856	22,004	
합 계	38,492	46,312	

징수된 부담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로 귀속되어 관리되고 있다.

&lt;표 III-113&gt;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국가

(단위: 백만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7,826	46,848	합 계	7,826	46,848
○ 부담금	7,826	38,492	○ 주민지원사업	-	71
○ 정부내부 수입 (이자수입)	-	869	○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 - 토지 등의 매수사업	-	3,018
○ 기타 (이월액등)	-	7,487	-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	4,166
			-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	-	1,304
			○ 수질개선지원사업	-	4,245
			○ 기금운영비	338	695
			○ 기타		205
			- 다음년도 이월	7,488	33,144

19)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조, 제9조를 근거로 하여 1992년 시·군·구가 부과·징수하고 있다.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비유통에 사용되는 160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및 경유 연료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다.

① 시설물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연료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 용수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② 자동차: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되며 사용내역은 <표 Ⅲ-71>에 명시되어 있다.

<표 Ⅲ-114>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3,683,270	3,332,300	52,176,166	2,924,523
2003	10,892,909	586,368	8,575,817	482,923
2002	9,741,832	520,094	7,957,968	452,561
2001	8,614,903	464,857	7,153,345	408,785
2000	7,740,998	405,464	6,320,892	364,328
1999	6,729,194	358,634	5,522,458	323,002
1998	6,756,181	318,566	5,506,424	278,028
1997이전	13,207,253	678,317	11,139,262	614,896

&lt;표 III-115&gt;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자체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153,215	1,011,152	
부산시	34,475	212,136	
대구시	25,779	160,409	
인천시	26,369	146,424	
광주시	14,082	85,363	
대전시	15,409	93,114	
울산시	9,882	49,153	
경기도	76,389	397,303	
강원도	15,216	88,225	
충청북도	13,497	79,927	
충청남도	14,689	83,537	
전라북도	15,995	100,213	
전라남도	14,310	83,317	
경상북도	22,479	138,703	
경상남도	24,480	152,287	
제주도	6,657	43,260	
합 계	482,923	2,924,523	

## 20)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수립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

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에 의거하여 1987년부터 환경시설관리공사가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6개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말처리 구역 입주업소에 대해 산업단지내 소요사업비<sup>35)</sup> 즉 시설설치 및 운영비 전액을 부과하고 있다.

<표 III-116>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95	245,669	95	243,447
2003	6	19,935	6	20,358
2002	6	19,925	6	19,982
2001	6	19,502	6	19,595
2000	6	19,458	6	19,487
1999	6	19,112	6	18,949
1998	6	21,947	6	21,651
1997이전	59	125,790	59	123,425

35) \* 시설설치비: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처리시설별 소요비용 × 물가 상승율)

\* 유지관리비: 처리대상 오염물질중 BOD, COD, SS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처리대상오염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폐놀류 등 오염물질 처리비용

&lt;표 III-117&gt; 산업단지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납부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납 부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경산산업단지	3,931	46,910	
진주산업단지	3,107	45,551	
청주산업단지	2,679	37,147	
익산산업단지	2,269	31,641	
여수산업단지	5,679	54,712	
달성산업단지	2,693	27,486	
합 계	20,358	243,447	

주: 국가소유 산업단지는 환경부에서 직접 민간에게 위탁하여 부과·징수함.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표 III-71>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그 사용내역이 명시되어 있다.

#### 21) 협의기준초과부담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3조에 근거하여 1997년 각 지방환경관리청(경인지방, 낙동강, 금강, 영산강, 원주지방, 대구지방, 전주지방)이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처리시·축산폐수 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중 환경영향평가시 협의기준이 부과된 시설에 대해 협의기준 초과 정도, 배출기간, 배출량, 배출지역, 배출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175

<표 III-118>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40	979	132	852
2003	53	330	53	490
2002	39	383	35	165
2001	30	196	26	127
2000	16	69	18	70
1999	2	1	-	-

<표 III-119> 지방환경관리청별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한강유역환경청	52	52	
낙동강유역환경청	161	175	
금강유역환경청	12	56	
영산강유역환경청	23	59	
경인지방환경청	52	174	
원주지방환경청	39	179	
대구지방환경청	150	156	
전주지방환경청	1	1	
합 계	490	852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되며 사용내역은 <표 III-71>에 잘 나타나 있다.

#### 22) 23) 24) 총량초과부과금(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3대강 수계법<sup>36)</sup>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은 2002년부터 시·도, 지방청이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 부과금은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배출자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초과된 배출량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의 부과요율은 초과배출이익,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한 후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2003년 현재까지는 부과·징수실적이 없다.

#### 25)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7조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외 과도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막고 과밀해소와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에 건축(신·증축, 용도변경)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대형건축물, 공공청사)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표준건축비의 5~10%의 요율로 부과하고 있다.

3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표 III-120> 과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09	940,708	303	365,336
2003	109	242,335	37	43,415
2002	87	201,486	32	28,747
2001	58	106,134	42	79,422
2000	48	79,587	36	68,716
1999	29	30,974	38	64,730
1998	41	150,251	29	46,700
1997이전	137	129,941	89	33,606

이렇게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50%, 국가)와 도시개발특별회계(50%, 서울시)로 귀속되며 그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III-121>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 : 국가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3,657	4,874	합 계	1,962	2,907
○ 훼손부담금	539	1,058	○ 개발제한구역관리	260	768
○ 개발부담금	239	263	○ 지역균형개발사업	967	1,387
○ 과밀부담금	155	217	○ 토지관리	30	59
○ 용자원리금	1,122	1,058	○ 지가조사	616	693
○ 토지매각대	365	559	○ 토지종합전산망	89	(일반회
○ 토지임대료	4	2	구축		계)
○ 전년이월금	1,257	1,694			
○ 기 타	46	51			
○ 택초부담금	△70	△28			

<표 III-122> 도시개발 특별회계 : 서울시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도시개발특별회계)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55	5,891	합 계	1,750	1,785
○ 과밀부담금	155	217	○ 기본경비	2	1
○ 도시계획세	1,888	2,075	○ 경상사업등	14	4
○ 매각수입	936	823	○ 도시개발사업등 사업비	1,350	1,219
○ 예탁금 수입	767	335	○ 미집행공원용지보상	384	561
○ 이자수입등	618	121			
○ 전년도이월금	786	1,335			
○ 순세계잉여금		985			

26) 소음부담금

항공법 제109조를 근거로 하여 1993년부터 김포공항관리사무소와

부산지방항공청이 부과·징수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소음등급<sup>37)</sup>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다.

<표 III-123> 소음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71,214		71,214
2003	24	3,132	24	3,132
2002	24	2,880	24	2,880
2001	24	5,577	24	5,577
2000	24	10,796	24	10,796
1999	24	8,714	24	8,714
1998	24	8,464	24	8,464
1997	-	31,651	-	31,651

<표 III-124> 지방청별 소음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김포항공관리사무소	1,175	57,246	
부산지방항공청	1,957	19,368	
합 계	3,132	71,214	

37) 1등급 : 착륙료의 30%, 2등급 : 착륙료의 25%, 3등급 : 착륙료의 20%, 4등급 : 착륙료의 15%, 5등급 : 착륙료의 10%.

이렇게 징수되는 소음부담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며, 이 사용내역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나타난다.

<표 III-125>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국가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3,528	3,716	합 계	3,187	3,610
○경상이전수입	136	42	○인천국제공항건설	342	979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844	1,023	○일반공항건설	1,708	1,407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829	1,022	○소음대책	108	156
• 공항이용료 등	800	991	○항행안전시설	163	127
• 소음부담금	29	31	○항로관제시설	2	31
<기타 잡수입>	15	1	○공항수입관리	16	21
○전년도 이월금	850	340	○보상비	263	-
○전입금 및 기타	1,688	2,311	○공항시설유지보수	585	685
			○재해대책비	-	194

주: 2002년 부담금운용보고서의 부담금 사용명세(교통시설특별회계 : 공항계정)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2002년 세입 및 세출 실적은 위와 같음.

#### 마. 개발분야

다음 표에서 보듯이 개발분야에 포함되는 준조세는 총 24개이며, 이 중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부담금의 수가 18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행정자치부 소관의 부담금은 5개이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무부처인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 1개뿐이다. 협의의 준조세는 건설교통부 소관의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과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학교용지부담금이 해당된다.

<표 III-126> 개발분야의 준조세

분야	부처	범위	부담금명
개발	건설 교통부	광의의 준조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복구에치금
			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택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원인자부담금(도로법)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손케자부담금(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의도시개발시설및추가설치비용부담금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협의의 준조세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행정 자치부	광의의 준조세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소하천소요공사비에치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교육인적 자원부	협의의 준조세	학교용지부담금	

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등은 2003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음.

## 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sup>38)</sup>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수반포함) 등의 행위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과된다. 부담률은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동일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50/100의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lt;표 III-127&gt;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부과	징수	건수	금액
합계	1,471	290,751	1,400	260,619
2003	447	104,941	463	105,800
2002	585	72,590	571	53,899
2001	381	108,214	328	99,637
2000	58	5,006	38	1,283

38)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포함)를 받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훼손금을 부과함.

<표 III-128> 지자체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 울	17,037	28,274	
부 산	5,039	21,914	
대 구	1,503	16,141	
인 천	5,585	12,365	
광 주	16,286	21,144	
대 전	3,739	14,461	
울 산	859	5,140	
경 기	53,875	136,362	
충 북	5	955	
충 남	80	115	
전 북	776	1,279	
전 남	75	256	
경 북	81	307	
경 남	860	1,906	
합 계	105,800	260,619	

&lt;표 III-129&gt;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 국가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3,657	4,874	합 계	1,962	2,907
○ 훼손부담금	539	1,058	○ 개발제한구역관리	260	768
○ 개발부담금	239	263	○ 지역균형개발사업	967	1,387
○ 과밀부담금	155	217	○ 토지관리	30	59
○ 융자원리금	1,122	1,058	○ 지가조사	616	693
○ 토지매각대	365	559	○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89	(일반회계)
○ 토지임대료	4	2			
○ 전년이월금	1,257	1,694			
○ 기 타	46	51			
○ 택초부담금	△70	△28			

## 2) 복구예치금

복구예치금은 골재채취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골재채취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시·군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즉, 복구예치금은 골재채취구역에 골재를 채취한 후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담률은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근거로 책정되나 미리 정해진 부담률은 없다. 징수된 예치금은 예치 후 복구의무를 이행할 경우 모두 반환된다. 2003년까지 복구예치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예치금의 사용명세는 없다.

## 3)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sup>39)</sup>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시·군·구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시행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25%를 부담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와 기초지자체의 일반회계에 각각 50%씩 귀속된다.

<표 III-130>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부과	징수	건수	금액
합계	17,590	2,195,000	13,862	1,552,002
2003	1,922	80,425	1,625	53,012
2002	1,666	49,797	1,470	47,223
2001	1,195	37,057	821	29,126
2000	337	28,966	329	24,376
1999	319	35,468	659	56,722
1998	1,831	200,984	1,422	145,167
1997년 이전	10,320	1,762,303	7,536	1,196,376

39)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함.

&lt;표 III-131&gt; 지자체별 개발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자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3,956	92,431	
부산시	1,140	31,429	
대구시	623	61,711	
인천시	4,747	61,862	
광주시	238	38,771	
대전시	566	74,800	
울산시	434	9,856	
경기도	33,917	884,172	
강원도	793	27,593	
충청북도	598	39,966	
충청남도	341	56,484	
전라북도	269	24,447	
전라남도	157	13,770	
경상북도	3,806	72,991	
경상남도	499	53,659	
제주도	928	8,060	
합 계	53,012	1,552,002	

## 4)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1999년부터 댐 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목적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데 있다. 부과대상은 댐 건설 완료의 고시당시 당해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부담률은 발전사업자의 예상 증가수익의 50%이나, 총 부담금은 댐건설공사 비용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2003년까지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으나,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의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 5)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원인자부담금(도로법)은 1961년부터 도로법 제64조<sup>40)</sup>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의 성격을 가진다. 부과대상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다. 부담률은 도로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의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귀속된다.

---

40)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lt;표 III-132&gt; 원인자부담금(도로법)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과		징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756	1,825	1,446	1,071
2003	190	158	135	95
2002	172	309	121	147
2001	184	300	154	153
2000	307	255	259	124
1999	346	246	279	129
1998	263	263	269	197
1997년이전	294	294	229	226

&lt;표 III-133&gt; 지방국토관리청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9	17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7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8	44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361	
제주지방국토관리청	-	-	
합 계	95	1,071	

<표 III-134> 교통시설 특별회계(도로계정) : 국가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85,401	92,141	합 계	79,093	86,246
○ 재산수입	555	555	○ 일반국도건설사업	16,110	15,797
○ 경상이전수입	92	68	○ 국가지원지방도	4,849	5,559
* 도로손괴	(1)	(0.8)	○ 시관내국대도	5,054	5,910
원인자부담금			○ 기간국도5차	406	-
○ 재화 및 용역	2	1	○ 기간국도6차	4,443	4,102
판매수입			○ 기간국도7차	5,476	6,247
○ 관유물매각대	18	19	○ 기간국도8차	5,946	7,119
○ 전년도이월금	2,340	6,308	○ 기간국도9차	2,678	3,695
○ 정부내부수입	82,934	85,190	○ 기간국도10차	-	2,494
및 기타			○ 산업지원국도	2,674	1,035
			○ 고속도로조사	702	696
			○ 고속도로건설지원	13,255	15,962
			○ 교통량조사	24	34
			○ 첨단교통체계	214	560
			○ 산업지원도로	2,346	2,032
			○ 민자유치활성화	2,936	4,013
			○ 국도유지보수	7,881	4,793
			○ 국도시설개량	1,241	20
			○ 국도병목지점개량	860	39
			○ 재해대책비	672	5,213
			○ 책특회계전출금	907	537
			○ 도로차관상환	419	389

6)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은 도로법 제65조,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한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1961년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은 도로공사로 인하여(또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하게 된 타공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부담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담물은 도로공사로 인하여(또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하게 된 타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으며 만약,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발생할 경우는 국가의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재원이 귀속된다.

#### 7) 손계자부담금(도로법)

손계자부담금(도로법)은 도로법 제67조<sup>41)</sup>에 근거하여 1961년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도로손계에 대한 도로의 수선, 유지 또는 손계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 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계한 자, 자동차운송사업자,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계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담물은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경비, 손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손계자부담금(도로법)은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으며 만약,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발생할 경우는 국가의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재원이 귀속된다.

#### 8)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

---

41) 도로를 손계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자에게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경비, 손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목적은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동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며 또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설치자에게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관리자 또는 공동구 설치시는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의무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며 공공시설의 경우는 당해 도시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1/3까지, 그리고 공동구의 경우는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부담금은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으며 만약,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발생할 경우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재원이 귀속된다.

#### 9)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법 제57조 제1항, 제3항<sup>42)</sup> 및 제4항<sup>43)</sup>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밖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신설 또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시행자가 동 설치 비용을 부담하며 또한 도시기반시설 추가설치시 그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동 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목적이며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추가설치를 하는 시행자를 부과대상으로 한다. 부담률은 당해 도시기반

4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개발구역밖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신설 또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시행자가 부담함.

43) 동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부담함.

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은 개발계획에 포함될 경우 100%, 미포함시에는 총사업비 10%까지 부담하며, 도시개발구역밖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 비용은 소요비용의 3분의 1까지 부담한다. 2003년까지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다. 만약,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발생할 경우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재원이 귀속된다.

#### 10)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법 제16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공사가 아닌 공사나 행위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1980년부터 시장·군수가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 한하여 당해 공사나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함이며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공사가 아닌 공사 및 행위에 부과대상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의 부담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다. 만약,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발생할 경우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재원이 귀속된다.

#### 11)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sup>44)</sup>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정부투

44) 산업단지내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단지내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토지를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산업단지실수요자, 투지소유자 등)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시설부담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산업단지내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산업단지내 시설물의 존치 또는 개발토지의 분양받은 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담률은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근거하여 부담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표 III-135> 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	682	2	682
2003	-	-	-	-
2002	-	-	-	-
2001	-	-	-	-
2000	-	-	-	-
1999	-	-	-	-
1998	-	-	-	-
1997년이전	2	682	2	682

<표 III-136> 지자체별 시설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자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경기도	-	682	
합 계	-	682	

### 12)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sup>45)</sup>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산업단지실수요자, 투지소유자 등)에게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산업단지지원시설을 필요하게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원인자부담원칙)한다는 원칙이며 산업단지지원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한 자를 부과대상으로 한다. 부담률은 산업단지지원시설의 설치비용에 근거하여 부담한다.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으며 만약,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발생할 경우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원이 귀속된다.

### 13)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35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한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1990년부터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산업단지실수요자, 투지소유자 등)에게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산업단지지원시설을 사용할 자가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수익자부담원칙)한다는 원칙이며 산업단지지원시설의 사용자를 부과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부담률은 산

---

45)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산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을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용에 근거하여 부담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표 III-137> 이용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	21	1	21
2003	-	-	-	-
2002	-	-	-	-
2001	1	21	1	21

14)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4조<sup>46)</sup>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유통단지개발 시행자에게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유통단지의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함이며, 유통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유통단지안의 공원 및 녹지,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존치시설 소유자나 개발후 토지·시설들을 분양받은 자를 부과대상으로 한다. 부담률은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유통단지관리기

46)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나 존치시설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존치시설 소유자, 분양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함.

관에 귀속된다.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다.

#### 15)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2항,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한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1995년부터 유통단지개발 시행자가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을 발생하게 한 자를 부과대상으로 한다. 부담률은 부담할 자와 협의후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유통단지관리기관에 귀속된다.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다.

#### 16)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한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1995년부터 유통단지개발 시행자가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지원시설의 이용자를 부과대상으로 한다. 부담률은 부담할 자와 협의후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유통단지관리기관에 귀속된다.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다.

17)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sup>47)</sup>에 근거하여 1977년(1978년 시행)부터 건설교통부가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보장,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지원,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 및 후유장애인단체의 재활사업 지원, 가불금 미회수금 정부보상액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해 부과하기 위함이다. 부과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이며 보험계약체결시 자동차소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부담률은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의 4.4%를 부담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수탁보장사업자인 대한손해보험협회에 귀속된다.

---

47) 법에 의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

&lt;표 III-138&gt;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부과	징수	건수	금액
합계	해당없음	762,634	해당없음	762,634
2003		129,648		129,648
2002		132,478		132,478
2001		123,954		123,954
2000		102,656		102,656
1999		70,717		70,717
1998		63,387		63,387
1997년이전		139,794		139,794

주: 1. 1978~1986. 6월기간 중 동부화재가 단독으로 부담한 부담금(24백만원) 포함.  
 2. 자동차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등의 일정금액(100분의 4.4)을 보험사업자 등이 매월 분담금관리자(현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함.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199

<표 III-139> 손보사별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동양화재	9,160	52,919	
신동아화재	5,619	34,863	
대한화재	3,568	27,818	
그린화재	2,797	17,819	
쌍용화재	6,681	36,723	
제일화재	5,472	33,554	
리젠트화재	-	12,919	
교보자보	3,500	5,636	
삼성화재	33,211	178,609	
현대해상	15,022	92,324	
LG화재	13,893	80,190	
동부화재	15,115	96,364	
A.I.G	239	966	
ACE	-	15	
일반택시공제	4,949	35,249	
개인택시공제	2,253	9,105	
화물공제	3,710	19,822	
버스공제	3,534	24,248	
전세버스공제	925	3,491	
합 계	129,648	762,634	

## &lt;표 III-140&gt;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사용명세

## ○ 보장사업-보장사업자(10개 보험사)가 수행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448	1,432	합계	888	1,031
분담금	1,324	1,296	지급보상금	504	604
수입이자	50	71	교 부 금*	353	394
구상환입	73	65	관 리 비	30	33

주: 유자녀등 지원사업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교부금 지급

## ○ 유자녀등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70,822	87,317	합계	26,618	33,260
교부금	33,384	40,710	지원사업비	22,257	29,624
수입이자등	2,718	2,403	홍보비	2,190	1,312
전기이월	34,770	44,204	관리운영비등	2,127	2,214
			재활사업비	44	110

주: 1. 2002년보고서의 2002년 수입이자는 최종결산전의 잠정자료이며, 위의 표가 최종자료임.

2.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비와 홍보비로 세분하여 2002년에 제출한 지원사업비와 2003년에 제출한 2002 지원사업비가 차이가 있음.

18)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2003년 12월 31일부로 폐지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sup>48)</sup>에

근거하여 1987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행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부담의 형평을 기하도록 할 목적이며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담률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은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으며 만약,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발생할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재원이 귀속된다.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058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다.

#### 19)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은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시장·군수는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하는 자가 있을 때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한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시·군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은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손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의 설계기준치를 넘는 화물 등을 수송할 경우, 기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농기계 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손괴할 사업자 및 행위자를 부과대상으로 한다. 부담률은 복구면적 등 수량에 의하여 산정하여 원인자에게 100% 부담한다. 부담금

---

48)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수 있음.

은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다. 만약, 부과 및 징수실적이 발생할 경우 재원은 기초지자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 20)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은 소하천정비법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사시 소요공사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한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1995년부터 시·군·구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예치금의 부과목적은 관리청이 아닌자가 소하천공사의 시행시 재해발생의 우려를 없애고, 점용 및 사용허가사 소하천의 소요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예치하여 추후 복구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은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며, 부담률은 소요공사비용의 50% 이내로 부담한다. 징수된 예치금은 기초지자체의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표 III-141>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과		징수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
합 계	15	5,896	15	5,896
2003	5	1,359	5	1,359
2002	-	-	-	-
2001	5	1,581	5	1,581
2000	1	800	1	800
1999	2	782	2	782
1998	2	1,374	2	1,374
1997년 이전	-	-	-	-

<표 III-142> 지자체별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경기도	1,144	1,144	
강원도	-	2,288	
충청남도	-	2,111	
전라북도	193	193	
경상북도	-	138	
경상남도	22	22	
합 계	1,359	5,896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한다.

21) 소하천원상복구예치금(2003년 12월 31일부로 폐지)

소하천원상복구예치금은 소하천정비법 제16조<sup>49)</sup>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시·군·구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예치금의 부과목적은 점용 및 사용허가시 소하천의 소요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예치하여 추후 복구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소하천원상복구예치금은 소하천을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그 부과대상으로 하며, 부담률은 소하천 점용 및 사용허가에 따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소하천부속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

49) 소하천 공사 허가 및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함.

변경은 총공사비의 10%를 부담하며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와 기타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징수된 예치금은 2003년에는 부과·징수실적은 없으나 구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하여 보관후 원상회복된 후 반환('98.12.31 폐지)한다. 2003년 12월 31일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 삭제로 소하천 원상복구 예치금은 폐지되었다.

<표 III-143> 소하천원상복구예치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과		징수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
합 계	49	2,059	49	2,059
2003	-	-	-	-
2002	-	-	-	-
2001	-	-	-	-
2000	-	-	-	-
1999	-	-	-	-
1998	18	1,468	18	1,468
1997년이전	31	591	31	591

<표 III-144> 지자체별 소하천원상복구예치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	-	
부산시	-	-	
대구시	-	-	
인천시	-	-	
광주시	-	-	
대전시	-	-	
울산시	-	-	
경기도	-	648	
강원도	-	479	
충청북도	-	175	
충청남도	-	67	
전라북도	-	196	
전라남도	-	192	
경상북도	-	71	
경상남도	-	231	
제주도	-	-	
합 계		2,059	

22) 소하천수익자부담금(2003년 12월 31일부로 폐지)

소하천수익자부담금은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화천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1995년부터 시·군·구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소하천수익자부담금은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 이

익금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부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징수된 부담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그 재원이 귀속된다.

<표 III-145> 소하천수익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과		징수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
합 계	12,454	1,305	12,219	1,073
2003	107	18	107	18
2002	1,187	115	1,108	112
2001	1,640	137	1,596	134
2000	2,151	454	2,136	442
1999	2,270	145	2,245	133
1998	1,932	136	1,907	120
1997년 이전	3,167	300	3,120	114

<표 III-146> 지자체별 소하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부산시	-	170	
대전시	-	2	
울산시	14	50.6	
경기도	2	302	
충청북도	-	70.2	
충청남도	-	2.9	
전라북도	-	7.4	
전라남도	-	189.2	
경상남도	2	277.5	
제주도	-	1.5	
합 계	18	1,073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한다. 2003년 12월 31일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 삭제로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은 폐지되었다.

23)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 수익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 수익자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sup>50)</sup>에 근거하여 1988년부터 시·군·구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이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지자체 공공시설 설치·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지자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자로

50) 지자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함.

부터 이익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며 부담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 수익자부담금은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명세는 없다. 또한, 부과 및 징수실적이 발생할 경우 재원의 귀속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 24)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sup>51)</sup>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시·도 및 시·군·구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이 부담금의 목적은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다. 부과대상은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 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 주택을 분양받는 자 또는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분양받는 자 등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률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분양의 경우는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5%를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51)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표 III-147>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68	321,155	368	279,642
2003	252	228,141	252	196,105
2002	103	82,506	103	75,826
2001	13	10,508	13	7,711

<표 III-148> 지자체별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15,719	18,076	
부산시	18,868	19,969	
대구시	12,214	15,451	
인천시	22,026	32,740	
광주시	2,168	2,184	
대전시	15,519	17,809	
울산시	3,246	6,929	
경기도	71,019	122,822	
강원도	2,818	3,445	
충청북도	4,380	6,750	
충청남도	4,351	4,351	
전라북도	492	492	
전라남도	721	721	
경상북도	-	-	
경상남도	22,564	27,903	
제주도	-	-	
합 계	196,105	279,642	

&lt;표 III-149&gt;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명세

(단위: 억원)

세 입(조달)			세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158	2,136	합 계	754	1,266
○ 학교용지부담금	758	1,961	○ 학교용지매입 및	754	1,266
○ 일반회계전입금	400	175	시·군 교부금		

바. 문화분야

문화분야의 준조세는 문화관광부 소관의 6개 부담금으로, 이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2004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2004년 9월 현재는 5개의 부담금이 존재한다. 협의의 준조세는 국외여행자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모금 등 4개의 부담금이 해당된다.

<표 III-150> 문화분야의 준조세

분야	부처	범위	부담금명
문화	문화 관광부	광의의 준조세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분담금
		협의의 준조세	국외여행자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모금(문화예술진흥법)

주: 문예진흥기금 모금은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

1) 국외여행자납부금

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sup>52)</sup>에 의거하여 1997년부터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과 부산, 인천, 울산, 평택, 동해, 군산의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을

52)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함.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납부금은 공항, 항만을 통하여 국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단, 외국인 여권소유자, 승무원, 거주국의 영주권 소지자 등은 제외한다. 부담률은 1인당 1만원(선박이용시 1천원)을 부과하며 그 재원은 국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귀속된다.

<표 III-151> 국외여행자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7,073,014	242,883	27,073,014	242,883
2003	5,967,534	51,599	5,967,534	51,599
2002	6,130,324	54,365	6,130,324	54,365
2001	5,187,577	47,218	5,187,577	47,218
2000	4,499,199	40,912	4,499,199	40,912
1999	3,524,398	32,202	3,524,398	32,202
1998	1,032,221	9,745	1,032,221	9,745
1997년 이전	731,761	6,842	731,761	6,842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213

<표 III-152> 부과·징수기관별 국외여행자납부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한국공항공사	5,243	113,629	
인천국제공항공사	45,942	127,6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7	70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59	794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1	7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5	1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	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9	29	
합 계	51,599	242,883	

<표 III-153>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3,092	3,668	합 계	3,092	3,668
○ 국외여행자 납부금	544	516	○ 용자사업	1,653	1,776
			- 관광시설건설	833	896
			- 관광시설개보수	405	504
○ 카지노납부금	783	819	- 국민관광 진흥사업	195	131
			- 관광사업체 운영	220	245
○ 전기이월금	858	1,269	○ 경상사업	170	217
			- 관광연구기관보조	17	19
○ 용자원금회수 등	907	1,064	- 외래관광객 유치지원	153	198
			○ 여유자금운용	1,269	1,675
			○ 기 타	-	-

## 2)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은 관광진흥법 제29조,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한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1995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운용이 목적이며 카지노사업체를 하는 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의 부담률은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총매출액의 1%,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000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00억원 초과하는 4억 6,000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납부한다. 납부된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귀속된다(<표 III-153> 참조).

&lt;표 III-154&gt;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19	302,448	119	302,281
2003	14	81,891	14	81,891
2002	14	78,365	14	78,365
2001	14	37,465	14	37,531
2000	13	25,187	13	24,954
1999	13	24,100	13	24,100
1998	13	19,012	13	19,012
1997년 이전	38	36,428	38	36,428

<표 III-155> 카지노 소재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22,375	129,919	
부산시	5,136	31,356	
인천시	1,239	4,526	
강원도	46,321	99,538	
충청북도	-	7	
경상북도	280	1,289	
제주도	6,540	35,646	
합 계	81,891	302,281	

### 3)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은 관광진흥법 제61조<sup>53)</sup>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sup>54)</sup> 경북관광개발공사(보문관광단지), 한국관광공사(중문관광단지)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관광지 지원시설 등의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동부담토록 함으로써 관광지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또는 관리하기 위함이며 관광지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관광지등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모든 입주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담률은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경우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하며, 공동시설 유지

53) 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이나 관광지등내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또는 영업자에게 분담케 할 수 있음.

54) 1985년에 보문관광단지, 1998년에 중문관광단지에 설치.

관리비용의 경우, 보문관광단지는 시설별 매출액기준율, 부지면적기준액, 건축연면적기준액에 의거하여 산출하며 중문관광단지는 총관리비용에 업체별부담율을 곱해서 산출하여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보문관광단지, 중문관광단지로 귀속된다.

<표 III-156>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5	12,294	25	12,159
2003	2	1,170	2	1,170
2002	2	1,124	2	1,124
2001	2	1,097	2	1,042
2000	2	1,037	2	1,016
1999	2	886	2	861
1998	2	950	2	933
1997년 이전	13	6030	13	6,013

<표 III-157> 중문관광단지 및 보문관광단지 유지·관리 : 기타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2,541	2,824	합 계	2,541	2,824
○ 분 담 금	2,541	2,824		2,541	2,824
<보문관광단지>	2,353	2,536	○ 소 계	2,353	2,536
			- 수목및초화류관리비	311	355
			- 환경정비비	118	120
			- 시설물관리비	663	663
			- 투자사업비	-	-
			- 단지홍보선전비	228	339
			- 인건비	677	707
			- 감가상각비,제세금	356	372
<중문관광단지>	188	288	○ 소 계	188	288
			- 공공시설전령수도료	23	24
			- 공공시설수선유지비	42	131
			- 도로및조경수목관리비	114	124
			- 오물수거비	9	9

4)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지분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지분담금은 관광진흥법 제61조<sup>55)</sup>에 근거하여 1986년부터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지방공단, 민간개발자 등이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원인지분담금의 부과목적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시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공공기

55)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등 지원시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반시설 등 지원시설 건설 원인에게 형평에 맞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가분담금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시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그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담률은 비용부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산정한다. 모든 분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만, 2003년까지 부과 및 징수 실적은 없다.

##### 5)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22조 및 제39조, 부가금 징수 근거, 승인 및 징수 기준과 과태로 부과기술준을 근거에 의거하여 1983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전문체육분야 육성과 더불어 체육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체육재정 확충과 고소득 계층으로 주대상이 제한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사업을 통해 체육기금 재원을 조정 및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회원제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부담률은 1인 1라운드당 입장료에 따라 1,000원~3,000원을 차등 징수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국가)과 개별 회원제골프장운영자(수수료, 부가세 등)에게 각각 97.8%, 22.2%로 분배되어 귀속된다.

<표 III-158>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징수		비 고
	건수	금액	
합 계	21,638	400,761	○ 2000년 이후 회원제골프장을 제외한 기존 수영장, 스키장, 볼링장, 경륜장,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 폐지
2003	113	30,116	
2002	113	30,469	
2001	111	28,238	
2000	109	28,432	
1999	2,623	47,881	
1998	2,680	39,483	
1997년이전	15,889	196,142	

<표 III-159> 자자체별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 자 체	징수실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94	32,914	
부산시	644	8,773	
대구시	190	5,918	
광주시	-	2,186	
대전시	273	4,634	
울산시	283	3,425	
인천시	385	5,893	
강원도	1,312	16,361	
경기도	17,682	133,359	
충청북도	1,895	11,336	
충청남도	958	7,672	
경상북도	1,474	14,068	
경상남도	2,942	21,203	
전라북도	625	7,202	
전라남도	1,359	9,463	
제주도	-	8,184	
합 계	30,116	292,591	

주: 지자체별 실적은 96년 이후부터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 III-158>의 누계실적(400,761)과 <표 III-159>의 2003년까지의 누계 실적(292,591)에 차이가 있음.

<표 III-160>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용명세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3,806	5,134	합 계	3,806	5,134
○ 자체수입	3,352	4,217	○ 사업비	3,392	2,991
- 재산수입	271	213	- 경상사업	1,627	2,105
- 부담금	305	301	· 보조금	1,243	1,726
- 민간출연금	-	550	· 복권사업비	384	379
- 재화 및 용역	2,660	3,048	- 용자사업	817	308
판매수입			- 자본지출	948	578
- 용자원금회수	116	105	○ 기금관리비	29	161
○ 정부내부수입	336	348	○ 사업운영비	385	290
- 공공기금예탁	285	313	○ 정부내부지출		300
원금회수			- 공공기금예탁		300
- 공공기금예탁	51	35	○ 기타여유자금운용		1,392
이자회수			- 예금은행예치		975
○ 기타여유자금 회수	118	569	- 비통화금융		417
- 예금은행회수	118	569	기관예치		
			- 주식매입		-

6) 모금(문화예술진흥법) -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sup>56)</sup> 및 19조 2에 근거하여 1973년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부과목적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6)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호의 기준에 이를 모금할 수 있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종교단체 소유의 문화재는 제외)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담률은 공연장은 1,001~3,000원까지는 입장요금의 2.0%, 3,001원 이상은 입장요금의 6.5%(극장을 제외한 기타공연장은 6.0%)를 부과하며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모금은 101원 이상 입장료(관람료)에 대하여 단계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표 III-161>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징 수						
	공 연 장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금 액
	영화관	기타	소계				
합 계	332,338	51,249	363,587	18,795	5,312	2,559	410,253
2003	43,571	7,567	51,138	1,819	346	262	53,565
2002	39,411	6,820	46,231	1,749	344	110	48,434
2001	29,545	6,241	35,786	1,823	447	237	38,293
2000	21,433	4,562	25,995	1,778	723	295	28,791
1999	17,946	3,912	1,858	1,728	628	282	24,496
1998	15,961	3,137	19,098	1,482	502	358	21,440
1997년이전	164,471	19,010	183,481	8,416	2,322	1,015	195,234

주: 각 모금대상처별로 월1회 모금액만 납부함에 따라 부과건수 산정 어려움.

<표 III-162> 지자체별 모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21,692	204,055	
부산시	5,099	45,055	
대구시	3,119	24,052	
인천시	2,703	13,978	
광주시	1,858	11,523	
대전시	1,849	9,130	
울산시	942	3,426	
경기도	8,837	43,303	
강원도	732	6,743	
충청북도	971	5,172	
충청남도	1,069	6,018	
전라북도	897	4,779	
전라남도	431	3,528	
경상북도	821	8,278	
경상남도	1,321	11,674	
제주도	1,224	9,539	
합 계	53,565	410,253	

&lt;표 III-163&gt; 문화예술진흥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221	1,333	합 계	1,221	1,333
○ 자체세입	1,023	945	○ 기금관리비	69	68
- 부담금	484	536	○ 사업운영비	87	75
- 용자회수	113	15	○ 문화예술진흥	190	212
- 이자수입	297	266	○ 문화예술교류 및	77	63
- 민간출연	3	2	보존계승		
- 기타자체수입	69	72	○ 여유자금운용	798	915
○ 정부내부수입	16	-			
○ 여유자금회수	239	442			

사. 보건·노동분야

다음 표에서 보듯이, 보건·노동분야의 준조세는 총 4개이다. 이중 보건복지부가 2개를 관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는 노동부의 소관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된다.

<표 III-164> 보건, 노동분야의 준조세

분야	부처	범위	부담금명
보건·노동	보건 복지부	광의의 준조세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협의의 준조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노동부	협의의 준조세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다. 이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 중 쉐련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쉐련 20개비당 150원을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귀속된다.

&lt;표 III-165&gt;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25	1,283,441	571	1,281,523
2003	140	702,451	107	702,006
2002	150	511,508	136	510,857
2001	100	13,835	98	13,830
2000	61	14,650	60	14,615
1999	64	14,148	60	13,366
1998년	64	13,694	64	13,694
1997년 이전	46	13,155	46	13,155

&lt;표 III-166&gt;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5,342	7,756	합 계	5,342	7,756
○ 부담금	5,109	7,020	○ 사업	4,638	6,751
○ 정부내부수입	-	-	- 건강증진·교육홍보	27	67
○ 기타	233	736	- 건강증진·질병예방	194	213
- 기타이지수입 및	12	5	- 연구개발	25	21
재산수입			- 국민건강보험 지원	4,392	6,450
- 기타경상이전수입	7	8	○ 기금관리비	4	5
- 통화금융기관	212	161	- 기금관리비	-	-
예치금회수			- 사업운영비	4	5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2	562	○ 기타	700	1,000
			- 한국은행예치	562	520
			- 통화금융기관 예치	138	480

2) 의약품 부작용피해 구제사업비용 부담금

의약품 부작용피해 구제사업비용 부담금은 약사법 제72조의 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1991년부터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조직된 단체에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피해 구제사업비용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의약품 제조업자나 그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률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부담금은 2003년까지 부과·징수실적 및 부담금의 사용 명세는 없다. 또한, 부과 및 징수실적이 발생할 경우 재원의 귀속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체당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업주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이 사업주부담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퇴진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즉, 기업도산에 따른 임금채권의 확보를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거, 전체 사업주의 부담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이며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2/1,000의 범위내에서 결정·고시하며 2003년도는 0.3/1,000이다. 사업주부담금의 재원은 국가의 임금채권보

장기금에 귀속된다.

<표 III-167>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686,343	508,114	4,135,005	464,424
2003	3,202,357	69,831	2,374,262	60,699
2002	1,659,414	94,209	1,145,793	83,967
2001	909,461	98,964	361,825	86,310
2000	706,231	111,571	209,359	105,397
1999	208,880	133,539	43,766	128,051

<표 III-168> 공단지사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지역본부	6,324	49,615	
서울강남지사	6,981	55,623	
서울동부지사	2,159	16,365	
서울서부지사	1,882	15,954	
서울남부지사	3,329	28,669	
서울북부지사	938	7,110	
서울관악지사	1,449	9,544	
춘천지사	327	2,420	
강릉지사	406	2,501	
원주지사	296	2,291	
태백지사	164	1,071	
영월지사	162	918	
부산지역본부	1,684	13,274	
부산동래지사	709	6,196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229

<표 III-168>의 계속

(단위: 백만원)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부산북부지사	665	5,094	
창원지사	1,814	14,262	
울산지사	2,036	16,359	
양산지사	919	6,252	
진주지사	502	3,618	
통영지사	559	4,136	
대구지역본부	1,346	10,601	
대구남부지사	1,131	8,822	
포항지사	1,081	8,563	
구미지사	910	7,636	
영주지사	176	1,312	
안동지사	183	1,340	
경인지역본부	1,483	10,875	
인천북부지사	1,064	9,027	
수원지사	3,347	23,648	
부천시	978	6,690	
안양지사	1,376	10,356	
안산지사	1,571	10,889	
의정부지사	1,560	10,348	
성남지사	1,889	12,468	
광주지역본부	1,684	12,872	
전주지사	766	6,144	
익산지사	288	2,385	
군산지사	261	2,149	
목포지사	408	2,831	
여수지사	750	6,051	
제주지사	397	2,887	
대전지역본부	1,694	12,222	
청주지사	1,058	7,931	
천안지사	1,193	8,833	
충주지사	409	3,126	
보령지사	391	3,146	
합 계	60,699	464,424	

&lt;표 III-169&gt; 임금채권보장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4,986	4,181	합 계	4,986	4,181
○ 사업주부담금	840	607	○ 채당금	630	1,220
○ 가산금	10	9	○ 근로복지공단출연금	41	56
○ 사업주변제금수입	527	378	○ 임금채권보장제도운영	3	3
○ 일반회계전입금	3	3	○ 반환금	6	25
○ 민간이지수입	88	118	○ 재특회계예수원금상환	1,520	-
○ 정부내부이지수입	89	12	○ 재특회계예수이자상환	53	-
○ 전년도이월금	1,529	2,754	○ 기타여유자금	2,709	2,545
○ 공공기금예탁	1,900	300	○ 공자기금예탁	-	300
원금회수			○ 국고잔액	24	32

## 4)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991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7조<sup>57)</sup>)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회적 연대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2006년부터는 200인 이상, 2007년부터는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부과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부담금은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1인당 월 482,000원)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57)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기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업재활기금으로 귀속된다.

<표 Ⅲ-170>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과		징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240	839,809	4,868	808,858
2003	1,847	107,368	1,696	104,301
2002	1,806	92,435	1,613	89,345
2001	1,587	76,727	1,559	72,081
2000	-	67,411	-	62,889
1999	-	77,996	-	73,726
1998	-	83,805	-	79,700
1997년 이전		334,067		326,816

주: 2000년 이전의 부과·징수건수는 구분하기 곤란함.

<표 Ⅲ-171> 관할 공단지사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공단지사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 울	36,026	90,097	
서울남부	38,189	98,662	
부 산	2,812	7,022	
대 구	3,356	8,430	
인 천	1,801	5,357	
광 주	2,161	5,401	
대 전	3,587	7,860	
경 기	12,895	33,903	
강 원	448	1,017	
충 북	759	2,185	
전 북	802	1,758	
경 남	1,431	3,958	
계 주	34	77	
합 계	104,301	265,727	

&lt;표 III-172&gt;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운용)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3,079	2,913	합 계	3,079	2,913
○ 법정부담금	893	1,044	○ 사업비	1,883	2,156
- 부담금	888	1,039	- 공단출연금	730	679
- 가산금	2	3	- 장려금	818	1,116
- 연체금	3	2	- 용자금	331	346
○ 정부내부수입	402	20	- 반환금	4	15
○ 기타	1,784	1,849	○ 기금관리비	6	15
- 융자회수금	398	424	○ 기타	1,190	742
- 운용수입	111	84	- 한국은행잔액	3	3
- 기타잡수입	45	71	- 여유자금운용	1,187	739
- 전기이월금	1,230	1,270			

#### 아. 기타분야

기타분야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서 관장하는 부담금으로 총 10개이다. 이중 재정경제부가 9개이며 외교통상부가 1개이다. 협의의 준조세는 재정경제부의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과 외교통상부의 국제교류기여금이 해당된다.

<표 III-173> 기타(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분야

분야	부처	범위	부담금명
기타	재정경제부	광의의 준조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금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협의의 준조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외교통상부	협의의 준조세	국제교류기여금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기금은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조달되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된다. 이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의 부과대상은 주거안정법 제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주택금융기준 대출금<sup>58)</sup>이 해당되며 이를 동법 제2조 제4항에 의해 0.1~0.15% (대출 규모 및 보증이용도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의 요율로 부과하고 있다.

58)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정하는 일부대출금 제외) 및 일반은행의 주택자금 대출금

연도별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의 부과 및 징수 실적을 정리하면 <표 III-174>와 같다.

<표 III-17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643,242	-	643,242
2003		110,998		110,998
2002	-	95,615	-	95,615
2001	-	60,073	-	60,073
2000	-	54,776	-	54,776
1999	-	47,351	-	47,351
1998	-	43,287	-	43,287
1997년이전	-	231,141	-	231,141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되는데 지난 2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표 III-175>와 같다.

<표 III-17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3,211	14,789	합 계	13,211	14,789
o 부담금 (금융기관 출연금)	956	1,110	o 인건비	83	108
			o 경비	32	30
o 정부지원 - 출연금	2,300	1,500	o 사업비 (대위변제)	2,750	5,460
o 기 타	1,045	937	o 기 타		
- 보증료 등	674	821	- 지급이자	75	55
- 구상채권회수	930	1,004	- 지급수수료	81	185
- 이자수입 등			- 기타자금사용	773	637
o 전년도이월	7,306	9,417	o 차년도이월	9,417	8,314

2)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이하 ‘공사법’)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치되어 1997년과 1998년에만 한시적으로 부과되었다. 이 출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 출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 부과하며, 이는 기금으로 인수하는 매각대상 부실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이 때의 부담률은 당해 금융기관의 납입자본금의 30% 범위 안에서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

정기준 및 납입시기는 공사 경영관리위원회가 정하고 있다.

이 출연금이 부과된 1997년과 1998년의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의 부과 및 징수 실적을 정리하면 <표 III-176>과 같다.

<표 III-176>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	573,380	3	573,380
1998	1	5,380	1	5,380
1997	2	568,000	2	568,000

그리고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은 1997년(5,680억원)과 1998년(54억원) 한시적으로 부과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에 사용되었다. 1997년과 1998년도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III-177>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1997실적	1998실적		1997실적	1998실적
o 자체세입	5,830	37,983	o 사업비	72,322	135,192
- 용자회수			- 경상사업	921	8,385
- 이자수입			- 자본지출	71,401	126,807
- 정부출연			- 용자사업		
- 민간출연			- 기타		
- 부담금	5,680	54	o 자금관리비	2	102
- 기타(부실자산 처분수익)	150	37,929	o 정부내부지출		
o 정부내부수입	2,663	2,663	- 타회계예탁		
- 일반회계전입			- 재특차입금원금상환		
- 특별회계전입			- 재특차입금이자상환		
- 재특용자			- 공공기금출연(전출)		
- 재특예탁원금회수			- 공공기금예탁		
- 재특예탁이자회수			- 공공기금예수원금상환		
- 공공기금전입			- 공공기금예수이자상환		
- 공공기금예수			- 부문간예탁		
-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o 차입금원금상환		
- 공공기금예탁이자회수			o 기타여유자금운용	4,187	36,162
- 부문간융자원금회수					
- 부문간이자회수					
o 차입금	70,681	122,173			
- 민간차입	20,700				
- 국공채발행	49,981	122,173			
o 기타여유자금회수	8,637				

자료: 기획예산처, 『기금백서』, 각 연도.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데, 지난 2년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표 III-178>과 같다.

&lt;표 III-178&gt; 부실채권정리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95,435	160,471	합 계	95,435	160,471
o 자체세입	48,128	42,050	o 사업비	12,940	1,278
- 민간의무부담금			- 경상지출	463	1,342
- 부실자산처분수익	38,687	26,155	- 자본지출	12,477	△64
- 이자수입 등	7,333	5,793	o 기금관리비	536	463
- 대여금회수	2,108	10,102	o 대여금		
o 정부내부수입	9,628	35,057	o 정부내부지출	13,549	
- 재특용자	9,628		- 재특용자상환	13,549	
- 상환기금출연		35,057	o 차입금원금상환	14,680	126,553
o 차입금	-	4,000	- 금융기관 등	5,000	4,627
- 금융기관 등	-		- 기금채권	9,680	121,926
- 기금채권 발행	-	4,000	o 차입금이자상환	10,366	10,222
o 기타여유자금회수	37,679	43,364	o 기타여유자금운용	43,364	21,955
- 현금과예금	24,661	24,094	- 현금과 예금	24,094	16,342
- 유가증권	-		- 유가증권		
- 회수기금채권	13,018	19,270	- 회수기금채권	19,270	5,613

##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1972년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근거하여 농림 또는 수산업자 등의 신용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 출연금의 부과 그리고 징수 주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나 농협중앙회가 이 출연금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이 출연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부과되는데, 대출금의 연 0.2%의 요율로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농협중

양회, 수협중앙회)이 이를 부담한다.

연도별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의 부과 및 징수 실적을 정리하면 <표 Ⅲ-179>와 같다.

<표 Ⅲ-17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55	157,084	55	157,084
2003	2	32,041	2	32,041
2002	2	22,725	2	22,725
2001	2	20,368	2	20,368
2000	3	19,105	3	19,105
1999	3	15,888	3	15,888
1998	3	14,997	3	14,997
1997년 이전	40	31,960	40	31,960

주: 건수는 기금출연 금융기관의 수를 의미함.

이렇게 징수된 출연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 되는데, 이 기금의 지난 2년간 수입 및 지출 내역은 <표 Ⅲ-180>과 같다.

&lt;표 III-180&gt;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16,425	8,630	합 계	16,425	8,630
○ 출연금	227	320	○ 사 업	4,597	5,780
○ 정부내부수입	2,562	1,000	- 대위변제	4,533	5,719
○ 기 타	1,831	1,884	- 보증료환급	64	61
- 보증료	419	423	○ 기금관리비	385	511
- 이자수익	953	695	○ 여유자금운용	11,443	2,299
- 사업수익	878	766			
- 여유자금회수	11,805	5,426			

## 4)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2001년에 신설된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은 담배사업법 제25조의 3항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담배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다. 이 출연금의 부과주체는 재정경제부이며, 담배 20개비 한 갑당 10원씩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 출연금은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된다.

이 출연금은 2002년부터 부과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부과 실적 및 징수실적을 정리하면 <표 III-181>과 같다.

<표 Ⅲ-181>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23	72,621	23	72,621
2003	12	42130	12	42130
2002	11	30,491	11	30,491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출연금은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의 수입으로 계상되는데, 이 재단의 지난 2년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표 Ⅲ-182>과 같다.

<표 Ⅲ-182> 연초생산안정화재단 : 기타

(단위: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305	429	합 계	305	429
o 부담금	305	421	o 제예금	305	426
- 제조업자 출연금	305	421	o 목적사업비		2
o 기 타	-	8	o 재단관리비	0.1	1
- 이자수입	-	8	- 인건비 등		

5)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에 근거하여 1986년에 설립된 기술신용

보증기금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시켜 신기술사업에 대한 재원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출연금의 부과주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인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5호의 금융기관의 용자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용자금에 대해서 부과하며, 금융기관(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은 대상용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 1천분의 1(1천분의 3)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이 출연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실적을 정리하면 <표 III-183>과 같다.

<표 III-183>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77	1,990,471	177	1,990,471
2003	12	212,202	12	212,202
2002	12	178,934	12	178,934
2001	12	167,371	12	167,371
2000	12	162,655	12	162,655
1999	12	148,312	12	148,312
1998	12	177,605	12	177,605
1997년 이전	105	943,392	105	943,392

징수된 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표 III-184>와 같다.

<표 III-184> 기술신용보증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20,694	16,619	합 계	20,694	16,619
o 부담금	1,789	2,122	o 사업비	9,391	13,469
o 정부내부수입	3,150	2,940	- 경상사업	1,294	231
- 일반회계전입	3,150	2,940	(대위변제 등)		
- 특별회계전입			- 자본지출		
			- 의무지출	8,097	12,956
o 기타	15,755	11,157	o 기금관리비	828	1,263
- 협약출연금	45	49			
- 이자수익	448	577	o 사업운영비	195	282
(예치금이자 등)	5,052	5,718	o 기타 여유자금	10,280	1,888
- 사업수익(보종료 등)	10,210	4,914	운용		
- 전년도 이월금			- 예금은행예치	6,766	357
			- 기타 민간예치	3,514	1,531

6)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76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이 출연금의 부과주체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게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용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해서 연 0.2%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sup>59)</sup>도 있다.

59) 국민투자기금법 제1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재정자금 및 공공자금 대출금,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가계자금대출금, 차관자금대출금 및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외화), 금융기관간의 대출금,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기준 대출금,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대출금,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및 위탁회사

이 출연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실적을 정리하면 <표 III-185>와 같다.

<표 III-185>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4,474,945	-	4,474,945
2003	-	424,270	-	424,270
2002	-	357,630	-	357,630
2001	-	334,244	-	334,244
2000	-	323,760	-	323,760
1999	-	292,853	-	292,853
1998	-	351,302	-	351,302
1997년이전	-	2,390,886	-	2,390,886

주: 금융기관은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에 출연.

징수된 출연금은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되며 신용보증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표 III-186>과 같다.

의 경영상 지원되는 대출금중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것, 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금중 외화자금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것,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중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것,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수도권생활지역의 지역이전 법인에 대한 대출금중 한국산업은행으로 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표 Ⅲ-186> 신용보증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51,512	58,973	합 계	51,512	58,973
o 부담금			o 사업비	13,633	24,396
- 금융기관출연금	3,576	4,243	- 대위변제금	12,705	23,353
o 정부출연금	5,250	6,560	- 대지급금	306	446
			- 기타	622	597
o 기 타	9,394	11,709	o 기금관리비	1,418	1,563
- 보증료 등	2,770	3,547	(관리업무비 등)		
- 이자수입	1,162	1,006	o 차년도 이월	36,461	33,014
- 구상권 회수	5,015	6,849			
- 수입수수료등	447	397			
o 전년도 이월	33,292	36,641			

7)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은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 계몽 등을 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되었다. 이 출연금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제14조를 설치근거로 하고 있다. 이 출연금의 부과주체는 한국화재보험협회로 10개 국내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해 매월 출연해야 할 방재활동협회비의 70%는 각 손보사의 순보험료 실적비율로, 나머지 30%는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출연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실적을 정리하면 <표 Ⅲ-187>과 같다.

&lt;표 III-187&gt;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164	93,217	164	93,217
2003	12	10,095	12	10,095
2002	12	9,488	12	9,488
2001	12	8,470	12	8,470
2000	12	8,490	12	8,490
1999	12	7,030	12	7,030
1998	12	8,030	12	8,030
1997년이전	92	41,614	92	41,614

주: 연도별 출연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은 동일하며, 징수방법은 협회가 인수하는 보안물건 공동인수보험료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잔여보험료 중에서 사원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체 정산함.

징수된 출연금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수입으로 계상되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표 III-188>과 같다.

<표 III-188> 한국화재보험협회 : 기타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208	215	합 계	208	215
o 방재활동협회비	95	101	o 사업비	38	41
o 자체수입	109	113	- 점검업무비	4	4
- 공동인수수료	41	41	- 조사연구비	3	3
- 시험연구용역등	41	43	- 연구원운영비	10	10
- 임대수입	27	29	- 보험업무비	1	1
o 사업외수입	4	1	- 홍보업무비	2	2
(이자 등)			- 수입대체경비	9	9
			- 사옥운영비	9	12
			o 경비	31	31
			- 복리후생비	14	14
			- 세금과공과	5	5
			- 지급입차료	1	1
			- 접대비	2	2
			- 급식비	3	3
			- 기타경비	6	6
			o 인건비	89	90
			o 퇴직급여	38	38
			o 감가상각비	6	6
			o 기타	12	6
			o 당기잉여금	△6	△31

8)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2003년에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 출연금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우체국예금·보험에 금융권의 특별기여금 부담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매년 0.1%를 출연하고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의 부과주체는 재정경제부이며, 우체국예금

의 전년도 평균잔액과 우체국보험의 전년도 적립책임준비금에 대해 매년 0.1%를 출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으며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계정으로 귀속된다.

#### 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2003년에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신설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부과하고 있다. 이 기여금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으로 2차적 혜택을 받은 수익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보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이 0.1%의 부담률로 부담하고 있다.

이 출연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실적을 정리하면 <표 III-189>와 같다. 그리고 금융권별 징수실적은 <표 III-190>과 같다.

<표 III-18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	276	624,900
2003	-	-	276	624,900

주: 부보금융기관이 산정내역을 자체적으로 신고한 후 신고금액 납부.

<표 Ⅲ-19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의  
금융권별 징수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징 수	
	2003년	2003년까지 징수실적
합 계	624,900	624,900
은 행	477,500	477,500
증 권	15,600	15,600
보 험	107,400	107,400
종 금	2,100	2,100
상호저축은행	22,300	22,300
신용협동조합	-	-

징수된 특별기여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되며 그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표 Ⅲ-191>과 같다.

<표 Ⅲ-19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234,058	합 계		234,058
○ 부담금		6,249	○ 사업비		22,305
○ 자체수입		55,612	- 경상지출		11,354
○ 정부내부수입		126,890	- 의무지출		10,951
○ 차입금		-	○ 기금관리비		2,791
○ 기타		45,307	○ 차입금상환		151,453
			○ 기타		57,509

## 10) 국제교류기여금

국제교류기여금은 1992년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이 기여금은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부과하고 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다.

<표 III-192> 국제교류기여금의 부과대상별 부과액

부과대상	부과액	
	국 내	국 외
1.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일반여권		
(1) 복수	15,000원 <sup>1)</sup>	미화 20달러 해당금액 <sup>2)</sup>
(2) 단수	5,000원	미화 7달러 해당금액
나. 여행증명서	2,000원	미화 3달러 해당금액
2.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자	1,500원	미화 2달러 해당금액

주: 1. 거주목적 여권의 경우에는 7,500원을 부과함.

2. 거주목적 여권의 경우에는 10달러 해당금액을 부과함.

연도별로 국제교류기여금의 부과 또는 징수실적을 정리하면 <표 III-193>과 같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2003년도 이 기여금의 징수실적을 정리하면 <표 III-194>와 같다.

<표 III-193> 국제교류기여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5,928,123	265,374	25,928,123	265,374
2003	2,586,449	28,475	2,586,449	28,475
2002	3,028,377	31,627	3,028,377	31,627
2001	2,771,332	26,683	2,771,332	26,683
2000	2,396,254	23,180	2,396,254	23,180
1999	2,002,712	19,526	2,002,712	19,526
1998	1,398,275	12,657	1,398,275	12,657
1997년 이전	11,744,724	123,226	11,744,724	123,226

&lt;표 III-194&gt; 지자체별 국제교류기여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지자체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울시	13,095	141,005	
부산시	2,201	19,610	
대구시	1,213	10,418	
인천시	1,146	8,334	
광주시	596	4,551	
대전시	704	5,460	
울산시	445	1,825	
경기도	2,599	14,428	
강원도	610	4,141	
충청북도	492	3,630	
충청남도	551	3,868	
경상북도	564	5,089	
경상남도	942	9,129	
전라북도	695	5,403	
전라남도	567	4,661	
제주도	263	2,633	
지자체 소계	26,683	244,185	
재외공관	1,792	21,189	
합 계	28,475	265,374	

징수된 국제교류기여금은 전액 국제교류기금으로 귀속되는데, 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III-195> 국제교류기금 : 국가

(단위: 억원)

수 입(조달)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합 계	411	423	합 계	411	423
○ 국제교류기여금 수입	316	285	○ 국제교류사업	139	135
			- 해외한국연구진흥	65	54
			- 해외한국연구학자 지원	23	30
			- 인적교류	12	13
			- 문화교류	18	19
			- 출판 및 자료지원	20	19
○ 이자수입	87	135			
○ 기타수입	1	1	○ 기금관리비	37	40
			○ 사업운영비	1	2
○ 이월금	7	2	○ 여유자금운용	234	246

### 3. 사회보장성 보험료

사회보장성 보험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네 개가 있다. 이 중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다.

#### 가.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22조에 근거하여 1988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이 기금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지급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및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민간 이자수입, 정부내부 이자수입 등을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군별 배분비율 및 기대수익률 등을 설정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III-196> 국민연금기금 조성액

(단위: 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계획)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총조 성액	부담금	782,002	151,066	933,068	180,023	1,118,134
	출연금	-	-	-	1,192	1,192
	차입금	-	-	-	-	-
	운영수입	313,454	63,595	377,048	70,352	447,400
	평가계정	-	-	-	-	-
소 계(A)		1,095,456	219,703	1,315,159	251,567	1,566,726
사용액(B)		165,851	24,754	192,463	35,217	227,680
순조성액(A-B)		929,605	194,949	1,122,696	216,350	1,339,046

자료: 기획예산처, 「2004년도 기금현황」, 2004.

<표 III-197> 국민연금 기금운용 총괄표

(단위: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2004계획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2004계획
합 계	315,496	440,563	600,347	합 계	315,496	440,563	600,347
○차체세입	175,046	211,134	244,615	○사업비	19,319	23,509	31,712
- 이자수입	35,492	53,744	63,542	- 경상사업	19,206	23,344	31,329
- 사업수입	138,230	156,378	180,087	- 자본지출	92	135	383
- 융자회수	1,087	890	728	- 융자사업	21	30	-
- 융자이자회수	237	182	166	○기금운영비	1,189	1,337	3,506
- 공단내부수입			92	- 기금관리비	103	45	83
				- 사업운영비	1,086	1,292	3,423
○정부내부수입	70,091	100,105	96,422	○정부내부지출			
- 일반회계전입			85	- 타회계예탁			
- 특별회계전입			297	- 채특차입원금상환			
- 채특용자				- 채특차입이자상환			
- 채특예탁원금회수				- 타기금출연(전출)			
- 채특예탁이자회수				- 타기금예탁			
- 타기금전입				- 타기금예수원금상환			
- 타기금예수				- 타기금예수이자상환			
- 타기금예탁원금회수	17,861	89,609	88,742	- 부문간예탁			
- 타기금예탁이자회수	52,230	10,406	6,488	○차입금원금상환			
- 부문간용자원금회수				- 한은차입원금상환			
- 부문간이자회수				-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차입금				-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국공채발행)*				-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 한국은행차입				- 해외차입원금상환			
- 예금은행차입				○차입금이자상환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기타여유자금운용	294,988	415,717	565,129
- 기타민간차입				- 한은예치			
- 해외차관				- 통화금융기관예치			
○기타여유자금회수	70,359	123,324	259,31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489	△15	5,129
- 한국은행회수				- 국제매입	110,355	167,009	140,000
- 예금은행회수				- 국제외채권매입	165,657	207,828	370,000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8,938	18,636	11,863	- 주식매입	13,032	38,346	40,000
- 기타민간회수	51,421	110,688	247,447	- 기타민간예치	455	1,949	10,000
- 잔년도이월금				▪ 기타유가증권매입			
				▪ 벤처, 부동산, SOC 등	455	1,949	10,000

주: \* 차입금중 국공채발행액은 ( )에 추가로 표시.  
 자료: 기획예산처, 「2004년도 기금현황」, 2004.

## 나.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노동부이다. 본 기금은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지급사업, 모성보호사업(2001년 11월 시행)의 4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사업 중 모성보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주 또는 본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하는 보험료 중 실업급여보험료는 사업주 및 본인이 50%씩 부담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고용안정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함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은 임금총액의 1.15~1.75%의 보험료를 사업주 및 피보험자에게 징수, 가산금 및 연체금 등의 기타 징수금과 여유자금의 은행예탁 등을 통한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금융기관에 예탁, 재정자금(공자기금)에의 예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257

<표 III-198> 고용보험기금 조성액

(단위: 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계획)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총 조 성 액	부담금	120,264	26,197	146,461	29,752	176,213
	출연금	457	22	479	22	501
	차입금	-	-	-	-	-
	운영수입	20,079	2,441	22,520	4,822	27,342
	평가계정	-	-	-	-	-
소 계(A)		140,800	28,660	169,460	34,596	204,056
사용액(B)		76,675	18,508	95,183	22,339	117,522
순조성액(A-B)		64,125	10,152	74,277	12,257	86,534

자료: 기획예산처, 「2004년도 기금현황」, 2004.

&lt;표 III-199&gt; 고용보험 기금운용 총괄표

(단위: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2004계획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2004계획
합 계	75,952	83,440	100,111	합 계	75,952	83,440	100,111
○자체세입	30,524	28,639	34,573	○사업비	15,382	17,881	21,678
- 사업수입	27,434	26,197	29,752	- 경상사업	14,688	16,977	20,520
- 이자수입	2,671	1,881	4,179	- 자본지출	123	224	268
- 융자회수	78	462	518	- 융자사업	561	679	890
- 융자이자회수	341	99	124	○기금운영비	620	628	661
○정부내부수입	172	22	22	- 기금관리비	1	1	1
- 일반회계전입	172	22	22	- 사업운영비	619	627	660
○차입금	-	-	-	○정부내부지출	-	2,000	2,000
-	-	-	-	- 타기금 예탁	-	2,000	2,000
○기타여유자금 회수	45,256	54,779	74,516	○차입금원금 상환			
- 한국은행회수	-	-	-	○기타여유자금 운용	59,950	62,931	84,772
- 예금은행회수	18,553	13,985	27,056	- 한은예치	164	177	-
- 비통화금융 기관 회수	26,500	40,630	47,460	- 통화금융기관 예치	20,535	18,687	29,670
- 기타민간회수	-	-	-	- 비통화금융 기관 예치	39,191	44,067	55,102
- 전년도이월금	113	164	-	- 기타민간예치			

자료: 기획예산처, 「2004년도 기금현황」, 2004.

<표 III-200> 고용보험기금의 고용보험료 실적

(단위: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 입	고용안정사업	378,237	464,744	507,004	380,165
	직업능력개발사업	472,554	576,506	602,016	735,094
	실업급여	1,197,032	1,486,369	1,607,498	1,750,817
	합계	2,047,823	2,527,619	2,716,518	2,866,076
사업주 부담 보험료		1,449,307	1,784,435	1,912,769	1,990,668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근거하여 2002년 3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 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1995년)과 산업재해예방기금(1991년)이 2002년 3월부터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주무부처는 노동부이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산재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 지급을 위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용도 및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사업으로 쓰여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및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하여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lt;표 III-201&gt;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조성액

(단위: 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계획)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총 조 성 액	부담금	145,253	25,573	170,826	30,799	201,625
	출연금	11,194	145	11,339	142	11,481
	차입금	-	-	-	-	-
	운영수입	3,198	1,081	4,279	2,037	6,316
	평가계정	7,707	-	7,707	-	7,707
소 계(A)		167,352	26,799	194,151	32,978	227,129
사용액(B)		146,122	28,764	174,886	30,509	205,395
순조성액(A-B)		21,230	△1,965	19,265	2,469	21,734

자료: 기획예산처, 「2004년도 기금현황」, 2004.

Ⅲ.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261

<표 III-20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운용 총괄표

(단위: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2004계획	항 목	2002실적	2003실적	2004계획
합 계	45,890	50,088	57,066	합 계	45,890	50,088	57,066
○자체세입	27,078	27,679	33,751	○사업비	22,763	27,719	29,591
- 부 담 금	24,809	24,651	29,916	- 경상사업	21,655	26,404	28,310
- 이자수입	950	1,001	1,968	- 자본지출	229	471	203
- 용자원금회수	1,230	1,030	942	- 용자사업	879	844	1,278
- 기 타	89	997	925	○기금운영비	1,860	1,888	1,996
				- 기금관리비	27	34	37
				- 사업운영비	1,833	1,854	1,959
○정부내부수입	627	149	170	○정부내부지출	-	500	-
- 일반회계전입	127	144	142	- 타회계예탁	-	-	-
- 특별회계전입	-	-	-	- 재특차입원금상환	-	-	-
- 재특용자	-	-	-	- 재특차입이자상환	-	-	-
- 재특예탁원금회수	-	-	-	- 타기금출연(전출)	-	-	-
- 재특예탁이자회수	-	-	-	- 공공기금예탁	-	500	-
- 타기금전입	-	-	-	- 타기금예수원금상환	-	-	-
- 타기금예수	-	-	-	- 타기금예수이자상환	-	-	-
-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500	-	-	- 부문간예탁	-	-	-
- 공공기금예탁이자회수	-	5	28	○차입금원금상환	-	-	-
				- 한은차입원금상환	-	-	-
				-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	-
				-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	-
○차입금	-	-	-	-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	-	-
(국공채발행)*	-	-	-	- 해외차관원금상환	-	-	-
- 한국은행차입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예금은행차입	-	-	-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	-	○기타여유자금운용	21,267	19,980	25,479
- 기타민간차입	-	-	-	- 한은예치	2,804	691	721
- 해외차관	-	-	-	- 통화금융기관예치	5,637	5,993	7,529
○기타여유자금회수	18,185	22,260	23,14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2,826	13,296	17,229
- 한국은행회수	-	2,804	507	- 국채매입	-	-	-
- 예금은행회수	14,538	19,456	22,638	- 국채외채권매입	-	-	-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	-	-	- 주식매입	-	-	-
- 기타민간회수	-	-	-	- 기타민간예치	-	-	-
- 전년도이월금	3,647	-	-				

주: \*차입금중 국공채발행액은 ( )에 추가로 표시  
 자료: 기획예산처, 「2004년도 기금현황」, 2004.

## 라.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63년 12월 16일에 의료보험이 제정되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여 익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까지 전면적인 시행이 유보되어 왔다가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고용사업장(19개)과 공업단지 내 사업장에 486개의 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직장근로자, 공무원·교직원, 지역 자영업자로 구분 적용되던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또한, 지역, 공무원·교직원,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주요사업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등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 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는 보험요율 80/1,000 범위 안에서 직장 가입자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서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의해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서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표 III-203>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입	계(A)	75,542	82,297	88,924	98,277	119,283	143,053
	보험료(C1)	48,787	52,550	63,056	72,288	88,562	109,277
	국고지원금	9,954	10,760	11,656	15,527	26,250	30,139
	-보험재정국고지원금(C2)	7,602	8,522	9,856	13,810	24,666	24,448
	-관리재정국고지원금	2,352	2,238	1,801	1,718	1,584	1,299
	-담배부담금	-	-	-	-	-	4,392
	기타	16,802	18,987	14,212	10,462	4,472	3,637
지출	계(B)	77,951	87,876	96,101	107,442	141,058	147,985
	보험급여비	56,341	64,200	76,656	92,856	131,956	138,237
	보험급여비(실급여비)(D)	59,106	68,967	79,480	92,856	131,956	138,237
	-요양급여비	54,570	62,197	74,663	90,807	130,074	136,210
	-요양급여비(실급여비)	57,335	66,963	77,487	90,807	130,074	136,210
	-장제비	458	436 (437)	456	466	501	521
	-본인부담액보상금	244	305 (305)	533	612	407	322
	-건강진단비	1,069	1,261 (1,262)	1,002	972	974	1,183
	-관리운영비	6,638	6,630	5,968	6,956	6,288	5,982
	-기타	14,973	17,047	13,478	7,630	2,814	3,766
총수지율 (B/A)	103.2	106.8	108.1	109.3	118.3	103.4	
순수지율 (D/(C1+C2))	115.5	122.2	121.6	128.5	116.5	103.4	
당기차액 (A-B)	△2,409	△5,579	△7,177	△9,165	△21,775	△4,931	

- 주: 1. 1990~1998년 급여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계 금액이며, 상계 전 급여비는 별도 표시.  
 2. 건강진단비는 급여비에 포함하고 지급준비금 상계 전 실 급여비는 ( ) 로 표시하였음.  
 3. 직장(1997~1999년) 및 지역(97년)은 연합회비가 관리회비에 포함. 관리운영비는 지급준비금 상계 전 금액임.  
 4. 담배부담금은 2002년도에 신설되었음.

&lt;표 III-204&gt; 총 보험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	직장소계	근로자	공·교	지역
1990	18,835	12,814	9,661	3,153	6,021
1991	23,317	14,875	11,270	3,604	8,442
1992	26,582	16,951	12,842	4,109	9,631
1993	28,586	17,909	14,006	3,903	10,677
1994	31,874	20,056	15,664	4,392	11,818
1995	36,007	22,767	18,024	4,743	13,240
1996	41,754	25,990	20,849	5,141	15,764
1997	48,787	28,554	22,991	5,563	20,234
1998	52,550	28,515	22,189	6,326	24,035
1999	63,056	35,789	25,014	10,775	27,267
2000	72,288	41,289	29,697	11,593	30,999
2001	88,562	52,408	39,573	12,834	36,154
2002	109,277	68,718	52,366	16,352	40,558
2003	137,409	91,683	71,836	19,848	45,725

주: 결산기준, 직장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부과학기술준).

#### 4. 기부금

##### 가. 기부금 관련 세제

##### 1) 공익성 기부금 관련 세제

기업의 기부금은 현금·성금·찬조금·후원금·기부금 등의 명목

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기부금은 법령상 부담의무가 있는 부담금 또는 공과금과는 구별된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를 차별화하고 있다. 손금산입 한도의 차이에 따라 기부금의 종류를 구분하면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데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지출 전 소득금액(이하 소득금액이라 함)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있고,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5%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인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이 중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공익성 기부금이 아니므로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고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를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기부금 종류별 한도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동일한 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기부금별 손금한도액을 나타낸다.

&lt;표 III-205&gt; 기부금 한도액의 법인 및 개인 비교

		법인세	소득세
기부금 한도액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sup>1)</sup> - 이월결손금	소득금액 <sup>2)</sup> - 이월결손금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한도액-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50%	(법정기부금한도액-법정기부금필요경비산입액) × 50%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한도액-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특례기부금손금산입액)×5%	법정기부금한도액-법정기부금필요경비산입액-특례기부금필요경비산입액)×10%
손금불산입액 처리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하여 한도미달액 이내에서 손금산입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자는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3년간 이월하여 한도미달액 이내에서 필요경비산입

주: 1. 기부금지출전 소득금액.

2. 기부금지출전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 가)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2항에 의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과 ④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을 말한다.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은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경우 2004년 3월 12일 세법개정으로 손금산입 규정이 개정되었다. 종전에는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법인이나 개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

러나 개정된 바에 의하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보다 종류가 더 많다. 즉 위에 언급한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 외에 ①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가액 ②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④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⑤ 법 소정 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개인의 기부에 대하여 법인보다 세제상 혜택을 받는 기부금의 범위가 큰 것은 개인에 대한 기부금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나)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특례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50%까지를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 신·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학협력단(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②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④ 독립기념관, 재단법인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⑤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 포함)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교육방송공사·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⑦ 법 소정 정부출연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이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의 경우 2004년 10월 5일 세법 개정에 의해 손금한도가 100%로 확대되었다. 또한 특례기부금 중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손금한도가 개인과 법인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 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비영리법인 등이 성격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그 외의 기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5%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또는 원격대학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위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② 특정지출기부금

- 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대한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국제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닌 단체에 한한다)가 당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개인의 경우 위의 해당단체 중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과 법 소정 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과 달리 손금한도가 법인과 달리 소득의 10%로 규정되어 있다.

## 라) 비지정기부금

이상에서 제시한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세제상 손금산입이 제외된다. 예를 들면, 동창회 및 향우회 등에 대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된다.

## 2)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자금은 세제상 기부금 종류 중 법정기부금과 동일하게 전액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가 허용되어 왔다. 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이나 개인 모두 전액 손금산입 혹은 소득공제할 수 있고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법인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금지하고 개인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도 이에 맞추어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다(2004년 3월 12일). 개인에 한해 정치자금을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이는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나. 기업의 기부금 지출 실태

기부금의 정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성금·찬조금·후원금·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부금 지출이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 기부금이 준조세로 인식되는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그래서 정부는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제정하였고 기부금품<sup>60)</sup>의 모집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었다<sup>61)</sup>.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기부금을 준조세에 포함하는 문제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발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기부금이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존재하는 경우 기부금 지출액을 준조세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관상 다소 비자발적으로 보이는 기부금이라도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장기적 이윤극대화 또는 최고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동기에 기초한 기부금 지출일 수도 있어 비자발적 기부금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

60) 다음은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

-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각출하는 금품
-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각출하는 금품
-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각출하는 금품
-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출하는 금품

61)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인 경우 상기 허가권자로부터 모집허가를 받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1998년 기업의 기부금 실태조사에 이어 기업의 기부금 지출의 자발성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함으로써 기부금 지출 실태를 파악하여 기부금 중 준조세에 해당하는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실태조사 개요

본 조사는 상공회의소 회원사 중 서울,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7,720개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설문지에 하나 이상 응답을 한 1,000개 업체를 최종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9.5%, 50인 이상 300인 미만 77.2%, 300인 이상 13.3%로 구성되어 있다<sup>62)</sup>.

표본기업에 대한 자료수집은 e-mail 또는 팩스에 의해 조사표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본 조사가 수행된 기간은 2004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이다.

실태조사는 일반조사사항으로 업종, 기업형태, 자본금 및 매출액 등과 기부금 종류별 기부금 지출액과 지출동기,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부금의 유형별 기부금 지출액과 지출동기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 2) 실태조사 결과

기업규모별 표본구성을 보면, 대기업이 13%, 중소기업이 87%이며 상장여부별 표본구성은 상장법인이 7.6%, 코스닥 등록법인이 5.6%,

62) 설문조사를 위해 자료를 협조해 준 상공회의소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비상장이 86.8%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금융업, 운수업으로 한정하였으며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sup>63)</sup>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기업 현황은 <표  
III-206>과 같다.

<표 III-206> 조사대상기업 현황

	표본	자본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당기순이익(백만원)		기부금(만원)		종업원수(명)	
	기업수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전체	1,000	999	44,426	1,000	93,001	911	8,325	1,000	52,683	1,000	217
기업규모별											
대기업	130	130	302,457	130	492,815	130	46,223	130	389,329	130	934
중소기업	870	869	5,825	870	33,258	781	2,017	870	2,391	870	101
기업형태별											
거래소	76	76	110,574	76	488,077	76	42,047	76	72,863	76	810
코스닥	56	56	9,002	56	79,566	56	3,994	56	4,391	56	211
비상장	868	867	40,915	868	59,275	779	5,346	868	54,044	868	166
업종별											
제조업	639	638	9,747	639	48,682	587	2,700	639	68,685	639	171
건설업	79	79	69,952	79	91,040	70	5,530	79	24,800	79	194
도소매업	82	82	6,841	82	81,900	79	3,432	82	7,829	82	147
금융업	52	52	273,497	52	594,337	49	57,785	52	55,538	52	792
운수업	125	125	138,862	125	50,646	106	3,942	125	4,388	125	251
기타	23	23	21,556	23	467,341	20	104,586	23	119,992	23	348

주: 표본기업수가 1000개 미만인 항목은 해당 항목에 대한 무응답 때문임.

<표 III-207>은 조사대상 기업 중 손금처리가 가능한 법정기부금, 특  
례기부금,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에 응답한 업체에  
대한 지출금액 평균 및 업체 수, 지출의 강제성 정도별 해당 업체 수를

63)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  
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  
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나타내고 있으며, <표 III-208>과 <표 III-209>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기부금 지출의 강제성 정도를 가지고 실제 기부금 지출액 중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산출하고자 한다. 기부금 중 준조세 성격의 금액은 기부금 총액에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 수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는 기부금 총액 중 해당 비중만큼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준조세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응답한 업체 수는 320개 업체이다 이 중 지출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수는 12개로 법정기부금에 대해 응답한 업체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 성격의 법정기부금을 추정하면 344억원( $9181 \times 0.0375$ )이 된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100%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손금산입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04년 세율 27%를 반영하여 손금산입 부분을 제외하면 251억원( $344 \times (1 - 0.27)$ )이 된다.

지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각각에 대한 기부금 총액은 알 수 없고 지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합계액만 가능하므로 비중도 두 가지 기부금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전체 응답 업체가 726개, 특례기부금의 경우 229개이다. 이 중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36개 업체로 전체의 4.96%, 특례기부금의 경우 4개로 1.75%에 해당한다. 각각의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성 지정·특례기부금을 추정하면 151억원( $3593 \times (229/955) \times 0.0175 + 3593 \times (726/955) \times 0.0496$ )이 된다. 지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이루어지나 본 자료에서는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각각의 총액을 알 수 없고 손금산입으로 감면되는 세액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손금산입 부

분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설문조사에서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으로 응답한 결과만을 준조세성 기부금이라고 볼 때 준조세성 기부금 총액은 법정기부금 251억원과 지정·특례기부금 151억원의 합인 402억원 정도이고, 이는 기부금 총액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응답자의 성향이나 기부금 자체 성격을 고려할 때 설문조사에서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경우도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준조세성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까지 확대하여 산출해 보고자 한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중립적’으로 응답한 업체까지 포함한 경우의 응답업체 수는 50개 업체이다. 이는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응답한 업체의 15.63%에 해당한다. 이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성 법정기부금을 산출하면, 1,435억원( $9181 \times 0.1563$ )이 된다. 법정기부금이므로 손금산입 부분을 제외하면 준조세성 법정기부금 규모는 1,048억원( $1435 \times (1 - 0.27)$ ) 정도이다. 지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경우 ‘중립적’까지 포함한 각각 비중이 14.05%, 16.16%이므로 각각의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성 지정·특례기부금을 산출하면 523억원( $3593 \times (229/955) \times 0.1616 + 3593 \times (726/955) \times 0.1405$ )이 된다.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를 포함한 경우 준조세성 기부금의 총 규모는 1,048억원과 523억원의 합인 1,571억원 정도이고 이는 총기부금의 15.3%에 해당한다.

기부금 각 항목 중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금품이 가장 강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와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22.2%를 차지한다. 또한 1997년 조사에서 18.8%로 가장 강제성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었던 정당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4.3%로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반면 가장 자발적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이었는

데 이는 1997년과 동일한 결과이고 ‘완전강제적’ 또는 ‘다소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표 III-208>과 <표 III-20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대기업이 기부금에 대한 비자발성이 낮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비자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III.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277

<표 III-207>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전체

		응답 업체 수	금액(만원)		지출 동 기(N%)				
			전체	평균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법정 기부금	국가 또는 지자체기부금	35	245,523	7,015	15 (42.9)	11 (31.4)	6 (17.1)	3 (8.6)	-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금품	18	15,350	853	6 (33.3)	5 (27.8)	3 (16.7)	2 (11.1)	2 (11.1)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169	385,784	2,283	133 (78.7)	24 (14.2)	11 (6.5)	1 (0.6)	-
	정당 및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4	373,840	3,977	51 (54.3)	21 (22.3)	18 (19.1)	4 (4.3)	-
	세부항목거절	4	484,300	121,075	2 (50.0)	2 (50.0)	-	-	-
소계		260	1,504,797	5,788					
특례 기부금	사립학교 등	66	695,357	10,536	55 (83.3)	7 (10.6)	4 (6.1)	-	-
	사내근로복지기부금	33	3,131,520	94,855	18 (54.5)	8 (24.2)	7 (21.2)	-	-
	문화예술진흥기부금	8	21,225	2,653	4 (50.0)	-	4 (50.0)	-	-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8	89,420	11,178	7 (87.5)	-	1 (12.5)	-	-
	사회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93	221,366	2,380	69 (74.2)	8 (8.6)	13 (14.0)	3 (3.2)	-
	정부출연연구기관	5	850	170	3 (60.0)	1 (20.0)	-	1 (20.0)	-
	기타 조특법상 기부금	13	39,342	3,026	8 (61.5)	1 (7.7)	4 (30.8)	-	-
세부항목거절	3	1,216,000	405,333	-	3 (100.0)	-	-	-	
소계		186	5,415,080	29,113					
지정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367	8,880,646	24,198	312 (85.0)	39 (10.6)	15 (4.1)	1 (0.3)	-
	학술단체	28	85,905	3,068	21 (75.0)	5 (17.9)	1 (3.6)	1 (3.6)	-
	문화단체	15	47,681	3,179	10 (66.7)	1 (6.7)	4 (26.7)	-	-
	종교단체	36	90,619	2,517	34 (94.4)	-	1 (2.8)	1 (2.8)	-
	사회단체	135	124,567	923	92 (68.1)	19 (14.1)	16 (11.9)	5 (3.7)	3 (2.2)
	기타지정기부금	141	32,552,178	230,867	62 (44.0)	25 (17.7)	29 (20.6)	23 (16.3)	2 (1.4)
	세부항목거절	4	2,402,600	600,650	3 (75.0)	1 (25.0)	-	-	-
	소계	589	44,184,196	75,016					
합계		754	51,124,773	67,805					

주: 중복 응답한 업체가 존재하므로 각 항목별 소계의 합과 응답업체 전체 합계는 일치하지 않으며 합계 업체수 754개에는 기부금 세부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1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표 III-208>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대기업)

	응답 업체수	금액(만원)		지 출 동 기(N%)					
		전체	평균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법정 기부금	국가 또는 지자체기부금	9	215,630	23,959	3 (33.3)	4 (44.4)	1 (11.1)	1 (11.1)	-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금품	7	9,400	1,343	3 (42.9)	3 (42.9)	1 (14.3)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39	213,620	5,477	31 (79.5)	6 (15.4)	2 (5.1)	-	-
	정당 및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30	310,500	10,350	14 (46.7)	6 (20.0)	9 (30.0)	1 (3.3)	-
	세부항목거절	4	484,300	121,075	2 (50.0)	2 (50.0)	-	-	-
소계	63	1,233,450	19,579						
특례 기부금	사립학교 등	20	527,610	26,381	16 (80.0)	2 (10.0)	2 (10.0)	-	-
	사내근로복지기금	17	3,028,260	178,133	13 (76.5)	3 (17.6)	1 (5.9)	-	-
	문화예술진흥기금	4	19,650	4,913	2 (50.0)	-	2 (50.0)	-	-
	특정연구기관	2	1,300	650	1 (50.0)	-	1 (50.0)	-	-
	사회단체	21	138,421	6,591	17 (81.0)	2 (9.5)	2 (9.5)	-	-
	정부출연연구기관	3	450	150	2 (66.7)	1 (33.3)	-	-	-
	기타 조특법상 기부금	3	22,450	7,483	2 (66.7)	-	1 (33.3)	-	-
	세부항목거절	3	1,216,000	405,333	3 (100.0)	-	-	-	-
소계	52	4,954,141	95,272						
지정 기부금	불우어웃돕기성금	60	8,715,887	145,265	53 (88.3)	6 (10.0)	1 (1.7)	-	-
	학술단체	4	25,925	6,482	2 (50.0)	2 (50.0)	-	-	-
	문화단체	4	30,860	7,715	3 (75.0)	-	1 (25.0)	-	-
	종교단체	4	9,100	2,275	4 (100.0)	-	-	-	-
	사회단체	18	57,091	3,172	10 (55.6)	5 (27.8)	2 (11.1)	1 (5.6)	-
	기타지정기부금	23	32,280,565	1,408,503	13 (56.5)	5 (21.7)	4 (17.4)	1 (4.3)	-
	세부항목거절	4	2,402,600	600,650	3 (75.0)	1 (25.0)	-	-	-
소계	88	43,522,030	494,539						
합계	113	49,730,321	440,091						

III.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279

<표 III-209>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중소기업)

	응답 업체수	금액(만원)		지출 동 기(N%)					
		전체	평균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법정 기부금	국가 또는 지자체기부금	26	29,883	1,150	12 (46.2)	7 (26.9)	5 (19.2)	2 (7.7)	-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금품	11	5,950	541	3 (27.3)	2 (18.2)	2 (18.2)	2 (18.2)	2 (18.2)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130	172,164	1,324	102 (78.5)	18 (13.8)	9 (6.9)	1 (0.8)	-
	정당 및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64	63,340	990	37 (57.8)	15 (23.4)	9 (14.1)	3 (4.7)	-
소계	197	271,347	1,377						
특례 기부금	사립학교 등	46	167,747	3,647	39 (84.8)	5 (10.9)	2 (4.3)	-	-
	사내근로복지기부금	16	103,260	6,454	5 (31.3)	5 (31.3)	6 (37.5)	-	-
	문화예술진흥기부금	4	1,575	394	2 (50.0)	-	2 (50.0)	-	-
	특정연구기관	6	88,120	14,687	6 (50.0)	-	-	-	-
	사회단체	72	82,945	1,152	52 (72.2)	6 (8.3)	11 (15.3)	3 (4.2)	-
	정부출연연구기관	2	400	200	1 (50.0)	-	-	1 (50.0)	-
	기타 조특법상 기부금	10	16,882	1,689	6 (60.0)	1 (10.0)	3 (30.0)	-	-
소계	134	460,939	3,440						
지정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306	164,759	537	239 (84.4)	33 (10.7)	14 (4.6)	1 (0.3)	-
	학술단체	24	59,979	2,499	19 (79.2)	3 (12.5)	1 (4.2)	1 (4.2)	-
	문화단체	11	16,821	1,529	7 (63.6)	1 (9.1)	3 (27.3)	-	-
	종교단체	32	81,519	2,547	30 (93.8)	-	1 (3.1)	1 (3.1)	-
	사회단체	117	67,476	577	82 (70.1)	14 (12.0)	14 (12.0)	4 (3.4)	3 (2.6)
	기타지정기부금	118	271,612	2,302	49 (41.5)	20 (16.9)	25 (21.2)	22 (18.6)	2 (1.7)
소계	501	662,166	1,322						
합계	641	1,394,452	2,175						

### 3) 정책시사점

2003년 현재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실태조사 결과를 1998년(손원익 외)에 발표된 결과와 비교하여 기업의 기부금 지출 행태에 대한 변화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98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에 포함하여 조사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별도로 조사하였으므로 기부금 분류별 해당기간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기업들의 기부금에 대한 강제성 정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분류별 비중보다는 기부금 총액에서 준조세성 기부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준조세성 기부금을 추정하는 과정도 1998년 당시에는 설문에 응답한 업체의 기부금액 비중을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업체수 비중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해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준조세성 기부금의 범위를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으로 응답한 업체로 보면, 498억원 정도이고 준조세성 기부금의 범위를 상기 범위에 ‘중립적’으로 응답한 업체로 확대해서 보면 1,955억원 정도이다. 이는 각각 전체 기부금 1조 2,774억원의 3.9%, 15.3%에 해당한다.

1998년 연구에서는 1997년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7년에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1조 3,146억원, 지정기부금이 5,683억원으로 기부금 총액은 1조 8,784억원이었다. 당시에 추정한 바에 의하면, ‘완전강제적’과 ‘다소 강제적’만을 준조세성 기부금으로 봤을 때 준조세성 기부금은 1,181억원이고 ‘중립적’으로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면 4,647억원 정도였으며 각각 총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 24.7%로 나타났었다.

2003년 현재 기부금 총액은 1997년에 비해 금액만을 비교할 때 32%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의 기부활동이 상당히 저조해지고 있

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부금 중 비자발성 기부금의 비중은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만을 준조세성 기부금으로 볼 경우 16.3%에서 3.1%로, ‘중립적’으로 응답한 것을 포함할 경우 24.7%에서 15.3%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전반적인 기부금 규모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기부금 지출 중 자발적인 기부행위에 의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겠다.

기업 및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규모의 축소는 국민복지 기능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 민간부분의 활동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행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기부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기부행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업의 기부행위 활성화보다는 개인 차원에서의 기부행위 활성화 방안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의 기부행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어 온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인의 경우 정치헌금에 대해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그 초과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에 대해서는 정치헌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한 것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발적 기부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IV. 주요국의 준조세 실태

### 1. 환경 관련 부담금

본절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해외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순으로 다른 나라들의 환경과 관련한 부담금의 사례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한 재정을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부담금에 대한 연구이나 여기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부담금 대신에 환경과 관련한 세수나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들을 외국과 비교하고 있다.

#### 가. 미 국

본절에서는 부담금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에서 환경과 관련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괄적으로 이들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서, 미국에서 환경과 관련한 부담금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리고 각종 부담금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1) 미국의 환경 관련 인센티브

미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세금, 사용자 또는 원인자 요금 (Fee 또는 Charge), 예치금, 보조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방법에서 환경 보호와 관련한 경제적인 인센티브의 원칙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 또

는 community 등의 지방정부가 연방법을 원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법인 The Clean Air Act에서는 Sec. 107부터 Sec. 109까지에서 대기 오염의 기준, 이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등을 정의하고 나서, Sec. 110에서 각 주가 이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주들 중에서 약 40개 정도의 주에서는 연방법인 The Clean Air Act에 근거한 주법을 신설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주별로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며, 또한 연방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는 주도 있다. 앞서의 예인 The Clean Air Act의 규정과 관련하여 약 35개 주에서는 부담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 주들에서는 다른 형태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부담금 제도를 운용하는 주의 경우에도 부담금의 명칭, 요율 등은 주별로 상이하다.

결국 미국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부담금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는 연방정부이기 보다는 지방정부이다. 그리고 주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징수하고 그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는 주체는 주정부이기보다는 주정부의 위임을 받은 지방정부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부담금과 관련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자료의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제공되는 부담금과는 구별되는 환경과 관련한 인센티브로는 세금, 보조금, 펀드를 통한 공공서비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환경과 관련한 세금은 대부분 유류세 등의 에너지와 관련된 세금이며, 그 외에는 유해 폐기물세와 미네소타 주의 환경 오염세 등이 있다. Hoerner(1998)에 따르면, 1998년도의 경우 30개 이상의 주

에서 400여 개 품목의 유해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생산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유해폐기물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도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의 형태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1995년에 미네소타 주에 도입된 환경 오염세는 오염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변동이 발생할 때 이 변동분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환경과 관련한 보조금은 환경 친화적인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보조금, 저리의 융자, 세액감면,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에서의 혜택 등이 포함된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영역별로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환경 친화적인 개발에 대한 보조금, 토지자원 보존을 위한 보조금, 폐기물 관리를 위한 보조금,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나 고효율 제품 개발을 위한 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많은 주에서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등의 보조를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의 경우 연방법이나 주법 등이 정한 각종 규정을 준수하는 오염방지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1994년도의 경우 세액감면을 받은 해당 사업장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달러, 감면세액이 2,66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sup>64)</sup>. 한편, 연방정부도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1995년도 경우 그 감면액이 6억 4천만달러에 달한다<sup>65)</sup>.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관련한 보조금으로는 미국의 Environmental

64)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Daily Environmental News,' March 24, 1995.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Economics,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with Economic Incentives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에서 재인용하였음.

65) 상계논문, Ibid.

Protection Agency(이하 EPA)에서 제공하는 EPA Pilot Grant Projects를 들 수 있다<sup>66)</sup>. 이 프로그램에서는 농지 등의 토지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보조금(conservation Subsidy Program)을 지불하고 있는데,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따르면 1998년도 보조금의 규모가 59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67)</sup>. 폐기물의 효과적인 수집과 재활용을 위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24개 이상의 주에서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저리 융자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위스콘신 주의 경우에는 매년 법인세 등으로부터 560만달러를 조성하여 연리 4%의 이자로 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다.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나 고효율 제품 개발과 관련한 보조금도 있다. Anderson(1994)에 따르면, 미국 전체적으로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1994년에 지급된 보조금이 약 11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일부의 환경관련 공공서비스가 펀드의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펀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슈퍼펀드이다. 2004년 현재 슈퍼펀드는 50개 모든 주에서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슈퍼펀드의 자금원은 세금, 채권, 사용자 요금, 원인자 요금, 자발적인 개인 기부 등 다양하며 그 규모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에서 운용하는 Discharge Bond Fund는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같은 주에서 운용하는 Hazardous Discharge Site Cleanup Fund는 유해 폐기물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뉴욕 주의 경우 2001년도에 4 종류의 슈퍼펀드를 통해 이루어진 총 지출액이 1억 4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66)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epa.gov/brownfields](http://www.epa.gov/brownfields)를 참조.

67) USDA, 2000 Agricul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Economic Research Services.

## 2) 미국의 환경과 관련한 부담금 제도의 특징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한 부담금 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환경과 관련한 부담금은 크게 사용자 또는 원인자 요금과 예치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주요한 것이 사용자 또는 원인자 요금이며, 이는 다시 원인자 요금, 사용자 요금, 생산 관련 요금과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인자 요금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양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대기배출허가요금, 쓰레기배출부과금, 하수도 배출 부과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용자 요금은 환경자원을 사용한 양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수도 사용 부과금 등이 있다. 생산 관련 요금은 환경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취급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서, 많은 주에서는 세금의 형태로 징수되고 또 일부의 주에서는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되고 있다. 그 외에도 늪지 개발 부과금 등의 부담금이 있다.

예치금 제도는 음료 용기, 건전지, 타이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자 요금의 형태로 예치금을 지불하고, 이들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폐기하는 경우에 그 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의 환경 관련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담금 제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실제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주 또는 지방정부별로 환경관련 부담금의 명칭, 내용, 효율이 크게 다르며, 연방정부 차원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그 규모를 추산하고 있지 않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캐나다 등의 인접국가와의 협약 또는 주정부 사이의 협약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파괴는 인접한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접국가와 공동 전선을 구축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1991년 미국과 캐나다간의 Air Quality Agreement와 같은 협약을 맺어 공동의 기준으로 공동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시에 오대호 연안을 중심으로 하여 한 주의 환경파괴가 다른 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주가 동일한 부과금 제도를 운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환경 부담금과 관련하여 뒤에서는 대기과 관련한 부담금, 수질과 관련한 부담금, 폐기물과 관련한 부담금, 생산과 관련한 부담금, 예치금으로 나누어 부담금 제도의 몇 가지 사례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대기과 관련한 부담금으로는 대기배출 허가요금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005년부터 도입예정인 오존 관련 부담금이 있다. 수질과 관련한 부담금으로는 하수도 폐기 허가요금, 상수도 연회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 부담금으로는 쓰레기 배출 부과금, 폐기물 매립 부담금, 유해 폐기물 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생산과 관련한 부담금은 주로 부담금보다는 세금의 형태로 부과되는데, 여기에서는 타이어 등 부담금의 형태로 부과되는 일부의 품목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예치금은 주로 음료 용기나 건전지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 부과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하여 예치금 제도를 소개하기로 한다.

### 3) 대기배출 허가요금 (Air Permit Fee)

대기배출 허가요금의 가장 기본적인 부과근거는 연방법인 The Clean Air Act이다. 1990년에 개정된 The Clean Air Act는 대기 오염의 기준 등을 정의하고 나서 각 주가 이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실행계획(SIPS, State Implementation Plans)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he Clean Air Act는 특히 대규모의 대기 오염원에 대해서는 1990년을 기준으로 톤당 최소한 25달러(그리고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액수)의 대기배출 허가요금(Air Permit Fee)을 부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낮은 액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대기오염을 제거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약 35개의 주가 대기오염배출 허가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부담금의 부과주체는 대부분 주정부이거나 또는 주정부의 위임을 받은 지방정부이다. 그리고 이 부담금이 부과되는 주마다 구체적인 명칭이나 요율이 상이하다.

The Clean Air Act에서는 ‘국가의 대기자원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국민들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배출허가요금을 부과한다’(Sec. 101. (b) (1))고 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도 주마다 다소 상이하다. The Clean Air Act는 Sec 119에서 대기오염의 기준을 정의하고 Sec 112에서 대기오염원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주들은 여기에 근거하여 대기배출 허가요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주법에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 주의 경우에는 주법인 Air Pollution Control의 Part 70에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자로 약 1,962개 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The Clean Air Act에서는 또한 톤당 최소한 25달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별로 부과요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메인 주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요금(Facility Charge)과 배출량별 요금(Emission Charge)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는데, 전자에 비해 후자 요금의 규모가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다. 1997년 기준으로 배출량별 요금은 최소요금이 250달러이고 상한을 1만 5천달러로 하여 다음의 표에서와 같은 요율로 부과되고 있다.

<표 IV-1> 메인 주의 대기배출 허가요금의 배출량별 요율

(단위: 톤, 달러)

배출량	단위당 요율
1,000 미만	5.28
1,000 미상 4,000 미만	10.57
4,000 이상	15.85

자료: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Economics(2001).

사업장별 요금의 경우에는 85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5만 달러를 상한으로 하여 부과되고 있다.

미시간 주의 경우에도 부과요금은 사업장별 요금과 배출량별 요금으로 나누어 부과되고 있다. 2004년도의 경우 사업장별 요금은 먼저 사업장을 <표 IV-2>에서와 같이 세 부류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각 부류에 속한 사업장에게 다른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표 IV-2> 미시간 주의 대기배출 허가요금에서 사업장별 요금

(단위: 달러)

	기준	요금
Category I	주오염원으로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사업체	4,485
Category II	주오염원으로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Category I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	1,795
Category III	주오염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250

자료: [www.michigan.gov/epa](http://www.michigan.gov/epa).

미시간 주의 배출량별 요금은 위의 기준에서 Category I과 Category II에 속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2004년도의 경우 배출량 톤당 45.25 달러의 요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 속한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이하 SCAQMD)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요율의 대기배출 허가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따라 배출량별 요금이 다른데, 1999년도의 경우 그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 SCAQMD의 대기배출 허가요금

(단위: 톤, 달러)

연간 배출량	톤당 요금
4 이상 25 미만	171.30 ~ 292.80
25 이상 75 미만	272.10 ~ 475.40
75 이상	409.80 ~ 711.60

자료: SCAQMD rule 301.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담금의 총 규모를 집계한 자료가 없는바, 여기서는 일부 주에서 개별적으로 발표한 징수실적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메인 주의 경우에는 매년 180만달러 정도가 배출량별 요금으로, 60만달러 정도가 사업장별 요금으로 징수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40만달러이다. 미시간 주의 경우에는 2004년 1월에 부과된 2004년도분 부과금이 1,130만달러이다.

이렇게 부과된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주별로 상이한데, The Clean Air Act에서는 대기배출 허가요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대기 오염에 대한 연구 및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수질과 관련한 부담금

여기에서는 수질과 관련한 부담금으로 하수도 폐기 허가요금과 상수도 연회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 하수도 폐기 허가요금 (NPDES Permit Fee)

1972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인 The Water Pollution Control Act는 하수도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하수도를 배출하는 사업체로 하여금 National Pollution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이하 NPDES)의 허가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수도 폐기 허가요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2000년 현재 43개의 주에서 주법에 따라 허가권을 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 주의 경우에는 2004년 4월 22일부터 주법인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서 하수도를 버리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취득한 모든 사업체에는 허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의 대기배출 허가요금과 마찬가지로 하수도 폐기 허가요금을 부과하는 부과주체는 주정부 또는 주정부의 위임을 받은 지방정부이며, 그 중 주정부인 경우가 많다. 미시간 주의 경우에도 부과주체는 주정부이다. 한편, 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하수도를 폐기하는 모든 사업체이다.

앞의 대기배출 허가요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주정부마다 상이하다. Duhl(1993)에 따르면 1993년 메인 주를 포함한 12개 주에서는 처리하는 하수도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뉴욕 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는 처리하는 하수도의 양에 따라 상이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10개의 주에서는 처리하는 하수도의 양이나 농도에 따라 상이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미시간 주의 경우에는 배출하는 사업체의 종류나 하수도의 양에 따라 그 요율이 다른데, 그 요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4> 미시간 주의 하수도 폐기 허가요금의 요율 체계

(단위: 갤런, 달러)

	일일 배출량	요금
영리사업자		8,700
지방정부	10백만 미만	5,500
	10백만 이상, 50백만 미만	13,000
	50백만 이상, 500백만 미만	20,000
	500백만 이상	213,000

자료: [www.michigan.gov/epa](http://www.michigan.gov/epa).

이렇게 부과된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주별로 상이한데, The Water Pollution Control Act에서는 이 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수질 오염에 대한 연구 및 수질 오염을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사업에 쓰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상수도 연회비 (Annual Fee)

연방법인 The Clean Water Act는 각 주가 먹는 물의 수질을 관리하는 비용을 부담금의 형태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 법에 근거한 주법을 제정하여 이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시간 주의 경우에는 Michigan Safe Drinking Water Act의 Sec 11b(1)에서 상수도 연회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동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부담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연회비를 부과하는 부과주체

는 주정부 또는 주정부의 위임을 받은 지방정부이며, 미시간 주 역시, 주정부가 이 부담금 제도를 부과하고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담금의 부과대상도 주별로 상이한데, 미시간 주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먹는 물(상수도)을 공급하는 사업체이나, 메인주의 경우에는 이들 사업체 이외에 지방정부에게도 이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부담금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뉴저지 주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형태가 아니라 세금의 형태로 1000갤론당 1센트의 요율로 징수하고 있는데, 2001년도의 경우 총 280만달러가 징수되어, 전체 상수도와 관련한 예산 500만달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의 사용내역은 The Clean Water Act는 징수된 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을 검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데 사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5) 폐기물과 관련한 부담금

여기에서는 쓰레기 배출 부과금, 폐기물 매립 부담금, 그리고 유해 폐기물 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쓰레기 배출 부과금 (Solid Waste Disposal Fee)

쓰레기 배출 부과금은 각 가정이 자신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쓰레기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재산세에 덧붙여서 부과하여 왔으나, 이런 방식의 부과가 쓰레기의 배출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점차 쓰레기 배출 부과금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지방정부(community)인데, 2001년 현재 42개주의 4,100개가 넘는 지

방정부에서 쓰레기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적인 근거는 지방정부마다 다르다. 부과요율도 community마다 상이한데, 몇 개의 community의 요율을 정리하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쓰레기 배출 부과금의 요율 체계

(단위: 달러)

	요금
캘리포니아 주의 글렌데일	65 갤런 손수레: 매월 6.45
	100 갤런 손수레: 매월 10.10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	20갤런 손수레: 매월 14.60
	32갤런 손수레: 매월 17.60
	35갤런 손수레: 매월 19.30
	60갤런 손수레: 매월 24.05
	90갤런 손수레: 매월 27.10
미시간 주의 랜싱	60갤런 손수레: 매월 11.00
	90갤런 손수레: 매월 13.40
워싱턴 주의 타코마	60갤런 손수레: 매월 17.00
	90갤런 손수레: 매월 25.50

자료: Miranda and Aldy(1996)과 Bauer and Miranda (1996).

#### 나) 폐기물 매립 부담금 (Solid Waste Fee)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목적으로 폐기물 매립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과 형태나 근거는 주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미시간 주의 경우에는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Part 115에 관련 규정을 두어 폐기물 매립 부담금 (Solid Waste Fee)을 부과하고 있으며, Part 11523a(10)에서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지로 그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미시간 주의 경우에는 2003년 9월 30일까지는 폐기물 등록비 (Solid

Waste Administration Fee)가 부과되어 왔으며, 2003년 10월 1일부터는 새로 개정된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따라 폐기물의 매립 부담금(Solid Waste Fee)을 부과하고 있다. 동법의 Part 11525a(6)에서는 Part 11525a(10)에서 Type III로 규정한 매립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에서와 같은 정책의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의 매립지에 대해서는 1 세제곱 야드당 7센트의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V-6> 미시간 주의 폐기물 매립 부담금 요율체계

(단위: 세제곱 야드, 달러)

매립 규모	요금
25,000 미만	500
25,000 이상 50,000 미만	1,000
50,000 이상 75,000 미만	2,000
75,000 이상 100,000 미만	2,500
100,000 이상	3,000

자료: [www.michigan.gov/epa](http://www.michigan.gov/epa).

미시간 주가 2004년에 징수한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말까지의 폐기물 등록비는 120만달러이며,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말까지의 폐기물 매립 부담금은 2005년부터 징수할 예정이다. 미시간 주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연구에 주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유해 폐기물 부담금 (Hazardous Waste Fee)

1998년 현재 미국의 30개 주에서 각 주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

해 폐기물을 생산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시간 주의 경우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Part 111 Hazardous Waste Management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유해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동법은 그 부과대상을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담금의 부과요율도 주별로 상이한데, 미시간 주의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징수하는 부담금과 폐기물 건당 처리 부담금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100kg 이상 1,000kg 미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100달러, 1,000 kg 이상 9,000kg 미만을 생산하는 중규모 생산자는 400달러, 그리고 그 이상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자는 1,0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또는 저장하는 사업자에게는 2,000달러가 부과되고, 유해 폐기물을 재생하여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도 100달러가 부과된다. 건당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6달러이지만, 세수가 160만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고 8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미시간 주가 매년 160만달러의 징수를 목표로 하여 징수실적에 따라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오염에 대한 연구 및 오염처리를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인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미시간 주와는 달리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경우와 매립하는 경우 모두에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된 중량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요율은 <표 IV-7>과 같다.

<표 IV-7> 캘리포니아 주의 유해폐기물 부담금 체계: 생산자의 경우

(단위: 연간 톤, 달러)

중량	요금
5 미만	0
5 이상 25 미만	169
25 이상 50 미만	1348
50 이상 250 미만	3,371
250 이상 500 미만	16,855
500 이상 1000 미만	33,710
1000 이상 2000 미만	50,565
2000 이상	67,240

자료: www.ca.gov.

유해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주로 폐기물 종류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요율체계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캘리포니아 주의 유해폐기물 부담금 체계: 매립자의 경우

(단위: 톤당 달러)

종류	요율
제한된 유해 폐기물	200
위험한 유해 폐기물	200
유해 폐기물	44.44
광석 폐기물	14.30
기타 유해 폐기물	17.94
기타 폐기물	7.50

자료: www.ca.gov.

## 6) 생산과 관련한 부담금

여기서 다루는 부담금은 폐기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Hoerner(1998)에 의하면 1998년의 경우 400여개의 제품에 대해 세금 또는 부담금이 징수되고 있다고 한다.

가장 널리 부담금이 부과되는 제품은 타이어로서, 1998년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와 34개의 주정부는 타이어의 생산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생산된 타이어의 파운드당 0.15달러에서 0.50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서 징수된 부담금은 Highway Trust Fund에 귀속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타이어의 무게가 40파운드를 초과하는 중량에 대해서는 중량당 0.15달러를, 70파운드를 초과하는 중량에 대해서는 중량당 0.30달러를, 90파운드를 초과하는 중량에 대해서는 중량당 0.5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34개의 주정부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추가하여 일반적으로 타이어 1개당 0.25달러에서 2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서 조성된 자금은 타이어의 재활용, 타이어의 폐기 후 관리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텍사스 주의 경우에 트럭에 사용되는 타이어의 경우에는 3.50달러를 부과하는 등 위의 범위 이상을 부과하는 주도 있으며, 일부의 주에서는 타이어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최소한 46개의 주에서 비료 생산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 비료에 대한 부담금이 톤당 4달러로 가장 높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톤당 1달러 미만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에는 조성된 자금은 대부분 비료의 검사와 주정부에 의한 비료저장에 사용된다고 한다.

## 7) 예치금 (Deposit-Refund System)

예치금 제도는 음료 용기나 건전지와 같이 그 제품을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위해 그 제품을 생산할 때 폐기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들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폐기하는 경우에 그 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다.

예치금 제도는 그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도 그 목적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은 부적절한 폐기가 보다 큰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에 이를 줄이려는 데에 있다. 예치금 제도가 다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보다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Palmer et al (1995) 등의 연구는 예치금 제도가 직접적인 규제나 재활용에 대한 보조,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등의 다른 인센티브보다 효율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Ackerman et al (1998) 등의 연구는 예치금 제도가 보다 많은 행정적인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Fullerton and Kinnaman (1995)은 이러한 행정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적절한 폐기나 재활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예치금 제도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1년 현재 12개 주에서 음료 용기당 2.5센트에서 15센트의 범위로 예치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들에서 예치금의 요율 등을 정리하면 <표 IV-9>와 같다.

&lt;표 IV-9&gt; 예치금 제도의 요율 체계와 회수율

(단위: 센트, %)

	요율	회수 비율
캘리포니아	2.5 (24 온스 이하), 5(24 온스 초과)	알루미늄 88%, 유리 76%, 페트병 50% 등
코네티컷	5 이상	캔 88%, 유리병 94% 등
아이오와	5	알루미늄 95%, 유리 85% 등
매사추세츠	5	합계 85%
미시간	5 (refillable), 10 (그 외)	합계 93%
뉴욕	5	맥주 81%, 음료 72% 등

자료: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Economics(2001).

캘리포니아 주의 음료용기에 대한 예치금 제도를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는 1986년에 California Beverage Container Recycling and Litter Reduction Act가 제정되고, 1987년부터 음료 용기의 80% 정도를 회수한다는 목표하에 음료 용기에 대한 예치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음료용기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24온스 이하의 음료용기당 2센트, 24온스를 초과하는 음료용기의 경우에는 4센트를 주의 재활용 펀드에 지불하고, 반면에 음료용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조직에 관계없이 24온스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2.5센트와 5센트를 지불하고 있다. 1994년과 1995년을 합하여 주의 재활용 펀드는 5억 5,500만달러의 예치금을 징수하였으며, 1995년 이후 징수된 예치금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음료용기 이외에 납이 함유된 건전지에 대해서도 미국의 11개 주에서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칸소와 메인 주에서는 건전지당 10달러의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 뉴욕이나 미네소타 등의 나머지 주에서는 건전지당 5달러의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의 환경 분야 부담금을 크게 분류하면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관련한 부담금, 폐기물과 관련한 부담금, 자연 환경 및 공원과 관련한 부담금, 항만과 관련한 부담금, 그리고 소음과 관련한 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담금을 비교하면 <표 IV-10>과 같다.

<표 IV-10> 한국과 일본의 부담금 비교

	한국	일본
대기 오염 관련	배출부과금	오염 부하량 부과금 특정 부과금
수질 오염 관련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상수도법, 하수도법) 손괴자 부담금 (상수도법, 하수도법) 물 이용 부과금 (4종류) 협의 기준 초과 부담금 총량 초과 부과금 (3종류)	공해 방지 사업자 부담금 특정 부과금 수익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손상 부담금 (하수도) 공사 부담금 (하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금 폐기물 처리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재활용 부과금	폐기물 적정 처리 협력금
자연 환경 및 공원 관련	환경 개선 부담금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용 부담금 원상 회복 예치금 생태계 보전 협력금	수익자 부담금 (자연 환경) 원인자 부담금 (자연 환경) 원인자 부담금 (공원, 녹지)
항만과 관련		항만 환경 정비 부과금 수익자 부담금 (항만) 원인자 부담금 (항만)
소음 관련	소음 부담금	소음 부담금 (항공기)

부담금의 재원운영방식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은 특별회계로 귀속되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기 오염 관련 부담금, 수질 오염 관련 부담금, 폐기물 관련 부담금, 항만 관련한 부담금, 및 자연 환경 및 공원 관련 부담금으로 나누어 일본의 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대기 오염 관련 부담금

대기오염 관련 부담금에는 오염 부하량 부과금, 특정부과금과 공해방지사업자부담금이 포함되는데, 이 중 오염 부하량 부과금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부과되며, 특정부과금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그리고 공해방지사업자부담금은 대기나 수질만이 아니라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 가) 오염 부하량 부과금

일본의 오염 부하량 부과금은 ‘공해건강피해보상에관한법률’ 제52조 및 이에 근거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관련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다.

‘공해건강피해보상에관한법률’ 제52조에서는 ‘대기오염방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매연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게 매연에 의해 생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오염 부하량 부과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도도부현 (제1종 지역: 41개)이 오염 부하량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대기오염방지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과대상은 1987년 4

월 1일 기준으로 제1종 지역에서는 최대배출가스량이 5,000m<sup>3</sup>N/h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최대배출가스량이 1,000m<sup>3</sup>N/h 이상인 유황산화물(SO<sub>x</sub>)을 포함하는 매연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다.

이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공해건강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매연이 발생하는 시설의 종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과거에 발생시킨 매연에 대한 부과액과 현재분을 합하여 부과하고 있다. 현재분 부과금액은 전년도의 유황산화물(SO<sub>x</sub>)의 배출량에 매년 정령으로 현재분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과거분 부과금액은 1987년의 경우 1982년부터 1986까지의 유황산화물(SO<sub>x</sub>)의 누적 배출량에 매년 정령으로 정하는 과거분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결국 전체 부과금은 이 두 부과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 나) 특정부과금

특정부과금은 공해건강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근거하여 해당 도도부현(제2종 지역: 5개-新사, 富山, 島根, 宮崎, 儼兒島)에서 부과하고 있다. 동법 제 62조에서는 대기오염방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매연발생시설, 대기오염방지법 제17조 1항에 규정한 특정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법 제2조 2항에 규정한 특정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특정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부과금의 부과대상은 결국 오염 부과량 부과금의 부과대상과 수질오염방지법 제2조의 2항에서 규정한 특정시설 설치자인데, 여기서 특정시설이란 (1) 정령에서 정한 카드뮴 등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나 (2) 정령에서 정한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특정부과금의 부과 목적은 오염 부과금과 동일하며, 부과요율은 해당 5개 지역에서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량 등을 고려

하여 정령으로 정하고 있다.

#### 다) 공해방지사업자부담금

이 부과금은 공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공단체가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제2조의 2에 근거하여 공해방지사업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공해를 발생시켰던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공해방지사업이란 (1) 공장 또는 사업장 주변 지역의 녹지 및 기타 시설에 대한 관리 (2) 하천, 호수와 항만, 그리고 기타 공공수역에서의 공해 원인 물질의 제거나 도수사업 (3) 공해원인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업용지 또는 농업용 시설 다이옥신류에 오염된 토지에 대한 객토사업이나 시설개축사업 (4) 공장 또는 사업장 주변지역의 주택이전사업 등을 의미한다.

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환경기본법 제2조 3항에 해당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의 오염, 소음, 진동, 지반의 침하 등의 공해를 발생시켜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이다.

이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1) 공해방지사업의 종류나 사업규모 (2) 공해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종류, 규모, 공해 배출량 및 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공해방지 사업비 사업자 부담법’ 제5조) 또한 동법 제15조에서는 공해방지사업비부담심의회를 통해 비용부담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시행자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공해방지사업비부담심의회를 통해, 그리고 시행자가 도도부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기본법 제43조에 규정된 도도부현의 환경보전심의회를 통해, 시행자가 시정촌장인 경우에는 환경기본법 44조에 규정된 시정촌의 환경보전 심의회를 통해, 그리고 시행자가 지방공공단체장 중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조례로 규정한 심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금의 수입은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제11조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 2) 수질 오염 관련 부담금

수질 오염과 관련한 일본의 부담금 제도로써 수익자부담금(하수도), 오염원인자부담금(하수도), 손상부담금(하수도), 그리고 공사부담금(하수도)을 소개한다.

### 가) 수익자부담금 (하수도)

이 부담금 제도는 국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도시계획법 75조에 근거하여 하수도 사업으로 인해 수익을 받은 하위 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도시계획법 75조에서는 국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근거에 기초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가 도도부현에, 그 주체가 도도부현인 경우에는 도도부현이 시정촌에 부과하고 있다.

### 나) 오염원인자부담금(하수도)

이 부담금은 시정촌의 공공하수도 관리자가 하수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수질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또한 이미 배출된 오염으로 인해 특정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그 납부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질오염 물질을 해당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18조의 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 관리자는 공해건강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1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부과금에 관한 동법 6조에서

정한 수질오염 물질을 해당 공공하수도에 배출한 자에게 해당 특정부과금의 납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과금의 부과대상은 수질오염 물질을 해당 공공하수도에 배출한 자이다.

부과요율은 납부해야 하는 특정 부과금의 액수에 전체 수질오염 원인물질의 배출량 대비 해당 시설의 수질오염 원인물질 배출량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다.

#### 다) 손상부담금(하수도)

이 부담금은 해당 시정촌의 공공하수도 관리자가 하수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 시설을 손상시킨 자에게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하수도법 제18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시설을 손상시킨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공사부담금(하수도)

이 부담금은 해당 시정촌의 공공하수도 관리자가 하수도법 제19조에서 공공하수도 시설을 증축해야 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하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19조에서는 정해진 양 이상의 하수가 배출되어 공공하수도를 증축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필요를 발생시킨 한도 내에서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하수도를 배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를 증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관리자는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계획된 하수량의 5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다.

## 3) 폐기물 적정 처리 협력금

폐기물과 관련한 일본의 부담금으로 폐기물 적정 처리 협력금이 있다. 폐기물 적정 처리 협력금은 기금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센터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과 관련한 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는 제도이다. 폐기물처리및청산에관한법률 제16조의 2호, 4호 및 제5호에 정해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처리및청산에관한법률 15조의 7호에서는 이 자금을 해당 사업자로부터 각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다.

이 협력금의 부과대상은 처분위탁배출사업자, 중간처리업자, 자기사업장에서 직접 폐기 처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위탁배출사업자와 중간처리업자에게는 처분하도록 위탁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부담금이 징수되며, 자기사업장에서 직접 폐기 처분하는 사업자에게는 법인세 납부시, 폐기물의 종류와 량을 신고하도록 하여 그 종류와 양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 4) 항만 관련 부과금

여기에서는 항만에서의 환경과 관련한 부과금으로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원인자부담금(항만), 그리고 수익자부담금(항만)을 소개하고 있다.

## 가)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이 부담금은 항만관리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항무국)가 항만의 환경을 정비하고 보존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항만 구역 내의 공장이나 사업장에게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부담금은 항만

법 제43조의 5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5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항만법 제32조의 5호에서는 항만의 환경을 정비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업들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① 항만공사의 완료일 현재 부담구역 내에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담 구역 내에 있는 부지(수면을 포함)의 면적의 합계가 1만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자 또는 ② 공사완료일 후 10년 내에 그 부지면적의 합계가 1만평방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사업장이다. 단 항만관리자가 공익 등의 이유로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단체 및 그 이외의 자나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외한다.

이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동법 시행령 15조의 5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 (단 항만관리자가 공사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에 두 가지 비율 중에서 하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항만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① 공사의 완료일 현재 부담구역 내에 있는 전체 사업장의 부지 면적의 합계에서 해당 사업장의 면적의 비율 또는 ② 항만공사 완료일 후 10년 동안 변화된 공장 부지면적 비율을 고려한 위의 비율을 적용한다.

#### 나) 원인자부담금(항만)

이 부담금은 항만관리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항무국)가 항만관리자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요구되는 항만 공사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 부담금은 항만의 환경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만법 제43조의 3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요율은 지방공공

단체의 조례로 또는 향만관리자가 향무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공 단체의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수익자부담금(향만)

이 부담금은 향만관리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향무국)가 행하는 공사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그 공사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향만법 제43조의 4에서는 향만공사로 현저하게 수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향만공사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부담금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 부과요율은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또는 향만관리자가 향무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 5) 자연환경 및 공원 관련 부과금

여기에서는 자연환경의 개선 또는 공원과 관련한 부과금으로 수익자부담금(자연환경), 원인자부담금(자연환경), 그리고 원인자부담금(공원녹지)을 소개하고 있다.

#### 가) 수익자부담금(자연환경)

이 부담금은 지방공공단체가 자연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수익자에게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환경보전법 제38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자연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부담금은 이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국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연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그 수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과요율은 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 나) 원인자부담금 (자연환경)

이 부담금은 지방공공단체가 자연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자연을 보존하는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발생시킨 자에게 발생시킨 비용의 한도 내에서 자연을 보존하는 사업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부담금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

이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자연을 훼손하여 자연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 그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 다) 원인자부담금(공원녹지)

이 부담금은 공원관리자(지방공공단체, 국토교통성)가 공원과 관련한 공사 이외의 행위로 공원을 손상시켜 공원을 복구하거나 또는 공원의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유발한 자에게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도시공원법 제13조에서는 공원을 손상시킨 행위 등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비용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공사 또는 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부담

금은 이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사용자 요금이나 원인자 요금과 같은 형태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직접적인 규제 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정해진 기준을 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Act의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Vehicular Emission) Regulation의 제5조에서는 보이는 매연을 배출하는 자동차(제19항),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동차(제20항), 정제 이외의 이유로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제21항)는 유죄이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반시에는 2천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그리고 2회 위반시에는 5천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의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Air Impurities) Regulation에서도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대기오염 배출기준, 평가기준, 예외조항 등을 정한 후에 제7항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유죄이고, 1만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추가 위반시에는 매일 3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는 요금이라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직접 규제와 벌금에 환경 정책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부담금과 관련한 두 번째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허가권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정의 자료를 구비하고 3년간 유효한 허가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허가권을 발급하는데 허가권의 형태로 90싱가포르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자도 Cattle Act의 Cattle

Regulation에 따라 사육하고자 하는 소의 마리 수에 따라 매년 30싱가포르달러에서 150싱가포르달러까지의 부담금으로 허가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로 허가권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이 전체 부담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11>은 싱가포르에서 세수와 부담금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2004년도의 경우 환경과 관련한 총 수입은 7억 5,730만 싱가포르달러이며, 이 중 세금의 형태로 거둬들인 세수가 1억 6,900만 싱가포르달러이고 부담금의 형태로 거둬들인 수입이 5억 8,830만 싱가포르달러여서 부담금의 형태로 거둬들인 수입이 전체 환경 분야 수입의 7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부담금의 형태로 거둬들인 수입 중에서 절반 이상이 허가권을 판 수입으로서 액수로는 2억 9,750만 싱가포르달러이다.

<표 IV-11> 싱가포르의 세수와 부담금의 규모

(단위: 백만싱가포르달러)

년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세수	21,551.1	22,623.5	25,959.3	24,172.4	21,502.3	21,594.2	24,570.5	
부담금	3,152.3	4,563.8	5,718.1	4,133.6	3,805.0	3,759.1	3,607.8	
환경 분야	수입	412.9	479.1	541.3	738.0	743.4	750.2	757.3
	세금	0	0	0	178.6	165.5	168.0	169.0
	부담금	412.9	479.1	539.4	559.4	577.9	582.2	588.3
	허가권	208.3	237.9	252.2	283.0	281.2	291.3	297.5
	요금	141.1	170.8	191.0	195.8	201.5	192.5	194.8
기타	63.6	70.3	96.1	80.6	95.3	98.5	96	

싱가포르에서는 2003년도의 경우 환경과 관련하여 14억 9,800만 싱가포르달러가 환경관련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이중 3,300만 싱가포르달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1억 1,820만 싱가포르

포르탈러가 폐기물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9,300만 싱가포르달러가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해, 그리고 6억 9,4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이 하수의 배출과 처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

싱가포르에서 대기오염과 관련한 부담금은 그 액수가 매우 적다. 여기에서는 그 비중이 가장 큰 수질 관련 부담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에서 상수도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세 종류의 부담금이 있다. 우선 3년간 유효한 상수도 공급 허가를 받기 위한 부담금이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상수도를 공급하려는 자는 공급 허가권(Water Service Plumber Licence)을 받아야 되며, 3년간 유효한 이 허가권을 받기 위한 비용이 90 싱가포르달러이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상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부담금이 있는데, 부유물 요금과 위생 요금이다. Public Utility Board는 Sanitary Appliances and Water Charges Regulation에 기초하여 하수도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유물 요금과 위생 요금이라는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들 요금의 가장 큰 특징은 상수도의 사용량에 연동하여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표 IV-12>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싱가포르에서 수도와 관련한 요금, 세금 및 부담금의 요율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우선 세제곱미터당 117센트 또는 140센트의 수도 요금을 징수된다. 그리고 물을 절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의 30% 또는 45%가 수도세로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세제곱미터당 30센트 또는 60센트의 부유물 요금(Waterborne Fee)이 부과되고, 월 3 싱가포르달러의 위생요금(Sanitary Application Fee)이 부과된다.

&lt;표 IV-12&gt; 싱가포르의 수도 관련 요금, 세금, 및 부담금 요율체계

(단위: m<sup>3</sup>, m<sup>3</sup> 당 센트, %, m<sup>3</sup> 당 센트, 달러)

	한달 사용량	수도 요금	수도세	부유물 요금	위생 요금
국내용	40 미만	117	30	30	3
	40 이상	140	45	30	
국제용		117	30	60	

주: 1. 수도세는 수도 요금의 몇 %로 부과됨.

2. 위생요금은 한달 정액으로, 수도 요금과 부유물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됨.

자료: www.pub.gov.sg.

싱가포르에서는 또한 하수배출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먼저 Public Utility Board에서 운용하는 하수관에 하수를 배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화공약품 등과 같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나서, 이 규정을 지키는 하수에 대하여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 따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리터당 400에서 600밀리그램까지인 경우에는 세제곱 미터당 21센트로부터 리터당 3,800에서 4,000밀리그램까지인 경우에는 378센트까지 다양한 요율의 하수배출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 라. 환경 관련 재정의 국제 비교

환경과 관련한 세금과 부담금의 규모를 국제 비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국가마다 세금과 부담금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세금과 부담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담금으로 징수되는 항목이 환경세가 도입된 일부의 국가에서는 세금의 형태로 징수되기도 하고 또한 다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보다는 직접 규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부담금을 징수하고 중앙정부가 부담금의 종류 및 규모를 집계하지 않아 다른 나라들에서 부담금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담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규모가 미미한 일부의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별로 부과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의 종류 및 요율에 있어서 차이가 많으며, 연방정부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따로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서 환경과 관련한 세금과 부담금의 규모를 국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과 부담금을 포함하는 모든 환경 관련 재정의 규모에 대하여 국제 비교를 하고, 그 중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국제 비교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부담금의 규모에 집계 없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하지 못하고 대신에 접근 가능한 자료들만을 이용하여 환경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를 외국과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세입의 측면에서는 OECD가 EU와 더불어 구축한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의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과 관련한 세수에 대해서 국제비교를 하고자 한다. 또한 재정 지출의 측면에서는 OECD의 국민계정보통신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환경 관련 재정지출의 규모를 외국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에서는 정부의 재정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의 원래 취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 1) 세입의 측면에서 환경 관련 재정의 국제비교

OECD가 EU와 함께 구축한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한 세금과 부담금의 규모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자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담금의 규모에 대해 집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세금의 형태로 거둬들인 환경 관련 재정에 대한 자료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의 국제비교라기보다는 환경과 관련한 세수의 국제비교를 하고자 한다.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에서는 환경 관련 세금에 에너지나 교통과 관련한 세금을 포함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오존의 발생, 폐기물 관리, 소음, 그리고 수질, 토양, 산림, 생물의 다양성, 및 야생 동물이나 어류의 보존과 관련된 세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68)</sup>. 이런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의 정의에 포함되는 우리나라의 세목은 휘발유세 등과 같이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들이 대부분이다. <표 IV-13>과 [그림 IV-1]은 이 자료에서 집계된 OECD 국가들의 환경 관련 세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

68) [http://www.oecd.org/document/29/0,2340,en\\_2649\\_34295\\_1894685\\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29/0,2340,en_2649_34295_1894685_1_1_1_1,00.html)

&lt;표 IV-13&gt; GDP 대비 환경 관련 세수비중

(단위: 백만달러, 십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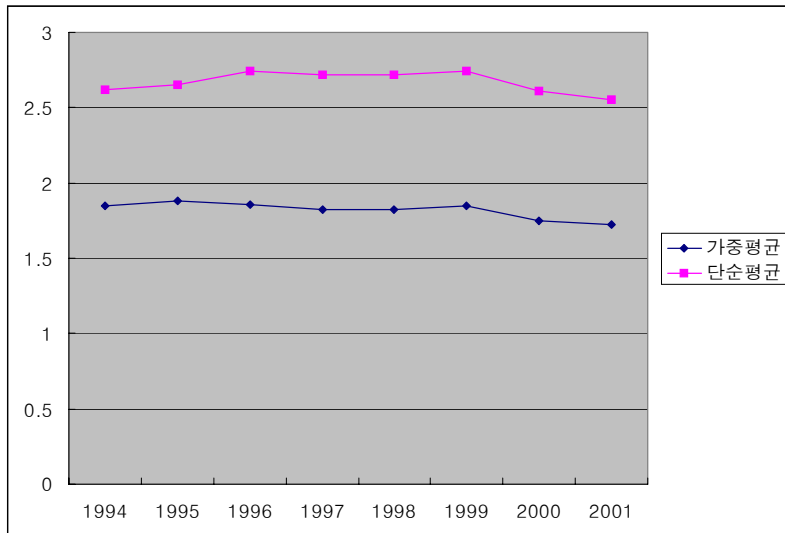
	1994년도			2001년도		
	환경 관련 세수	GDP	비율	환경 관련 세수	GDP	비율
호주	8,954.7	346.9	2.58	7,122.3	368.9	1.93
오스트리아	4,450.1	195.9	2.27	5,687.9	189.2	3.01
벨기에	5,081.0	229.6	2.21	5,148.3	227.0	2.27
캐나다	9,394.6	549.4	1.71	9,501.9	716.7	1.33
체코	1,280.9	39.7	3.23	1,675.6	57.2	2.93
덴마크	6,056.7	148.9	4.07	7,485.9	159.3	4.70
핀란드	2,684.1	99.8	2.69	3,670.5	121.2	3.03
프랑스	33,379.1	1,351.4	2.47	29,261.3	1,317.5	2.22
독일	51,718.1	2,091.0	2.47	47,690.2	1,849.3	2.58
그리스	3,961.8	100.0	3.96	2,956.3	116.9	2.53
헝가리	1,230.9	52.9	2.33	1,411.6	51.8	2.73
아이슬란드	172.4	6.3	2.74	190.1	7.6	2.50
아일랜드	1,777.9	54.6	3.26	2,409.8	102.2	2.36
이탈리아	36,727.3	1,025.1	3.58	31,932.9	1,092.3	2.92
일본	79,874.8	4,928.9	1.62	72,163.3	4,135.5	1.74
한국	8,381.4	402.5	2.08	14,544.7	427.2	3.40
룩셈부르크	521.9	14.6	3.57	563.1	19.7	2.86
멕시코	7,683.9	420.8	1.83	10,832.0	617.3	1.75
네덜란드	11,509.9	337.5	3.41	13,999.5	383.2	3.65
뉴질랜드	867.0	52.2	1.66	812.7	51.8	1.57
노르웨이	4,265.9	122.9	3.47	4,987.2	163.4	3.05
폴란드	1,650.1	92.6	1.78	3,440.6	176.4	1.95
포르투갈	3,307.5	88.1	3.75	3,226.4	109.8	2.94
슬로바키아	445.0	14.5	3.07	420.8	20.5	2.05
스페인	11,159.6	483.9	2.31	10,977.6	581.8	1.89
스웨덴	6,045.6	205.8	2.94	6,145.7	219.4	2.80
스위스	5,291.2	261.3	2.02	5,398.9	245.9	2.20
터키	1,989.3	130.7	1.52	5,518.3	145.6	3.79
영국	29,491.6	1,020.5	2.89	41,068.1	1,439.3	2.85
미국	78,630.4	6,722.9	1.17	95,417.2	9,969.9	0.96
가중평균			1.94			1.78
단순평균			2.62			2.55

자료: OECD,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



추세에 있다.

[그림 IV-2] OECD 국가의 환경 관련 세수의 GDP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OECD,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

[그림 IV-3]은 OECD 국가들에서 휘발유 가격과 소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9년 이후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휘발유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 OECD 국가의 휘발유 가격 및 휘발유 소비 추이



자료: OECD,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

이와 같이 유류에 대한 소비 증가의 둔화는 유류 관련 세수의 완만한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며, 휘발유 등의 유류 관련 세수가 전체 환경과 관련한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결국 GDP 대비 환경 관련 세수의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관련 세수의 GDP 대비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류와 관련한 세수가 다른 OECD 국가들에서와는 달리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IV-14>와 [그림 IV-4]는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세의 추이와 휘발유세가 전체 환경과 관련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휘발유세가 환경과 관련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다른 OECD 국가들에서와는 달리 환경 관련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IV-14> 우리나라 휘발유세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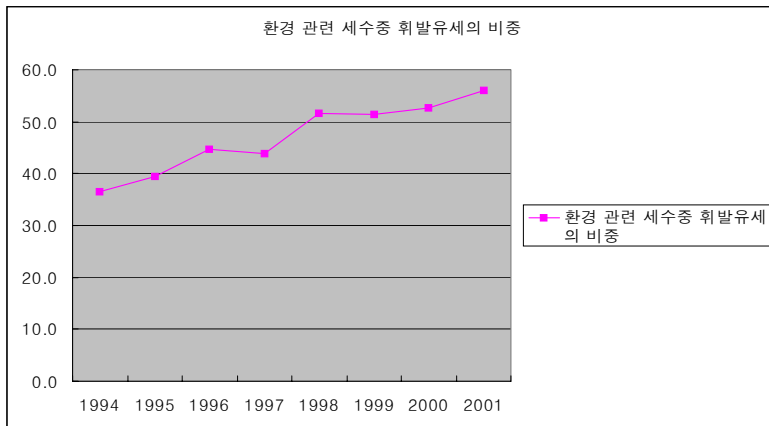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휘발유세	3,058	4,371	5,997	5,831	4,640	6,104	7,431	8,160
환경 관련 세수	8,381	11,067	13,439	13,329	8,977	1,1874	14,136	14,545
비중	36.5	39.5	44.6	43.7	51.7	51.4	52.6	56.1

자료: OECD,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

[그림 IV-4]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세수 중 휘발유세의 비중

(단위: %)



자료: OECD,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

<표 IV-15>와 [그림 IV-5]는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에 따라 환경과 관련한 세수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중은 1994년도의 경우 10.02%이었으며 2001년도에는 12.5%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세수가 전체 재정에 기여한 비중은 OECD 국가들의 가

중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5> 환경 관련 세수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달러, %)

	1994년도			2001년도		
	환경 관련 세수	전체 재정	비중	환경 관련 세수	전체 세수	비중
호주	8,954.7	99,463	9.0	7,122.3	110,861	6.4
오스트리아	4,450.1	84,880	5.2	5,687.9	85,939	6.6
벨기에	5,081.0	106,613	4.8	5,148.3	103,932	5.0
캐나다	9,394.6	200,533	4.7	9,501.9	251,078	3.8
체코	1,280.9	16,977	7.5	1,675.6	21,978	7.6
덴마크	6,056.7	75,704	8.0	7,485.9	79,324	9.4
필란드	2,684.1	46,611	5.8	3,670.5	55,906	6.6
프랑스	33,379.1	590,831	5.6	29,261.3	592,586	4.9
독일	51,718.1	803,982	6.4	47,690.2	681,374	7.0
그리스	3,961.8	31,290	12.7	2,956.3	43,106	6.9
헝가리	1,230.9	18,644	6.6	1,411.6	20,235	7.0
아이슬란드	172.4	1,920	9.0	190.1	2,779	6.8
아일랜드	1,777.9	19,458	9.1	2,409.8	30,602	7.9
이테리	36,727.3	424,110	8.7	31,932.9	457,863	7.0
일본	79,874.8	1,303,845	6.1	72,163.3	1,128,857	6.4
한국	8,381.4	81,947	10.2	14,544.7	116,027	12.5
룩셈부르크	521.9	6,520	8.0	563.1	8,032	7.0
멕시코	7,683.9	72,542	10.6	10,832.0	116,708	9.3
네덜란드	11,509.9	150,951	7.6	13,999.5	151,424	9.2
뉴질랜드	867.0	19,160	4.5	812.7	17,540	4.6
노르웨이	4,265.9	50,791	8.4	4,987.2	73,497	6.8
폴란드	1,650.1	40,040	4.1	3,440.6	59,338	5.8
포르투갈	3,307.5	28,716	11.5	3,226.4	36,836	8.8
스페인	11,159.6	169,236	6.6	10,977.6	204,581	5.4
스웨덴	6,045.6	100,815	6.0	6,145.7	112,786	5.4
스위스	5,291.2	86,335	6.1	5,398.9	75,041	7.2
터키	1,989.3	29,058	6.8	5,518.3	52,950	10.4
영국	29,491.6	351,389	8.4	41,068.1	536,814	7.7
미국	78,630.4	1,880,031	4.2	95,417.2	2,883,608	3.3

자료: OECD,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



## 2) 환경 관련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박형수)의 「기능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라는 미발표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와 환경 관련 재정지출 규모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OECD가 2004년 9월에 발표한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Vol. IV: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2~2003”에서는 UN이 제정한 국민계정 작성 매뉴얼인 “The SNA 1993”의 기준에 따라 OECD 18개 국가들의 재정지출과 관련한 통계들이 수록되어 있다. “The SNA 1993”에서는 재정지출을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가 그 중의 한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위의 18개 국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기능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박형수, 미발표 논문)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계정’ 자료를 위의 통계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표 IV-16>은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Vol. IV: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2~2003”에 수록된 자료와 본원의 미발표 자료를 합하여 환경보호 분야로 분류되는 재정지출이 총 재정지출이나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16> 환경 보호 관련 재정 지출의 비중

(단위: %)

	한국	OECD 단순평균	호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연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2.6	1.7	0.7	1.5	0.7	2.2	1.2	1.3
명목 GDP 대비 비중	0.7	0.7	0.3	0.7	0.3	1.2	0.6	0.6
	일본	룩셈 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연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4.6	2.8	1.6	1.3	1.3	2.3	0.6	1.4
명목 GDP 대비 비중	1.6	1.2	0.8	0.6	0.6	0.9	0.3	0.6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Vol. IV: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2-2003".

박형수, 「기능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미발표 논문.

우리나라에서 환경보호 분야의 재정지출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OECD 국가들의 단순평균과 같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에서 환경보호 분야의 재정지출이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OECD 국가들의 단순평균인 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국가들 중에서 명목 GDP나 총 재정지출 대비 환경보호 분야의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이며, 반면에 스웨덴이나 호주 등이 그 비중이 낮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 2. 개발·교통관련 부담금

본절에서는 개발, 교통과 관련한 해외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조사대상국가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와 교통관련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영국, 스위스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다.

전체적으로 이들 국가들의 부담금 제도 운영 특징은 부담금 제도 자체를 적극적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담금은 조세(tax)와 같은 수준으로 여기면서 부담금을 부과할 이유가 있다면 부담금 보다는 조세로서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 제도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대부분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부담금 규모가 체계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은 부담금을 적극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부담금 신설 및 운영에 대해 우리나라의 부담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적 통제 장치는 없다. 따라서 부담금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정부 혹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검증절차 등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부담금 제도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부담금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혹은 지방 자치법(제22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신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국은 주정부의 법에 의해 부담금이 정해지고 이에 근거하여 시(city), 카운티(county) 등에서 부과대상, 부과요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담금 규모가 체계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부담금제도 활용도가 낮고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금 규모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또한, 중앙정부 대신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사후 관리제도가 없는 한 이를 특별히 집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가. 미 국

미국의 개발관련 부담금인 Impact Fee는 아리조나(Arizona)주에서 1982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그 이후 1980년말과 1990년초 여러 주에서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Impact Fee 제도를 시행하는 주는 모두 10개 주이다. 미국에서는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신설에 따른 부담을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여러 가지로 Development Impact Fee, Impact Fee, System Development Charges, Public Works Fee 등이 있다. 부과 및 징수는 대부분 시(City) 혹은 County에 의해 이루어지며, 부담금의 법적근거는 주 법(State Law)에 근거하여 시(City)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에서 지자체에 부여한 권한에 의해 부과하기도 한다.

부과목적은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신설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과요율은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신설비용을 기초로 산정되며, 징수된 재원은 해당 목적에 사용된다.

## 1) 미국 부담금의 특징

미국의 부담금 특징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담금을 통해 징수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건설·교통과 관련된 부담금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 혹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같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재산세수입 혹은 일반회계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부담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이런 부담금 제도를 시행하는 주는 모두 10개 주로 전체의 절반이 안 되며,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에 속한 일부 시 혹은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담금의 사용처는 부담금을 신설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부담금 명칭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찰시설 영향부담금, 소방시설영향부담금, 학교시설영향부담금 등 해당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될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 2) 분야별 부담금

### 가) 상수도영향부담금(Water Impact Fee)

상수도영향부담금은 주법(State Law)에 근거하여 시(City)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수도영향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주거단위당 식수공급에 드는 시설비용과 월별 사용료 고지를 통해 부담하게 되는 시설비용을 기초로 산정된다. 부과대상은 새로운 지역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상수도영향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주거단위당 식수공급에 드는 시설비용과 월별 사용료 고지를 통해 부담하게 되는 시설비용을 기초로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플로리다 주의 경우 신규개발에 소요되는 상수도시설 설치비용은 주거단위당 1일사용식수량(GDP)과 단위당 상수도시설 건설비용(C)을 곱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신규입주자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앞의 상수도 시설 설치비용에서 장래 사용료에 포함되어 지불될 시설비용분의 할인된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상수도영향부담금 } i = \text{GDP}_i \times C - \text{Credits}_i$$

GDP<sub>i</sub> : 주거단위당 1일 사용식수량(갤론)

C : 1갤론의 식수공급에 드는 상수도시설 건설비용

Credits : 장래 사용료에 포함돼 지불될 시설비용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 다른 구체적인 예로 City of Ocoee에서는 상수도 영향부담금으로 966달러(ERU: equivalent residential unit)<sup>69)</sup>를 징수하고 있다. 징수된 상수도영향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주거단위당 식수공급에 드는 시설 비용에 사용된다.

#### 나) 하수도영향부담금(Sewer Impact Fee)

하수도영향부담금은 주법(State Law)에 근거하여 시(City)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시(city) 등 지자체이며 새로운 지역 개발자를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과요율에서 플로리다 주의 경우 하수도시설 설치비용도 상수도의 경우와 같이 통상적으로 1일 하수배출량을 기초로 산정되지만, 여기서는 다른 척도로서 1일 하수처리량을 300갤론으로 규정한 등량주거단위(ERU: equivalent residential units)를 사용하고 있다. 하수도영향부담금은 ERU에 의한 하수처리량에 단위당 시설설치비용(C)을 곱해 신규개발에 소요되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을 구한 후, 장래 월별 사용료에 포함되어 지불될 시설비용분의 할인된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하수도영향부담금 } i = \text{ERU} \times C - \text{Credits}$$

ERU : 등량주거단위(1일 300갤론의 하수처리단위)

C : ERU 당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Credits : 장래 사용료에 포함돼 지불될 시설비용의 할인된 현재가치

69) 등량주거단위(ERU)는 평균적인 1가구(3인)의 주거단위가 배출하는 하수처리량(300갤론)을 1.0으로 보는 척도임.

또 다른 구체적인 예로 City of Ocoee에서는 하수도영향부담금으로 2,865달러/equivalent residential unit를 징수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된다.

#### 다) 공원영향부담금(Park/Recreation Impact Fee)

공원영향부담금은 주법(State Law)에 근거하여 시(City)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원설치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시(city) 등 지자체이며, 새로운 지역 개발자가 부과대상이다.

부과요율에서 플로리다 주의 경우, 공원영향부담금은 통상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수를 근거로 산정하며, 부담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은 해당 지방정부의 공원유형별 설치기준, 신규 개발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공원소요, 1인당 또는 주거 단위당 공원시설 설치비용 등이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공원영향부담금 } i = [P(P_i)(CP)(1-SG)] \times [1 - (UD/BYF)(PCF)] - [(DS \times ATVi)(FCF)]$$

P : 신규주민 1인당 소요되는 추가적인 공원면적

P<sub>i</sub> : i 용도에서의 주거단위당 평균 가구원 수

CP : 1에이커의 공원시설 설치비용

SG : 주정부 등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공원시설비용의 부분

UD : 미개발토지가 현재의 과표에서 차지하는 비율

BYF : 공채상환 연수 요인

PCF : 공채상환을 위해 지불된 과거 재산세수입의 현재가치 요인

DS : 공채상환에 활용된 재산세율

ATVi : 용도유형별 평균 과표금액 또는 특정 용도 i의 과표 금액

FCF : 공채상환에 이용가능한 장래 재산세수입의 현재가치  
요인

또 다른 구체적인 예로 City of Ocoee에서는 공원영향부담금으로 500달러/residential dwelling unit를 징수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공원설치비용으로 사용된다.

라) 학교시설영향부담금(School Impact Fee)

학교시설영향부담금은 주법(State Law)에 근거하여 시(City)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건립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시(city) 등 지자체이며, 새로운 지역 개발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요율에서 학교의 경우 여러 가지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건립되므로 학교시설에 대한 영향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가용자금, 재산세수 및 기타 수입원으로 충당한 후 부족한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즉, 주택단위당 공립학교 자녀수는 단위 및 학생유형별로 배분되고, 학생 1인당 총비용은 건축비와 부지비의 합계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 수치를 각 주택단위 유형별로 발생하는 학령별 학생수로 곱하여 개발사업의 단위당 총비용을 산출한다. 산출된 금액에서 각 주택단위당 외부가용자금(주정부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단위당 학교영향부담금의 기초가 된다.

또 다른 구체적인 예로 City of Ocoee에서는 학교시설영향부담금으로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학교 건립 재원으로 사용된다.

- 2,8280달러/single-family
- 1,907달러/multi-family
- 2,329달러/mobile home

마) 경찰시설 영향부담금(Police Impact Fee)

경찰시설 영향부담금은 주법(State Law)에 근거하여 시(City)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시설 신설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시(city) 등 지자체이며, 새로운 지역 개발자가 부과 대상이다. 부과요율은 거주 및 비거주(상업용)지역의 일정 허가면적에 근거한다.

또 다른 구체적인 예로 City of Ocoee에서는 경찰시설 영향부담금으로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경찰시설 신설에 사용된다.

- 거주지역 \$0.086 per square feet,
- 비거주지역(상업지역 등) \$0.097 per square feet
- 기본적으로 2,000 square feet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면적의 가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바) 소방시설영향부담금(Fire Impact Fee)

소방시설영향부담금은 주법(State Law)에 근거하여 시(City)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신설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시(city) 등 지자체이며 새로운 지역 개발자를 부과 대상으로 한다. 부과요율은 거주 및 비거주(상업용)지역의 일정 허가면적에 근거한다.

또 다른 구체적인 예로 City of Ocoee에서는 소방시설 영향부담금으로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소방시설 신설 재원으로 사용된다.

- 거주지역 \$0.182 per square feet,

- 비거주지역(상업지역 등) \$0.284 per square feet

사) 홍수배출시설부담금(Storm Drainage Utility Fee)

홍수배출시설부담금은 주법(State Law)에 근거하여 시(City)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홍수 배출시설 유지, 신설 및 확장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거주자 및 사업자이며, 시(city) 등 지자체가 부과기관이다. 부과요율은 총비용에 근거하여 일정부분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홍수 배출시설 신설 재원으로 사용된다.

아) Special Assessments/Local Improvement Districts

Special Assessments/Local Improvement Districts는 주법(State Law)에 근거하여 시(City)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개선 및 도로보수, 하수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 신설 혹은 개선을 통한 이익으로 인근의 거주자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들에게 혜택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부과시키고 있다. 부과기관은 시(city) 등 지자체이며, adjacent property owners 거주자 및 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과요율은 총비용에 근거하여 일정부분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자) Transportation Utility Fee (또는 Street Utility Fee)

미국의 교통관련 부담금인 Transportation Utility Fee(Street Utility Fee)는 주법(State Law)에 근거하여 시(City)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부담금은 지방도로의 개보수 혹은 신설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거주자 및 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시(city), County 등 지자체이며, 부과요율은 필요한 재정수요에 근거하여 특정지역의 평균통행횟수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마다 필요한 재정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레곤 주의 경우 1.00달러~4.48달러/single-family house이며, 상가 11.00달러~141.31달러/10,000 square foot, fast food 식당 3.00달러~71.48달러/2,000 square foot, 산업용 건물 34.07달러~156.00달러/60,000 square foot, 학교(600명) 22.50달러~183.90달러/30,000 square foot를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방식은 대부분 매달 징수하는 수도사용료와 함께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도로의 개보수 혹은 신설비용 충당 등 교통(transportation) 목적에만 사용된다. 일부 주에서는 모든 거주자에게 일정하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이미 주정부가 징수하는 재산세(property tax)와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로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다.

#### 차) 도로영향부담금(Transportation/Road Impact Fee)

미국의 교통관련 부담금인 도로영향부담금(Transportation/Road Impact Fee 혹은 Transportation System Development Charges)은 주법(State Law)에 근거하여 시(City)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새로운 교통시설 개발에 대한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시(city) 등 지자체가 부과기관이다. 부과대상은 신규 지역 개발자이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도로영향부담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 수준의 표준인데, 흔히 지방도로는 미국의 ITE(The Institute of Traffic Engineers)가 개발한, 서비스수준(도로용량)에 따른 6개 등급(LOS A ~ LOS F)의 LOS D의 도로용량을

계획한다. 여기에서 부담금 결정의 표준이 되는 LOS D는 설계속도하에서 정체와 장애로 인한 평균통행속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교통혼잡보다는 나은 상황을 가리키며, LOS D의 도로용량은 평일기준 차선 1마일당 약 8,000대의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도로영향 부담금은 토지이용 유형별로 발생하는 평균통행거리, 1일 평균통행횟수, 도로 차선 1마일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용지취득비 포함), LOS D에서 차선 1마일의 용량, 장래 도로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자동차연료세와 재산세 수입의 할인된 현재가치 등이 반영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도로영향부담금 } i = \text{ADTi} \times 2\text{TLi} \times \text{Cap} \times C - \text{Credits}_i$$

ADTi : 각 이용유형별 1일 평균통행횟수(ITE가 작성)

TLi : 각 이용유형별 평균통행거리(지방교통기관이 작성)

Cap : LOS D에서 차선 1마일의 용량

C : 도로 차선 1마일의 평균건설비용(용지취득비 포함)

Credits : 장래 도로시설 설치비용에 충당될 체세수입의 할인된 현재가치

징수된 도로영향부담금은 도로 등 교통시설 신설에 사용된다.

&lt;표 IV-17&gt; Road Impact Fees 부과요율

LAND USE	UNIT OF MEASUREMENT Gross Leasable Area(GLA)	NET IMPACT FEE
RESIDENTIAL		
Single Family	Dwelling Unit	\$1,865.97
Apartment	Dwelling Unit	\$1,292.73
Condominium/Townhouse	Dwelling Unit	\$1,142.59
Mobile Home	Dwelling Unit	\$937.86
LODGING		
Hotel-Motel	Occupied Room	\$1,618.93
OFFICE		
Less than 100,000 SF	1,000 SF GLA	\$2,977.60
100,000 to 200,000 SF	1,000 SF GLA	\$2,307.67
Greater than 200,000 SF	1,000 SF GLA	\$2,049.77
Medical-Dental Office Building	1,000 SF GLA	\$6,151.89
RETAIL		
Less than 50,000 SF	1,000 SF GLA	\$4,359.57
50,000 to 100,000 SF	1,000 SF GLA	\$2,885.07
100,000 to 199,999 SF	1,000 SF GLA	\$3,031.10
200,000 to 299,999 SF	1,000 SF GLA	\$3,404.55
300,000 to 399,000 SF	1,000 SF GLA	\$3,472.09
400,000 to 499,999 SF	1,000 SF GLA	\$3,450.15
500,000 to 999,999 SF	1,000 SF GLA	\$3,776.35
100,000,000 to 1,250,000 SF	1,000 SF GLA	\$3,920.93
Greater than 1,250,000,000 SF	1,000 SF GLA	\$3,776.19
Convenience Market with Gas Pumps	Fueling Position	\$8,851.12
Gasoline/Service Station	Fueling Position	\$3,299.55
Restaurant, Fast Food	1,000 SF GLA	\$12,922.02
Restaurant, High Turnover (Sit Down)	1,000 SF GLA	\$12,174.65
Restaurant, Quality	1,000 SF GLA	\$13,249.23
New Car Sales	1,000 SF GLA	\$4,991.75
Pharmacy/Drugstore	1,000 SF GLA	\$4,286.31
Quick Lubrication Vehicle Shop	Servicing Positions	\$783.00
Wholesale Tire Store	Service Bays	\$1,016.62
SERVICES		
Drive-In Bank	1,000 SF GLA	\$4,886.08
Walk-In Bank	1,000 SF GLA	\$2,882.90
INSTITUTIONAL		
Day Care Center	1,000 SF GLA	\$4,170.82
MEDICAL		
Hospital	1,000 SF GLA	\$2,943.32
Nursing Home	1,000 SF GLA	\$279.42
INDUSTRIAL		
Light Industrial	1,000 SF GLA	\$1,565.01
Manufacturing	1,000 SF GLA	\$857.73
Mini-Warehousing	1,000 SF GLA	\$387.54
Warehousing	1,000 SF GLA	\$1,113.70
PORT AND TERMINAL		
Truck Terminal	1,000 SF GLA	\$2,211.68

## 3) 부담금 비교

우리나라와 미국의 건설관련 부담금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공공시설 부담금이 대부분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 혹은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과 부과 목적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혼잡통행료 등의 부담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개발부담금의 일종으로 교통시설 건설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주, 카운티, 혹은 시)별로 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수수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혼잡통행료 성격의 징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 나. 일본

## 1) 일본 부담금의 특징

일본의 부담금 특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에 수익자 혹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수익의 범위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적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문화된 경우가 많다.

일본의 수익자부담금 관련 규정은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이익의 의미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부과할 근거 이익과 부과 대상 자체 등이 불분명하여 수익자부담금 규정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정부와 주민의 인식 부재로 부담금 부과에 대해 대다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비용이 상당히 높아

지게 된다. 이러한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국가나 공공단체로서는, 다소의 수익자부담금을 받느니 전액 공공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의 반발이 강한 수익자부담금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일 수 없게 된다.

일본에서는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등에 혹은 기타 보조금이 지급될 때 법률의 규정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나, 부담금에 대해서는 없다.

## 2) 분야별 부담금

### 가) 치수특별회계 관련 부담금

일본의 건설관련 부담금 중 치수특별회계로 귀속되는 부담금에는 겸용공작물비용, 원인자부담금, 부대공사비용, 수익자부담금, 특별수리사용자부담금,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금,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비용 등이 있다.

#### (1) 겸용공작물비용

치수특별회계 관련 부담금 중 겸용공작물비용은 일본의 하천법 제 66조에 의거하여, 하천 관리 시설이 다른 공작물 효용을 겸하는 경우, 해당 하천 관리 시설의 관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겸용공작물비용의 부과기관은 해당하천이 위치한 도도부현의 하천 관리자이며, 국토교통대신, 도도부현,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협의하여 부담)를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치수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2) 원인자부담금(하천법)

치수특별회계 관련 부담금 중 원인자부담금(하천법)은 일본 하천법 제67조에 의거하여,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요구되는 하천 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에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해당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며, 해당하천이 위치한 도도부현의 하천관리자가 그 부과 기관으로 되어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치수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표 IV-18> 치수특별회계 예산(2004년)

	세입		세출	
	항목	금액(천원)	항목	금액(천원)
치수계정	· 일반회계 전입	779,520,805	· 하천사업비	452,888,700
	· 개혁추진공공투자사업상환금 등 · 재원 일반회계 전입	47,283,944	· 北海道하천사업비	92,168,000
	· 특정다목적댐건설공사계정 전입	13,760,838	· 하천종합개발사업비	115,214,190
	· 지방공공단체공사비부담금수입		· 北海道하천종합개발사업비	13,805,852
	· 전기사업자등공사비부담금수입	211,205,748	· 수자원개발사업교부금	38,903,105
	· 상환금수입	16,266,623	· 지방사업비	163,269,489
	· 개혁추진공공투자사업자금대부 · 금상환금수입	1,130,223	· 北海道지방사업비	11,429,937
	· 부대공사비부담금수입	19,607,975	· 건설기계정비비	1,244,578
	· 수탁공사비부담금수입	5,791,386	· 北海道건설기계정비비	204,000
	· 전년도잉여금수입	21,132,511	· 離島치수사업비	6,571,000
	· 집수입	4,500,000	· 沖繩치수사업비	7,542,377
		8,415,000	· 도시수환경정비사업비	42,122,600
			· 北海道도시수환경정비사업비	2,377,400
			· 독립행정법인토목연구소운영비	1,339,601
			· 독립행정법인토목연구소시설정비비	112,908
			· 개혁추진공공투자하천사업자금대부금상 · 환시보조	8,739,324
			· 개혁추진공공투자北海道하천사업자금대 · 부금상환시보조	2,965,843
			· 개혁추진공공투자하천종합개발사업자금 · 대부금상환시보조	1,681,334
			· 개혁추진공공투자北海道하천종합개발사 · 업자금대부금상환시보조	274,994
			· 개혁추진공공투자지방사업자금대부금상 · 환시보조	4,611,782
			· 개혁추진공공투자北海道지방사업자금대 · 부금상환시보조	751,034
			· 개혁추진공공투자離島치수사업자금대부 · 금상환시보조	70,330
			· 개혁추진공공투자沖繩치수사업자금대부 · 금상환시보조	513,334
			· 부대공사비	5,463,386
			· 수탁공사비	18,899,164
			· 치수사업공사 제비용	85,457,828
		· 사무비	1,278,736	
		· 산업투자특별회계 전출	1,130,223	
		· 개혁추진공공투자사업상환금 등	47,283,944	
		· 산업투자특별회계 전출	300,000	
		· 예비비		
합계		1,128,615,053	합계	1,128,615,053
특정 다목적 댐 건설 공사 계정	· 일반회계 전입	127,372,025	· 다목적댐건설사업비	140,257,884
	· 개혁추진공공투자사업상환금 등 · 재원 일반회계 전입	3,929,190	· 北海道다목적댐건설사업비	17,570,386
	· 지방공공단체공사비부담금수입	32,443,275	· 沖繩다목적댐건설사업비	10,861,456
	· 전기사업자등공사비부담금수입	28,020,680	· 수탁공사비	8,917,684
	· 수탁공사비부담금수입	9,348,763	· 개혁추진공공투자사업상환금 등	3,929,190
	· 전년도잉여금수입	1,390,000	· 산업투자특별회계 전출	
	· 집수입	95,000	· 공사제비용 등 치수계정 전출	13,760,838
	합계		202,598,933	합계

(3) 부대공사비용

일본의 치수특별회계 관련 부담금중 부대공사비용은 하천법 제68조, 사방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요구되는 하천 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에 요구되는 비용이나 사방공사에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대공사비용의 부과기관은 해당 하천이 위치한 도도부현의 하천관리자이며, 해당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을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치수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표 IV-19> 검용공작물관리비등 부담금

(하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단위: 백만엔)

	1999	2000	2001	2002
전기사업자등공사비부담금수입	21,171	20,157	19,125	19,040
부대공사비부담금수입	9,162	7,845	8,183	7,551
잡수입	4,888	9,192	6,204	12,666

(4) 수익자부담금(하천법)

치수특별회계 관련 부담금 중 수익자부담금(하천법)은 일본 하천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하천 공사에 의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 하천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대신, 도도부현 지사이며, 하천 공사에 의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사람을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치수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하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자부담금도 부담자의 범위, 징수 방법 등에 대해 정하는 시행령·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부담금 부과

가 불가능하다<sup>70)</sup>.

(5) 특별수리사용자부담금

치수특별회계 관련 부담금 중 특별수리사용자부담금은 일본 하천법 제70조의 2에 의거하여, 유수에 전용시설을 신설하거나 또는 확장하여 유수를 점용하는 사람(특별 수리 사용자)에 대해 물 공급 확보 목적에 필요한 비용 및 해당 하천 공사에 의해 설치되는 하천관리시설의 관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특별 수리 사용자이며, 해당하천이 위치한 도도부현의 하천관리자가 부과기관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치수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6)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금

치수특별회계 관련 부담금 중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금은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제2조의 2에 의거하여, 공해방지사업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각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주체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해방지사업시행자이며, 환경기본법 제2조 3항에 해당하는 공해 즉,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소음, 진동, 지반의 침하 등으로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공해방지사업자를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공해방지사업이란 공장 또는 사업장 주변지역의 녹지 및 기타 시설 관리사업, 공해원인물질의 누적,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 호수와 항만 기타 공공수역에서의 사업, 도수사업, 공해원인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업용지 또는 농업용 시설 또는 다이옥신류에 의한 오염토지에 대한 객토사업, 시설개축사업, 하수도와 관련된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설치사업 및 공장 또는 사업장 주

---

70) 국토연구원, 2003, 참조.

변지역의 주택이전사업 등을 말한다.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금의 부과요율은 공해방지사업의 종류에 따른 사업규모, 공해원인시설의 종류 및 규모, 사업에 따른 공해배출량 및 질 등을 고려하여 부담총액을 배분(동법 5조)한다. 비용부담계획은 공해방지사업비부담심의회를 통해 결정(동법 15조)하며 시행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의회를 개최한다.

첫째, 시행자가 국가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공해방지사업비부담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둘째, 도도부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도부현의 환경보전심의회(환경기본법 제43조에 규정된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셋째, 시행자가 시정촌장인 경우에는 환경기본법 제44조에 규정된 시정촌의 환경보전 심의회에서 심의하며, 마지막으로 시행자가 지방공공단체장 중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조례로 규정한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금이 국가에 의해 징수된 것은 치수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징수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 (7) 수도권수 수질보전사업비용

치수특별회계 관련 부담금 중 수도권수 수질보전사업비용은 수도권수수질보전사업 실시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하천 수도권 원수 수질 보전 사업에 부담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국가행정기관장, 지방공공단체장이며, 계획 수도 사업자를 그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치수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 나) 도로정비관련 부담금

일본의 건설관련 부담금 중 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수익자부담금, 원

인자부담금,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공동구건설 및 관리비용, 전선공동구 건설 및 관리비용 등이 있다.

(1) 수익자부담금(도로법)

도로정비관련 부담금 중 수익자부담금(도로법)은 일본 도로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수익자부담금 - 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및 수선 등 도로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비용을 부담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국토교통성, 지방공공단체의 도로관리자이며, 도로에 관한 공사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사람을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모두 도로정비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징수실적은 없다.

IV. 주요국의 준조세 실태 345

<표 IV-20> 도로정비 특별회계 예산(2004년)

세입		세출	
항목	금액(천원)	항목	금액(천원)
· 휘발유세	707,200,000	· 도로사업비	1,739,482,382
· 일반회계 전입	2,335,978,000	· 북해도도로사업비	291,964,000
· 개혁신진공공투자사업상환금등제 원 일반회계 전입	134,176,449	· 離島도로사업비	35,417,000
· 산업투자특별회계 전입	69,634,000	· 沖繩도로사업비	86,535,000
· 지방공공단제공사비부담금수입	639,342,000	· 도로환경정비사업비	633,013,000
· 상환금수입		· 북해도도로환경정비사업비	40,177,000
· 개혁신진공공투자사업자금대부금 상환금수입	97,282,940	· 離島도로환경정비사업비	254,000
· 부대공사비부담금수입	63,288,738	· 沖繩도로환경정비사업비	12,822,000
· 수탁공사납부금수입	46,940,000	· 독립행정법인토목연구소운영비	180,633
· 전년도잉여금수입	44,398,000	· 독립행정법인토목연구소시설정비비	707,200,000
· 잡수입	22,934,000	· 지방도로정비임시교부금	83,956,000
	15,788,000	· 수도권고속도로공단등사업조성비	22,267,000
		· 유료도로정비등자금대부금	69,634,000
		· 도로사업자금대부금	31,034,105
		· 개혁신진공공투자도로사업자금대부금상환시보조	2642,934
		· 개혁신진공공투자북해도도로사업자금대부금상환시보조	23,705,735
		· 개혁신진공공투자거로사업자금대부금상환시보조	1,099,284
		· 개혁신진공공투자북해도가사업자금대부금상환시보조	152,664
		· 개혁신진공공투자離島도로사업자금대부금상환시보조	2,260,335
		· 개혁신진공공투자沖繩도로사업자금대부금상환시보조	2,019,333
		· 개혁신진공공투자北海로사업자금대부금상환시보조	314,441
		· 개혁신진공공투자도로환경정비사업자금대부금상환시보조	
		· 개혁신진공공투자북해도도로환경정비사업자금대부금상환 시보조	69,967
		· 개혁신진공공투자北海로환경정비사업자금대부금상환시 보조	45,241,000
		· 부대공사비	43,288,000
		· 수탁공사비	82,413,581
		· 도로사업공사 제비용	823,419
		· 사무비	61,538,940
		· 산업투자특별회계 전출	134,176,449
		· 개혁신진공공투자사업상환금 등 산업투자특별회계 전출	2,000,000
		· 예비비	
합계	4,176,972,187	합계	4,176,972,187

## (2) 원인자부담금(도로법)

도로정비관련 부담금 중 원인자부담금(도로법)은 도로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의해 필요를 일으킨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 비용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며, 부과기관은 지방공공단체의 도로관리자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모두 도로정비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 (3)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도로정비관련 부담금 중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법 제62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지방공공단체의 도로관리자이며, 도로의 점용에 대해 도로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모두 도로정비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 (4) 공동구건설 및 관리비용

도로정비관련 부담금 중 공동구건설 및 관리비용은 공동구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21조에 의거하여, 공동구의 건설에 소요되는 필요로 하는 비용 및 공동구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 복구 그 외의 관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부담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지방공공단체의 도로관리자이며, 공동구 점용 예정자 및 공동구 점용자를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모두 도로정비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 (5) 전선공동구 건설 및 관리비용

전선공동구 건설 및 관리비용은 전선 공동구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sup>71)</sup>, 제13조<sup>72)</sup>, 제19조<sup>73)</sup>에 의거하여, 전선 공동구 건설

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전선 공동구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 복구 그 외의 관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 부담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지방공공단체의 도로관리자이며, 전선 공동구 점용 예정자 및 전선 공동구 점용자를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모두 도로정비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표 IV-21> 국가 이외의 자 부담금

(단위: 백만엔)

	1999	2000	2001	2002
부대공사비부담금수입	52,148	58,103	49,735	41,627
도로부속물등복구비부담금수입	2,152	2,035	2,130	1,982

다) 항만정비 관련 부담금

일본의 항만정비 관련 부담금에는 원인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직할 공사, 항만환경정비 부담금 등이 있다. 이 중 원인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 항만환경정비 부담금은 환경과 관련된 부담금으로 분류된다.

(1) 직할 공사

항만정비 관련 부담금 중 직할 공사는 항만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중요 항만에 있어 대중교통편리의 증진, 공해발생의 방지 또는 환경정비 모색, 피난항에 있어 대중교통 편리의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공사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주체는 국토교통성이며, 항만관리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 71) 전선 공동구의 점용 예정자의 건설 부담금
- 72) 점용 예정자인 사람 이외의 사람등의 점용 부담금
- 73) 관리 부담금

직할 공사의 부과요율은 특정 중요 항만에 있어서의 수역시설, 외곽 시설 혹은 계류시설 또는 임항 교통시설인 경우 3분의 1, 중요 항만에 있어서의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또는 임항 교통시설인 경우 10분의 4.5, 중요 항만에 있어서의 항만 공해방지시설 또는 항만 환경 정비시설인 경우 10분의 5, 중요 항만에 있어서의 폐기물 매립 호안 또는 해양성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 10분의 7.5, 피난항에 있어서의 수역시설 또는 외곽시설인 경우 3분의 1,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또는 임항 교통시설인 경우 10분의 5로 부과하고 있다<sup>74)</sup>. 징수된 부담금은 항만정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표 IV-22> 항만관리자공사비부담금

(단위: 백만원)

	1999	2000	2001	2002
항만관리자공사비부담금	111,818	99,740	94,227	88,755

74) 항만정비특별회계법 제4조 제2항, 항만법 제43조의 3, 제43조의 3, 제52조.

IV. 주요국의 준조세 실태 349

<표 IV-23> 항만정비특별회계 예산(2004년)

	세입		세출	
		금액(천엔)		금액(천엔)
항만 정비 계정	· 타회계전입	271,044,767	· 항만사업비	224,177,527
	· 개혁추진공공투자사업상환금	5,849,944	· 北海道항만사업비	41,769,500
	· 등 재원 일반회계 전입		· 離島항만사업비	27,235,600
	· 특정항만시설공사비계정 전입	900,088	· 沖繩항만사업비	28,143,105
	· 항만관리자공사비부담금수입	66,582,498	· 개혁추진공공투자항만사업자	3,819,838
	· 상환금수입	7,881,535	· 금대부금상환시보조	
	· 개혁추진공공투자사업자금대	4,234,455	· 개혁추진공공투자離島항만사	262,276
	· 부금상환금수입		· 업자금대부금상환시보조	
	· 수탁공사납부금수입	11,829,260	· 개혁추진공공투자沖繩항만사	152,341
	· 전년도잉여금수입	4,558,088	· 업자금대부금상환시보조	
	· 잡수입	689,272	· 부두정비등자금대부금	3,822,000
			· 항만사업자금대부금	50,000
			· 수탁공사비	10,983,947
		· 항만사업등 공사제비용	22,682,078	
		· 산업투자특별회계 전출	4,121,751	
		· 개혁추진공공투자사업상환금	5,849,944	
		· 등 산업투자특별회계 전출		
		· 예비비	500,000	
	합계	373,569,907	합계	373,569,907
특정 항만 시설 공사 계정	· 일반회계 전입	2,390,792	· 에너지항만건설공사비	7,337,912
	· 항만관리자공사비부담금수입	1,491,077	· 공사 제비용 항만정비계정	900,088
	· 수익자공사비부담금수입	4,196,000	· 전출	50,000
	· 전년도잉여금수입	193,872	· 예비비	
	· 잡수입	16,259		
	합계	8,288,000	합계	8,288,000

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부과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부과금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78조75)에 의해 국토교통성에 의해 부과되고 있다. 부과목적은 자동차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보험회사, 조합 및 제10조

75) 보험회사, 조합 및 제10조에 규정하는 자동차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운행의용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국토교통성령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부과금으로 해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에 규정하는 자동차 중 법으로 정하는 것을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사람 등이다. 징수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부과금은 모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표 IV-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부과금

(단위: 백만원)

	1999	2000	2001	2002
부과금수입	1,825	1,870	1,879	2,889

<표 IV-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특별회계 예산(2004년)

	세입		세출	
	항목	금액(천원)	항목	금액(천원)
보장 계정	· 부과금수입	3,081,415	· 보장비	5,620,450
	· 타계정 전입	547,521	· 업무취급비	1,524,034
	· 잡수익	1,467,457	· 보장업무위탁비	921,813
	· 전년도잉여금수입	71,158,584	· 예비비	500,000
	합계	76,254,977	합계	8,566,297
자동차 사고대책 계정	· 적립금수입	12,678,996	· 독립행정법인자동차사고 대책기구운영비	9,170,308
	· 잡수입	4,633,110	· 독립행정법인자동차사고 대책기구시설정비비	830,071
			· 자동차사고대책비	6,949,043
			· 보장계정이입	362,684
	합계	17,312,106	합계	17,312,106
보험료등 총당 보조금 계정	· 재보험보험료수입	493	· 보험료등총당교부금	240,100,000
	· 적립금수입	502,906,062	· 재보험보험비	243,181,592
	· 잡수익	559,874	· 보장계정이입	184,837
			· 예비비	20,000,000
	합계	503,466,429	합계	503,466,429

마) 수익자 부담금(급경사지의 붕괴방지에 관한 법률)

수익자부담금(급경사지의 붕괴방지에 관한 법률)의 법적근거는 급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다. 급경사지의 붕괴방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도도부현이 시행하는 공사에 의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사람에게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과기관은 도도부현이며, 부과목적은 급경사지 붕괴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민생의 안정과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부과대상은 도도부현이 시행하는 공사에 의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법 제23조 제2항 「부담금의 징수를 받는 사람의 범위 및 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한다.

급경사지 보전이나 붕괴 대책 공사는,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의 비용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러나 급경사지의 붕괴 대책 공사에는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급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현이 공사를 실시한다. 급경사지 붕괴 대책 공사의 종료 후, 시설의 본체에 대해서는 현이 유지관리를 행한다. 다만, 배수 시설의 청소, 쿠사카리, 슈모쿠의 전정이나 벌채는 지주(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급경사지의 붕괴방지에 관한 법이 제정된 1969년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의 도도부현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991년 12월 25일 건설성의 「급경사지 붕괴 대책사업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제도의 정비에 대하여」라는 통지에 의해 표준조례(안)이 각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되어 겨우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sup>76)</sup>.

바) 수익자부담금(기업합리화촉진법)

기업합리화촉진법 제8조에 근거한 수익자부담금제도는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다. 부과기관은 도로, 항만 또는 어항의 관리자로 이 부과금의 목적은 기업의 합리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 항만 시설 또는 어항 시설의 건설, 개량, 유지 또는 복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과대상은 기업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도로, 항만 시설 또는 어항 시설의 건설, 개량, 유지 또는 복구하는 사업자로 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측에서는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저항하는 일이 거의 없다.

산업 관련 시설의 정비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도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의 건설, 개량, 유지 또는 복구를 도로, 항만 또는 어항의 관리자에게 신청할 수가 있다.

도로, 항만 또는 어항의 관리자는,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로법(쇼와 27년 법률 제180호), 항만법(쇼와 25년 법률 제218호) 또는 어항·어장 정비법(쇼와 25년 법률 제137호) 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공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 단, 이 경우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그 수익을 한도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다. 또한 국가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도로법, 항만법, 어항·어장 정비법 또는 오키나와 진흥 특별조치법(헤세이 14년 법률 제14호)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가 있다.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공사를 도로법, 항만법 혹은 홋카이도 개발을 위한 항만 공사에 관한 법률(쇼와 26년 법률 제73호),

---

76) 동법이 제정되었을 때 대장성과 건설성의 협의에 의해서 도도부현 공사비용의 20%를 수익자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대신 부담해 왔다(국토연구원, 2003, 참조).

어항 어장 정비법 또는 오키나와 진흥 특별 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실시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그 수익에 대해 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다

#### 사) 택지개발지도요강

택지개발지도요강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급증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악화의 방지와 양호한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해 자체적으로 공공시설 설치 및 부담기준을 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에게 공공시설의 정비부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과기관은 시정촌으로 부과대상 택지개발면적은 300㎡ 미만에서부터 1ha 이상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있으며, 이 중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허가기준에 맞춰 개발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의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요강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주택건설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요강 역시 적용대상 호수가 1호에서부터 30호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주택 2호 이상 9호 미만의 건설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요강수가 주택건설 호수 기준 전체 요강수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다.

공공·공익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및 택지개발관련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말하고, 공익시설이란 학교, 공민관, 도서관, 의료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광의의 생활환경시설을 지칭하고 있다. 택지개발지도요강상의 공공·공익시설 설치기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도로의 경우 대개 구획도로의 폭원인 6m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원·녹지·광장 등의 경우에는 개발면적의 6%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6㎡ 이상의 공원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요강도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상의 공원설치기준이 개발면적의

3% 또는 계획인구 1인당 3㎡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택지개발지도요강에 의한 기준이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허가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으며,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많아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개발지도요강에 따라서는 교육시설, 도로, 공원·녹지, 하수도 정비, 하천개수, 기타 공공·공익시설의 정비나 시설운영 등을 위한 개발자부담의 기부금과 용지 및 시설의 무상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징수된 기부금은 공공·공익시설 전반의 정비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상제공된 용지의 경우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공익시설의 정비에 충당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아) 수입자부담금(도시계획법)

수입자부담금의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에 의한다. 부과기관은 국가, 도도부현 또는 시읍면이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공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시계획법 제1조),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이익을 받는 한도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과요율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징수를 받는 사람의 범위 및 징수 방법은 국가가 부담시키는 것은 법령, 도도부현 또는 시읍면이 부담시키는 것은 해당 도도부현 또는 시읍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자) 혼잡통행료(로드가격(road pricing))

일본은 도로의 정체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혼잡통행료

(로드가격(road pricing))인 교통관련 부담금이 현재 고려되고 있다. 혼잡통행료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화이다. 이는 도민의 건강의 확보 및 복지를 증진하는 입장에서부터,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로드가격 징수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도세 조례의 개정에 의한 법정외세로서의 제도화이다. 이 제도는 현행도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 징수수입을 지방세법에 근거하는 법정의 보통세 또는 법정의 목적세로서 징수하는 방안이며, 마지막으로, 로드가격 설정에 관계하는 법 정비를 통해 지방공공단체가 징수하는 방안이다.

혼잡통행료의 부과기관은 동경시이며, 승용차와 화물차 등 모든 차종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방용 자동차, 구급용 자동차, 경찰용 자동차, 자위대용 자동차, 의료 기관의 응급 운반차등 도로 교통법으로 정하는 긴급 용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공공 교통기관인 노선버스, 장애를 가지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및 자동이륜차는 부과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부과지역은 자동차 교통밀도가 높고, NO<sub>2</sub> 배출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치요다구 및 츄오구를 중심으로 주로 환상7호선 안쪽의 지역을 예정하고 있다.

부과시기는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또는 NO<sub>2</sub> 농도가 높은 시간대, 오전 7시~오후 7시 정도이고, 예상 부과요율은 소형차 400~600엔, 대형차 800~1,200엔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별도 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한 사업비를 상회하는 징수 수입은 로드가격 징수에 따른 우회교통 혹은 공공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화물차 등의 저공해화, Park & Ride 등 기타 교통수요관리정책(TDM)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 3) 부담금 비교

건설관련 부담금은 일본의 경우는 치수특별회계관련부담금, 도로정비관련부담금, 항만정입관련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관련부담금, 개발부담금, 기타수익자부담금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본의 부담금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주로 치수특별회계관련부담금과 관련된 부담금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목적도 일치하고 명칭도 일치하는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개발부담금 등이 있다. 양국 모두 부담금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부담금의 성격이나 부과주체 및 대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치수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에는 검용공작물비용, 원인자부담금(하천법), 부대공사비용, 수익자부담금(하천법), 특별수리사용자부담금,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금, 수도권수수질보전사업비용 등의 총 7개 부담금이 존재한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소하천소요공사비,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총량초과부과금(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물이용부담금(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등의 9개의 부담금이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주로 하천공사 관련된 부담금과 수질오염방지와 관련된 부담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본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부담금으로 검용공작물비용과 특별수리사용자부담금이 있다.

일본의 수도권수수질보전사업비용 부담금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물이용부담금(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각 수계) 등이 있는데, 이 4개의 부담금은 모두 원수의 수질을 보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각 수계에 있어서의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수질의 개선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이외에도 강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 지원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간접적인 목적도 지니고 있다.

일본의 수자원과 관련한 부담금은 모두 치수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있어,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총량초과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고, 물이용부담금은 각 수계의 관리기금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표 IV-26> 한·일간 치수관련 부담금 비교

부담금 명칭		부과주체		부과대상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겸용공작물비용		하천관리자		국토교통대신 도도부현 타 공작물 관리자
원인자부담금 (한국수자원공사법)	원인자부담금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	하천관리자	타공사 등 원인 제공자	타공사, 타행위에 비용 부담자
소하천소요공사비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부대공사비용	시·군·구	하천관리자	사업자 및 행위자	타공사, 타행위에 비용 부담자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 (하천법)	시·군·구	국토교통대신 도도부현 지사	사업자 및 행위자	이익수혜자
	특별수리사용자 부담금		하천관리자		특별수리사용자
총량초과과과금 (금강,낙동강,영산강,섬 진강 수계)	공해방지사업비 사업자부담금	광역시,시,군, 지방환경관리청	공해방지사업시 행자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	공해방지사업자
수질개선후담금  배출부과금 (수질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물이용부담금 (한강,낙동강,영산강,섬 진강 수계)	수도원수수질 보전사업비용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 시,도 시,도  수도사업자, 수계관리위원회		샘물제조, 수업업자 기준이상오 염물질배출 자 허가대상축 산업자  취수원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계획수도사업자

일본은 도로(도로법)와 관련된 수익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공동구건설관리비용, 전선공동구건설관리비용 등 5개의 부담금이 존재하고 있다. 도로법에 관련된 5

개 부담금 모두 도로정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부담금으로는 원인자부담금과 부대공사비용부담금 2개의 부담금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2개의 부담금도 모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한국과 일본 모두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 IV-27> 한·일간 도로관련 부담금 비교

부담금 명칭		부과주체		부과대상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수익자부담금 (도로법)		국토교통성 지방도로관리자		이익수혜자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지방 국토관리청	지방도로관리자	타공사, 타행위자	타공사, 타행위에 비용 부담자
부대공사비용 부담금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 국토관리청	지방도로관리자	타공사, 타행위자	도로점용에 대해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자
	공동구건설 및 관리비용		지방도로관리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 공동구 점용자
	전선공동구 건설 및 관리비용		지방도로관리자		전선공동구 점용 예정자, 전선공동구 점용자

항만과 관련된 부담금은 일본에는 원인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직할공사, 항만정비 부담금 등이 있으나, 이 중 직할공사만이 건설과 관련된 부담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항만정비와 관련된

부담금은 존재치 않는다. 직할공사는 항만정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관련 부담금은 일본과 우리나라 양국 모두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부담금이다. 일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부과금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있다. 그러나 부담금의 귀속에 있어 일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특별회계에, 우리나라는 수탁보장사업자인 대한손해보험협회에 귀속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모든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부담금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부담금이다.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본에서의 부담금 명칭은 ‘택지개발지도요강’이라 한다. 그 밖에 일본은 급경사지의 붕괴방지에 관한 법률, 기업합리화촉진법, 도시계획법 상의 수익자부담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건설·교통관련 부담금 중 2002년 징수실적이 있으면서 일본의 유사한 부담금과 대응할 수 없는 부담금으로 건설관련 부담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과밀부담금이 있고, 교통관련 부담금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다. 이 밖에 일본의 부담금과 대응되지 않는 우리나라 부담금은 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징수실적 없어 실제 운영되지 않는 부담금들이다.

<표 IV-28> 한·일간 기타 건설관련 부담금 비교

부담금 명칭		부과주체		부과대상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직할공사		국토교통성		항만관리자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부과금	건설교통부	국토교통 대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람	보험회사, 조합 및 제10조에 규정하는 자동차 중 법으로 정하는 것을 운행용으로 사용하는 자
	수익자 부담금(금경사지의 붕괴방지에 관한 법률)	도도부현		이익수혜자	
	수익자부담금(기업합리화촉진법)	도로, 항만 또는 어항의 관리자		도로, 항만시설, 어항건설, 개량, 유지, 복구 사업자	
	수익자부담금(도시계획법)		국가, 도도부현 또는 시읍면		이익수혜자
개발부담금	택지개발 지도요강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시정촌)	개발사업 시행자	택지개발사업업주체

다. 싱가포르

1) 싱가포르 부담금의 특징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인 관계로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부담금을 신

설, 운영,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인 관계로 교통과 관련된 부담이 다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혼잡통행료 제도인 ERP제도도 다른 국가들이 기본 모델로 참고하고 있다.

싱가포르 Ministry of Transport에서 관리하는 Fees and Charges 중 Licences and Permits 항목의 징수규모를 보면 GDP 대비 약 1~2% 수준으로 교통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부담이 징수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등록세와 유사한 Certificates of Entitlement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징수되는 Fee인 Certificates of Entitlement는 일정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년 허가된 차량대수에 연계하여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그 결과 Certificates of Entitlement 수수료가 차량가격보다 더 비싸기도 한다.

## 2) 분야별 부담금

### 가)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

싱가포르의 건설관련 부담금인 개발부담금은 계획법 제5절 제35조~제40조(Planning Act part V sec.35~sec.40)에 의거하여, 개발행위에 의한 토지가치의 상승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도시재개발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이며, 개발허가 또는 보존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나 개발허가 또는 보존허가의 신청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요율은 본계획에 따른 구역(plot)을 중심으로 부과되며 각 구역의 개발밀도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상이하며, 싱가포르를 전체 118개 구역으로 나누고, 개발용도 그룹을 9개로 나누어 각 지

역별, 개발용도별로 부과요율을 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세한 부과요율은 부과율표(table for development charge rate)에 따라 명시되어 있으며, 부과율표는 국가경제의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수정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Development Baseline and Development Ceiling과의 차액으로 정의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계산식 : Development Charge} = \text{Development Baseline} - \text{Development Ceiling}$$

Development Baseline은 다음 세가지 기준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수치 중 가장 큰 것으로 한다. 첫째, 1958년 8월 5일의 기본계획(the Master Plan)에 의해 확정된 토지의 개발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1982년 4월 24일 이전 폐지법(the repealed Acts)의 제6조 제1항(Sec.6 (1))에 의거 추가 및 변경된 사항에 따라 기본계획(the Master Plan)에 확정된 토지의 개발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기존에 납부된 개발부담금이 있거나, 개발법(Planning Act) 또는 폐지법(repealed Acts)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가 면제 및 감면되는 경우 또는 실행중인 법에 의해 이미 개발이 허가된 경우에 하나 또는 그 이상 충족시키는 허가된 토지의 개발을 기준으로 한다.

Development Ceiling은 이미 인정되었거나 내재된(retained) 토지의 개발 가치나 문서화된 허가서(written permission)에 의해 인정된 토지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Temporary Development Levy: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토지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그 기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로써 용도변경의 기간은 1년에서부터 10년 동안이며 개발부담금은 용도변경 허가기간 동안 납부한다. 만약, 영원한 용도변경시에는 개발부담금을 모두 납부한다.

&lt;표 IV-29&gt; Development Charge 부과요율(2004년 9월 기준)

Geographical Sectors	Use Groups								
	A	B1	B2	C	D	E	F	G	H
1	\$2,050	\$1,350	\$1,450	\$1,050	\$325	\$600	\$7	-	\$1
2	\$1,800	\$1,350	\$1,450	\$1,050	\$325	\$600	\$7	-	\$1
3	\$1,750	\$1,350	\$1,450	\$1,050	\$325	\$600	\$7	-	\$1
4	\$1,650	\$1,350	\$1,450	\$1,050	\$325	\$600	\$7	-	\$1
5	\$2,250	\$1,350	\$1,450	\$1,050	\$325	\$600	\$7	-	\$1
6	\$1,800	\$1,350	\$1,450	\$1,050	\$325	\$600	\$7	-	\$1
7	\$1,700	\$1,350	\$1,450	\$1,050	\$325	\$600	\$7	-	\$1
8	\$1,500	\$1,350	\$1,450	\$1,050	\$325	\$600	\$7	-	\$1
9	\$1,500	\$1,350	\$1,450	\$1,050	\$325	\$600	\$7	-	\$1
10	\$1,400	\$1,350	\$1,450	\$1,050	\$325	\$600	\$7	-	\$1
11	\$1,400	\$1,350	\$1,350	\$1,050	\$325	\$600	\$7	-	\$1
12	\$1,350	\$1,350	\$1,350	\$1,050	\$325	\$600	\$7	-	\$1
13	\$1,350	\$1,350	\$1,350	\$1,050	\$325	\$600	\$7	-	\$1
14	\$1,350	\$1,350	\$1,350	\$1,050	\$325	\$600	\$7	-	\$1
15	\$1,550	\$1,350	\$1,500	\$1,350	\$325	\$600	\$7	-	\$1
16	\$1,500	\$1,350	\$1,500	\$1,250	\$325	\$600	\$7	-	\$1
17	\$1,750	\$1,350	\$1,500	\$1,250	\$325	\$600	\$7	-	\$1
18	\$1,400	\$1,350	\$1,350	\$1,250	\$325	\$600	\$7	-	\$1
19	\$1,600	\$1,350	\$1,950	\$1,350	\$350	\$600	\$7	-	\$1
20	\$1,600	\$1,350	\$1,600	\$1,350	\$350	\$600	\$7	-	\$1
21	\$1,600	\$1,350	\$1,600	\$1,350	\$350	\$600	\$7	-	\$1
22	\$1,500	\$1,350	\$2,250	\$1,400	\$325	\$600	\$7	-	\$1
23	\$2,250	\$1,350	\$2,250	\$1,650	\$325	\$600	\$7	-	\$1
24	\$1,550	\$1,350	\$1,450	\$1,400	\$325	\$600	\$7	-	\$1
25	\$1,350	\$1,250	\$1,300	\$1,250	\$325	\$600	\$7	-	\$1
26	\$1,400	\$1,250	\$1,300	\$1,250	\$325	\$600	\$7	-	\$1
27	\$1,550	\$1,250	\$1,300	\$1,250	\$325	\$600	\$7	-	\$1
28	\$1,300	\$1,150	\$1,200	\$1,150	\$325	\$600	\$7	-	\$1
29	\$1,300	\$1,150	\$1,200	\$1,150	\$325	\$600	\$7	-	\$1
30	\$1,350	\$1,150	\$1,200	\$1,150	\$325	\$600	\$7	-	\$1
31	\$1,350	\$1,150	\$1,200	\$1,150	\$325	\$600	\$7	-	\$1
32	\$1,350	\$1,250	\$1,250	\$1,200	\$325	\$600	\$7	-	\$1
33	\$1,300	\$1,250	\$1,250	\$1,150	\$325	\$600	\$7	-	\$1
34	\$1,300	\$1,300	\$1,550	\$1,300	\$325	\$600	\$7	-	\$1
35	\$1,300	\$1,400	\$1,950	\$1,700	\$325	\$600	\$7	-	\$1
36	\$1,400	\$1,400	\$2,450	\$2,100	\$325	\$600	\$7	-	\$1
37	\$1,600	\$1,400	\$2,750	\$2,350	\$325	\$600	\$7	-	\$1

IV. 주요국의 준조세 실태 365

<표 IV-29>의 계속

Geographical Sectors	Use Groups								
	A	B1	B2	C	D	E	F	G	H
38	\$1,550	\$2,300	\$2,750	\$2,050	\$325	\$600	\$7	-	\$1
39	\$1,650	\$3,000	\$3,550	\$2,450	\$325	\$600	\$7	-	\$1
40	\$1,550	\$2,150	\$2,950	\$2,250	\$325	\$600	\$7	-	\$1
41	\$2,800	\$1,400	\$2,750	\$2,650	\$325	\$600	\$7	-	\$1
42	\$3,050	\$2,550	\$3,000	\$3,000	\$325	\$600	\$7	-	\$1
43	\$2,050	\$2,550	\$3,000	\$2,600	\$325	\$600	\$7	-	\$1
44	\$1,600	\$2,550	\$3,000	\$2,200	\$325	\$600	\$7	-	\$1
45	\$1,600	\$2,150	\$2,950	\$2,200	\$325	\$600	\$7	-	\$1
46	\$1,500	\$1,750	\$2,600	\$1,750	\$325	\$600	\$7	-	\$1
47	\$1,500	\$1,750	\$2,600	\$1,700	\$325	\$600	\$7	-	\$1
48	\$1,500	\$1,750	\$2,300	\$1,400	\$350	\$600	\$7	-	\$1
49	\$1,200	\$1,150	\$1,200	\$1,200	\$350	\$600	\$7	-	\$1
50	\$1,300	\$1,300	\$1,650	\$1,400	\$325	\$600	\$7	-	\$1
51	\$1,350	\$1,100	\$1,200	\$1,200	\$475	\$600	\$7	-	\$1
52	\$1,100	\$1,050	\$1,200	\$1,100	\$475	\$600	\$7	-	\$1
53	\$1,150	\$1,100	\$1,200	\$1,050	\$475	\$600	\$7	-	\$1
54	\$1,050	\$1,050	\$1,100	\$1,050	\$475	\$600	\$7	-	\$1
55	\$1,050	\$1,050	\$1,100	\$1,050	\$475	\$600	\$7	-	\$1
56	\$1,050	\$1,050	\$1,100	\$1,050	\$475	\$600	\$7	-	\$1
57	\$1,100	\$1,050	\$1,200	\$1,050	\$475	\$600	\$7	-	\$1
58	\$1,200	\$1,200	\$1,250	\$1,200	\$475	\$600	\$7	-	\$1
59	\$1,350	\$1,150	\$1,300	\$1,200	\$425	\$600	\$7	-	\$1
60	\$1,550	\$1,250	\$1,550	\$1,400	\$325	\$600	\$7	-	\$1
61	\$1,550	\$1,450	\$1,900	\$1,400	\$325	\$600	\$7	-	\$1
62	\$1,550	\$2,250	\$2,250	\$1,400	\$325	\$600	\$7	-	\$1
63	\$1,400	\$1,700	\$2,000	\$1,500	\$325	\$600	\$7	-	\$1
64	\$1,000	\$1,650	\$1,650	\$1,150	\$325	\$600	\$7	-	\$1
65	\$1,400	\$2,000	\$2,000	\$1,400	\$325	\$600	\$7	-	\$1
66	\$1,550	\$2,600	\$2,650	\$2,050	\$325	\$600	\$7	-	\$1
67	\$1,550	\$3,000	\$3,000	\$2,050	\$325	\$600	\$7	-	\$1
68	\$1,300	\$2,150	\$2,150	\$1,650	\$325	\$600	\$7	-	\$1
69	\$1,300	\$2,150	\$2,150	\$1,400	\$325	\$600	\$7	-	\$1
70	\$1,500	\$2,500	\$2,650	\$1,900	\$375	\$600	\$7	-	\$1
71	\$1,500	\$1,600	\$1,950	\$1,900	\$375	\$600	\$7	-	\$1
72	\$1,200	\$1,400	\$1,500	\$1,200	\$475	\$600	\$7	-	\$1
73	\$1,250	\$1,150	\$1,200	\$1,200	\$500	\$600	\$7	-	\$1
74	\$1,250	\$1,150	\$1,200	\$1,150	\$500	\$600	\$7	-	\$1

&lt;표 IV-29&gt;의 계속

Geographical Sectors	Use Groups								
	A	B1	B2	C	D	E	F	G	H
75	\$1,250	\$1,150	\$1,200	\$1,150	\$500	\$600	\$7	-	\$1
76	\$1,200	\$1,200	\$1,200	\$1,150	\$400	\$600	\$7	-	\$1
77	\$1,200	\$1,150	\$1,150	\$1,150	\$500	\$600	\$7	-	\$1
78	\$1,200	\$1,150	\$1,200	\$1,150	\$500	\$600	\$7	-	\$1
79	\$1,200	\$1,150	\$1,200	\$1,150	\$500	\$600	\$7	-	\$1
80	\$1,400	\$1,150	\$1,600	\$1,150	\$500	\$600	\$7	-	\$1
81	\$1,200	\$1,150	\$1,200	\$1,150	\$500	\$600	\$7	-	\$1
82	\$1,200	\$1,150	\$1,200	\$1,150	\$500	\$600	\$7	-	\$1
83	\$1,250	\$1,150	\$1,200	\$1,150	\$500	\$600	\$7	-	\$1
84	\$1,200	\$1,150	\$1,200	\$1,150	\$500	\$600	\$7	-	\$1
85	\$1,200	\$1,150	\$1,200	\$1,150	\$500	\$600	\$7	-	\$1
86	\$1,200	\$1,150	\$1,200	\$1,150	\$500	\$600	\$7	-	\$1
87	\$1,200	\$1,150	\$1,200	\$1,150	\$500	\$600	\$7	-	\$1
88	\$1,350	\$1,450	\$1,500	\$1,100	\$500	\$600	\$7	-	\$1
89	\$1,350	\$1,300	\$1,350	\$1,100	\$325	\$600	\$7	-	\$1
90	\$1,350	\$1,300	\$1,350	\$1,100	\$325	\$600	\$7	-	\$1
91	\$1,200	\$2,000	\$1,950	\$1,000	\$325	\$600	\$7	-	\$1
92	\$1,350	\$1,300	\$1,400	\$1,050	\$325	\$475	\$7	-	\$1
93	\$1,350	\$1,250	\$1,350	\$1,050	\$325	\$475	\$7	-	\$1
94	\$1,350	\$1,600	\$1,900	\$1,050	\$325	\$475	\$7	-	\$1
95	\$1,350	\$1,250	\$1,400	\$1,000	\$325	\$475	\$7	-	\$1
96	\$1,250	\$1,250	\$1,500	\$1,000	\$325	\$475	\$7	\$24	\$1
97	\$1,200	\$1,250	\$1,350	\$1,000	\$325	\$475	\$7	\$24	\$1
98	\$1,450	\$1,150	\$1,150	\$900	\$400	\$475	\$7	\$24	\$1
99	\$1,000	\$1,000	\$1,000	\$750	\$375	\$475	\$7	\$24	\$1
100	\$1,050	\$950	\$950	\$600	\$225	\$475	\$7	\$24	\$1
101	\$1,200	\$1,150	\$1,200	\$950	\$400	\$475	\$7	\$24	\$1
102	\$1,200	\$950	\$950	\$1,200	\$475	\$475	\$7	\$24	\$1
103	\$1,450	\$1,200	\$1,400	\$1,050	\$475	\$475	\$7	\$24	\$1
104	\$1,450	\$1,150	\$1,400	\$1,050	\$400	\$475	\$7	\$24	\$1
105	\$1,200	\$1,100	\$1,200	\$850	\$350	\$475	\$7	\$24	\$1
106	\$950	\$900	\$900	\$550	\$200	\$475	\$7	\$24	\$1
107	\$1,150	\$1,100	\$1,100	\$950	\$375	\$475	\$7	\$24	\$1
108	\$1,350	\$2,050	\$2,150	\$1,200	\$375	\$475	\$7	\$24	\$1
109	\$1,350	\$1,800	\$1,900	\$1,200	\$375	\$475	\$7	\$24	\$1
110	\$1,350	\$1,650	\$1,800	\$1,200	\$375	\$475	\$7	\$24	\$1
111	\$1,300	\$1,150	\$1,300	\$1,000	\$500	\$475	\$7	\$24	\$1
112	\$1,150	\$1,100	\$1,250	\$850	\$300	\$475	\$7	\$24	\$1
113	\$1,100	\$1,100	\$1,150	\$800	\$275	\$475	\$7	\$24	\$1
114	\$950	\$850	\$900	\$550	\$150	\$475	\$7	\$24	\$1
115	\$950	\$900	\$900	\$550	\$175	\$475	\$7	\$24	\$1
116	\$550	\$500	\$550	\$550	\$150	\$250	\$7	\$24	\$1
117	\$950	\$1,250	\$1,500	\$1,500	\$150	\$250	\$7	\$24	\$1
118	\$600	\$500	\$550	\$550	\$150	\$250	\$7	\$24	\$1

## 나) 혼잡통행료(Area Licensing System)

싱가포르의 교통관련 부담금인 혼잡통행료인 Electronic Road Pricing는 도심부의 교통 혼잡과 공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교통집중시간에 제한지역의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교통집중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기관은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이며, 자동차 운전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잡통행료의 부과요율은 부과지점의 시간에 따라(교통혼잡도 차이)에 따라 차종별·도로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5분단위로 상세하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부과요율은 3달에 한번씩 갱신된다. 승용차의 경우 0.50달러에서 3.00싱가포르달러까지로 다양하다<sup>77)</sup>. 부담금은 매년 8천만싱가포르달러가 징수된다.

---

77) 차종: Passenger Cars, Motorcycles, Light Goods Vehicles, Heavy Goods Vehicles/Small Buses, Very Heavy Goods Vehicles/Big Buses, Taxis

도로: Central Expressway(CTE), East Coast Parkway(ECP), Ayer Rajah Expressway(AYE), Pan Island Expressway(PIE), Central Business District(CBD), Outer Ring Road area(ORR), Dunearn Road(DR)



<표 IV-31> ERP Rates: Passenger Cars(Arterial Roads)

Monday to Friday : 07:30 - 21:00 (24 Hrs)						
	Restricted Zone (All other gantries) (01, 3-28)	Dunearn Rd eastbound after Dunkirk Avenue (43,44)	Kallang Road westbound after Kallang River (41)	Restricted Zone (Nicoll Highway)(2)	Bendemeer Road southbound after Woodsville Interchange (40)	Thomson Road southbound after Toa Payoh Rise (39)
07:30 - 07:35	\$0.00	\$0.00	\$0.00	\$0.00	\$0.50	\$0.50
07:35 - 08:00	\$0.00	\$0.00	\$0.00	\$0.00	\$0.50	\$0.50
08:00 - 08:05	\$1.00	\$0.50	\$0.00	\$0.00	\$0.50	\$1.00
08:05 - 08:30	\$2.00	\$0.50	\$0.00	\$0.00	\$0.50	\$1.50
08:30 - 08:35	\$2.50	\$0.50	\$0.00	\$0.00	\$0.50	\$1.50
08:35 - 08:55	\$2.50	\$0.50	\$0.00	\$0.00	\$0.50	\$1.50
08:55 - 09:00	\$2.50	\$0.50	\$0.00	\$0.00	\$0.50	\$1.00
09:00 - 09:25	\$2.00	\$0.00	\$0.00	\$0.00	\$0.00	\$0.50
09:25 - 09:30	\$1.50	\$0.00	\$0.00	\$0.00	\$0.00	\$0.50
09:30 - 09:55	\$1.00			\$0.00		
09:55 - 10:00	\$0.50			\$0.00		
10:00 - 12:00	\$0.00			\$0.00		
12:00 - 12:30	\$0.50			\$0.00		
12:30 - 17:30	\$1.00			\$0.00		
17:30 - 18:00	\$1.50			\$0.00		
18:00 - 18:25	\$2.00			\$0.00		
18:25 - 18:30	\$1.50			\$0.00		
18:30 - 18:55	\$1.00			\$0.00		
18:55 - 19:00	\$0.50			\$0.00		

3) 부담금 비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건설관련 부담금을 비교해 보면, 건설관련 부담금에는 싱가포르에는 Development Charge라는 우리나라의 개발

부담금과 거의 동일한 부담금이 존재한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혼잡통행료와 유사한 Electronic Road Pricing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터널에 대해서만 적용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시내 일부지역을 정해 놓고 이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시간별로 다르게 전자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라. 캐나다

캐나다도 미국과 매우 유사하게 개발관련 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발비용부담금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에 지출한 금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또는 신개발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에 의하여 토지개발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Act)에 근거하여 시의 조례(Bylaw)에 의하여 부과된다. 부담금 부과는 도로, 배수, 하수, 상수, 공원과 관련하여 자본조달을 위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시설개발로 확대할 예정이다.

British Columbia내의 많은 시·군(cities and town)들은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장하거나 또는 새로 신설해야 하는 등의 개발과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각 수준의 정부들은 모두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이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이 있다. 따라서 ‘수익자 지불’ 원칙을 강조하게 되었다. 부담금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의 개발자들로 하여금 사회간접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정부에 의하여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개발비용부담금은 지방정부법 제932조부터 제93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정 시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본적 비용을 보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서비스의 설치는 토지개발, 건물의 증·개축 및 변경에 의하여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된다(Section 933 (1) and (2)).

부담금은 다양한 구역, 개발금액 및 개발수준과 관련한 특정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동일한 자본적 비용부담을 주는 개발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부과되어야만 한다(Section 934(2) and (3)).

현재 지방정부법은 다음의 지방정부 서비스와 관련된 시설의 공급, 건설, 변경 및 확장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고속도로(highway), 골목길 주차(off-street parking)
- 하수(sewage)
- 상수(water)
- 배수(drainage)
- 공원용지의 확보 및 개량(parkland acquisition and improvement)

개발비용부담금의 징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는데 토지구획이 인증되거나 건축허가서가 발행되었을 때 부과한다(Section 933 (5)). 첫째,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건축물이 건설되기 이전인 토지구획이 인증되는 시점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는 시의 입장에서 단일개발(single family development)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며, 건물이 들어설 지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개발(single family development)에 대한 개발비용부담금은 토지의 필지단위로 부과된다. 만일 건물이 들어선 후 건평을 단위로 하여 토지구획 전체의 부담금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구획 인증시점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다.

둘째, 거주지역이 아닌 비거주지역 즉 산업시설 개발에 대한 부담금은 건축허가서의 발행시점에서 부과징수한다. 그러나 주거시설의 4단위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는 다른 수수료의 부과시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 1) 도로개발비용부담금(Road Development Cost Charge)

동 부담금은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Act)에 근거하여 시의 조례(Bylaw)에 의하여 부과된다. 부과기관(소관기관)은 시(municipal authority)등 지자체이다. 부과목적은 도로와 관련된 제반 작업에 비용충당과 교통계획, 보행자 도보 시설, 교통신호시설, 가로수길, 소음방지벽, 중앙선, 도로배수구, 가로등, 지하배선, 배수시설, 고속도로상의 도보 및 다리, 교차로, 정류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각종 구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및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이다.

부과대상은 도로사업자 및 개발로 인한 수익자이며 부과요율은 많은 지방정부들은 토지이용에 따른 교통유발율에 따라 부과한다. 이때 교통유발율은 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s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르는데, 교통량은 인구, 거주가구, 총건평, 총면적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현될 수 있다.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우선 승용차와 트럭의 교통량이 가중된 교통유발비율을 구한다. 그리고 여기에 신 개발지역의 추정거주단위를 곱하여 Total Trip Ends를 구한다. 그리고 정수가능한 순도로개발비용부담금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을 차감한 후의 값을 Total Trip Ends로 나누어 거주단위당 부담금 금액을 결정한다.

<표 IV-32> 도로개발비용부과금 부과요율

1. 교통유발계산

토지이용	새로운 개발지역의 추정거주단위 및 면적 (1)	거주단위당 가중교통유발비율 (2)	Total Trip Ends (3) = (1) * (2)
낮은 거주밀도	1,985 거주단위수	1.02	2,025
중간 거주밀도	827 거주단위수	0.66	546
높은 거주밀도(1)	331 거주단위수	0.62	205
높은 거주밀도(2)	165 거주단위수	0.40	66
상업지역	51,380 (m <sup>2</sup> )연건평	0.014	706
공업지역	23.08 (ha)전체면적	27.75	641
공공시설지역	50,000 (m <sup>2</sup> )연건평	0.018	901
			Total Trip Ends : 5,089(A)

2. 단위별 부담금 계산

· 징수가능 순도로개발비용부담금	\$ 13,272,089	(B)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	\$ (293,500)	(C)
· 부담금에 의하여 충당될 수 있는 순 금액	\$ 12,978,588	(D = B-C)
· Trip Ends 당 부담금	\$ 2,550.42	(E = D/A)

3. 부담금 부과결과

낮은 거주밀도	\$2,601 / 거주단위(E×(2))
중간 거주밀도	\$1,683 / 거주단위(E×(2))
높은 거주밀도(1)	\$1,581 / 거주단위(E×(2))
높은 거주밀도(2)	\$1,020 / 거주단위(E×(2))
상업지역	\$35.04 / (m <sup>2</sup> )연건평(E×(2))
공업지역	\$70,784 / (ha)전체면적(E×(2))
공공시설지역	\$45.93 / (m <sup>2</sup> )연건평(E×(2))

2) 홍수배출시설개발비용부담금

(Storm Drainage Development Cost Charge)

홍수배출시설개발비용부담금도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Act)에 근거하여 시의 조례(Bylaw)에 의하여 부과된다. 부과기관(소관기관)은 시(municipal authority)등 지방자치단체이다.

부과목적은 홍수배출 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비용의 충당을 주 목적으로 한다. 대량홍수에 대한 관리계획 준비, 배출로 확보, 대지름 하수관, 주요 암거의 교차시설, 지역저수시설, 유수지침식방지 시설, 저지대배수개량, 펌프장 등의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된다. 부과대상은 개발로 인한 수익자이다.

부과요율에 있어 홍수배출시설개발비용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토지이용에 따른 용수의 상대적 배출량(runoff rate)을 근거로 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개발지역에서의 용수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비율(imperious rate)을 근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수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수의 최고 배출량과 그 양이 많아짐을 의미하게 된다.

거주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공시설지역의 상대적인 용수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각 지역구분별 전체면적이 새로운 개발계획으로부터 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1구획의 20% 정도는 도로와 배수로, 하수관, 상수관 등 암거에 이용된다. 따라서 거주단위의 밀도에 따라 개발비용부담금의 범주가 나누어진다.

<표 IV-33> 거주단위의 밀도에 따른 개발비용부담금의 범주

구 분	총 거주단위 수
낮은 거주밀도	10가구 / 헥타아르
중간 거주밀도	30가구 / 헥타아르
높은 거주밀도(1)	60가구 / 헥타아르
높은 거주밀도(2)	75가구 / 헥타아르

또한 토지용도별로 용수배출정도를 나눈다.

<표 IV-34> 토지용도별로 용수배출정도

토지이용	배출량 계수
낮은 거주밀도	0.40(전체 면적중 40%가 불투수 면적임을 의미)
중간 거주밀도	0.65( " 65% " )
높은 거주밀도(1)	0.80( " 80% " )
높은 거주밀도(2)	0.80( " 80% " )
상업지역	0.90( " 90% " )
공업지역	0.90( " 90% " )
공공시설지역	0.85( " 85% " )

위 표에서의 배출량 계수와 각 토지의 불투수 면적을 이용하여 EDU's(Equivalent Drainage Units) 수치를 구하고, 징수가능한 순홍수배출시설개발비용부담금에서 현재 유보하고 있는 부담금을 차감한 후의 값을 계산된 배수단위 상당치(EDU's)값으로 나누어 부담금 금액을 결정한다.

<표 IV-35> 홍수배출시설개발비용부담금 부과요율

1. 배출부담금 계산

토지이용	개발단위(1)	거주단위밀도 및 지역(2)	배출량 계수 (3)	개발단위당 불투수면적 (m <sup>2</sup> ) (4)=(1)/(2)*(3)	상당치 (5)	신개발지역의 추정 거주단위수 (6)	배수단위 상당치 (7) = (5)*(6)
낮은 거주밀도	1거주단위	ha당 10구획	0.40	400(A)	1.00(A)/(A)	1,985	1985
중간 거주밀도	1거주단위	ha당 30단위	0.65	217(B)	0.54(B)/(A)	827	448
높은 거주밀도(1)	1거주단위	ha당 60단위	0.80	133(C)	0.33(C)/(A)	331	110
높은 거주밀도(2)	1거주단위	ha당 75단위	0.80	107(D)	0.27(D)/(A)	165	44
상업지역	(1m <sup>2</sup> )연건평	지역면적의 70%	0.90	1.3(E)	0.0032(E)/(A)	51,380	165
공업지역	(1ha)전체면적		0.90	9,000(F)	22.5(F)/(A)	23.08	519
공공시설지역	(1m <sup>2</sup> )연건평	지역면적의 70%	0.85	1.2(G)	0.0030(G)/(A)	50,000	152
				총 EDU's : 3,424(H)			

2. 거주단위별 부담금 납부금 계산

· 징수가능 순허수시설개발비용부담금	\$ 4,986,383	(I)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	\$ (201,108)	(J)
· 부담금에 의하여 총당될 수 있는 순 금액	\$ 4,785,275	(K = I-J)
· 배수단위상당치	\$ 1,397,376	(L = K/H)

3. 부담금 부과결과

낮은 거주밀도	\$1,398 / 거주단위(L*(5))
중간 거주밀도	\$757 / 거주단위(L*(5))
높은 거주밀도(1)	\$466 / 거주단위(L*(5))
높은 거주밀도(2)	\$373 / 거주단위(L*(5))
상업지역	\$4.49 / (m <sup>2</sup> )연건평(L*(5))
공업지역	\$31,450 / (ha)전체면적((L*(5))
공공시설지역	\$4.24 / (m <sup>2</sup> )연건평(L*(5))

3) 위생시설개발비용부담금

(Sanitary/Sewerage) Development Cost Charge)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Act)에 근거하여 시의 조례

(Bylaw)에 의하여 부과되며, 부과기관(소관기관)은 시(municipal authority)등 지자체이다.

위생시설개발비용부담금은 위생시설 및 하수배출 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비용의 충당목적에 따라 부과된다. 즉,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배출로 확보, 간선하수시설, 철하수관, 시설확장, 하수처리장 및 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된다. 거주자 및 개발로 인한 수익자가 부과대상이다.

부과요율의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개발지역전체의 면적단위당 평균하수배출량을 1인당평균하수배출량으로 나누어 가구당인구상당치를 계산한 후 거주가구수를 곱하여 지역전체의 인구상당치(Equivalent population)를 구한다.

$$\text{인구상당치(Equivalent population)} = (\text{단위면적당 하루평균 하수 발생량} / \text{1인당 하루평균 하수발생량}) \times \text{추정거주단 위수}$$

그리고 징수가능한 순하수시설개발비용부담금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을 차감한 후의 값을 인구상당치로 나누어 인구상당치당 부담금 금액을 결정한다.

## &lt;표 IV-36&gt; 위생시설개발비용부담금 부과요율

## 1. 인구상당치의 계산

토지이용	새로운 개발지역의 추정거주단위 및 면적		거주단위 및 면적당 인구수		인구상당치
		단위	(F)	단위	
낮은 거주밀도	1,985	거주단위	3.2	거주단위당인구수	6,352
중간 거주밀도	827	거주단위	2.5	거주단위당인구수	2,068
높은 거주밀도(1)	331	거주단위	1.7	거주단위당인구수	562
높은 거주밀도(2)	165	거주단위	1.4	거주단위당인구수	232
상업지역	51,380	(㎡)연건평	0.013	(㎡)연건평당 인구수	661
공업지역	23,08	(ha)전체면적	64.3	(ha)전체면적당 인구수	1,484
공공시설지역	50,000	(㎡)연건평	0.011	(㎡)연건평당 인구수	538
			총인구상당치		11,896(A)

## 2. 거주단위별 부담금 납부금 계산

· 정수가능 순허수시설개발비용부담금	\$ 7,650,473 (B)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	\$ (853,264) (C)
· 부담금에 의하여 총당될 수 있는 순 금액	\$ 6,797,209 (D = B-C)
· 인구상당치당 부담금	\$ 571.39 (E = D/A)

## 3. 부담금 부과결과

낮은 거주밀도	\$1,828 / 거주단위(E×F)
중간 거주밀도	\$1,428 / 거주단위(E×F)
높은 거주밀도(1)	\$971 / 거주단위(E×F)
높은 거주밀도(2)	\$800 / 거주단위(E×F)
상업지역	\$7.35 / (㎡)연건평(E×F)
공업지역	\$36,732 / (ha)전체면적(E×F)
공공시설지역	\$6.15 / (㎡)연건평(E×F)

※ 공업지역이면서 만일 단위면적당 하루평균 하수발생량이 22,500 L/day/ha 이고 1인당 하루평균 하수발생량이 350/L/day 라면 (ha)전체 면적당 인구수는 64.3

## 4) 상수도시설개발비용부담금

(Sanitary(sewerage) Development Cost Charge)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Act)에 근거하여 시의 조례(Bylaw)에 의하여 부과된다. 부과기관(소관기관)은 시(municipal authority)등 지방자치단체이다.

상수배분, 수도관로 확보, 간선급수관, 용량의 확대, 가압펌프장, 저수지, 상수처리시설, 감압펌프장 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상수도 공급 및 분배와 소방용수에 대한 국내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 등 상수도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비용의 총당이 부과목적이다. 부과대상은 거주자 및 개발로 인한 수익자이다.

부과요율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수도 및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시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춘다. 따라서 상수도시설개발비용부담금의 징수가능액은 토지이용 정도와 기존의 상수도시스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부과방식은 위생시설개발비용부담금의 부과방식과 유사한데 우선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인구상당치를 계산한다.

$$\begin{aligned} \text{인구상당치(Equivalent population)} &= (\text{단위면적당 하루평균 상수} \\ &\quad \text{요구량} / \text{1인당 하루평균} \\ &\quad \text{상수요구량}) \times \text{거주단위수} \end{aligned}$$

이후 징수가능한 순상수시설개발비용부담금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을 차감한 후의 값을 계산된 인구상당치로 나누어 인구상당치당 부담금 금액을 결정한다.

〈표 IV-37〉 상수도시설개발비용부담금 부과요율

1. 인구상당치의 계산

토지이용	새로운 개발지역의 추정거주단위 및 면적		거주단위 및 면적당 인구수		총인구상당치
		단위	(F)	단위	
낮은 거주밀도	1,985	거주단위	3.2	거주단위당인구수	6,352
중간 거주밀도	827	거주단위	2.5	거주단위당인구수	2,068
높은 거주밀도(1)	331	거주단위	1.7	거주단위당인구수	562
높은 거주밀도(2)	165	거주단위	1.4	거주단위당인구수	232
상업지역	51,380	(m <sup>2</sup> )연건평	0.009	(m <sup>2</sup> )연건평당 인구수	462
공업지역	23.08	(ha)전체면적	45	(ha)전체면적당 인구수	1,039
공공시설지역	50,000	(m <sup>2</sup> )연건평	0.011	(m <sup>2</sup> )연건평당 인구수	538
				총인구상당치	11,523(A)

2. 거주단위별 부담금 납부금 계산

· 장수기능 순하수시설개발비용부담금	\$ 5,186,905 (B)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	\$ (734,583) (C)
· 부담금에 의하여 총당될 수 있는 순 금액	\$ 4,452,322 (D = B-C)
· 인구상당치당 부담금	\$ 395.67 (E = D/A)

3. 부담금 부과결과

낮은 거주밀도	\$1,266 / 거주단위(E×F)
중간 거주밀도	\$989 / 거주단위(E×F)
높은 거주밀도(1)	\$673 / 거주단위(E×F)
높은 거주밀도(2)	\$554 / 거주단위(E×F)
상업지역	\$3.56 / (m <sup>2</sup> )연건평(E×F)
공업지역	\$17,805 / (ha)전체면적(E×F)
공공시설지역	\$4.26 / (m <sup>2</sup> )연건평(E×F)

※ 만일 공업지역이면서 단위면적당 하루평균 상수요구량이 22,500 L/day/ha 이고 1인당 하루평균 상수요구량이 500L/day 라면 (ha) 전체면적당 인구수는 45

5) 공원시설개발비용부담금

(Parkland Development Cost Charge)

동 부담금은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Act)에 근거하여 시의 조례(Bylaw)에 의하여 부과된다. 부과기관(소관기관)은 시(municipal authority)등 지방자치단체이다. 부과목적은 지방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특성이나 위치에 있는 공원, 적어도 부담금 부과와 동등한 시장가치를 가진 공원의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 또는 공원의 개선(담장설치, 조경, 배수 및 관개 시설, 산책로, 화장실, 탈의실, 운동장 시설 등 시설의 설치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이다. 부과대상은 거주자 및 개발로 인한 수익자이다.

부과요율은 먼저 새로운 개발지역의 추정 거주단위와 거주단위당 인구수를 곱하여 총인구상당치를 구한다. 이후 총인구상당치로 징수가 능 공원시설개발비용부담금을 나누어 1인당 개발비용부담금을 구한다. 여기에 거주단위당 인구밀도를 곱하여 부담금을 결정한다.

## &lt;표 IV-38&gt; 공원시설개발비용부담금 부과요율

## 1. 인구상당치의 계산

토지이용	새로운 개발지역의 추정거주단위 및 면적		거주단위 및 면적당 인구수		총인구상당치
		단위	(F)	단위	
낮은 거주밀도	1,985	거주단위	3.2	거주단위당인구수	6,352
중간 거주밀도	827	거주단위	2.5	거주단위당인구수	2,068
높은 거주밀도(1)	331	거주단위	1.7	거주단위당인구수	562
높은 거주밀도(2)	165	거주단위	1.4	거주단위당인구수	232
			총인구상당치		9,213(A)

## 2. 거주단위의 부담금 납부금 계산

· 징수가능 순허수시설개발비용부담금	\$ 6,627,922 (B)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	\$ (362,706) (C)
· 부담금에 의하여 총당될 수 있는 순 금액	\$ 6,265,216 (D = B-C)
· 인구상당치당 부담금	\$ 680.02 (E = D/A)

## 3. 부담금 부과결과

낮은 거주밀도	\$2,176 / 거주단위(E×F)
중간 거주밀도	\$1,700 / 거주단위(E×F)
높은 거주밀도(1)	\$1,156 / 거주단위(E×F)
높은 거주밀도(2)	\$852 / 거주단위(E×F)

## 마. 유럽의 교통관련 부담금

## 1) 영국(런던)의 혼잡통행료

런던의 혼잡통행료는 1964년 Smeed리포트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도입여부를 검토해 왔다. 무엇보다 런던의 혼잡통행료 도입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1999년에 제정된 『GLA(Greater London Authority Act)』법이며, 이 법은 런던시장이 교통전략

(Mayor's Transport Strategy)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ing Scheme)와 사업소 주차부과금제도(workplace parking levy)<sup>78)</sup>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런던의 혼잡통행료 징수 배경은 런던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상황에 대해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혼잡, 대중교통, 대기상태 등으로 인한 사업손실 및 대중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런던 시내 지하철 및 출퇴근용 철도 네트워크 등이 첨두시(Peak Time)에 과다 집중되고 있으며, 버스는 런던 시내를 통과하는 승용차 및 상업용 차량과 도로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런던 내에서의 주요 교통수단인 승용차가 1980년대 후반부터 출퇴근통행량은 유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통부문에 관련된 예산은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교통관련사업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재원으로 새로운 교통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런던의 혼잡통행료 도입은 2000년 ROCAL(Road Charging Options for London) 리포트에 기초하여 혼잡통행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고, 몇 차례의 협의내용을 거쳐 수정되었다. 2000년 7월에는 자치구, 기업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 1월에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전략 초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 7월 최종교통전략(Mayor of London, 2001)을 발표였고, 몇 차례의 조정을 거친 뒤 2002년 2월 혼잡통행료에 관한 시행명령을 공포, 2003년 2월 17일에는 최종적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입되었다.

런던의 혼잡통행료 징수방안 내부순환도로를 경계로 21km<sup>2</sup> 규모의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Area Pricing<sup>79)</sup>방식을 적용하

78) 직장에서의 주차부과금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주차장면적을 고려하여 세금을 징수함.

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요금은 1일 단위로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 5파운드를 부과하고 있으며, 혼잡통행료 징수지역내의 거주자는 9%할인이 된다. 통행료 징수구역 내의 도로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System: ANPR)을 이용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더불어 이동카메라를 이용하여 위반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징수요금은 인터넷, 전화, 휴대폰, 소매점 및 주유소의 카운터 등 각종 방법을 이용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징수대상지역을 통과한 날짜의 자정까지 지불해야 한다. 특히, 요금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밤10시 이후에는 5파운드가 가중되어 10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며, 위반차량은 80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벌금을 물면 금액이 반으로 절감된다. 반대로 4주가 지나서도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120파운드가 할증되는 등 주차위반 단속에서 얻은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79) 구역단위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에는 cordon pricing, area pricing, 주행거리비례 부과방식이 있음. cordon pricing방식은 징수대상지역에 유입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area pricing방식은 징수대상지역에 유입하는 차량뿐 아니라 징수대상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주행거리비례 부과방식은 징수대상지역 내에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lt;표 IV-39&gt; 도시별 혼잡통행료 방식의 비교

구분	런던	싱가포르	서울	도쿄(안)
목적	교통체증 완화	교통체증 완화	교통체증 완화	교통체증 완화 및 환경개선
대상지역 면적	21km <sup>2</sup>	7.25km <sup>2</sup>	-	16~233km <sup>2</sup>
징수방법	Area Pricing	Cordon Pricing	Point Pricing	Cordon Pricing
대상일시	평일: 7:00~18:30	평일: 7:30~19:00	평일: 7:00~21:00 토요일: 7:00~15:00	평일: 7:00~19:00
징수액(승용차)	5파운드/일	0~2.5S달러/ 회	2,000원/회	500엔/회

주: 2003년 9월 현재 1파운드=1,900원, S달러=680원, 100엔=990원.  
 자료: 이훈기, 런던 혼잡통행료의 교훈, 2003.

런던의 혼잡통행료를 시행한 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심지역의 교통량은 10~15% 감소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체시간은 15~30% 감소하여 승용차 운전자 및 버스 이용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사결과는 도심지역으로 들어오는 유입교통량은 20%정도가 감소하여 예상치보다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통행속도는 15km/h에서 18km/h로 향상되고 런던 외곽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출근하는 차량의 평균시간도 46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스위스 Heavy Vehicle Fee(HVF)

스위스는 통행료는 유럽의 국가와 다르게 Toll요금과 화물의 거리

또는 무게로 부과한 비용의 합을 통행료로 부과하고 있다. 그 중에서 스위스의 새로운 HVF(or t-km fee)는 EU-Swiss간 운송협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무게제한을 28~34톤(2005년 1월 1일부터는 40톤)으로 높이고, 운송비로 인해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부과하며, 징수된 비용은 중요한 철도사업에 재정적인 기여하여, 철도가 주요한 화물운송의 수단을 목적으로 변경하였다.

HVF의 최대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며, 차량 최대무게에서 평균 1.68 Swiss Centime/t-km를 부과하고 있다. EU와 협정에 의해서, 앞으로 2008년까지 2.70 Swiss Centime/t-km까지 세율을 올릴 예정이다. 스위스의 HVF는 2004년 현재 3가지로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1.68~2.0 Swiss Centime/t-km을 부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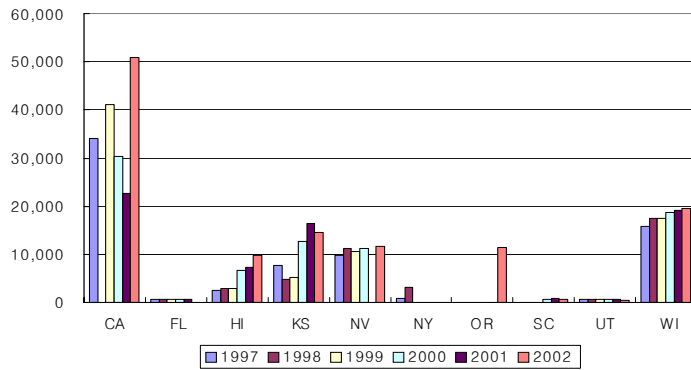
## 바. 유사 부담금의 규모 비교

### 1) 개발 관련 부담금 비교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한 해라도 부담금을 징수한 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건설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주는 10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부담금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대부분 공공시설부담금으로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증가에 대해 개발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 교통시설도 이에 일부 포함되어 징수할 수 있다.

[그림 IV-7] 미국 주(州)별 건설관련 부담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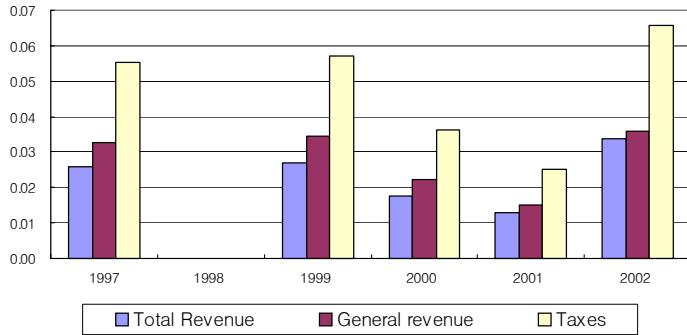
(단위: 천)



건설 관련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하면서 그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CA) 주와 위스콘신(WI) 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부담금과 비교하면, 캘리포니아(CA) 주의 부담금 징수 규모는 캘리포니아(CA) 주정부 세수입(Taxes) 대비 약 0.03~0.06% 정도이다. 이는 캘리포니아(CA) 주정부의 전체수입(Total Revenue) 혹은 일반회계 수입(General Revenue) 등에 비해서는 0.01~0.03%정도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

[그림 IV-8] 캘리포니아 주의 건설관련 부담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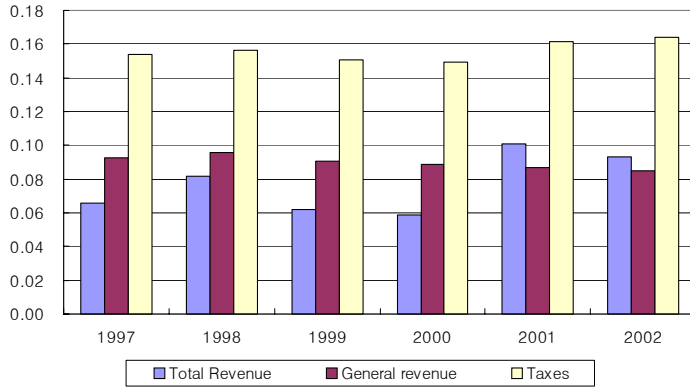
(단위: %)



위스콘신(WI) 주의 부담금 징수 규모는 캘리포니아 주보다는 비중이 좀더 커서 위스콘신(WI) 주정부 세수입(Taxes) 대비 약 0.15% 정도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위스콘신(WI) 주정부의 전체수입(Total Revenue) 혹은 일반회계 수입(General Revenue) 등에 비해서는 0.06~0.10%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림 IV-9] 위스콘신 주의 건설관련 부담금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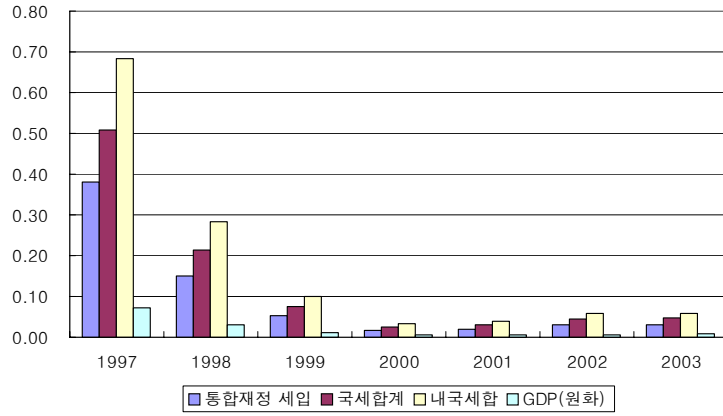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 징수 규모는 우리나라 국세징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1997년 약 0.51%에서 2000년에 0.03%로 크게 감소한 후 2003년에는 0.05%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 징수 규모는 캘리포니아 주와 거의 유사한 규모로 나타나며, 위스콘신(WI) 주정부 세수입(Taxes) 대비 약 0.1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 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징수 규모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국세징수 규모 대비 1997년 약 1.31%에서 2001년 이후는 약 0.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부담금 징수의 국세규모 대비 2001년 이후는 약 0.3%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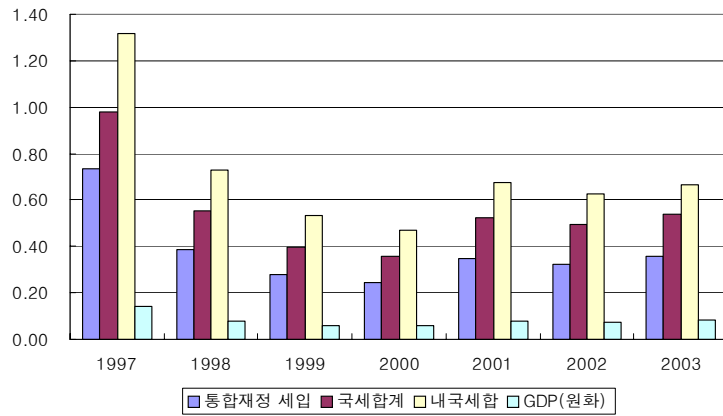
[그림 IV-10] 개발부담금 비중 추이

(단위: %)



[그림 IV-11]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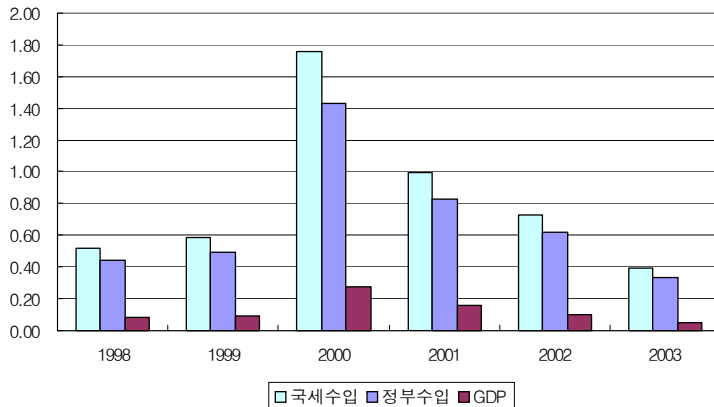


싱가포르에서 개발과 관련하여 Development Charges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과 유사하다. Development

Charges의 징수규모는 개별 부담금(Fees and Charges)의 징수규모를 밝히지 않는 싱가포르 정부의 방침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Development Charges의 징수규모가 포함된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의 Licences and Permits 항목의 Fees and Charges 징수 규모를 보면, 싱가포르 국세수입 대비 약 0.5%에서 약 1.8%(2000년) 사이에 분포해 있다. 무엇보다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의 Licences and Permits 항목의 Fees and Charges 징수규모의 많은 부분이 Development Charges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개발관련 부담금은 GDP 대비로는 약 0.05%(2003년)에서 약 0.3%(2000년) 사이에 분포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부담금의 GDP 대비 규모가 약 0.05%로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건설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와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참고할 사항이다.

[그림 IV-12] 싱가포르 개발부담금 관련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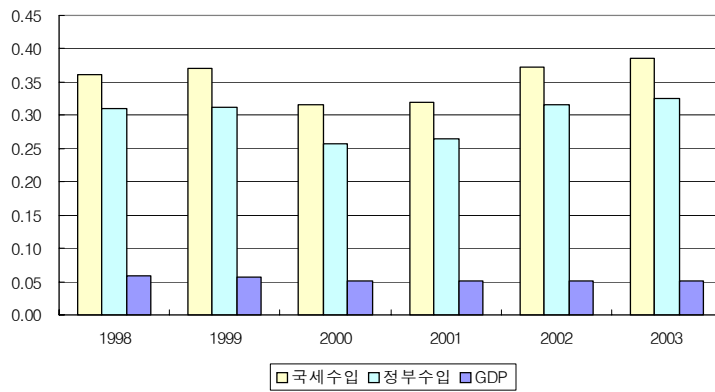
2) 교통 관련 부담금 비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국가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싱가포르로서 현재 ERP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이외에 영국(런던)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일본(동경)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ERP 시스템을 통해 징수되는 구체적인 수입액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매년 약 8천만 싱가포르달러만큼 징수하고 있음을 언급하여 근사치를 사용하여 그 비중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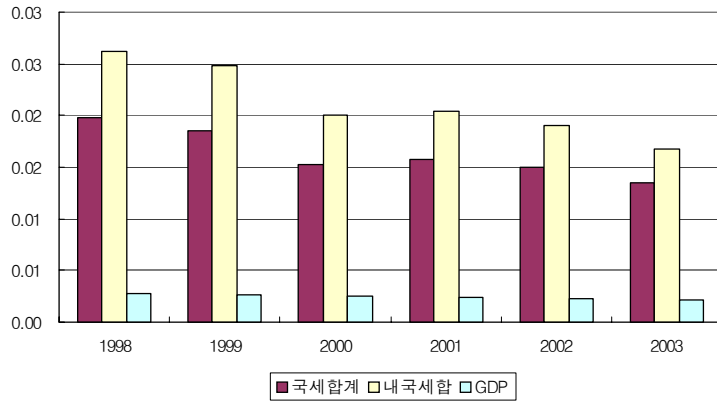
[그림 IV-13] 싱가포르 ERP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그림 IV-14] 우리나라 혼잡통행료 비중 추이

(단위: %)



혼잡통행료의 징수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혼잡통행료 수입의 GDP대비 비중은 0.002~0.003%인 반면 싱가포르는 약 8천만 싱가포르달러를 사용할 경우 GDP 대비 0.05%로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국토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차량대수를 한정할 정도로 교통에 대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징수되는 Fee에는 우리나라 등록세와 유사한 Certificates of Entitlement가 있으며 일정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년 허가된 차량대수에 연계하여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금액이 오르고 내리기도 한다<sup>8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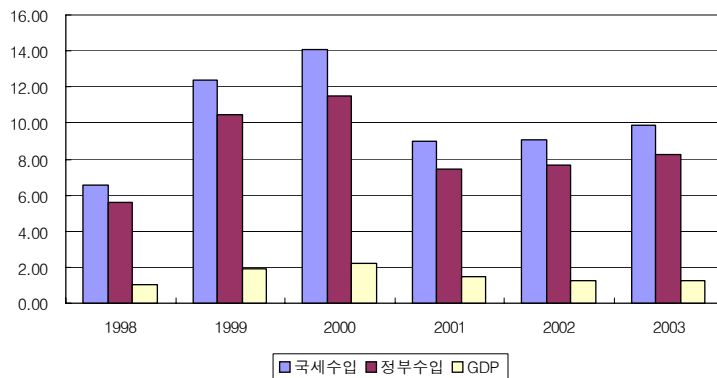
싱가포르 Ministry of Transport에서 관리하는 Fees and Charges 중 Licences and Permits 항목의 징수규모를 보면 GDP 대비 약 1~2% 수준으로 교통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부담이 징수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교통관련 부담금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며, 이는

80) 차량가격보다 Certificates of Entitlement가 더 비싸기도 함.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에는 우리나라 등록세와 유사한 Certificates of Entitlement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석한 혼잡통행료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IV-15] 싱가포르 교통관련 Fees and Charges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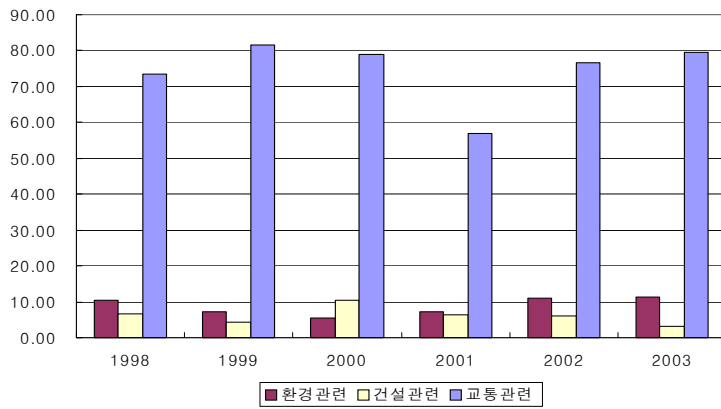
(단위: %)



싱가포르의 Fees and Charges 중 Licences and Permits 항목의 징수규모를 환경, 건설, 그리고 교통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아도 교통관련 부분이 전체의 약 80% 수준에 이르는 등 교통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부담이 징수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교통 및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설관련 부분이 약 8% 수준, 교통관련 부분이 약 2~3% 수준이다.

[그림 IV-16] 싱가포르의 환경·건설·교통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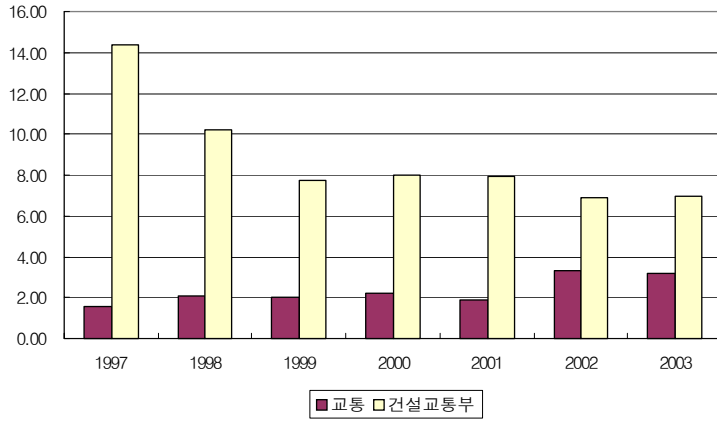
(단위: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관련 부문이 전체 부담금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교통관련 부문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건설관련 부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는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감소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통관련 부담금 징수액은 국세수입 대비 1990년대 말 약 0.1%수준에서 2002년과 2003년 최근 들어 약 0.3%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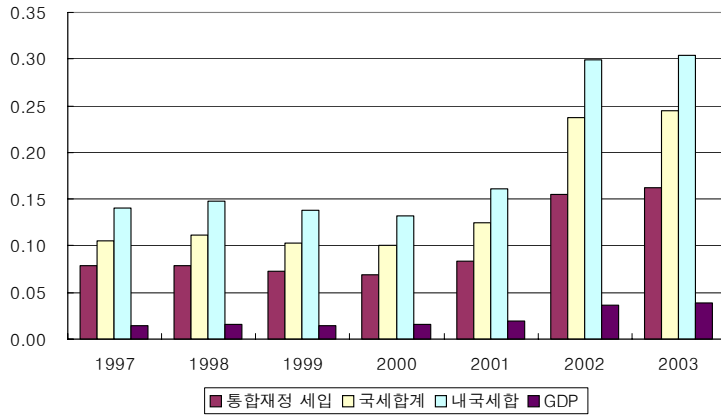
[그림 IV-17] 우리나라 전체 부담금 수입중 교통·건설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그림 IV-18] 우리나라 교통관련 부담금 비중 추이

(단위: %)



## 3) 전체 부담금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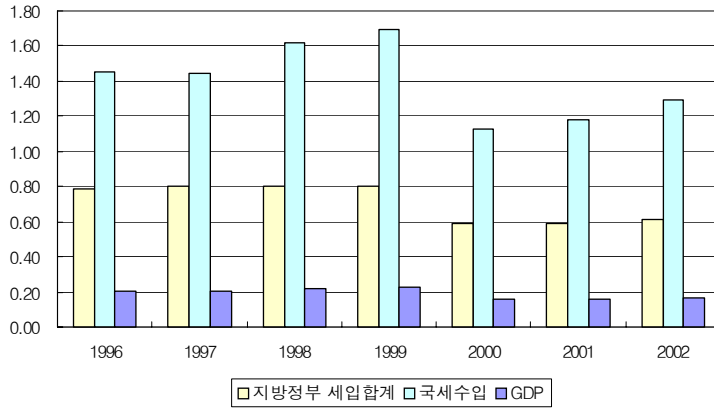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방정부별로도 부담금 징수 여부의 차이가 크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부담금 징수 규모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부담금에 대한 징수 규모는 알 수 없다.

일본의 '지방재정보통신계연보'에서는 '분담금 및 부담금' 항목이 있으나, 일본에서는 분담금 혹은 부담금에 대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공항을 건설할 때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을 하거나 혹은 여러 지방정부에 함께 '분담'해서 건설할 때도 분담금 혹은 부담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부담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민간이 부담한 부분만을 비교하였다.

일본 지방정부의 분담금 및 부담금 항목의 징수 규모는 GDP 대비 약 0.2%수준이며, 전체 지방정부 수입에서 1990년대 말 0.8%에서 2000년 들어 0.6% 수준이다. 이 규모는 일본 중앙정부의 국세수입에서는 2000년 들어 약 1.2%수준이다. 일본 지방정부의 분담금 및 부담금 항목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담금으로 여겨지지 않는 아동복지부담금(보육소 운영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규모는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 IV-19] 일본의 분담금 및 부담금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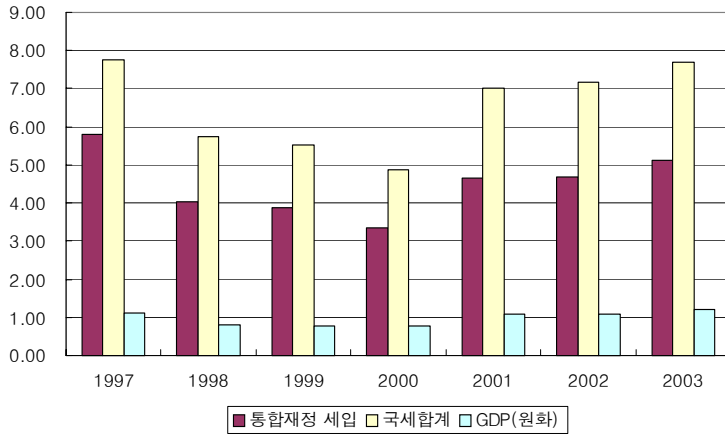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부담금의 GDP 대비 비중은 약 1% 수준을 보이고 있고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부담금 징수규모는 2000년 GDP 대비 0.7%에서 2003년에는 1.2%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담금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도 2000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부담금 징수규모는 1997년 국세수입 대비 6.8%에서 2000년에는 4.5%로 낮아졌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2003년에는 7.7%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림 IV-20] 우리나라 부담금 비중 추이

(단위: %)



### 3. 산업(에너지)관련 부담금

#### 가. 에너지관련 부담금

외국의 에너지관련 부담금은 일본을 제외하면 원유 수입에 대한 부과금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를 찾기가 어렵다. 그 중 터키의 경우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제도가 있었으나 1997년에 폐지되었다.

운영 면에서 유사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찾기는 어려우나, 석유 위기시를 대비한 자원마련이라는 취지로 유사한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찾을 수가 있다. 따라서 명칭은 수입부과금제도가 아니더라도 비상시 혹은 에너지 정책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한 제도를 유사제도로 간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입 석유류에 대한 부과금

수입석유에 대해 조세(관세) 외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핀란드가 있다. 이 역시 원유에 대한 별도의 부과금은 없으며, 석유공해세의 명목으로 수입제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

### 2) 비상시를 대비한 부과금

석유제품, 천연가스 및 석탄 등 에너지에 부과하는 부과금은 명칭에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을 위해 관세와 소비세 이외의 공적부과금을 거두는 예는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부과금으로써, 오스트리아의 비상저장비(Emergency Stock Fee), 핀란드의 예비저장비(Precautionary Storage Fee), 스위스의 비상기금(Emergency Fund), 독일의 비상저장비(Contribution to Emergency Storage Fund),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의무저장비(Compulsory Storage Fee)가 있다.

### 3) 각국 제도의 특징과 요약

원유, 석유류, 석탄 및 전력 등 에너지와 관련된 별도의 부과금은 적어도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에너지에 부과하는 별도의 세금으로는 CO2 Tax, ECO Tax, Environment Tax 등 환경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의 『Energy Prices and Taxes』에 제시된 국가별 부담금 정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여러 나라들에게서 공통적인 부과방식은 변동이 심한 ‘가격 대비 몇%’라는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적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종에 대해서 같은 부과금액을

부과하는 예는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면제되는 일부 품목(예를 들면 발전용 저유황중유)에도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가) 오스트리아의 비상저장비(Emergency Stock Fee)

오스트리아의 비상저장비는 산업용 고탄유 및 경유, 가정용 경유, 휘발유, 자동차용 디젤에 부과하고 있다. 부과금의 전반적인 수준은 80년대 들어 높게 유지되다가 1988년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휘발유, 디젤유, 저황유 순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유종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나) 핀란드의 예비저장비(Precautionary Storage Fee)

핀란드의 예비저장비는 휘발유, 경유 등 모든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관련 부분에 부과하고 있다. 부과금은 휘발유, 발전 및 산업용 저황유 및 가정용 경유, 디젤류 순으로 낮지만, 유종간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휘발유는 예외로서 휘발유에 대한 부과금은 다른 석유제품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1980년대 전반적으로 부과금이 높아졌으며 1990년대 말에 약간 낮아지기는 했지만 휘발유에 대한 예비저장비가 다른 유종에 비해서 높은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다) 독일의 비상저장기금(Contribution to Emergency Storage Fund)

독일의 비상저장기금은 산업용 고탄유,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디젤에 부과하고 있다. 별도의 부과금이 부여되기보다는 조세수입에서 일정부분을 비상저장기금에 전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유종별 부과

금액은 휘발유, 디젤유, 경유, 중유 순이며, 디젤유와 휘발유의 차이는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가격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스위스의 비상기금(Emergency Fund)

스위스의 비상기금은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디젤, 석탄에 부과하고 있다. 산업용 석유제품이 가정용이나 수송유에 비해서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며, 유종별 부과금액은 휘발유, 디젤유, 난방용 저황유, 산업용 저황유 순으로 부과하고 있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부과금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는 1990년대 말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외에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의무저장비(Compulsory Storage Fee)가 있다. 네덜란드는 원유에만 의무저장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산업용 저황유, 경유, 휘발유 및 자동차용 디젤에 부과하고 있다.

#### 나. 외국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1) 일반적인 특징과 시사점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대책을 위한 재원으로서의 공적부과금을 부과하는 예는 여러 선진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부과금제도는 수입제품에만 부과되며, 원유와 제품에 차별 없이 부과되고, 서로 다른 유종 간에도 차이 없이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유사제도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비상시를 대비한 재원을 석유에 대한 조세 또는 준조세로부터 마련하기는 하지만 수입제품에 대해서

만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수입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이 경우 수입품에 대한 부과금은 비축을 위한 재원이 아닌 공해세 및 환경세의 명목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종 간 같은 액수로 부과되는 예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자료 입수가 가능한 나라들은 대부분 석유제품 간에 다른 액수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장 차이가 적은 나라로는 오스트리아를 들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적은 차이나마 제품 간 차이를 두고 있다. 유종 간 부과금액의 차이에 있어서는 대체로 가격차이가 반영되어 대체로 '휘발유, 디젤유, (산업용·가정용)경유, 중유 순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부과금 액수를 보면 대략 상기 순서를 따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휘발유에 대한 부과금액이 다른 석유제품 부과금 초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송용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이 난방용 석유제품과 산업용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등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이 높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lt;표 IV-40&gt; 유럽 주요 국가의 에너지 관련 공적부과금 성격의 조세제도

	개별소비세	용 도
독 일	· 광유세(가솔린, 중유, 경유, LPG, 천연가스) · 저장기금세(가솔린, 경유, 중유) · 전력소비세	· 광유세는 일반재원, 그러나 독일통일 자금 마련을 위해 91년 7월 광유세 인상 · 저장세는 비축 · 전력세는 석탄산업보호
프랑스	· 석유연구소 부과금(석유제품) · 탄화수소지원부과금(가솔린) · 에너지국가기금세(가솔린, 경유) · 지방전력소비세	· 석유연구소부과금은 연구소지원 · 탄화수소부과금은 기술, 탐광 조정 · 에너지기금은 전략비축 조정 · 전력세는 지방재원
스위스	· 광유세(가솔린, 경유, 중유) · 긴급시기기금세(가솔린, 경유, 중유, 석탄)	· 광유세는 도로정비와 일반재원 · 긴급시기기금은 비축기금
이탈리아	· 광유제조세(가솔린, 중유, 경유) · 전력소비세	· 광유제조세는 일반재원 도로정비재원 · 전력세는 일반, 지방재원
네덜란드	· 석유저장기금료(가솔린, 경유) · 연료세(석탄제품, 천연가스, 석탄)	· 저장기금료는 석유저장 · 연료세는 환경대책재원-매년증가
덴마크	· 가솔린세, 광유세(경유, 중유), 가스세, 석탄세, 전력소비세 · 저장축진세(가솔린, 경유, 중유는 85년이래 비과세) · 92년 5월에 민생부문, 93년 1월에 산업부문에 탄소세 도입(경유, 중유, LPG, 석탄): 산업의 탄소세는 민생의 50% 수준)	· 가솔린, 광유, 가스, 석탄, 전력의 각세는 일반재원, 에너지대책, 도로재원 · 탄소세는 에너지대책, 일반재원 · 저장축진세는 비축
핀란드	· 석유비축료(가솔린, 경유, 중유, LPG) · 석유오염료(석유제품)	· 석유비축료는 비축재원 · 석유오염료는 환경청의 특별회계
미 국	· 연방연료세, 가솔린세, 비상업용항공공연료세, 디젤특별연료세(경유, LPG) · 주연료세(가솔린, 경유, LPG) · 연방환경세: 위험물기금(원유, 석유제품), 석유유출기금(원유), 탱크누출기금(가솔린)	· 연방연료세, 주연료세는 도로정비재원 · 연방환경세는 위험물저장, 유출물정화, 누출방지 등 환경대책지원
캐나다	· 연방연료세(가솔린, 경유) · 주연료세(가솔린, 경유) · 주전력소비세	· 연방연료세, 주연료세는 도로정비재원 · 주전력세는 주지방재원

자료: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 선진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현황과 환경세 도입 동향, 1994. 2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련 공적부과금 개선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2) 일본의 제도와 비교

우리나라와 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는 별도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석유세’라는 명칭으로 부과하지만 부과금의 기능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즉, 주목적은 석유위기에 대응할 목적이다. 부과대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수입에너지인 반면 일본은 국내 생산에너지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는 일본 제도가 우리나라의 현 제도보다 유럽 여러 나라의 제도와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V-41> 한국과 일본의 석유 등에 대한 수입·판매부과금 비교

명칭	유사점	상 이 점	
		한 국	일 본
부과대상	· 수입업자 (원유, NG, LPG, 석유제품)	· 판매업자 (등유, 고급휘발유)	· 국내정유업자 (원유, LNG)
부과수준	· 원유와 석유제품에 상대적 중과	· 수입 원유와 수입 석유제품: \$1.7/Bbl · 수입 LNG: 6,908원/톤 · 수입 LPG: 0.0원	· 원유와 수입석유제품: 324 엔/Bbl · LNG(국산 및 수입분): 720 엔/톤 · 수입 LPG: 670 엔/톤
부과면제 또는 환급대상	· 수출용 · 공업원료용	· 비축용 원유, 석유제품 · 전기사업용 및 집단에너지원료용 석유	· 자가 사용목적만으로 생산하는 국내 생산 가스 · 일부 농림어업용 증유
부과금의 용도	· 석유대책 정책 사업 · 에너지 절약, 석유 대체에너지 대책 사업	· 석탄대책 정책사업	· 국제에너지 대책 (국제에너지절약사업, 국제청정석탄사업) ※ 일본의 석탄대책은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로 충당

자료: 심상렬 외(1999).

에너지 관련 외국의 예를 종합하여 보면 비상시를 대비한 공적 부과금은 원유 이외의 석유제품에 대해 유종 간 일정한 차이를 주면서 면제되는 제품이 많지 않다는 의미에서 폭넓게 부과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 4. 주요국의 기부금

##### 가. 미 국

###### 1) 공익성 기부금에 관한 세제

당해 연도에 자선목적이나 정부기관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발생주의에 따라 과세소득을 신고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내에 기부금 지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있었고 과세기간 이후 2.5개월 이내에 실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당해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 중 소득공제 한도액은 기부금공제 및 배당소득공제 전 과세소득의 10%이며 다음 기관에 기부 및 증여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 ① 정부기관 및 공익 목적의 미국령
- ② 미국 및 미국령 내에 있는 법인, 신탁, 공공자금, 기금 및 재단으로서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내 및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대회 육성, 아동 및 동물학대 금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순이익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code sec 501(c)(3)에 의한 면세단체에서 제외되는 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 ③ 회원이나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장래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묘지 회사로서 개인이나 개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 공동

#### 묘지 법인

- ④ 미국 및 미국령에 설립된 퇴역군인단체 및 사회원조단체로서 순이익을 개인 및 개인주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단체

법인은 당해 연도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차기이월할 수 있으나 전기이월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만일 결손금 이월금액이 있는 법인이라면 당해 연도 기부금 공제액 산출에 있어서, 10%의 공제한도율은 과세소득에서 결손금 이월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액이 250달러 이상인 경우 기부 받은 기관으로부터의 영수증(written acknowledgement)이 없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영수증에는 현금기부금액, 현물기부에 대한 설명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영수증은 반드시 납세신고서 제출기한 전에 수취한 것이어야 한다.

로비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① 로비활동이 기부자의 영업상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② 기부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연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 즉 기부자가 직접 로비활동비로 지출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연방 및 주 입법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로비활동비는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인 사업관련 비용에서 제외된다.

#### 2)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제

정치기부금(political contribution)은 법인세법 또는 개인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되거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정당(political organization)이나 선거후보자(candidates)의 경우 적격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971년 조세지원세제(tax incentive program)에 의해 선거운동기부금(campaign contribution)에 대해서 50%의 세액공제 또는 100% 소득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세액공제의 경우 12.5달러(합산과세시 25달러), 소득공제의 경우 50달러(합산과세시 100달러)를 한도로 했었다. 그러나 소득공제는 1980년도에 폐지되었고 세액공제도 1986년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선거운동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없는 상태이다.

## 나. 일본

### 1) 공익성기부금에 대한 세제

일본의 경우 기부금 종류는 성격에 따라 국가·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이 지출한 경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지정 기부금은 기부금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국립학교, 국립도서관 등이 있고 지정기부금이란 올림픽 개최, 사립학교의 교육연구, 국립대학법인의 교육연구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특례제도에 의한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해당기부금의 합계액과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기부금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란 (소득금액의 2.5% + 자본 등의 0.25%) $\times$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특례제도에 의해 인정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포함되어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

적십자사 등의 특수법인, 공익법인 중 과학기술의 시험연구나 학생에 대한 학자금의 지급을 실시하는 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된다. 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란 특정 비영리활동을 실시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세청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기부를 말한다. 2001년 10월 1일 이후에 국세청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NPO법인에 대해서 인정 유효기간 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된다. 이 밖에 일반기부금이란 이상의 기부금 외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모두를 일컫는 것으로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및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의 2.5% + 자본등의 0.25%)×1/2을 손금한도로 하고 있다. 일반기부금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무상이전도 포함되므로 일반적인 공익성 기부금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IV-42> 공익성 기부금 관련 세제 개요

기부금 종류	법인세	소득세
국가·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	[기부금(총소득의 25% 한도) -1만엔]을 소득에서 공제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과는 별도로 다음을 한도로 손금산입함: (소득금액의 2.5% + 자본등의 0.25%) ×1/2	
인정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		

- 주: 1. 일반기부금이란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가운데, 나라등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 및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이외의 것으로 (소득금액의 2.5%+자본등의 금액의 0.25%)×1/2를 한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2.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공익법인, NPO법인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기부금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모두에 대해 동일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당해연도 지출한 기부금 합계액과 당해연도 총소득 금액의 25% 중 적은금액에서 1만엔을 차감한 금액이다. 총소득 금액이란 순손실, 잡손실, 거주용재산의 매매 등의 경우 양도손실 및 특정주거용 재산의 양도손실의 이월공제후의 총소득금액, 특별공제전의 분리과세의 장(단)기양도소득금액, 주식 관련 양도소득 등의 금액, 선물거래 관련 잡소득 등의 금액, 산림소득금액 및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가)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무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부금을 말한다.

#### 나)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이란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그 외 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다음의 법인을 말하며 해당 법인의 주된 목적인 업무에 관련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 등의 세제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 지동차안전운전센터, 종합연구개발기구, 일본원자력연구소 등의 법인
-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

으로서 일정한 것(2004년 4월 1일 이후 기부부터 대상이 됨)

-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것
-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하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 갱생보호사업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갱생보호법인

단, 특정공익증진법인의 기부금 처리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과 관련한 명세서를 첨부하고 또한 그 기부금이 특정공익증진법인의 주요 목적 사업과 연관이 있는 기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액 중 일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은 일반기부금과는 별도로 손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 다) 인정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되는 것(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특정비영리활동과 관계되는 사업이 해당된다. 이것은 2001년 10월 1일 이후에 인정을 받은 NPO 법인에 대해 인정 유효기간 내에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인정 NPO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기부자, 활동내용 및 사업조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두고 있다. 첫째, 넓게 일반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즉, 많은 사람으로부터 일정 이상의 기부금이나 조성금을 받고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서 다음의 산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frac{\text{기부금, 조성금, (기부금성질을 가진)회비}}{\text{총수입금액(기부금, 조성금, 회비, 사업수입등)}} \geq \frac{1}{5}$$

위의 산출식에 의한 1/5의 비율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국가 등 또는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등 및 수탁사업수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1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연간 합계액이 1,000엔 미만인 것은 포함하지 않으며 분자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액수 중 기부금 액수 총액의 5%를 넘는 부분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넓게 일반을 대상으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회원 상호의 친목, 의견교환이나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 셋째, 사업·조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적절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부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부금 20만엔 이상인 사람의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하여야 하며 보수·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급여 수급자의 이름 및 금액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교 활동 및 정치활동을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임원 등의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지 않는 활동이어야 한다. 또한 20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사전에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영조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임원이나 사원 가운데 그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그 밖에 국세 조처에 의해 지원하는 대상으로 적격한 활동인가를 보는 것으로, 특정의 물건이나 특정의 사람에게 집중된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 2)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제

정당기부금특별공제제도(2004년 4월 1일 현재 법령등)에 의하면, 개인이 199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정치활동에 관련된 기부금으로 일정의 것(이하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하여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당해 연도의 소득

세액의 2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거나 어느 것이든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중에 지불한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액 합계액 - 1만엔]  
 $\times 30\%$  = 정당 등 기부금특별공제액(100만엔 미만의 단수절사)

위의 산식에서 당해 연도 중에 지불한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의 합계액이란 당해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의 25% 상당액이 한도가 된다. 단, 기부금공제의 적용을 받은 특정기부금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의 합계액에 특정기부금의 합계액을 가산한 금액이 당해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의 25%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5% 상당액에서 특정기부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1만엔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0로 하고 기부금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정기부금액이 1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1만엔에서 특정기부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특별공제액은 당해 연도 소득세액의 2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정치헌금이란 개인이 한 정치활동과 관련 있는 기부 중 특정 단체에 대해 지출한 기부 또는 특정 공직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지출한 기부이다. 이러한 정치헌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를 받는 경우는 기부한 상대방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날인이 있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받아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단, 정치자금규제법에 위반되는 기부나 기부한 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특정의 단체란 다음의 5가지 단체를 말한다.

- ① 정치자금규정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체 중 공직에 이미 있는 사람의 후원회
- ② 정치자금규정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체 중 앞으로 공직에 나갈 후보자의 후원회

- ③ 정치자금규정법 제3조 제2항의 정당
- ④ 정치자금규정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자금단체
- ⑤ 정치자금규정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단체 중 국회의원 주재하거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

이러한 특정 단체에 한 기부로서 정치자금규정법 제12조 및 제17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총무대신에 보고된 것이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된다. ②의 경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6조부터 제86조의4에서 정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도도부현의회의원, 도도부현지사 및 정령지정도시의회의 의원 및 그 시장이다. 이러한 공직의 후보자(공직선거법 제86조, 제86조의3 또는 제86조의 4에서 정하는 신고를 행한 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부로,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회에 보고된 것은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된다.

## 다. 싱가포르

### 1) 공익성 기부금과세제도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의 기부금은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 ① 정부나 공공성격을 지니는 승인된 기관에 지출한 현금 기부
- ② 박물관에 기부한 예술품
- ③ Minister가 승인한 컴퓨터 증여로서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교육 및 연구 기관에 기부한 것
- ④ 상장된 주식의 기부

기업이 지출한 적격한 기부금은 납세자의 과세소득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한다. 2003년 과세연도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

(unabsorbed donation)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없었으나 2003년 과세연도부터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차기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기부에 대해서는 두 배의 공제(double tax deduction)가 허용된다. 그러나 기부자가 수증자를 지명할 수 있는 기부의 경우 기부금액만큼만 공제할 수 있는 규정(single tax deduction)을 따른다.

기부금은 납세자의 당해 과세연도 손실을 차감한 법정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다.

#### 가) 공익성 기관

공익성격 있는 단체(IPC: Institutions of a Public Character)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sec 37(9)) 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병원, 자선단체, 공공기관
- 교육기관(대학 포함) 및 교육기관의 설립, 확장, 개발을 위한 공공기금
- 교육기관에 장학금, 전시회, 상금 등에 사용되기 위한 공적·사적기금
- 재난 구조를 위한 공적기금
- 자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institution, bodies of person, trusts)
- 문화, 예술, 스포츠 촉진과 관련된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공익성기관(IPC: Institutions of a Public Character)의 인정은 재무부장관(Minister of finance)에 의해 이루어지며 싱가포르 내에 존재하는 기관에만 인정된다.

## 나) 승인된 박물관(approved museum)에 대한 예술품 증여

개인 또는 법인이 승인된 박물관(예: National Museum)에 예술품을 증여한 것은 공제 대상이다. 증여 가치의 두 배까지 소득에서 공제(tax deduction)할 수 있다.

## 다) 컴퓨터 설비의 증여

컴퓨터를 승인된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증여하는 회사는 기증된 컴퓨터 가치의 2배 만큼의 소득공제(tax deduction)를 할 수 있다. 승인된 기관이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Centralised institution, 어학원(language centers) 및 기타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 라) 주식의 증여

2002년부터 개인 납세자가 공익 성격의 기관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기부가 이루어진 날짜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기부의 경우 기부자는 기부 시점의 주식의 시장가치의 두배를 소득공제(tax deduction)할 수 있다. 특히, 기부한 주식의 시장가치는 법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날의 거래소 가격으로 한다.

## 마) 토지와 건물의 증여

공공기관에 건물이나 토지를 기부한 경우 2003년 4월 1일부터 두배의 소득공제(double tax deduction)가 주어진다. 만일 기부자가 자산을 판매한 후 그 가치를 기부하더라도 두 가지 방식 모두 소득공제 금액은 동일하다.

#### 바) Unabsorbed Donation

적격한 기부는 납세자의 손실을 차감한 법정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3년 이전에는 소득공제에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unabsorbed donation)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연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2003년도부터 기업은 당해연도의 기부금을 “Loss transfer system of group relief”의 조건에 부합하는 동일 그룹 내의 다른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비영리분야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은 재무부장관(Minister of Finance)이 Umbrella organization을 우선적으로 IPC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Umbrella organization이란 기부 받은 것을 회원을 위해 나눠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예술단체의 포괄조직인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NAC)는 받은 자금을 NAC Special Accounts Scheme에 등록된 예술단체에 나눠 줄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하다.

- 공익성기관(IPC)에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감독 권한을 주요단체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기부자가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만한 단체인지 결정하고 감독하기에 더 유리하다.
- 기부자들이 간접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단체에 기부하는 효과가 있다.
- 기부 받은 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Umbrella organization에 의해 확인되는 시스템이다. : Umbrella organization은 과세당국으로 책임을 돌림에 따라 회계책임이 여러 군데에 있게 된다.

소득공제(tax deduction)는 기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수증자인 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 면제 방식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세금 혜택을 받는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모든 비영리단체(NPO)는 특정 기간 내에

Comptroller of Income Tax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선단체, 클럽, 협회는 매년 면세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Comptroller of Income Tax는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기타 장부, 서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 2) 정치기부금에 관한 세제

싱가포르의 경우 정치기부금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는 없다.

## 3) 비영리단체 관련제도

싱가포르의 비영리단체(NPO)의 발전은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식민지인 싱가포르에서 중국 비영리단체의 성장기, 독립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하강기, 1980년대 중반의 사회개혁 시기가 그것이다.

최초의 중대한 비영리단체 활동은 종친모임의 형태로 모인 초기 중국 이민자들, Dialect association, Secret societies 등이다. 이것은 식민지 정부가 이민자들의 복지를 무시한 결과 발생한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외국에 있는 친족들을 찾는 것이었다. 1965년에 싱가포르는 People's Action Party(PAP) 정부의 힘으로 독립했다. PAP 정부가 급속한 경제 성장,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Trade union 및 Student organizations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역할은 최소화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까지 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는 NPO의 역할은 미미한 것이었다.

### 가) 비영리단체 등록절차

싱가포르에서 비영리단체는 Society, Company, Trade Union, School 등 여러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존재한다. 모든 비영리단체는 이

들 형태 중 하나로서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절차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Society와 Company이다. 그러나 Society 이면서 Charity인 단체는 각각의 해당 법(Societies Act and charities Act) 모두에 의해 등록되어야 한다.

#### 나) 면세

싱가포르에서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의 행정, 집행에 대한 책임은 Inland Revenue Authority에 있으며 이것은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법적 권한은 재무부장관(Minister of finance)이 지명하는 Comptroller of Income Tax에게 있다.

소득세 면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면세인 경우와 일반적으로 면세가 아니나 세금감면이 주어지는 비영리단체(NPOs)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싱가포르에 있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납부가 면제되는 단체는 소득세법(First Schedule to the Income Tax Act)에 열거되어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 공공기관, Boards, 법령에 의한 기금
- YMCA 등과 같은 기관 특정 클럽, 법인, 협회
- 싱가포르에 존재하는 법인 아닌 특정기관(authorities)

소득세법에 열거된 단체가 수취한 모든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발행 주식의 1/2 이상을 소유한 회사로부터 단체가 받은 배당은 제외된다.

세금 면제의 자격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면세가 아닌 단체에는 Mutual benefit organizations, Cooperative societies, Trade unions, charitable institutions, Clubs and associations, Trade associations이 있다. 이들은 면세단체의 자격은 없으나 매해마다 소득세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면세 조건을 만족하는 기준은 단체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 라. 캐나다

### 1)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세제

캐나다의 경우 법인의 기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법인은 자선 기부금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세제처리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과세소득의 75%를 한도로 소득공제할 수 있고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차기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자선기부에 대한 것은 대형 법인에게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지주회사(private holding company)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하다. 캐나다인 기부자는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 공공기금(public foundation), 사적기금(private foundation) 중 어디에 기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세지원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현금을 기부했든 현금 외의 자산을 기부했든 동일하다. 그러나 만일 현금 외의 자산을 증여한 경우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발생할 것이다. 기부자인 법인 또는 개인은 자본이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 금액으로서 자산의 원가를 선택할 수 있다.

캐나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없기 때문에 기부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모든 자산이 사망 직전에 처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발생한다. 만일 유언에 의해 자산이 자선단체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산관리인(executor)에게 자본이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유언에 의한 증여(gift)는 사망한 자의 납세신고서(terminal tax return)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이 필요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1996

년 3월 6일 Federal Budget은 유언에 의한 자선 기부금의 최고한도를 사망한 자의 과세소득의 100%로 인상했다. 더욱이, 유언에 의한 자선 증여(charitable gift)는 1년 전기이월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인 또는 기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증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개인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가 있어서 1997년의 경우 순이익(net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것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1992~1995년 기간은 20%, 1996년은 50%). 세액공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액은 5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두 가지 세율로 계산되는데, 200달러까지의 16%(2001년 이전은 17%), 200달러 초과금액의 29%를 합한 금액이다.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단체는 등록된 자선단체, 등록된 캐나다 아마추어 선수 협회, 면세주택 조합(tax-exempt housing corporations resident in Canada), 지방자치단체, UN 등이다. 주식과 같이 현금이 아닌 자산을 기부한 경우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등록된 자선단체 또는 정부에 증여한 경우, 납세자는 장부가(조정된 원가)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사이에서 증여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캐나다는 개인의 자선 기부에 대해 오래 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나라이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사용되었던 소득공제체제(tax-deduction system)가 부유한 기부자들에게 이득을 제공한다고 확신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득에 대해서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의 순비용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1988년에 캐나다는 모든 개인 기부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체계를 변경했다. 기부자들의 적용한계세율과 상관없이 연간 250캐나다달러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가장 낮은 세율로 세액공제를 하고 연간 25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기부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비용이 모든 기부자에게 동일해졌다.

1994년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200캐나다달러로 인하였다.

캐나다는 연방세율이 17%, 26%, 29%의 세 가지 한계세율에 의한 누진적 소득세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 당시에는 세액공제는 2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면서 연방 한계세율이 17%와 26%가 적용되는 개인 기부자에게 확실한 조세지원을 제공했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가 29%로 계산되면, 17% 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기부자들은 2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기부에 대해 12%의 연방세율 차이만큼 이득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그들이 206캐나다달러를 기부하던 10,000캐나다달러를 기부하던 일정하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환급불가능 방식이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연방세 감면 효과는 기부자가 한계세율 2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로 그 혜택이 줄어든다. 기부자가 한계세율 29%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제거된다.

## 2)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제

납세자는 연방정부 선거 및 보궐선거에 공식적인 입후보나 등록된 정당에 지급한 기부 금액에 대해 세액에서 5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정당의 registered agent나 입후보자의 official agent가 사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2000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해 공제액 산출은 다음과 같다.

<표 IV-43> 정치기부금 공제요율

기부금액	공제액
200달러 이하	기부금액의 75%
200달러 초과 550달러 이하	150달러 + 200달러 초과분의 50%
550달러 초과 1,075달러 이하	325달러 + 550달러 초과분의 33.3%
1,075달러 초과	최고 500달러

납세자가 1,075달러를 기부했을 때 최대한 공제될 수 있는 세액은 500달러이다. 1,075달러를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도 없다. 기부자가 정치 기부금의 납부로 인해 정부 또는 다른 정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받는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주와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은 주정부 납부세액에 대해서 주정부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 3) 단체에 대한 세제처리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s), 공공기금(public foundations), 사적기금(private foundation)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자선단체는 기부에 의한 것이든 이자·배당·자본이득과 같은 수동적 소득이든 또는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든 상관없이 소득에 대해 완전히 비과세된다. 소비세, 토지세 및 수입세 등 면세 범위는 다양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등록된 자선단체는 소비세 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 캐나다는 포괄적 소비세제를 따르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동일한 체제를 갖고 있으나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나 Business Transfer Tax가 아닌 물품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이 GST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 공급이란 상업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공급이며 면세 공급은 제외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과세대상 공급이란 공급 대가의 7% 상당액의 GST가 부과된다. GST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정부 대신 공급자가 징수하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다. 상업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선단체의 구입에

부과되는 GST는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에 의해 환급되거나 공제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GST 목적상 등록된 자선단체이어야 한다.

면세대상 공급은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선단체에 의한 공급은 상업적인 의도로 공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선단체에 의한 면세에 해당하는 구입이나 생산에서 발생하는 GST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상업적인 활동이 아닌 즉 면세활동과 관련하여 자선단체가 구입한 것에 대해 지불하는 GST는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에 의해 환급되거나 공제될 수 없다.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는 일반적으로 GST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공급량이 3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GST가 면세되는데, 자선단체의 경우 2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세가 적용된다. 소규모 자선 단체의 상업적인 활동은 대부분 이 기준 금액 미만이므로 GST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 마. 기부금 세제의 국제비교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기부금은 기업의 수익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부금 지출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세액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기부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손금산입을 특정의 공익성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이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공익성격이 아닌 일반기부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영국은 자선목적에 대해 설립된 단체에 대한 기

부금의 경우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고 일회성 기부의 경우 25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허용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범위가 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2년 1월부터 2배 공제(Double tax deduction)가 허용되므로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전액 소득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과세 소득의 75%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중 특히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전액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단 특정공익증진법인 및 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공익성에 따라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손금한도를 달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단 특이한 점은 일본의 경우 공익성격이 아닌 일반기부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그 외의 비교 대상국들은 대부분 공익성 정도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를 세분하고 있지 않다. 예외적으로 개인의 경우 미국이 공익성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만을 볼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부분 일률적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lt;표 IV-44&gt; 기부금세제의 국제비교

	기부금종류	공제한도액 계산	
		법인세(법인)	소득세(개인)
한국	법정기부금	전액손금산입	전액소득공제
	특례기부금	조정후소득금액 × 50%	조정후 소득금액 × 50%
	지정기부금	조정후소득금액 × 5%	조정후소득금액 × 10%
일본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자본×0.25%+소득×2.5%)×1/2	공제없음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소득공제한도[기부금지출액(소득의 25%가 한도)]-1만엔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외에 동일 한도까지 손금산입	
인정NPO법인에 대한기부금			
미국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 (연방·주·지방정부 등에 대한 공공목적의 기부금을 포함)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	조정총소득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
	기타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조정총소득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
캐나다	자선기부금	전액소득공제(과세소득의 75%를 한도로 함)	-세액공제 · 200달러 이하:세율 16% · 200달러 초과:세율 29% (과세소득의 75%초과하는 기부는 세액공제 제외)
싱가포르	공익성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의 2배 공제(2002.1.1 이후부터)

## V. 준조세의 규모 및 비교

이 장의 목적은 우리나라 준조세의 규모를 파악하고 과거에 이루어진 연구와 비교하는 데 있다. 먼저, 2003년도를 기준으로 준조세의 분야별 규모를 살펴본 다음 과거의 준조세 규모와 비교하고자 한다<sup>81)</sup>.

### 1. 준조세 규모(2003년말 기준)

아래의 표들은 2003년도에 부과된 준조세의 분야별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범위 1은 광의의 준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범위 2는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준다.

---

81)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규모는 누락되었다.

&lt;표 V-0&gt; 산림, 농림, 해양수산 분야의 준조세 규모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명	범위 1 (광의의 준조세)	범위 2 (협의의 준조세)	징수액 (2003년)
산림청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	67,470
	산림복구비용예치금	○	×	738,003
	임산물수입이익금	○	×	555
	보안림수익자부담금	○	×	-
	병해충구제예방비용 부담금	○	×	-
농림부	농지복구비용예치금	○	×	24,282
	농지조성비	○	×	422,657
	대체초지조성비	○	×	1,203
	농수산물수입이익금(농안법)	○	○	60,787
	농수산물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	○	474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인삼)	○	○	205
	축산물수입이익금	○	○	1,554
	쓰레기유발부담금	○	×	1,552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	×	824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	14,775
	분담금(해양오염방지법)	○	×	5,851
	어장정화·정비실시 부담금	○	×	10
계		1,340,202	63,020	1,340,202

<표 V-2> 산업,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 준조세의 규모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명	범위 1 (광의의준 조세)	범위 2 (협의의준 조세)	징수액 (2003년)
산 업 자 원 부	공동부담금	○	×	4,312
	광물수입·판매부담금	○	○	-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	○	810,562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	×	1,236
	안전관리부담금	○	×	89,608
	전기수용자·전기사업자부담금	○	○	6,896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	997,084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	×	121,753
정 보 통 신 부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	○	223,957
	별정보통신신사업자 등록시 조건에 따 른 연구·개발출연금	○	○	3,715
과 학 기 술 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	×	139,843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	×	22,625
계		2,421,591	1,045,130	2,421,591

<표 V-3> 교통 분야 준조세의 규모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명	범위 1 (광의의준조세)	범위 2 (협의의준조세)	징수액 (2003년)
건 설 교 통 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165,470
	혼잡통행료	○	×	15,493
	교통유발부담금	○	×	99,075
계		279,938	0	279,938

&lt;표 V-4&gt; 문화 분야 준조세의 규모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명	범위 1 (광의의준 조세)	범위 2 (협의의준 조세)	징수액 (2003년)
문 화 관 광 부	국외여행자납부금	○	○	51,599
	카지노사업자납부금	○	○	81,891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	×	1,170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분담금	○	×	-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	30,116
	모금(문화예술진흥법)	○	○	53,565
계		218,341	217,171	218,341

&lt;표 V-5&gt; 보건, 노동 분야 준조세의 규모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명	범위 1 (광의의 준조세)	범위 2 (협의의 준조세)	징수액 (2003년)
보 건 복 지 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	702,006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부담금	○	×	-
노 동 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	○	60,699
	장애인고용부담금	○	○	104,301
계		867,006	867,006	867,006

<표 V-6> 개발 분야의 준조세 여부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명	범위 1 (광의의 준조세)	범위 2 (협의의 준조세)	징수액 (2003년)
건설 교통 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	×	105,800
	복구예치금	○	×	-
	개발부담금	○	×	53,012
	수익자부담금(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	×	-
	원인자부담금(도로법)	○	×	95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	×	-
	손케자부담금(도로법)	○	×	-
	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금	○	×	-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금	○	×	-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	×	-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	-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	-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	-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	×	-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	×	-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	×	-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	○	129,648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	×	-
행정 자치 부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	×	-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	○	×	1,359
	소하천원상회복 예치금	○	×	-
	소하천수익자부담금	○	×	18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	×	-	
교육 인적 자원 부	학교용지부담금	○	○	196,105
계	486,037	325,753	486,037	

&lt;표 V-7&gt; 환경 분야의 준조세 규모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명	범위 1 (광의의 준조세)	범위 2 (협의의 준조세)	징수액 (2003년)
환경 부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	×	6,850
	수질개선후담금	○	×	13,325
	원인자부담금(수도법)	○	×	160,759
	손괴자부담금(수도법)	○	×	1,319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	×	7,391
	배출부과금(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	74
	원상회복예치금	○	×	581
	생태계보전협력금	○	×	11,946
	폐기물부담금	○	×	46,786
	재활용부과금	○	×	3,499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	×	-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	444,589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	×	105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 행보증금	○	×	896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낙 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	×	한강: 268,644 금강: 44,658 낙동강: 120,738 영산강·섬진강: 38,492
	환경개선후담금	○	×	482,923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	×	20,358
협의기준초과부담금	○	×	490	
총량초과부과금(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	○	×	-	
건설 교통 부	과밀부담금	○	×	43,415
	소음부담금	○	×	3,132
계		1,720,970	0	1,720,970

<표 V-8> 기타 분야의 준조세 규모

(단위: 백만원)

부처	부담금 명칭	범위 1 (광의의 준조세)	범위 2 (협의의 준조세)	징수액 (2003년)
재정 경제 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	110,998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	32,041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	212,202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	424,270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	×	10,095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	×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 연금	○	○	42,13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	×	624,900
외교 통상 부	국제교류기여금	○	○	28,475
계		1,485,111	70,605	1,485,111

<표 V-9> 사회보장성 보험료의 준조세 규모

(단위: 억원)

부처	부담금명	범위 1 (광의의 준조세)	범위 2 (협의의 준조세)	부담금액
사회 보장 장성 보험	국민연금기금	○	○	151,066 (62,354)
	고용보험기금	○	○	25,786 (19,90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	24,651
	건강보험	○	○	137,409 (35,918)
계		178,748	178,748	338,894 (142,830)

주: 1. 부담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이며, ( )안은 기업의 부담임.  
 2.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2003년 실제치이며 나머지는 예상치임.

이상에서 제시된 분야별 준조세 규모와 기부금을 합하여 범위 1에 해당되는 광의의 준조세와 범위 2에 해당되는 협의의 준조세 규모를 추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손금산입분에 대한 공제를 하기 전의 광의에 해당되는 준조세의 규모는 약 23조 1,516억원에 이르고 협의의 준조세는 16조 9,212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준조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성 보험료이다. 사회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할 경우의 준조세 규모를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8조 8,686억원으로 추계되었고 협의의 준조세는 2조 6,382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부금 중 “다소강제적”, “완전강제적” 그리고 “중립적”이라고 답한 경우를 모두 강제성을 띤 것으로 취급할 때의 기부금 규모는 1,95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23조 2,979억원이며 협의의 준조세는 17조 675억원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9조 149억원, 그리고 협의의 준조세는 2조 7,845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V-10> 분야별 준조세 규모(2003년말 기준)

(단위: 억원, %)

		합계	산림 농림 해양수산	산업 정통 과기	교통	문화	보건 복지	개발	환경	기타	사회보장 성보험료	기부금 (I)	기부금 (II)
손금 산입분 공제전	범위 1 (광의의준 조세)	231,516 (100)	13,402 (5.8)	24,216 (10.5)	2,799 (1.2)	2,183 (0.9)	8,670 (3.7)	4,860 (2.1)	17,210 (7.4)	14,851 (6.4)	142,830 (61.7)	495 (0.2)	1,958
	범위 2 (협의의준 조세)	169,212 (100)	630 (0.4)	10,451 (6.2)	-	2,172 (1.3)	8,670 (5.1)	3,238 (1.9)	-	706 (0.4)	142,830 (84.4)	495 (0.3)	1,958
손금 산입분 공제후	범위 1 (광의의준 조세)	169,047 (100)	9,783 (5.8)	17,678 (10.5)	2,043 (1.2)	1,594 (0.9)	6,329 (3.7)	3,548 (2.1)	12,563 (7.4)	10,841 (6.4)	104,266 (61.7)	402 (0.2)	1,571
	범위 2 (협의의준 조세)	123,565 (100)	460 (0.4)	7,629 (6.2)	-	1,586 (1.3)	6,329 (5.1)	2,378 (1.9)	-	515 (0.4)	104,266 (84.4)	402 (0.3)	1,571

주: 1. ( )안은 비중임.

2. 기부금(I)은 “다소강제적” 또는 “완전강제적”이라고 답한 경우이고, 기부금(II)는 기부금(I)에 “중립적”이라고 답한 경우를 합한 것임.

한편,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준조세는 세법상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그러므로 기업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준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손금산입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손금산입분을 제외한 다음 광의의 준조세를 계산하여 보면 총 16조 9,04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협의의 준조세는 12조 3,565억원으로 집계되었다<sup>82)</sup>.

이 중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4,781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조 9,299억원에 이른다. 또한, 기부금의 강제성 정도에서 중립적이라고 답한 것까지 합할 경우의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17조 216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2조 4,734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5,95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2조 468억원임을 알 수 있다<sup>83)</sup>.

## 2. 준조세의 변화추이

앞에서는 2003년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준조세 규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준조세의 연도별 변화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부금의 규모는 손원의 외(1998)에서 조사된 것을 제외하면 과거의 시계열 자료가 없으므로 변화추이에서 제외하였다. 다행히 강제성을 띤 기부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전체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82) 손금산입분을 공제하기 위하여 법인세율 27%를 적용하였다.

83) 본 보고서에서는 모든 부담금을 기업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금액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몇 개의 부담금 중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국제교류기여금, 혼잡통행료, 국외여행자납부금,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대한부과금, 모금(문화예술진흥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납부의무자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시각에서 부담금을 구분하였으며, 2003년도 기준 5개의 총 부담금은 약 1,792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에서 차지하는 금액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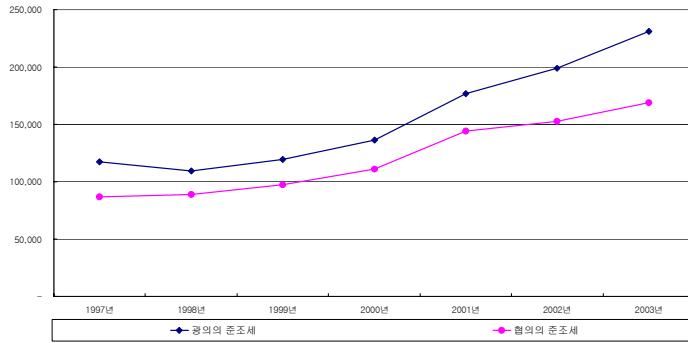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기부금을 제외한 준조세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들에게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준조세 규모는 연도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광의의 준조세는 2000년까지 매우 완만한 증가나 감소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협의의 준조세 또한 2001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 준조세의 연도별 추이(1997~2003)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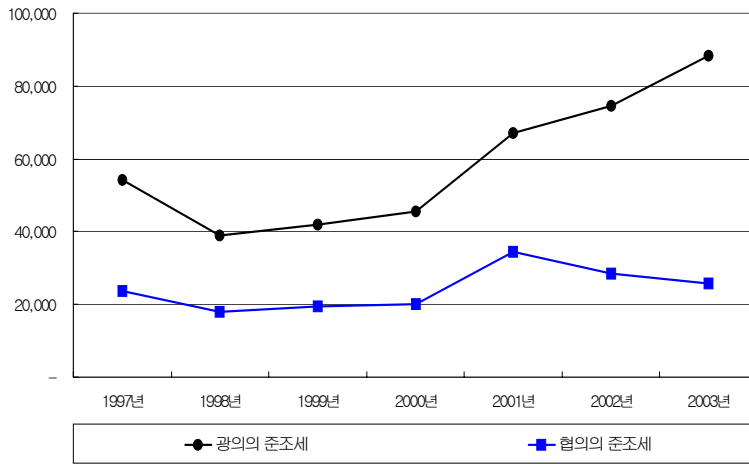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부담금	광의의 부담금	54,281	38,779	41,771	45,377	67,120	74,482	88,193	410,003
	협의의 부담금	23,655	17,994	19,347	19,931	34,545	28,437	25,887	169,796
사회 보장성 보험	국민연금기금	26,847	38,315	38,399	42,863	49,316	55,131	62,354	313,223
	고용보험기금	6,569	6,933	11,744	14,493	17,844	19,128	19,907	96,61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8,190	14,514	15,300	18,764	22,561	23,953	24,651	137,933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11,496	11,095	12,507	14,849	19,787	26,183	35,918	131,833
	합계	63,101	70,856	77,949	90,969	109,507	124,394	142,830	679,605
광의의 준조세		117,382	109,635	119,720	136,346	176,627	198,876	231,023	1,089,608
협의의 준조세		86,756	88,850	97,236	110,900	144,052	152,831	168,717	849,401

[그림 V-1] 준조세의 연도별 추이(1997-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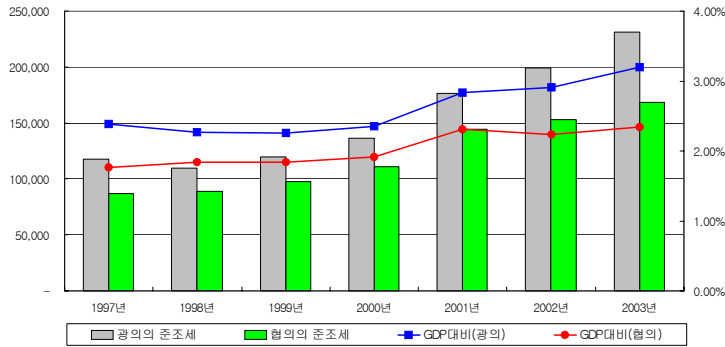
한편, 위에서 살펴본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 즉 부담금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의 [그림 V-1]과 비교할 때, 광의의 부담금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경우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8년에는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협의의 부담금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협의의 준조세와는 다른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협의의 부담금은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인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그림 V-1]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의 연도별 추이(1997~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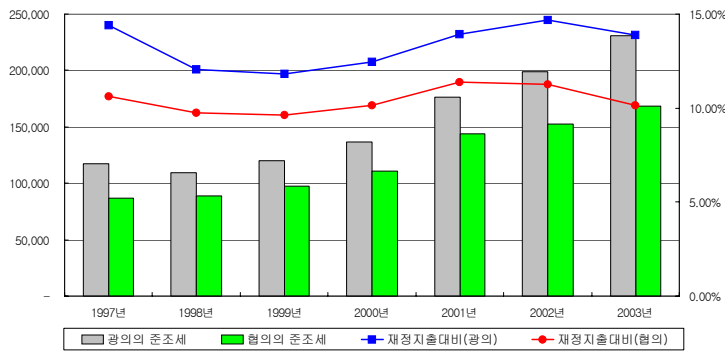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GDP 대비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00년까지 2.3% 정도에서 유지되다 그 이후로 크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3.2%까지 확대되었다. GDP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도 비슷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V-3] GDP 대비 준조세 비중의 추이(1997~2003)



한편, 통합재정 지출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통합재정 지출 대비 준조세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앞에서 살펴본 준조세의 절대액 규모의 변화추이나 GDP 대비 비중의 변화추이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재정지출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뚜렷한 증가나 감소 추이를 보이지 않고 11%와 15%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출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도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V-4] 통합재정지출 대비 준조세 비중의 추이(1997~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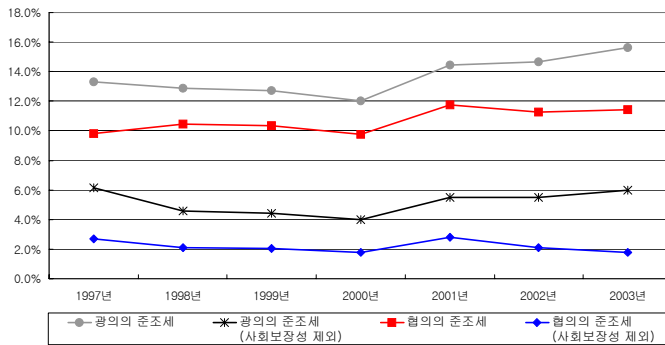
다음의 표와 그림은 정부의 세수에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게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광의의 준조세가 세수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0년까지 감소하다 그 이후로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97년을 제외하면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협의의 준조세도 광의의 준조세와 비슷한 연도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료를 제외하여도 연도별 변화추이는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V-12> 세수대비 준조세 비중의 연도별 추이(1997~2003)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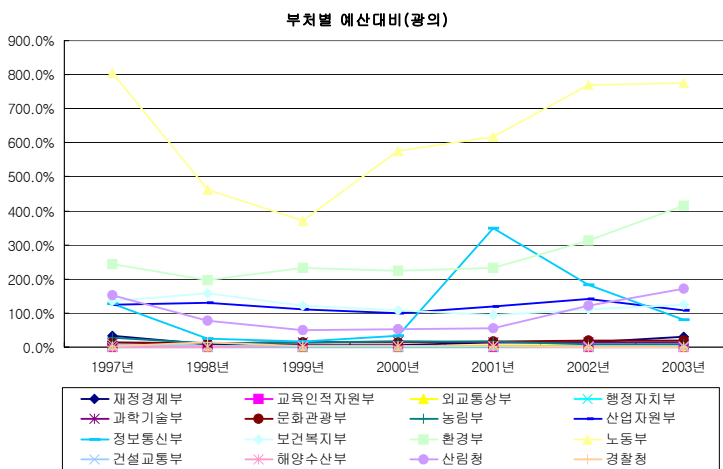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광의의 준조세	117,382	109,635	119,720	136,346	176,627	198,876	231,023
	13.3	12.9	12.7	12.0	14.4	14.7	15.6
광의의 준조세 (사회보장성 제외)	54,281	38,779	41,771	45,377	67,120	74,482	88,193
	6.1	4.6	4.4	4.0	5.5	5.5	6.0
협의의 준조세	86,756	88,850	97,296	110,900	144,000	152,831	168,717
	9.8	10.5	10.3	9.8	11.8	11.3	11.4
협의의 준조세 (사회보장성 제외)	23,655	17,994	19,347	19,931	34,545	28,437	25,887
	2.7	2.1	2.1	1.8	2.8	2.1	1.8

[그림 V-5] 세수대비 준조세 비중의 추이(1997~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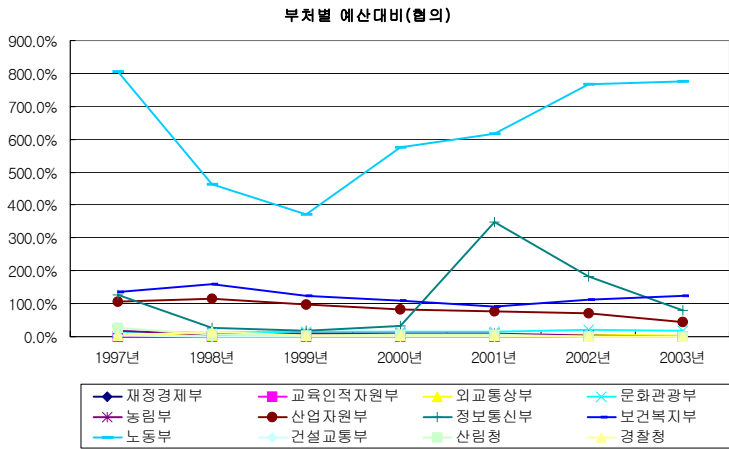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부처별 예산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의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산대비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노동부이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예산대비 비중은 2001년과 2002년에 크게 증가하였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부처들의 예산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0% 미만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V-6] 부처별 예산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의 추이(1997~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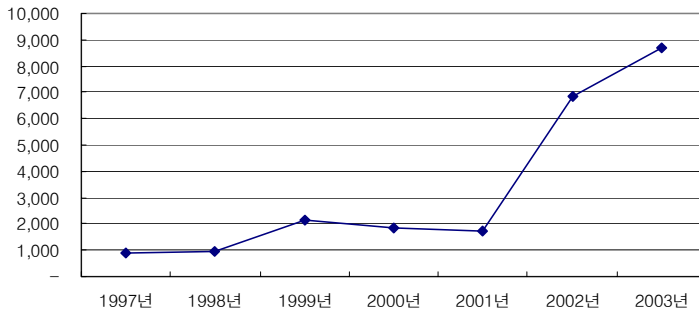
한편, 부처별 예산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바로 위의 광의의 준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노동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의 예산대비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부의 예산대비 비중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V-7] 부처별 예산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의 추이(1997~2003)



분야별 협의의 준조세 변화추이 중 보건·노동분야의 부담금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보건·노동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보건·노동분야의 1997년 징수액은 약 908억원에서 2003년에는 8,670억원으로 거의 10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V-8] 보건·노동분야 부담금 연도별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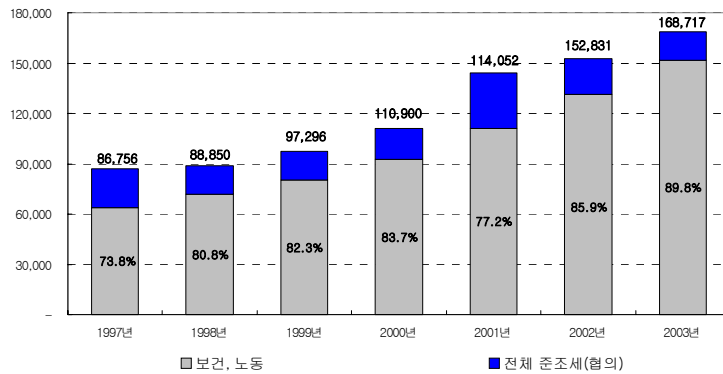


1999년에 부담금 징수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새롭게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2002년부터 징수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2002년 2월부터 2원/갑에서 150원/갑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성 보험이 모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의해 관리되면서 보건·노동분야에 속한다고 전제할 때 부담금을 포함한 보건·노동분야의 협의의 준조세는 2003년 기준 89.8%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V-9] 보건·노동분야의 (협의)준조세 비중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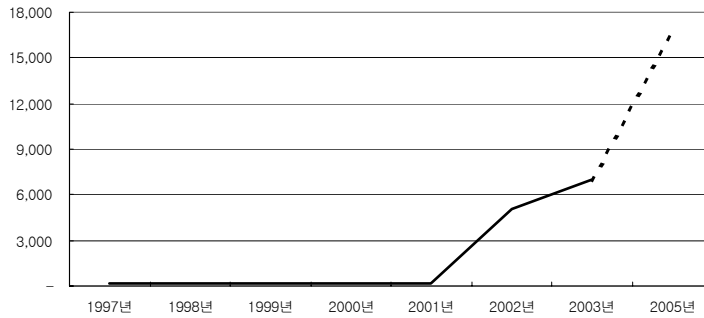
건강증진부담금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150원/갑에서 354원/갑으로 204원/갑 인상되어 이에 따른 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액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sup>84)</sup>. 단순하게 담배소비가 2003년 기준으로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은 1.6조원을 상회하게 되어 현재 징

84) 건강증진부담금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150원에서 354원으로 204원 인상되고 담배소비세는 131원, 지방교육세는 66원, 폐기물부담금은 3원, 연초농가지원출연금은 5원 올리는 등 담배관련 각종 부담금과 세금을 409원 인상되었다.

수하고 있는 부담금 중 가장 큰 규모의 부담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85)</sup>. 결과적으로 협의의 준조세에서 보건·노동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V-10] 건강증진부담금 징수 추세

(단위: 억원)



85) 담배가격의 변화에 의해 담배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고의 연구범위를 넘는 것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김용익 교수팀에 의뢰 조사한 결과, 담배값을 500원 올리면 흡연 감소율은 1.7%~3.4%에 달한다는 자료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단기적으로 담배값 인상시점에선 흡연 감소추세를 보이겠지만 2~4개월만 지나면 다시 흡연률이 상승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2003년 담배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2004년 담배판매량은 2003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VI. 결 론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준조세로 정의하면, 준조세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은 광의의 준조세로 명명될 수 있다. 이 범주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각종 공과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회보장성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성금 등을 들 수 있다.

광의의 준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조금 축소하면 협의의 준조세를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준조세 중 사업자의 부담이 1) 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2)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을 협의의 준조세로 볼 수 있다(손원익 외, 1998)<sup>86)</sup>. 이와 같이 준조세를 정의할 경우 여기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sup>87)</sup>, 사회보장성 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이나 성금이 포함된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86) 전자는 수익자 부담금, 후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불린다.

87)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되는 부담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부록의 표를 참조할 것.

이론적 분석을 위하여 과태료를 제외한 광의의 준조세를 분류하여 보면 조세성 부담금, 비조세성 부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기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각 유형별로 각기 다른 요인들이 준조세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용료와 수수료의 경우에는 주로 수요 및 생산함수에 의존하게 된다. 기부금 또한 이러한 요인들과 정부의 강제력의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즉, 조세성과 비조세성 부담금을 제외한 준조세는 주로 수요와 생산함수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성 부담금은 감소하고 비조세성 부담금은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준조세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준조세를 폐지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율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률은 1) 조세에 대한 저항, 2)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의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 3)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과세대상 자원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부과 자원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과세대상 자원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부과 자원의 비율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힘들다 하겠다. 또한, 조세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이 좌우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효율화, 조세나 재정정책의 형평성 제고, 지출의 합리성 제고 등을 통하여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면 준조세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성 부담금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비조세성 부담금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준조세 중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제하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조세성 부담금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비조세성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 없이는 부담금의 규모를 감소시키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외국의 부담금 제도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시도도 함께 하였다. 외국 제도는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와 비교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별 부담금별로 부과법적근거, 부과주체, 부과대상, 그리고 부과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징수실적이 파악 가능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담금 징수실적과 비교도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외국의 부담금 제도에 대한 분석은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부담금 제도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외국의 부담금 제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나라처럼 부담금에 대한 활용도가 크거나 많은 종류의 부담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부담금의 징수 금액도 미미하여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그 비중이 크지 않아 잡수입에 포함시키고 있고, 개별 부처 혹은 재무성 차원에서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집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부담금 징수금액은 2003년 기준 8.8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전반적인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적절한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조사대상인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런 부담금 관리에 관한 사후 관리제도 혹은 신설·운용에 대한 법적 기준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등에관한예산집행적정화에관한법률'이 존재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등에 혹은 기타 보조금이 지급될 때 법률에 규정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금보다는 보조금에 더 중요성을 두면서 방만한 운영을 막고자 하는 일본의 경우 보조금에 관

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부담금에 대한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정책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가 부담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는 재원에 대해 조사 국가들은 대부분 조세를 통해 이런 재원을 조성하고 있었다. 다만, 싱가포르의 도시국가로 일본, 미국과 달리 부담금(fees and charges)<sup>88)</sup>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일본은 명목 GDP 혹은 총재정지출 대비 환경보호 분야의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로서 이들 재원은 대부분 조세부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일본은 환경세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일본은 환경관련 특별회계가 없으며, 존재하는 환경관련 부담금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담금 재원이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동경)이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도 부담금과 목적세 중 어느 형태로 부과할지를 고민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혼잡통행료는 모두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 관련 재원은 대부분 조세와 펀드(슈퍼펀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대 말 이후에 환경관련 부담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EPA를 중심으로 조세를 통한 재원 조성보다는 사용자, 원인자 요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한 재원 조성이 효율적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에 귀속되거나 일반회계에 귀속된 후 슈퍼펀드에 출연되고 있다. 슈퍼펀드의 경우, 펀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서와는 달리 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으며, 슈퍼펀드의 재원

88) 우리나라 부담금 개념보다 아주 포괄적으로 면허세, 수수료, 등록세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은 대부분은 기부금이나 조세, 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미국은 건설·교통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산세 수입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건설관련 재원 중 일부 새로운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 교통과 관련된 재원은 소비세(sale tax)를 이용하거나<sup>89)</sup>, 휘발유세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자치단체(주, 카운티, 혹은 시)별로 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수수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혼잡통행료 성격의 징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구별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부담금(fees and charges)을 더 활용하고 있으나, 부담금(fees and charges)의 약 절반 정도가 Licence and Permits의 항목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징수규모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환경관련 부담금 규모는 GDP 대비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고, 건설관련 개발부담금 규모는 GDP 대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고, 교통관련 혼잡통행료는 GDP 대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도시국가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국가로 국토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차량대수를 한정할 정도로 교통에 대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징수되는 Fee에는 우리나라 등록세와 유사한 Certificates of Entitlement가 있으며 일정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년 허가된 차량대수에 연계하여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금액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sup>90)</sup>.

환경과 관련한 지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환경 관련 부담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 조세를 통한 재원의 확보 이외에도 수익자와 원인자에게 그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

89) 필요한 교통재원이 얼마인가에 따라 소비세 세율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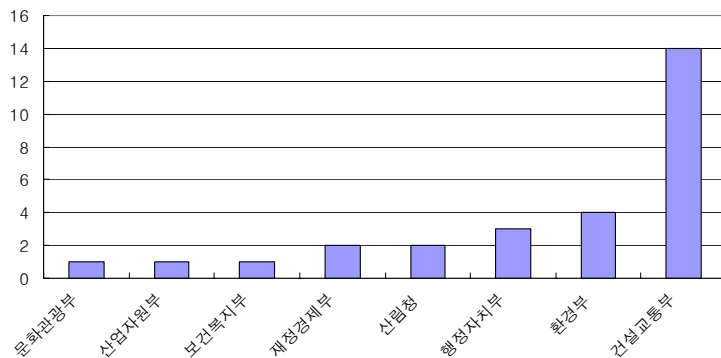
90) 차량가격보다 Certificates of Entitlement가 더 비싸기도 한다.

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담금제도를 사용자 또는 원인자 요금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체계를 바꾸거나 환경세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사용자 또는 원인자 요금이 일반 재원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199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또는 원인자 요금이 도입되고 있다. 일본은 부담금이 아니라 목적세로서의 환경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건설관련 부담금이 많지 않은 것에 비추어 현재 건설과 관련된 부담금 중 징수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부담금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징수실적이 없는 총 28개의 부담금 중 건설교통부가 14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부 4개, 행정자치부가 3개 산림청과 재정경제부 각각 2개, 그리고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각각 1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I-1] 최근 3년간 연속 징수실적이 없는 소관별 부담금 수

(단위: 개)



건설과 관련하여 새롭게 운영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외국제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기

반시설부담금은 외국에서도 개발과 관련되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담금으로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주택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통과 관련된 부담금 중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는 혼잡통행료제도가 있다. 혼잡통행료 제도는 우리나라(서울), 싱가포르, 영국(런던)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동경)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밖의 노르웨이, 캐나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혼잡통행료라기 보다는 도로이용료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런 도로이용료에도 혼잡을 감안한 부분은 있을 수 있음을 염두 해야 한다. 한편, 교통과 관련된 부담금의 운영방안은 개별 부담금별 연구 혹은 교통관련 부담금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기부금 지출 중 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말 기준으로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총액은 1조 2,774억원으로 1997년보다 32%정도 감소하였고, 비자발적 기부금의 비중도 1997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자발적 기부금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이며, 이는 무분별한 기부금의 모집을 규제한 정부정책의 긍정적 결과인 동시에 사회적 기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말을 기준으로 분야별 준조세 규모와 기부금 중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이라고 답한 금액을 합하여 준조세의 규모를 추계하여 보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약 23조 1,516억원에 이르고 협의의 준조세는 16조 9,2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준조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성 보험료이다. 사회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할 경우의 준조세 규모를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8조 8,686억원으로 추계되었고 협의의 준조세는 2조 6,382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부금 중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그리고 “중립적”이라고

답한 경우를 모두 강제성을 띤 것으로 취급할 때의 기부금 규모는 1,95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23조 2,979억원이며 협의의 준조세는 17조 675억원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9조 149억원, 그리고 협의의 준조세는 2조 7,8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기업이 납부하는 준조세가 손금산입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준조세 규모이다. 그러나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준조세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허용되므로 손금산입으로 인해 세액이 감면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일 것이다. 이와 같은 손금산입으로 인한 세액감면 부분을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총 16조 9,047억원이고 협의의 준조세 규모는 12조 3,565억원 정도이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4,781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조 9,299억원 정도이다. 또한, 기부금의 강제성 정도에서 중립적이라고 답한 것까지 합할 경우의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17조 216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2조 4,734억원이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5,95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2조 468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기부금을 제외한 준조세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준조세 규모는 연도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광의의 준조세는 2000년까지 매우 완만한 증가나 감소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협의의 준조세 또한 2001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의 변화추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재정 지출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뚜렷한 증가나 감소 추이를 보이지 않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부처별 예산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노동부이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부로 나타났다. 부처별 예산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노동부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의 예산대비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년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의 준조세부담 실태 및 정리방안』, 1994.
- \_\_\_\_\_, 『중소기업의 준조세부담 실태 및 정리방안』, 1997.
- \_\_\_\_\_, 『중소기업의 준조세부담 실태 및 정리방안』, 2002.
- 한국법제연구원, 『부담금운용의 효과와 실태분석』, 2002. 8.
- 김진수,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 박상우, 권혁진, 『과밀부담금의 활용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5. 12.
- 박형수, 『기능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미발표논문, 2004.
- 손원익, 김상현, 김진수, 박기백, 한도숙,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 심상렬 외, 『에너지 관련 공적부과금 개선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 오준근, 『조세의 금전지급의무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12.
- 이상우, 임혁진, 『과밀부담금의 활용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5. 12.
- 이춘근, 『기업의 준조세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8. 11.
- \_\_\_\_\_, 『한국기업의 준조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1.
- 임양택, 최명근, 『한국기업의 준조세부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부

- 담수준의 실증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83. 6.
- 최동규, 『기업의 준조세부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6, 11.
- 한경동, 하정훈, 『조세의 공공부담과 재정』, 한국경제연구원, 1999.
- 이훈기, 런던 혼잡통행료의 교훈, 2003.
- 정희남 외, 『일본과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국토연구원, 2003.
- 일본 국세청, 『暮らしの税情報』, 2004.
- 일본 재무성, 『지방재정보통신계연보』, 각 년호.
- Abrams, B., and M. Schmitz, “The crowding-out effect of governmental transferson private charitable contributions: Cross-section evidence”, *National Tax Journal*, 37: 563~68, 1984.
- Ackerman, Frank, Dmitri Cavander, John Stutzm Brian Zukerman, *Preliminary Analysis: The Costs and Benefits of Bottle Bills*, US EPA Report, Tellus Institute, 1995.
- Anderson, Robert, “Federal Subsidies for Alternative Fuels and Alternative Fuel Vehicles”,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Discussion Paper*, No. 076, 1994.
- Arumlampalam, W., and P. Stoneman, “An investigation into the givings by large corporate donors to UK charities”, *Applied Economics*, Vol. 27, pp. 935~45, 1995.
- Bauer, Scott and Marie Lynn Miranda, *The urban Performance of Unit Pricing: An Analysis of Variable Rates for Resident Garbage Collection in Urban Areas*, US EPA report, EE-0304, 1996.
- Boatsman, J. R., and S. Gupta, “Taxes and corporate charity:

- Empirical evidence from micro-level panel data", *National Tax Journal* 49 (2): 193~213, 1996.
- Campbell, D., "The voluntary non-profit sector: An alternative. Government and Competitiveness Project", Discussion Paper 93-13, School of Policy Studies, Queen's University, Kingston, Ontario, Canada, 1993.
- \_\_\_\_\_, "The first general map of Canada's third sector. Government and Competitiveness Project," Discussion Paper 94-03, School of Policy Studies, Queen's University, Kingston, Ontario, Canada, 1994.
- Canadian Tax Foundation. *The national finances 1990*, Toronto: Canadian Tax Foundation, 1991.
- Canadian Tax Foundation. *The national finances 1991*, Toronto: Canadian Tax Foundation, 1992.
- Canadian Tax Foundation. *The national finances 1992*, Toronto: Canadian Tax Foundation, 1993.
- CCH, Canadian Master Tax Guide, 2003.
- \_\_\_\_\_, Singapore Master Tax Guide, 2003.
- \_\_\_\_\_, Tax Handbook 2001-2002, 2001.
- \_\_\_\_\_, US Master Tax Guide, 2003.
- Clotfelter, C. T., *Federal tax policy and charitable giving*, Chicago: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 Day, K. M., and R. A. Devli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giving in Canada*, Working Paper no. 9412E,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Ottawa, Canada., 1994.
- \_\_\_\_\_, "Volunteerism and Crowding out: Canadian Econometric

- Evid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9 (1): 37-53, 1996.
- \_\_\_\_\_, "Do Government Expenditures Crowd Out Corporate Contributions?", *Public Finance Review* 32(4): 404-425, 2004.
- Duhl, Joshua, "Effluent Fees: Present Practice and Future Potentials",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Discussion Paper*, No. 075, 1993.
- Epstein, M. J., "The fall of corporate contributions", *Public Relations Quarterly*, 38 (2): 37~39, 1993.
- Fullerton, Don and Thomas Kinnaman, "Garbage Recycling and Illicit Burning or Dumping",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29-1, 1995.
- Hoerner, Andrew, *Harnessing the Tax cod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 survey of State Initiatives*, World Resources Institute, 1998.
- Jones, J. C. H., and L. Laudadio, "Market structure and corporate charitable donations: Some Canadian evidence for 1976 and 1981", *Applied Economics* 23:1237~44, 1991.
- Kingma, R., "An accurate measurement of the crowd-out effect, income effect, and price effect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1197-207, 1989.
- Lester M. Salamon, *The International Guide to Nonprofit Law*, 1997.
- Leclair, M. S., and K. Gordon, "Corporate support for artistic and cultural activities: What determines the distribution of corporate giving",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4:225~

41, 2000.

- Levy, F. K., and G. M. Shatto, "The evaluation of corporate contributions", *Public Choice* 33(1): 19~28, 1978.
- McElroy, K. M., and J. J. Siegfried, *The effect of firm size and mergers on corporate philanthropy*, In *The impact of the modern corporation*, ed. Betty Bock, Harvey J. Goldschmid, Ira M. Millstein, and F. M. Scher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_\_\_\_\_, "The Effect of firm size on corporate philanthropy",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25 (2): 18~26, 1985.
- Menchik, P. L., and B. A. Weisbrod, "Volunteer labor suppl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2: 159~83, 1987.
- Miranda, Marie Lynn and Joseph Aldy, *The Unit Pricing of Residential Municipal Solid Wastes*, US EPA Report, EE 0306, 1996.
-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Economics,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with Economic Incentives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2001.
- Navarro, P., "The income elasticity of corporate contributions",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28 (4): 66~75, 1988a.
- \_\_\_\_\_, "Why Do Corporations Give to Charity?", *Journal of Business* 61 (1): 65~94, 1988b.
- OECD, Environmental Related Taxes Database.
- \_\_\_\_\_, Energy Price and Taxes, Second Quarter, 2004.
- Palmer, Karen, Hilary Sigman, Margaret Walls, Ken Harrison, and Steve Palmer, "The cost of Residential Municipal Solid

Wastes, Comparing Deposit-Refunds, Advance Disposal Fees, Recycling Subsidies, and Recycling Rate Standards", *Resource for the Future Discussion Paper*, No 95~33, 1995.

Philanthropy and Law in Asia, Edited by Thomas Silk, 1999.

Republic of Singapore, "The budget for the financial year" 각 년 호.

\_\_\_\_\_, "Financial Statement for the financial year" 각 년 호.

Rostami, J., *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 in Canada 1990*, Ottawa, Canada: Institute of Donations and Public Affairs Research, 1991.

\_\_\_\_\_, *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 in Canada 1991*, Ottawa, Canada: Institute of Donations and Public Affairs Research, 1992.

\_\_\_\_\_, *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 in Canada 1992*, Ottawa, Canada: Institute of Donations and Public Affairs Research, 1993.

Schiff, J., "Does government spending crowd out charitable contributions?", *National Tax Journal*, 38: 535~46, 1985.

Schwartz, R. A., "Corporate philanthropic contributions", *Journal of Finance*, 23 (3): 479~97, 1968.

Sebastian, P., "Attaching strings",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26, p. 1[A], 1993.

Smith, L., *Canada's Charitable Economy*. Toronto: Canadian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1992.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Daily Environmental News,' March 24, 1995

Thompson, J. K., H. L. Smith and J. N. Hood, "Charitable

- contributions by small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1 (3): 35~51, 1993.
- Webb, N. J. and A. Farmer, "Corporate Goodwill: A Game Theoretic Approach to the Effect of Corporate Charitable Expenditures on Firm Behaviour",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67 (1): 29-50, 1996.
- White, H., "A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stimator and a Direct Test for Heteroskedasticity", *Econometrica* 48: 817-38, 1980.
- Williamson, O. E., *The Economics of Discretionary Behavior: Managerial Objectives in a Theory of the Fir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4.
- Williamson, W. G., and A. C. Lahmer, *Preparing Your Corporate Tax Returns*. Toronto: CCH Canadian Limited, 1989.

[www.michigan.gov/epa](http://www.michigan.gov/epa)

[www.pub.gov.sg](http://www.pub.gov.sg)

[www.ca.gov](http://www.ca.gov)

## 부록 I. 기업의 준조세 실태조사 설문지

### 기업의 준조세 실태조사표

- ♣ 안녕하세요?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기업이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범위를 재정립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준조세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준조세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번 대한상공회의소 협조 하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이상과 같은 본 조사의 취지를 감안하여 응답에 누락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표되는 일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유 의 사 항 □

- 준조세란 ‘기업의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생산비용 및 조세를 제외한 모든 부담’으로서 기부금·성금·부담금 등 실질적인 재원부담을 의미합니다.
- 이번 조사의 설문은 세무상 손비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특별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세무상 손비로 처리되지 않는 준조세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공과금적 성격의 부담금(부과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I. 일반조사사항

업 체 명		전화번호	
작 성 자			
업 종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도소매업 ④금융업 ⑤운수업 ⑥기타( )		
기업 형태	① 대 기 업 ( )    ② 중 소 기 업 ( ) ① 거래소 ( ) ② 코스닥 ( ) ③비상장 ( )		
기업 코드 (거래소· 코스닥)			
종업원 수	(명)		
자본금(납입)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매출원가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2003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귀사가 지출한 기부금(손금처리가 된 기부금)의 항목별 금액과 지출동기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만원)	지 출 동 기				
		1. 완전 자발적	2. 다소 자발적	3. 중립적	4. 다소 강제적	5. 완전 강제적
법정기부금	1. 국가 또는 지자체기부금					
	2.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4. 정당 및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합계						
특례기부금	5. 사립학교 등					
	6. 사내근로복지기금					
	7. 문화예술진흥기금					
	8. 특정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9. 사회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 정부출연연구기관					
	11. 기타 조특법상 기부금					
합 계						
지정기부금	12. 불우이웃돕기성금					
	13. 학술단체					
	14. 문화단체					
	15. 종교단체					
	16. 사회단체					
	17. 기타지정기부금					
	합 계					

Ⅲ. 세무상 손금처리가 불가능한 준조세의 항목별 금액과 지출동기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만원)	지 출 동 기				
		1. 완전 자발 적	2. 다소 자발 적	3. 중립 적	4. 다소 강제 적	5. 완전 강제 적
1. 조합 또는 협회비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3. 규제담당공무원(경찰서, 소방서, 건축, 보건, 위생, 환경, 세무 등)에 대한 금전적 지출						
4. 기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준조세 항목(손비처리 안된 정치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 칸에 항목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합 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조사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조세연구원 : (138-774)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의 연구조정실장 : Tel (02)2186-2208  
 송은주 주임연구원: Tel (02)2186-2262  
 (주)마켓비전 : (121-110)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6-1 민한빌딩 2층  
 김부용 연구원 : Tel (02)716-1010

## 참고: 설문조사를 위한 기부금의 분류

## I. 법정기부금

- 법인세법에 의한 기부금: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4조 2항)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손금산입(조특법 제76조)
- 4.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II. 특례기부금

-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조특법 제73조),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은 3년 이내에 이월하여 손금산입
-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

에 한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한국기계연구원
  - 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다. 한국자원연구소
  - 라. 한국해양연구소
  - 마. 한국전기연구소
  - 바. 한국화학연구소
  -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차. 생명공학연구소
  - 카. 연구개발정보센터
  - 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 거. 한국천문연구원
-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9.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 III. 지정기부금

- 다음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사. 다음에 해당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

- 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更生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

- 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 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33.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3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

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40.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다음의 기부금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46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

- 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1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부록Ⅱ. 정치자금 모집 등에 관한 제도

### 1. 한국

현재 우리나라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한 규정은 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②결핵예방법 ③보훈기금법 ④문화예술진흥법 ⑤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우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며 모집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권자가 된다.

모집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①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②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③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④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모집된 기부금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집금품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서 기부금 모집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또한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또는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원회에는 1천만원,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1회에 10만원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다.

## 2. 미국

미국의 정치자금은 크게 소프트 머니(soft money)와 하드 머니(hard money)로 나뉘어 진다. 하드 머니는 연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선거자금으로 연방 선거법상 액수와 용도 등이 엄격히 제한되며, 현재 개인 당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할 수 없다. 소프트머니는 후보가 아닌 정당에 대한 기부금으로 한도와 용도에 제한이 없으며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각 정당은 소프트머니를 통한 모금을 선호해왔다.

소프트머니는 투표율을 높이거나 정책을 홍보하는데 쓰일 수 있는 현금인데도 각 정당은 후보 유세에 변칙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정격유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언론사태를 계기로 그 폐해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공화당 Shays의원과 민주당 Meehan의원이 공동발의하여 “Shays-Meehan 법안”으로 명명된 선거자금 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선거운동 자금원으로 정당에 무제한 기부할 수 있는 ‘소프트 머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각 정당이 유권자의 투표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개인당 1만달러까지만 기부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후보 기부금인 ‘하드 머니(hard money)’를 상·하원의원과 대통령의 경우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이 정당, 후보 등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총액한도를 25,000달러에서 37,500달러로 조정하였다. 기업과 노조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본 선거 60일 전 및 예비선거 30일 전의 기간에 방송되는 정치광고를 위한 기부행위가 금지되었으며, 이러한 기부행위도 정당위원회를 통한 하드머니의 형태만 허용하였다. 소프트머니 금지 규정은 2002. 11. 6부터 발효되며 기부금 한도 변화에 대한 규정은 2003. 1. 1에 발효된다.

### 3. 일본

일본의 정치자금규제법은 1948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의회제 민주정치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 그 외의 정치단체 및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의 공명과 공정을 확보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 가. 기부자와 기부의 대상자의 제한

회사, 노동조합 및 그 외의 단체(정치단체를 제외)가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는 정당·정당지부(1 이상의 시정촌의 구역 또는 선거구이 구역을 단위로 설치되는 지부에 한정) 및 정치자금단체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회사등이 부담하는 당비 또는 회비는 ‘기

부'로 본다).

노동조합 및 그 외의 단체(정치단체 제외)에 대해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하는 것을 권유 또는 요구해서는 안된다. 개인이나 정당이외의 정치단체가 정치가에 대해서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는 선거운동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전 등(금전 및 유가증권)' 의한 것이 금지된다.

#### 나. 기부의 금액 제한

기부의 금액 제한이란 정치활동에 관해서 1인의 기부자가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으로 총 범위 제한과 개별 제한이 있다. 총 범위제한금액은 1인의 기부자가 1년간 할 수 있는 기부액 총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정당·정치자금단체: 개인은 2,000만엔까지, 회사·노동조합등은 750만엔에서 1억엔까지(자본금액, 조합원 수 등에 따라 각 한도가 정해 있음)

② 그 외의 정치단체·정치가: 개인은 1,000만엔까지

개별제한이란 1인의 기부자가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1년간 할 수 있는 기부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이 하는 기부로 기타 정치단체에 대해 하는 기부는 150만엔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부표 1> 일본의 정치자금 기부의 금액제한 개요

		정치자 개인	정치단체		정당·정치자 금단체
			자금관리단체	자금관 리단체 이외의 단체	
개인	총 범위 제한	연간 1,000만엔 이내 다만, 정치자에 대한 것은 선거운동에 관한 것 제외, 금전등에 의한 것 금지1)		연간 2,000만엔 이내	
	동일한 수령자에 대한 개별제한	연간 150만엔 이내 다만, 정치자에 대한 것은 선거운동에 관한 것 제외, 금전등에 의한 것 금지2)		제한 없음	
회사노동조합 등의 단체	총범위 제한	모두 금지		자본금, 조합원 수단계에 따라 750만엔~1억 엔 이내	
	동일한 수령자에 대한 개별제한			제한 없음	
정 치 단 체	정당	양적제한			
	정당이의 의단체	양적제한	선거운동에관한 것 제외, 금전등에 의한 것 금지	제한 없음	

- 주: 1) 자금관리단체의 신고를 한 정치자가 그 사람이 공직후보자로 있는 동안 정당으로부터 받은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그 자금관리단체에 대해 하는 기부에 대해서는 총범위제한은 없다.
- 2) 자금관리단체의 신고를 한 정치자가 그 자금관리단체에 대해 하는 기부 (특정 기부 및 자기자금에 의한 기부)에 대해서는 개별제한이 없다.
- 3) 유증에 의한 기부에 대해서는 양적제한은 없다.

#### 다. 기부의 질적 제한

부의 질적제한이란 기부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나라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회사 등, 적자회사,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 타인 명의 및 익명(정당 익명 기부의 특례에 있어)의 기부가 금지되고 있다.

### 부록 III. 수입 부과금과 유사한 외국제도

<부표 2> 핀란드의 예비저장비(Precautionary Storage Fee)

(단위: mk/1000kg)

종 류	기 간	세 액
발전 및 산업용 저황유	1974. 1. 1~1975. 3.31	2.0
	1975. 4. 1~1977. 6.14	10.5
	1977. 6.15~1980. 5.31	0
	1980. 6. 1~1981.12.31	10
	1982. 1. 1~1996.12.31	19
	1997. 1. 1~현재	17
산업 및 가정용 경유	1974. 1. 1~1975. 3.31	3.5
	1975. 4. 1~1977. 6.14	13
	1977. 6.15~1980. 5.31	0
	1980. 6. 1~1981.12.31	14
	1982. 1. 1~1996.12.31	23
	1997. 1. 1~현재	21
자동차 디젤	1974. 1. 1~1975. 3.31	0.0075
	1975. 4. 1~1977. 6.14	0.0225
	1977. 6.15~1980. 5.31	0
	1980. 6. 1~1981.12.31	0.014
	1982. 1. 1~1996.12.31	0.023
	1997. 1. 1~현재	0.021
휘발유	1974. 1. 1~1975. 3.31	0.0125
	1975. 4. 1~1977. 6.14	0.0340
	1977. 6.15~1977.12.31	0
	1978. 1. 1~1978.12.31	0.016
	1979. 1. 1~1979.12.31	0.015
	1980. 1. 1~1980. 5.31	0.020
	1980. 6. 1~1981.12.31	0.034
	1982. 1. 1~1996.12.31	0.043
	1997. 1. 1~현재	0.040

자료: OECD, Energy Price and Taxes, Second Quarter, 2000.

&lt;부표 3&gt; 핀란드의 석유공해세

(단위: mk/1000 litre)

종 류	기 간	세 액
발전 및 산업용 저황유	1974. 1. 1~1974.12.31	0.1
	1975. 1. 1~1982. 5.31	0.15
	1982. 6. 1~1983.12.31	0.2
	1984. 1. 1~1984.12.31	1.0
	1985. 1. 1~1989.12.31	2.0
	1990. 1. 1~계속	2.2
산업 및 가정용 경유	1974. 1. 1~1982. 5.31	0.1
	1982. 6. 1~1983.12.31	0.2
	1984. 1. 1~1984.12.31	0.9
	1985. 1. 1~1989.12.31	1.7
	1990. 1. 1~현재	1.9
자동차용 디젤	1974. 1. 1~1982. 5.31	0.0001
	1982. 6. 1~1983.12.31	0.0002
	1984. 1. 1~1984.12.31	0.0008
	1985. 1. 1~1989.12.31	0.0017
	1990. 1. 1~현재	0.0019
휘발유	1974. 1. 1~1982. 5.31	0.0001
	1982. 6. 1~1983.12.31	0.0002
	1984. 1. 1~1984.12.31	0.0007
	1985. 1. 1~1989.12.31	0.0015
	1990. 1. 1~현재	0.0017

자료: OECD, Energy Price and Taxes, Second Quarter, 2000.

## &lt;부표 4&gt; 오스트리아의 Emergency stock fee

종 류	기 간	세 액
산업용 고탄유 (S/100kg)	1977. 3. 1~1978. 2.28	2.88
	1978. 3. 1~1979. 2.28	5.80
	1979. 3. 1~1980. 2.29	8.63
	1980. 3. 1~1980. 4.30	11.50
	1980. 5. 1~1981. 2.28	15.64
	1981. 3. 1~1982. 2.28	19.55
	1982. 3. 1~1988. 2.29	22.57
	1988. 3. 1~1990.12.15	15.76
	1990.12.16~1992. 2.28	10.64
	1992. 3. 1~1993. 3.31	9.78
	1993. 4. 1~1994. 3.31	9.92
1994. 4. 1~현재	9.20	
산업용 경유 (S/100kg, (S/kl))	1977. 3. 1~1978. 2.28	2.88(26.50)
	1978. 3. 1~1979. 2.28	5.80(53.36)
	1979. 3. 1~1980. 2.29	8.63(79.40)
	1980. 3. 1~1980. 4.30	11.50(105.80)
	1980. 5. 1~1981. 2.28	15.64(143.89)
	1981. 3. 1~1982. 2.28	19.55(179.86)
	1982. 3. 1~1988. 2.29	22.57(207.64)
	1988. 3. 1~1990.12.15	15.76(144.99)
	1990.12.16~1992. 2.28	10.64(97.89)
	1992. 3. 1~1993. 3.31	9.78(89.98)
	1993. 4. 1~1994. 3.31	9.92(94.24)
1994. 4. 1~현재	9.20(84.64)	
가정용 경유 (S/100kg, (S/kl))	1977. 3. 1~1978. 2.28	2.88(24.19)
	1978. 3. 1~1979. 2.28	5.80(48.72)
	1979. 3. 1~1980. 2.29	8.63(72.49)
	1980. 3. 1~1980. 4.30	11.50(96.60)
	1980. 5. 1~1981. 2.28	15.64(131.38)
	1981. 3. 1~1982. 2.28	19.55(164.22)
	1982. 3. 1~1988. 2.29	22.57(189.59)
	1988. 3. 1~1990.12.15	15.76(132.38)
	1990.12.16~1992. 2.28	12.94(108.70)
	1992. 3. 1~1993. 3.31	11.79(99.04)
	1993. 4. 1~1994. 3.31	12.08(101.47)
	1994. 4. 1~1996. 3.31	11.50(96.60)
	1996. 4. 1~1997. 3.31	11.36(95.995)
	1997. 4. 1~1998. 3.31	11.50(96.60)
1998. 4. 1~현재	10.93(91.81)	
자동차용 디젤(S/100kg, (S/litre))	1998. 4. 1~현재	10.93(0.092)
휘발유(S/litre)	1981. 1. 1~현재	약 0.10

자료: OECD, Energy Price and Taxes, Second Quarter, 2000.

&lt;부표 5&gt; 독일의 Contribution to emergency storage fund

종 류	기 간	세 액
중유 (DM/t)	1978. 1. 1~1981. 3.31	3.5
	1981. 4. 1~1981. 8.31	5.7
	1981. 9. 1~1983. 3.31	6.6
	1983. 4. 1~1984.12.31	5.9
	1985. 1. 1~1988. 3.31	5.2
	1988. 4. 1~1993. 3.31	7.5
	1993. 4. 1~1996. 3.31	7.3
	1996. 4. 1~현재	7.9
산업 및 가정용 경유 (DM/t)	1978.12. 1~1981. 3.31	5.54
	1981. 4. 1~1981. 8.31	7.23
	1981. 9. 1~1983. 3.31	9.30
	1983. 4. 1~1984.12.31	8.00
	1985. 1. 1~1988. 3.31	6.98
	1988. 4. 1~1993. 3.31	8.64
	1993. 4. 1~1996. 3.31	7.81
	1996. 4. 1~현재	8.88
자동차용 디젤 (DM/litre)	1984.12.31	0.0067
	1985. 1. 1~1988. 3.31	0.0059
	1988. 4. 1~1993. 3.31	0.0073
	1993. 4. 1~1996. 3.31	0.0066
	1996. 4. 1~현재	0.0075
휘발유 (DM/litre)	1978.12. 1~1981. 3.31	0.0053
	1981. 4. 1~1981. 8.31	0.0056
	1981. 9. 1~1983. 3.31	0.0071
	1983. 4. 1~1984.12.31	0.0064
	1985. 1. 1~1988. 3.31	0.0056
	1988. 4. 1~1996. 3.31	0.0072
	1996. 4. 1~현재	0.0089

자료: OECD, Energy Price and Taxes, Second Quarter, 2000.

## &lt;부표 6&gt; 스위스의 Emergency fund

(단위:SF/litre)

종 류	기 간	세 액
산업용 저황유 (SF/t)	up to Q493	same as for IFO
	1994. 1. 1~1994.12.31	13.85
	1995. 1. 1~1995.12.31	14.00
	1996. 1. 1~1996.12.31	13.85
	1997. 1. 1~1997.12.31	9.87
	1998. 1. 1~현재	8.95
산업 및 가정용 경유 (SF/kl, (SF/t))	1978. 1. 1~1985.12.31	21.16(25.25)
	1986. 1. 1~1986. 6.30	17.81(21.25)
	1986. 7. 1~1986. 9.30	16.97(20.25)
	1986.10. 1~1989.12.31	18.06(21.55)
	1990. 1. 1~1990.12.31	26.23(31.30)
	1991. 1. 1~1991.12.31	24.80(30.10)
	1992. 1. 1~1992.12.31	23.98(29.10)
	1993. 1. 1~1993.12.31	19.78(24.00)
	1994. 1. 1~1994.12.31	16.69(20.25)
	1995. 1. 1~1995.12.31	16.80(20.40)
	1996. 1. 1~1996.12.31	17.10(20.20)
	1997. 1. 1~1997.12.31	13.10(15.50)
	1998. 1. 1~현재	10.60(15.50)
	자동차용 디젤 (SF/litre, (SF/t))	1983. 1. 1~1983.12.31
1984. 1. 1~1984.12.31		0.0121(14.75)
1985. 1. 1~1985.12.31		0.0142(17.29)
1986. 1. 1~1986. 6.30		0.0130(15.79)
1986. 7. 1~1986. 9.30		0.0124(14.75)
1986.10. 1~1986.12.31		0.0135(16.09)
1987. 1. 1~1988.12.31		0.0120(14.34)
1989. 1. 1~1989.12.31		0.0109(13.09)
1990. 1. 1~1990.12.31		0.0153(18.34)
1991. 1. 1~1991.12.31		0.0171(20.54)
1992. 1. 1~1992.12.31		0.0162(19.50)
1993. 1. 1~1993.12.31		0.0129(15.50)
1994. 1. 1~1994.12.31		0.0115(13.80)
1995. 1. 1~1995.12.31		0.0104(12.45)
1996. 1. 1~1996.12.31		0.0129(15.45)
1997. 1. 1~1997.12.31		0.0131(15.69)
1998. 1. 1~현재		0.0106(12.69)
휘발유 (SF/litre)		1983. 1. 1~1983.12.31
	1984. 1. 1~1984.12.31	0.0132
	1985. 1. 1~1985.12.31	0.0145
	1986. 1. 1~1986. 6.30	0.0156
	1986. 7. 1~1986. 9.30	0.0149
	1986.10. 1~1987.12.31	0.0159
	1988. 1. 1~1989.12.31	0.0127
	1990. 1. 1~1990.12.31	0.0157
	1991. 1. 1~1991.12.31	0.0229
	1992. 1. 1~1992.12.31	0.0212
	1993. 1. 1~1993.12.31	0.0185
	1994. 1. 1~1994.12.31	0.0177
	1995. 1. 1~1995.12.31	0.0212
	1996. 1. 1~1996.12.31	0.0189
	1997. 1. 1~1997.12.31	0.0171
	1998. 1. 1~현재	0.0150

자료: OECD, Energy Price and Taxes, Second Quarter, 2000.

## 부록 IV. 분야별 부담금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부표 7> 산림, 농림, 해양수산 분야 부담금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부처	부담금명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근거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림을 형질변경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설립하거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등 산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형질변경하는 자, 즉 원인자에게 대체조립비를 부과
	산림복구비용예치금	×	산림 안에 공장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형질변경하거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자에게 재해방지를 위한 산림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에 담보금으로 예치시키는 것이므로 부과 타당
	임산물수입이익금	×	임산물 시장접근물량을 수입 또는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임
	보안림수익자부담금	×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부담금	×	산림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으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농림부	농지복구비용예치금	×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함은 농지의 형상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의 복구를 위한 의무를 수반하는데 의무불이행시 금전적 대체지급의무인 예치금 납부는 원인자 부담에 해당
	농지조성비	×	식량자급기반을 유지하고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개간·간척)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
	대체초지조성비	×	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축발기금 재원으로 지원하여 조성된 초지에 대해서 타 용도(공장·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대체 초지조성비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

<부표 7>의 계속

부처	부담금명	협의를 준조세 포함여부	근거
농림부	농수산물수입이익금 (농안법)	○	농수산물가격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이 아님
	농수산물수입이익금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가격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이 아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인삼산업법)	○	농수산물가격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이 아님
	축산물수입이익금	○	축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축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이 아님
	쓰레기유발부담금	×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도매시장내에서 쓰레기를 유발시킨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	어업인 등 수혜자에 대해 부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 폐기물해양매출업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처리하는 자이므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자에 해당 - 또한 폐기물해양매출업자는 폐기물발생자로부터 해양매출폐기물의 위탁처리수수료를 받아 영리를 추구하므로 반대급부를 취하는 수익자에 해당
	분담금(해양오염방지법)	×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소유자의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분담하기 때문에 원인자에 해당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은 자 중 어장정화·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과

<부표 8> 교통 분야 부담금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부처	부담금명	협의를 준조세 포함여부	근거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문제를 유발시키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며, 광역교통시설을 해당 주민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부합
	혼잡통행료	×	도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교통혼잡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에 해당

<부표 9> 산업,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 부담금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부처	부담금명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근거
산업자원부	공동부담금	×	공동부담금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원인을 제공하는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는 원인에 해당
	광물수입·판매부담금	○	광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광물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유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음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	오존층 파괴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조 및 수입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에 해당
	안전관리부담금	×	LPG·LNG 수입·제조·판매사업자는 사업을 통하여 비교의적이지만 가스안전사고의 근원적 환경을 제공하므로 원인자에 해당
	전기수용자·전기사업자 부담금	○	농어촌지역의 전화를 촉진시켜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전기수용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2004년 폐지됨)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수행을 통해 전기사용자는 전기 이용 가능, 전기요금 인하 또는 인상 억제, 사용 안전과 같은 혜택을 얻게 되므로 수익자 부담에 해당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	집단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정보통신부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	출연금에 의한 사업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힘들므로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이 아님
	별정보통신사업자 등록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	출연금에 의한 사업이 별정보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힘들므로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이 아님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	원자력 연구개발의 최종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	원자력 안전규제사업을 필요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에게 소요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수수료 개념의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

&lt;부표 10&gt; 문화 분야 부담금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부처	부담금명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근거
문화관광부	국외여행자납부금	○	수혜자나 원인자가 아닌 해외 여행자에 대한 강제적 부담이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
	카지노사업자납부금	○	관광진흥과 관계가 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	관광지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담이므로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분담금	×	관광지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부담이므로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회원체결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체육진흥을 위한 고소득층에 대한 부담이므로 원인자나 수익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음
	모금(문화예술진흥법)	○	매우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사용되므로 원인자나 수익자 부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lt;부표 11&gt; 보건, 노동 분야 부담금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부처	부담금명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근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제도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이므로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음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부담금	×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위하여 제약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음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음

<부표 12> 개발 분야 부담금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부처	부담금명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근거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	훼손에 대한 부담이므로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복구에치금	×	갈채 채취사업자로 하여금 복구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부담이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되지 않음(실질적으로 부담이 아님)
	개발부담금	×	개발에 따른 이익을 수익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다목적 댐건설에 따른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원인자부담금(도로법)	×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부담이므로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손계자부담금(도로법)	×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금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관리자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도시개발구역밖의도시개발시설및추가설치비용부담금	×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근거하여 부담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므로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손해상보장사업분담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및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음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행정자치부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		×	소하천의 소요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예치하여 추후 복구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소하천원상회복 예치금		×	원상회복을 위한 예치금이므로 원인자 부담에 해당됨
소하천수익자부담금		×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부표 12>의 계속

부처	부담금명	협의를 준조세 포함여부	근거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또는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으로 볼 수 없음

<부표 13> 환경 분야 부담금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부처	부담금명	협의를 준조세 포함여부	근거
환경부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수질개선부담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단 수입된 샘플은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아 협의의 준조세로 볼 수도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샘플에 준해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협의의 준조세로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원인자부담금(수도법)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손괴자부담금(수도법)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배출부과금(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원상회복예치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생태계보전협력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폐기물부담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재활용부과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	수익자 부담원칙에 해당
	환경개선부담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협의기준초과부담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총량초과부과금(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건설교통부	과밀부담금	×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해당
	소음부담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해당

<부표 14> 기타 분야 부담금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부처	부담금 명칭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근거
재정경제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	수익자 부담에 해당됨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담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해당되지 않음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해당되지 않음
	신용보증기금출연금	×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해당되지 않음
	한국회계보험협회출연금	×	수익자 부담원칙에 해당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우체국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해당되지 않음
외교통상부	연초경작지원등의사업을위한 출연금	○	담배 생산업자가 연초 경작업자를 위해 출연을 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볼 수 없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 기여금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인자 부담이나 수익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음
외교통상부	국제교류기여금	○	국제교류재단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여권을 발급 받는 자에게 부담을 지우므로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음

<부표 15> 사회보장성 보험료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부처	부담금명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근거
사회보장성보험	국민연금기금	○	수익자나 원인자가 아닌 기업의 부담분은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
	고용보험기금	○	수익자나 원인자가 아닌 기업의 부담이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수익자나 원인자가 아닌 기업의 부담이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
	의료보험	○	수익자나 원인자가 아닌 기업의 부담분은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

<국문요약>

##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손원익 · 정재호 · 김형준 · 김상헌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 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각종 공과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회보장성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성금 등을 준조세로 정의하면, 준조세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은 광의의 준조세로 명명될 수 있다.

광의의 준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조금 축소하면 협의의 준조세를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장성 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이나 성금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용료와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외국의 부담금제도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시도도 함께 하였다. 외국제도를 우리나라 부담금제도와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개별 부담금별로 부과법적근거, 부과주체, 부과대상, 그리고 부과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징수실적이 파악 가능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담금 징수실적과 비교도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외국의 부담금제도에 대한 분석은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부담금제도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업의 기부금 지출 중 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말 기준으로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의 비중은 1997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자발적 기부금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이며, 이는 무분별한 기부금의 모집을 규제한 정부정책의 긍정적 결과인 동시에 사회적 기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말을 기준으로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약 23조 1,516억 원에 이르고 협의의 준조세는 16조 9,21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준조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성 보험료(14조 830억 원)이다. 그러나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준조세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허용되므로 손금산입으로 인해 세액이 감면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총 16조 9,047억 원이고 협의의 준조세 규모는 12조 3,565억 원 정도이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10조 4,266억 원)를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4,781억 원, 협의의 준조세는 1조 9,299억 원 정도이다. 또한, 기부금의 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중립적’ 이라고 답한 것까지 비자발적 기부금에 포함할 경우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17조 216억 원, 협의의 준조세는 12조 4,734억 원이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5,950억 원, 협의의 준조세는 2조 468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논거에 따르면, 조세성 부담금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비조세성 부담금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준조세 중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제하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조세성 부담금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비조세성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 없이는 부담금의 규모를 감소시키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 Corporate Burden on Quasi-Taxes and Policy Direction

Won-ik Son, Jaeho Cheung,  
Hyeong-jun Kim, Sang-heon Kim

The scope of quasi-taxes can be broadened when quasi-taxes are defined as firms' involuntary and pecuniary burdens other than production costs. These burdens include both burdens required by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such as charges, fees, dues, public imposts, rental fees and commission, social security related insurance premium (national pension,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premium, medical insurance premium), negligence penalty, fine, fine for traffic related offenses, and compulsory performance deposit; and burdens that are not required by any laws, but are in practice almost involuntary, such as certain types of donations and gifts.

With certain benchmarks, quasi-taxes in a broad sense can be slightly narrowed down into ones in a narrow sense. At this point, the pecuniary burden includes 1) charges, contribution, money deposited, dues, surcharges, fund, donation and so on which are not covered by burden of beneficiary or burden of causer, 2) corporate burden on social security related insurance premium, and 3) involuntary donation. Yet, when it comes to rental fee or royalty and commission, they are not regarded as quasi-taxes in a narrow sense

since they are just rewards for direct profit in terms of goods and services.

This study tries to grasp the picture of charges/fees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its current management status. For easy comparison with that of Korea, foreign systems are examined with the basis of judicial grounds, assessors, objects imposed, objective of imposition and usage case by case. This is the first attempt to carry out an analysis on the charges/fees of foreign countries as a whol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fundamental outcome for the further study on the charges/fees of Korea.

In addition, the study does a survey on member companies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o grasp the degree of corporate voluntary willingness to donate. As of the end of 2003, the proportion of corporate involuntary donation decreased from the 1997 level. It is a desirable result driven by positive consequences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regulate a reckless urge to donation and desirable change of corporate attitude toward social contribution at the same time.

As of the end of 2003, the proportion of quasi-taxes in a broad sense reaches 23.1516 trillion won and that of quasi-taxes in a narrow sense stands at 16.9212 trillion won. Social security related insurance premium (14.830 trillion won) took the biggest slice from the quasi-taxes. Still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 variety of quasi-taxes paid by companies are defined as costs, allowing deduction of expenses. Thus with the exclusion of tax amount which are reduced by deduction, the total amount of quasi-taxes in a broad sense is 16.9047 trillion won and that of quasi-taxes in a narrow

sense is 12.3565 trillion won. Among them, when the social security related insurance premium (10.4266 trillion won) is excluded, the amount of quasi-taxes in a broad sense is approximately 6.4781 trillion won and that of quasi-taxes in a narrow tax is 1.9299 trillion won. On top of this when involuntary donations are added, the proportion of quasi-taxes in a broad sense records 17.216 trillion won and that of quasi-taxes in a narrow sense records 12,4734 trillion won. The exclusion of social security related insurance premium reduces the amount of quasi-taxes in a broad sense and that of quasi-taxes in a narrow sense to 6.5950 trillion won and 2.468 trillion won, respectively.

This study's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illustrate that charges/fees with tax characteristics have generally reduced and charges/fees with non-tax characteristics have grown year by year.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requires consistent attention to the increase in charges/fees with non-tax characteristics to regulate charges/fees among quasi-taxes. In other word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 that without control it will be difficult to reduce the amount of charges/fees since charges/fes with non-tax characteristics have continuously grown up.

<著者略歴>

孫元翼

미국 William Penn College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Cruz 객원 조교수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鄭在皓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金亨俊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미국 Rochester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金相憲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정책학 박사  
현,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政策報告書 04-06

##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

2004년 12월 24일 인쇄  
2004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손원익 · 정재호 · 김형준 · 김상헌  
발행인 최 용 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팩시밀리 : 2186-2179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4

ISBN 89-8191-291-2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8,000원